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예산안분석시리즈 Ⅲ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총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한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유민호 현서린 김민혁 박승호 이석원
서창희 오규환 김유진 안은주 남명진
이병철 정근주 장윤정 최성찬 오지은
박소희 곽보영 한주희 예산분석관

지원 | 양승미 행정실무관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I. 개 관 / 1

1.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3
1-1.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	3
1-2. 세입·세출예산안	6
1-3. 기금운용계획안	13
2.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의안·문서 및 첨부서류	17

II. 재정총괄 분석 / 33

1. 예산총칙안 분석	35
2.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78
3. 국가보증채무 동의안 분석	105
4. 성과계획서 및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예산안 연계 분석	129
4-1. 2027년도 성과계획서 분석	132
4-2.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 분석	157
5.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175
5-1. 회계·기금 간 거래 개요	177
5-2. 회계·기금 간 거래 현황	180
5-3. 분석의견	190
6. 지출구조조정 분석	203
7. 의무지출 분석	233
8. 유사중복 사업 분석	276
9. 법령 제·개정 연계사업 분석	324



CONTENTS

10. 재정 외 운용자금 분석	352
10-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방식이 아닌 일반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 검토 필요 ·	357
10-2. 채소수급조정충당금: 재정 내에서 사업 운영 방안 마련 필요	365
10-3.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자원 조성 방식의 재정지출 전환 검토 필요	371
1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현황 분석	375
1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404
13.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사업 분석	411
13-1. 조세지출의 재정전환 개요	411
13-2. 분석의견	423
14.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 분석	445
14-1.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편성액의 산출 근거 공개를 통한 국회의 예산 심사권 실질화 필요	449
14-2. 과소 편성된 일반회계 등 정부출자수입 세입예산액의 증액 조정 필요	457
15.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위험 관리 분석	474
16. 공공요금 관련 공익서비스(PSO) 비용 지원현황 검토	520



I. 개 관

1-1.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205.6조원(30.5%), 추경 대비 180.2조원(25.7%) 증가한 880.8조원,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93.0조원(12.8%), 추경 대비 67.9조원(9.0%) 증가한 820.9조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¹⁾은 880.8조원으로, 국세수입 584.4조원, 세외수입 37.6조원, 기금수입 258.7조원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169.0조원(40.7%), 기금수입 계획안은 전년 추경 대비 11.9조원(4.8%) 증가하였다. 세외수입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0.8조원(2.1%) 감소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

(단위: 조원, %)

구 분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수입	675.2	700.6	880.8	180.2	25.7
- 국세수입	390.2	415.4	584.4	169.0	40.7
- 세외수입	38.4	38.4	37.6	△0.8	△2.1
- 기금수입	246.6	246.8	258.7	11.9	4.8

주: 1) 추경은 추정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820.9조원으로, 회계 505.0조원, 기금 315.8조원으로 구성된다. 회계는 전년 추경 대비 1.0조원(0.2%)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전년 추경 대비 66.8조원(26.8%) 증가하였다.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총수입과 총지출은 예산·기금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재정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이나 차입 등)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재정총량 지표이다.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단위: 조원, %)

구 분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지출	727.9	753.0	820.9	67.9	9.0
- 회계(세출)	481.4	504.0	505.0	1.0	0.2
- 기금(지출)	246.5	249.0	315.8	66.8	26.8

주: 1) 추경은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재정수지(59.9조원 흑자)는 전년 추경 대비 흑자로 전환되고 관리재정수지(△3.1조원)는 전년 추경 대비 개선, 국가채무(1,519.8조원)는 전년 추경 대비 107.0조원 증가하여 GDP 대비 48.3%로 전망된다.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재정수지는 59.9조원 흑자(GDP 대비 1.9%)로 전년 추경 대비 112.4조원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²⁾는 3.1조원 적자(GDP 대비 0.1%)로 전년 추경 대비 104.5조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도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6 ¹⁾		2027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통합재정수지	△52.7	△52.5	59.9	112.4
(GDP 대비)	(△1.9)	(△1.9)	(1.9)	(3.8)
관리재정수지	△107.8	△107.6	△3.1	104.5
(GDP 대비)	(△3.9)	(△3.8)	(△0.1)	(3.7)

주: 1) 추경은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이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이다.

2027년도 국가채무³⁾ 규모는 1,519.8조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107.0조원 증가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7년도 국가채무의 전년 추경 대비 증가는 중앙정부채무, 특히 국채의 증가가 주도하였다. 2027년 중앙정부채무는 2026년도 추경 대비 106.6조원 증가한 1,482.7조원으로 계획되었다. 지방정부순채무는 전년 추경 대비 0.4조원 증가한 37.1조원으로 계획되었다.

[2027년도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6 ¹⁾		2027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국가채무 (GDP 대비)	1,413.8 (51.6)	1,412.8 (50.6)	1,519.8 (48.3)	107.0 (△2.3)
중앙정부채무	1,377.1	1,376.1	1,482.7	106.6
국채	1,375.7	1,374.7	1,481.1	106.4
차입금	1.3	1.3	1.3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1	0.3	0.2
지방정부순채무	36.7	36.7	37.1	0.4

주: 1)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3)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금전채무를 합산한 지표인 D1을 의미한다.

1-2. 세입·세출예산안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624.8조원 대비 33.1% 증가한 831.5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총계 기준)은 2026년 본예산 기준 624.8조원에서 206.7조원(33.1%) 증가한 831.5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507.6조원 대비 192.5조원(37.9%) 증가한 700.1조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4.2조원(12.1%) 증가한 131.4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조원, %)

구 분	2026년 본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 계	624.8	831.5	206.7	33.1
- 일반회계	507.6	700.1	192.5	37.9
- 특별회계	117.2	131.4	14.2	12.1

주: 총계 기준이며,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700.1조원)를 제외하고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2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5.3조원), 교통시설특별회계(15.1조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14.6조원) 순의 규모를 보였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액 기준으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6.8조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2.6조원, 신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3조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9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95.9%)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2.6조원)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3조원)가 신설되어 편성된 반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2026년 6.4조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기존 사업 중 일부(무공해차 보급, 에너지바우처 등)는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는 2026년 21개에서 22개로 변경되었다(신설 2개, 폐지 1개).

[2027년도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소 관	2026년 본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 계	624,776,890	831,502,098	206,725,208	33.1
□ 일반회계	507,599,746	700,117,142	192,517,396	37.9
□ 특별회계	117,177,144	131,384,956	14,207,812	12.1
○ 기타 특별회계	102,301,350	115,285,384	12,984,034	12.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395,554	34,176,929	16,781,375	96.5
- 교통시설특별회계	16,607,627	15,087,288	△1,520,339	△9.2
- 등기특별회계	288,517	291,226	2,709	0.9
- 교도작업특별회계	130,284	131,031	747	0.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382,961	-	△6,382,961	순감
- 환경개선특별회계	7,058,176	7,126,421	68,245	1.0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435,354	2,422,657	△12,697	△0.5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9,384	1,021,604	22,220	2.2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58,268	159,421	△198,847	△55.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90,366	568,854	278,488	95.9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30,336	977,497	447,161	84.3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62,478	29,713	△132,765	△81.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6,089	108,135	△7,954	△6.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911,235	25,260,933	2,349,698	10.3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7,339,932	14,649,914	△2,690,018	△15.5
- 영유아특별회계	9,294,789	9,442,174	147,385	1.6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2,566,034	2,566,034	순증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	1,265,553	1,265,553	순증
○ 기업특별회계	14,367,343	15,579,760	1,212,417	8.4
- 양곡관리특별회계	2,611,728	2,554,610	△57,118	△2.2
- 조달특별회계	788,225	626,857	△161,368	△20.5
- 우편사업특별회계	5,410,731	5,372,037	△38,694	△0.7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556,659	7,026,256	1,469,597	26.4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08,451	519,812	11,361	2.2

주: 총계 기준이며,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부처별 세입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재정경제부(676.4조원), 기획예산처(36.5조원), 농림축산식품부(34.9조원), 교육부(24.3조원), 국토교통부(14.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안 증가율을 기준으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84.0%), 보건복지부(77.4%), 산림청(59.7%), 재정경제부(30.4%)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36.5조원)의 경우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순증하였다.

[2027년도 부처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소 관	2026년 본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 계	624,776,890	831,502,098	206,725,208	33.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74	274	-	-
대통령경호처	553	157	△396	△71.6
국회	4,657	4,987	330	7.1
대법원	840,127	833,824	△6,303	△0.8
헌법재판소	245	46	△199	△8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99	1,100	△199	△15.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3	13	-	-
감사원	863	965	102	11.8
국가정보원	9,219	7,295	△1,924	△20.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79	314	35	12.5
재정경제부	518,875,605	676,383,516	157,507,911	3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468,437	13,909,078	1,440,641	11.6
교육부	26,772,754	24,253,607	△2,519,147	△9.4
외교부	363,931	374,596	10,665	2.9
통일부	1,545	1,681	136	8.8
법무부	1,679,116	1,680,760	1,644	0.1
국방부	1,270,386	1,499,805	229,419	18.1
행정안전부	179,595	259,703	80,108	44.6
국가보훈부	10,014	10,836	822	8.2
문화체육관광부	279,851	280,825	974	0.3
농림축산식품부	18,962,023	34,890,886	15,928,863	84.0
산업통상부	4,534,969	5,448,349	913,380	20.1
보건복지부	1,592,136	2,824,044	1,231,908	77.4
기후에너지환경부	11,668,414	7,757,031	△3,911,383	△33.5
고용노동부	361,328	238,464	△122,864	△34.0
성평등가족부	38,722	74,154	35,432	91.5

(단위: 백만원, %)

소 관	2026년 본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토교통부	15,882,594	14,241,703	△1,640,891	△10.3
해양수산부	1,898,120	1,959,930	61,810	3.3
중소벤처기업부	270,505	252,662	△17,843	△6.6
기획예산처	-	36,517,782	36,517,782	순증
인사혁신처	110,575	52,537	△58,038	△52.5
식품의약품안전처	47,180	50,339	3,159	6.7
국가데이터처	3,693	3,122	△571	△15.5
지식재산처	701,827	722,911	21,084	3.0
국가인권위원회	57	122	65	114.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613	20,664	51	0.2
공정거래위원회	609,684	623,108	13,424	2.2
금융위원회	155,827	164,503	8,676	5.6
국민권익위원회	794	854	60	7.6
원자력안전위원회	2,360	2,086	△274	△1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3,134	118,458	55,324	87.6
국세청	311,025	265,073	△45,952	△14.8
관세청	52,737	56,824	4,087	7.7
조달청	788,225	626,857	△161,368	△20.5
우주항공청	1,679	2,248	569	33.9
재외동포청	1,015	1,019	4	0.4
병무청	334	477	143	42.8
방위사업청	668,475	757,311	88,836	13.3
경찰청	1,571,002	1,602,351	31,349	2.0
소방청	5,158	4,211	△947	△18.4
국가유산청	53,129	56,386	3,257	6.1
농촌진흥청	14,118	15,140	1,022	7.2
산림청	1,239,365	1,979,541	740,176	59.7
질병관리청	69,782	70,095	313	0.4
기상청	10,984	12,738	1,754	16.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90,366	568,854	278,488	95.9
새만금개발청	8,286	8,224	△62	△0.7
해양경찰청	7,892	7,658	△234	△3.0

주: 총계 기준이며, 2026년은 본예산 기준이고, 증가율 순위는 2026년 세입 1조원 이상 부처 대상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부처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예산처(178.5조원), 교육부(130.0조원), 보건복지부(84.9조원), 행정안전부(84.7조원), 국방부(50.2조원), 국토교통부(46.6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안 증가율 기준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7.1%), 농림축산식품부(54.6%), 산업통상부(43.0%), 원자력안전위원회(27.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6.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예산처(178.5조원), 중대범죄수사청(4,724억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29억원)의 경우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순증하였다. 2026년도 본예산은 기획재정부 단일 소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재정경제부(△31.1%)와 기획예산처의 증감은 소관 개편에 따른 것으로 예산 증감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기획예산처 세출예산안(178.5조원)은 미래대응기금 전출금(158.5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14.5조원) 등 회계·기금 간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총지출 기준 5.3조원).

[2027년도 부처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소 관	2026년 본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 계	624,776,890	831,502,098	206,725,208	33.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05,148	126,517	21,369	20.3
대통령경호처	132,162	135,668	3,506	2.7
국회	810,089	847,849	37,760	4.7
대법원	2,384,397	2,531,474	147,077	6.2
헌법재판소	62,109	70,835	8,726	1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84,745	441,808	△42,937	△8.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7,171	40,703	3,532	9.5
감사원	144,365	149,490	5,125	3.6
국가정보원	960,500	1,077,700	117,200	12.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853,294	915,892	62,598	7.3
재정경제부	46,726,482	32,202,538	△14,523,944	△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406,029	26,394,813	△1,011,216	△3.7
교육부	126,620,697	129,954,717	3,334,020	2.6
외교부	3,562,057	3,651,770	89,713	2.5
통일부	342,356	346,379	4,023	1.2
법무부	4,744,943	5,429,633	684,690	14.4

(단위: 백만원, %)

소 관	2026년 본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국방부	46,787,510	50,198,299	3,410,789	7.3
행정안전부	76,905,548	84,703,615	7,798,067	10.1
국가보훈부	6,557,025	7,084,581	527,556	8.0
문화체육관광부	4,412,802	4,866,339	453,537	10.3
농림축산식품부	25,736,981	39,799,831	14,062,850	54.6
산업통상부	11,622,629	16,617,632	4,995,003	43.0
보건복지부	78,417,747	84,920,093	6,502,346	8.3
기후에너지환경부	24,231,408	19,778,694	△4,452,714	△18.4
고용노동부	7,297,115	5,577,260	△1,719,855	△23.6
성평등가족부	1,031,603	1,043,558	11,955	1.2
국토교통부	45,018,494	46,604,568	1,586,074	3.5
해양수산부	7,526,072	7,931,810	405,738	5.4
중소벤처기업부	8,821,057	7,923,904	△897,153	△10.2
기획예산처	-	178,484,752	178,484,752	순증
인사혁신처	6,842,025	6,632,125	△209,900	△3.1
법제처	60,588	70,032	9,444	15.6
식품의약품안전처	832,027	882,919	50,892	6.1
국가데이터처	456,670	421,717	△34,953	△7.7
지식재산처	630,825	710,616	79,791	1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9,695	20,677	△9,018	△30.4
국가인권위원회	43,869	46,014	2,145	4.9
국가교육위원회	11,313	11,644	331	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2,968	92,248	19,280	26.4
공정거래위원회	189,199	225,211	36,012	19.0
금융위원회	4,651,626	5,660,967	1,009,341	21.7
국민권익위원회	111,719	140,540	28,821	25.8
원자력안전위원회	104,462	132,829	28,367	27.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2,884	83,817	10,933	15.0
국세청	2,097,794	2,481,341	383,547	18.3
관세청	689,932	728,440	38,508	5.6
조달청	788,225	626,857	△161,368	△20.5
우주항공청	1,120,101	902,523	△217,578	△19.4
재외동포청	112,716	136,875	24,159	21.4

(단위: 백만원, %)

소 관	2026년 본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병무청	517,822	524,932	7,110	1.4
방위사업청	19,965,293	22,722,422	2,757,129	13.8
경찰청	14,320,881	15,042,196	721,315	5.0
소방청	336,463	371,275	34,812	10.3
중대범죄수사청	-	472,406	472,406	순증
국가유산청	1,330,016	1,482,320	152,304	11.5
농촌진흥청	1,139,440	1,213,415	73,975	6.5
산림청	4,515,350	4,991,661	476,311	10.5
질병관리청	560,598	600,859	40,261	7.2
기상청	548,987	616,060	67,073	1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76,310	1,135,767	559,457	97.1
새만금개발청	202,767	216,589	13,822	6.8
해양경찰청	2,088,487	2,229,163	140,676	6.7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3,303	-	△13,303	순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2,919	22,919	순증

주: 총계 기준이며,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재작성

1-3. 기금운용계획안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74.9조원으로, 전년 당초 계획 대비 184.1조원(18.6%) 증가한 것으로 계획되었다.

2027년도 수입계획안 1,174.9조원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자체수입은 국민연금기금의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등으로 2026년 당초 계획보다 4.3% 증가한 273.0조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내부수입은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증가 등으로 2026년 당초 계획보다 91.6% 증가한 390.7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그 외에 차입금은 269.3조원, 여유자금회수 등은 241.9조원으로 계획되었다.

[2027년도 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조원, %)

구 분	2026 계획 ¹⁾ (A)	2027 계획안 (B)	증 감	
			B-A	(B-A)/A
총 계	990.8	1,174.9	184.1	18.6
자체수입	261.8	273.0	11.2	4.3
정부내부수입	203.9	390.7	186.8	91.6
차입금	264.4	269.3	4.9	1.8
여유자금회수 등	260.6	241.9	△18.7	△7.2

주: 1) 2026년 당초 계획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은 1,174.9조원으로, 사업비 285.7조원, 기금운영비 3.3조원, 정부내부지출 268.3조원, 차입금원리금상환 219.7조원, 여유자금운용 397.8조원으로 계획되었다. 사업비는 전년 당초 계획 대비 63.6조원(28.6%) 증가하고, 사회보험성기금이 국민연금 연금급여지급 증가 등에 따라 7.0조원(5.6%) 증가하고, 사업성기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이관·신규사업 순증, 주택도시기금 용자 확대 등으로 55.8조원(67.8%) 증가하며, 금융·계정성기금이 0.9조원(5.8%)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었다.

정부내부지출은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및 계정 간 전출금 순증 등으로 전년 당초 계획 대비 3.6% 증가한 268.3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차입금원리금상환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원금상환 확대 등에 따라 6.7% 증가한 219.7조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유자금운용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여유자금운용 순증 등으로 전년 당초 계획 대비 97.3조원 증가한 397.8조원으로 계획되었다.

[2027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조원, %)

구 분	2026 계획 ¹⁾ (A)	2027 계획안 (B)	증 감	
			B-A	(B-A)/A
총 계	990.8	1,174.9	184.1	18.6
사업비	222.1	285.7	63.6	28.6
사회보험성	124.6	131.6	7.0	5.6
사업성	82.3	138.0	55.8	67.8
금융성·계정성	15.2	16.1	0.9	5.8
기금운영비	3.2	3.3	0.1	4.3
정부내부지출	259.1	268.3	9.2	3.6
차입금원리금상환	205.9	219.7	13.8	6.7
여유자금운용	300.5	397.8	97.3	32.4

주: 1) 2026년 당초 계획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 기금별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310.1조원), 미래대응기금(215.2조원), 국민연금기금(192.8조원), 외국환평형기금(106.5조원), 주택도시기금(95.4조원) 순으로 계획되었다.

2026년도 당초 계획 대비 증가액 기준으로는 미래대응기금(215.2조원), 농업발전기금(8.8조원), 국민연금기금(8.1조원) 순이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기후대응기금(192.9%), 축산발전기금(147.6%), 임금채권보장기금(60.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55.2%) 순이다. 한편 2027년도에는 전략수출금융기금, 미래대응기금, 농업발전기금, 자원안보기금,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되었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되어 2026년 대비 기금수는 67개에서 69개로 변경되었다(신설 5개, 폐지 3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억원, %)

기 금 명	2026 계획 ¹⁾ (A)	2027 계획안 (B)	증 감	
			B-A	(B-A)/A
총 계	9,907,588	11,748,881	1,841,293	18.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51	1,338	△113	△7.8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722	3,241	△2,481	△43.4
보훈기금	5,520	4,100	△1,420	△25.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514	1,567	53	3.5
공적자금상환기금	74,206	80,272	6,066	8.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249	20,961	△1,288	△5.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465	418	△47	△10.1
신용보증기금	107,015	114,670	7,655	7.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8,867	35,492	△13,375	△27.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8,700	55,465	6,765	13.9
공공자금관리기금	3,284,837	3,101,059	△183,778	△5.6
국유재산관리기금	36,685	44,391	7,706	21.0
대외경제협력기금	23,790	20,576	△3,214	△13.5
복권기금	95,863	101,528	5,665	5.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763	12,047	4,284	55.2
외국환평형기금	1,351,347	1,064,865	△286,482	△21.2
기후대응기금	29,057	85,105	56,048	192.9
전략수출금융기금	-	13,903	13,903	순증
미래대응기금	-	2,151,623	2,151,623	순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42,391	148,923	6,532	4.6
사학진흥기금	4,111	3,182	△929	△22.6
과학기술진흥기금	1,230	1,605	375	30.5
방송통신발전기금	10,486	8,325	△2,161	△20.6
원자력기금	7,132	6,707	△425	△6.0
정보통신진흥기금	11,207	8,437	△2,770	△24.7
국제교류기금	1,358	1,581	223	16.4
남북협력기금	14,278	11,820	△2,458	△17.2
군인복지기금	9,833	10,352	519	5.3
군인연금기금	50,997	53,865	2,868	5.6
공무원연금기금	351,619	361,731	10,112	2.9
관광진흥개발기금	18,399	23,426	5,027	27.3
국민체육진흥기금	34,590	33,859	△731	△2.1
문화예술진흥기금	6,325	7,019	694	11.0
언론진흥기금	545	595	50	9.2
영화발전기금	1,696	1,643	△53	△3.1
지역신문발전기금	150	143	△7	△4.7
국가유산보호기금	2,026	2,106	80	3.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481	-	△30,481	순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139	3,131	△2,008	△39.1

(단위: 억원, %)

기 금 명	2026 계획 ¹⁾ (A)	2027 계획안 (B)	증 감	
			B-A	(B-A)/A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1,124	32,303	1,179	3.8
농지관리기금	27,802	-	△27,802	순감
양곡증권정리기금	3,890	2,527	△1,363	△35.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298	-	△5,298	순감
농업발전기금	-	88,332	88,332	순증
축산발전기금	11,215	27,766	16,551	147.6
수산발전기금	11,600	17,610	6,010	51.8
무역보험기금	57,730	59,084	1,354	2.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10,131	111,089	958	0.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971	2,022	51	2.6
전력산업기반기금	45,137	36,297	△8,840	△19.6
자원안보기금	-	24,555	24,555	순증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67,092	54,986	△12,106	△18.0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15,129	125,390	10,261	8.9
기술보증기금	38,526	38,236	△290	△0.8
국민건강증진기금	48,808	42,700	△6,108	△12.5
국민연금기금	1,847,657	1,928,466	80,809	4.4
응급의료기금	4,950	3,522	△1,428	△28.8
금강수계관리기금	2,042	2,080	38	1.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63	2,715	52	2.0
석면피해구제기금	656	618	△38	△5.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803	1,923	120	6.7
한강수계관리기금	5,375	5,647	272	5.1
고용보험기금	276,108	292,532	16,424	5.9
근로복지진흥기금	5,419	5,439	20	0.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09,002	229,505	20,503	9.8
임금채권보장기금	8,969	14,415	5,446	60.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5,121	26,931	1,810	7.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533	2,636	103	4.1
주택도시기금	1,080,530	954,229	△126,301	△11.7
양성평등기금	8,761	9,648	887	10.1
공익신고장려기금	-	3,055	3,055	순증
청소년육성기금	1,504	1,552	48	3.2

주: 1) 2026년 당초 계획(국회 확정)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열린재정(재정사업별 설명자료)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국회가 예산안 심의 시 함께 논의하여야 하거나 부수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안건들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고 있으며, 재정총량, 예산안이 성인지 및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 등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참고할 사항에 대한 서류도 첨부하여 제출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4조는 다음 표와 같이 총 19종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독립기관·감사원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규모·이유 및 해당 기관장 의견」 등 7개 문서는 별도 책자로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로 통합하여 제출하고 있다.

[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현황]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34조)	첨부서류명	제출형식
제1호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예산안 첨부서류」
제2호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별도 책자(5권)
제2호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3호	계속비 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3호의2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현황	「예산안 첨부서류」
제4호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5호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5호의2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명시 대상 사업	「예산안 첨부서류」
제6호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예산안 첨부서류」
제7호	국유재산 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8호	성과계획서	별도 책자
제9호	성인지 예산서	별도 책자
제9호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별도 책자
제10호	조세지출예산서	별도 책자
제11호	독립기관·감사원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규모·이유 및 해당 기관장 의견	별도 책자
제13호	회계 상호간 여유재원 전입·전출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
제14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별도 책자
제15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예산안 첨부서류」
제16호	지자체 보조사업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예산안 첨부서류」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제71조는 다음 표와 같이 총 8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성과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등 3개 문서는 별도 책자로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책자로 통합하여 제출하고 있다.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현황]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71조)	첨부서류명	제출형식
제1호	기금조성계획	「기금안 첨부서류」
제2호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기금안 첨부서류」
제3호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기금안 첨부서류」
제4호	성과계획서	별도 책자
제5호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전입·전출명세서	「기금안 첨부서류」
제6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별도 책자
제6호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별도 책자
제7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기금안 첨부서류」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그 밖에 「국가재정법」 등은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별개로 각종 재정 관련 의안·문서를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관련 의안으로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 동의안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이 있다.

다음 관련 문서로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첨부서류,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에 따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등이 있다.

1) 2027년에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동의안으로는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첨단전략산업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및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건이 제출되었다.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의안·문서 현황]

구분	법적 근거	관련 의안·문서명	
의안	「국가재정법」 제92조	국가보증채무 동의안(한미전략투자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한국장학재단채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무역보험법」 제8조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문서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첨부서류(증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증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등)	
	「국가재정법」 제9조의2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재정관련자료	공공기관 증장기 재무관리계획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및 관련 의안·문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하에서는 이 중 주요 의안 및 서류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은 기존에 국가재정으로 건설·운영해 왔던 도로·철도·항만 및 학교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종류로,²⁾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시설 소유권을 주무관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Transfer)하면,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주무관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설이 준공된 후 운영이 개시된 때로부터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BTL 사업의 특성상 정부지급금이 장기간에 걸쳐 지출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매년 다음 연도에 실시할 BTL 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³⁾

BTL 한도액은 BTL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살펴보면, 2027년도 총한도액은 전년 대비 3조 3,846억원(84.6%) 감소한 6,14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그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2조 7,503억원(86.5%)이 감소한 4,280억원,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4,731억원(75.0%) 감소한 1,576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한도액 합계의 20% 이내 범위에

2)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투자비 회수방법에 따라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이 대표적이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서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한도액 감소에 따라 2027년 예비한도액도 전년 대비 1,612억원(84.6%) 감소한 293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안)]

(단위: 억원, %)

구분	2026(A)	2027(B)	증감(B-A)	(B-A)/A
총한도액	39,995	6,149	△33,846	△84.6
국가사업	31,783	4,280	△27,503	△86.5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6,307	1,576	△4,731	△75.0
예비한도액	1,905	293	△1,612	△84.6

주: 2026년은 국회 의결로 확정된 한도액이며,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BTL 한도액(안)」은 총 2조 261억원(국가사업 1조 3,892억원,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5,404억원, 예비한도액 965억원)이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국회 의결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안)」의 주요 내용 및 분석에 대해서는 “2.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에서 다루도록 한다.

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정부는 20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였으며, 2007년부터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① 경제·재정운용 여건, ② 재정운용 방향 및 ③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④ 재정혁신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의무지출·재량지출의 증가율 등,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⁵⁾ 한편 첨부서류로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장기(40회계연도) 재정전망 결과 등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및 분석에 대해서는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분석」 보고서 중 “1. 개관의 2.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서 다루도록 한다.

5)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

다. 성과계획서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⁶⁾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으로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 통해 부처별·사업별로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그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99년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3년 22개 부처 대상 우선 시행을 거쳐 2006년 모든 부처(48개)에 도입하였다. 이후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핵심 문서인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서 2009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어 예산심의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

이러한 성과계획서는 2021년까지는 각 중앙관서별 임무·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⁸⁾ 및 프로그램목표⁹⁾를 설정한 후 그 하위에 단위사업을 배치하는 체계로 구성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프로그램 단위로 상향조정하여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부터는 1프로그램 1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6)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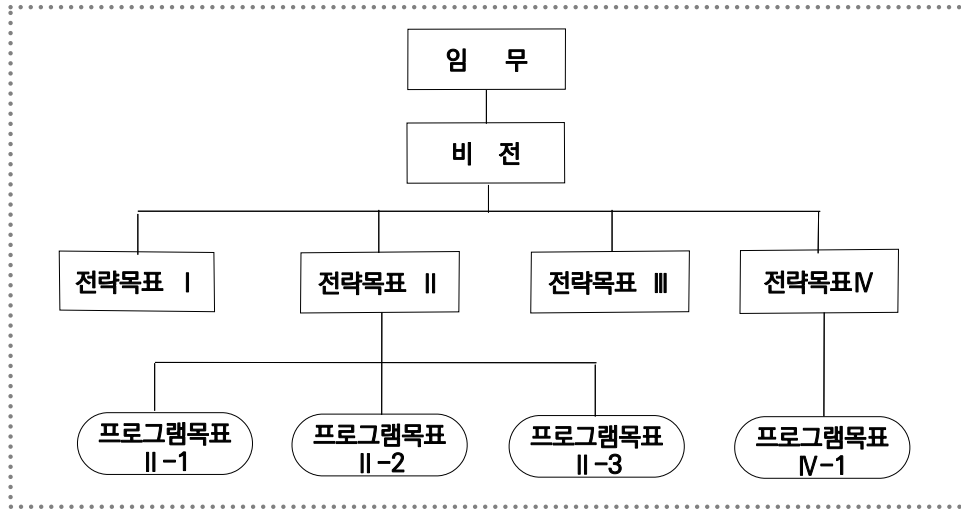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목표이다.

9)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그램 당 1개의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한다.

[2027년도 예산안의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과계획서」

2027년도 성과계획서의 작성대상은 62개 중앙관서로, 전략목표 197개 및 프로그램목표 533개로 구성되었다. 2026년도 대비 중앙관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롭게 추가된 대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외되어 1개 증가한 62개이며, 전략목표는 전년 대비 1개, 프로그램목표는 전년 대비 18개 증가하였다.

[2027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단위: 개)

회계연도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7 (a)	62	197	533
2026 (b)	61	196	515
증감(a-b)	+1	+1	+1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과계획서」

2027년도 성과계획서상 부처별 전략목표 현황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전략목표가 각각 1개 추가되었으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전략목표 1개가 제외되었다. 부처별 프로그램목표는 성평등가족부(△1)에서 감소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국토교통부(+3), 국방부(+2), 국회(+1), 교육부(+1), 보건복지부(+1), 해양수산부(+1), 중소벤처기업부(+1), 기획예산처(+1), 산림청(+1)에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신규 중앙관서인 중대범죄수사청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각 1개의 프로그램목표가 설정되었다.

[2027년도 부처별 성과목표 현황]

번호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6	2027	2026	2027
합 계		196	197	515	533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1	1	1
2	대통령경호처	1	1	1	1
3	국회	2	2	5	6
4	대법원	2	2	2	2
5	헌법재판소	1	1	1	1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2	2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	2	2
8	감사원	1	1	1	1
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1	1	1
10	재정경제부	4	4	12	12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6	36	42
12	교육부	4	4	20	21
13	외교부	6	6	12	12
14	통일부	2	2	8	8
15	법무부	5	5	8	8
16	국방부	5	5	10	12
17	행정안전부	6	6	16	16
18	국가보훈부	5	5	9	9
19	문화체육관광부	6	6	33	33
20	농림축산식품부	5	5	16	16
21	산업통상부	6	6	23	23
22	보건복지부	4	4	24	25
23	기후에너지환경부	7	7	40	40
24	고용노동부	4	4	9	9
25	성평등가족부	4	4	6	5
26	국토교통부	6	6	32	35
27	해양수산부	3	3	13	14
28	중소벤처기업부	5	5	11	12
29	기획예산처	3	3	7	8

번호	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2026	2027	2026	2027
30	인사혁신처	5	5	7	7
31	법제처	1	1	1	1
32	식품의약품안전처	5	5	10	10
33	국가데이터처	3	3	5	5
34	지식재산처	2	2	5	5
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1	1	1
36	국가인권위원회	1	1	1	1
37	국가교육위원회	1	1	1	1
3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2	5	5
39	공정거래위원회	3	3	4	4
40	금융위원회	4	4	11	11
41	국민권익위원회	1	1	1	1
42	원자력안전위원회	2	2	3	3
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1	3	3
44	국세청	5	5	6	6
45	관세청	4	4	6	6
46	조달청	1	1	2	2
47	우주항공청	6	6	10	10
48	재외동포청	1	1	2	2
49	병무청	4	4	4	4
50	방위사업청	3	3	7	7
51	경찰청	4	4	10	10
52	소방청	1	1	1	1
53	중대범죄수사청	-	1	-	1
54	국가유산청	3	3	7	7
55	농촌진흥청	2	2	7	7
56	산림청	5	5	7	8
57	질병관리청	4	4	9	9
58	기상청	4	4	7	7
5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2	2
60	새만금개발청	3	3	3	3
61	해양경찰청	5	5	5	5
62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	-	1	-
6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1	-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과계획서」

라.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는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 성인지 사업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 성인지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이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 시 부속서류로 제출된다.

2027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33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274개로, 규모는 26조 8,789억원이다.

2026년 성인지 예산과 비교해 보면 2027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6조 8,544억원에서 26조 8,789억원으로 0.1%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특별회계 사업은 8.4% 감소하였고, 기금사업은 7.3% 증가하였다. 한편, 사업 수는 265개에서 274개로 9개(3.4%) 증가하였는데, 일반·특별회계 사업 수가 196개에서 200개로 4개 증가하였으며, 기금사업 수가 69개에서 74개로 5개 증가하였다.

[2027년 성인지 예산안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 감	
				(B-A)	(B-A)/A
중앙관서 수		34	33	△1	△2.9
회 계	예산	123,059	112,664	△10,395	△8.4
	사업수	196	200	4	2.0
기 금	예산	145,485	156,125	10,640	7.3
	사업수	69	74	5	7.2
합 계	예산	268,544	268,789	245	0.1
	사업수	265	274	9	3.4

주: 2026년도 현황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7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분석에 관해서는 「2027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 다루도록 한다.

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¹⁰⁾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은 이러한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국가재정법」 제27조 및 제68조의3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동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이 포함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되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서 포함)의 대상사업은 16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380개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20조 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1,965억원 증가하였다. 다만, 감축사업 예산¹¹⁾ 기준으로는 2027년도 예산안이 15조 551억원으로 2026년도 11조 9,560억원 대비 3조 991억원 증액되었다.

10)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세부사업 내 여러 내역사업 중에서 감축사업 정의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기준 예산 규모를 의미한다.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 분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 감	
				B-A	(B-A)/A
회 계	예 산	72,686	39,848	△32,838	△45.2
	(세부사업 예산)	(104,667)	(74,940)	(△29,727)	(△28.4)
	사업 수	185	187	2	1.1
기 금 ¹⁾	예 산	46,874	110,703	63,829	136.2
	(세부사업 예산)	(63,958)	(125,650)	(61,692)	(96.5)
	사업 수	162	193	31	19.1
합 계	예 산	119,560	150,551	30,991	25.9
	(세부사업 예산)	(168,625)	(200,590)	(31,965)	(19.0)
	사업 수	347	380	33	9.5

주: 1) 2026년도 기금은 당초 계획 기준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분석에 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인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 다루도록 한다.

바.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세 지출 내역을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공표하는 것으로, 조세지출의 항목별로 예산 분류기준(분야-부문)의 직전연도 실적금액(신고기준) - 해당연도 전망금액 - 다음연도 전망금액을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1999~2009년까지는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하였으나,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7년에는 104.9조원(국세감면율 14.5%)으로, 2026년 전망(87.0조원, 국세감면율 16.3%) 대비 17.9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2027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국세감면액 (A)	761,084	100.0	870,132	100.0	1,049,307	100.0
조특법상 조세지출	397,258	52.2	477,936	54.9	632,489	60.3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359,776	47.3	388,821	44.7	414,735	39.5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4,050	0.5	3,376	0.4	2,083	0.2
국세수입총액 ¹⁾ (B)	4,021,024		4,447,507		6,153,088	
국세감면율 [A/(A+B)]		15.9		16.3		14.5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²⁾		15.5		16.4		16.6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정부 작성 결산 기준(결산 작성 전 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안 기준 국세 세입예산액)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사.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란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3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 다음연도)의 국유재산특례지출¹²⁾ 실적·전망을 집계·분석하는 보고서이다.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서는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¹³⁾ 제정에 따라 도입되어 2016년도 예산안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재정법」¹⁴⁾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동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 특례를 운용할 수 없다. 2026년 8월말 기준 187개 법률에서 221개 조항을 국유재산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 특례규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11	2013	2014	2016	2017	2020	2021	2023	2024	2025	2026
법률	170	172 (+2)	170 (+1,△3)	175 (+5)	175 (-)	184 (+10,△1)	182 (+8,△10)	182 (-)	183 (+1)	185 (+2)	187 (+2)
조항	195	198 (+3)	197 (+2,△3)	204 (+7)	206 (+2)	218 (+12,△1)	216 (+9,△11)	216 (-)	218 (+2)	219 (+1)	221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2027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른 2027년 국유재산특례지출 규모는 1조 1,105억원으로, 2026년 전망치 1조 1,996억원 대비 7.4% 감소하였다. 이는 양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 특례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분을 의미한다.

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여규모가 52.0% 감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특히 세종시에의 지방공공시설 양여 규모가 2,004억원에서 2027년 963억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2025~2027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실적)	2026년(전망) (A)	2027년(계획) (B)	증 감	
				B-A	(B-A)/A
특례 총지출	859,606	1,199,581	1,110,529	△89,052	△7.4
사용료 감면	859,606	999,149	1,014,223	15,074	1.5
양여	-	200,432	96,306	△104,126	△52.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II. 재정총괄 분석

가. 현 황

예산총칙은 예산의 구성요소¹⁾ 중 하나이며,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국가재정법」 제20조제1항²⁾은 예산총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 ②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 ③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④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7년도 예산총칙안은 2026년도와 동일하게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23)

1)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2)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27년도 예산총칙안 구성]

조문	내용
제1조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제2조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
제3조	2027년도 계속비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 체결시 연부액 초과 집행 근거
제5조	2027년도 명시이월비
제6조	202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제7조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제8조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연도 중 최고한도액
제9조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
제10조	예산의 이용 범위
제11조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
제12조	목적예비비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용도 제한 제외
제14조	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제15조	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 합계 한도액
제17조	재해대책비 비목 설치·운영
제18조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초과 집행 근거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예산총칙안 주요내용]

(단위: 억원, %)

구 분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	증 감	
			B-A	(B-A)/A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	6,247,769	8,315,021	2,067,252	33.1
- 일반회계	5,075,997	7,001,171	1,925,174	37.9
- 특별회계	1,171,771	1,313,850	142,079	12.1
제3조 계속비	-	-	-	-
제5조 명시이월비	-	-	-	-
제6조 국고채무부담행위				
- 일반회계	-	2,411	2,411	순증
- 특별회계	-	-	-	-
제7조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5,000	15,000	-	-
제8조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연도 중 최고한도액				
- 통합계정	400,000	400,000	-	-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20,000	-	-
-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0	100,000	-	-
-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	2,000	-	-
제9조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				
- 주택도시기금	190,000	190,000	-	-
- 공공자금관리기금	2,274,000	2,245,000	△29,000	△1.3
- 외국환평형기금	50억달러	80억달러	30억달러	60.0
- 외국환평형기금(원화)	136,650	136,650	-	-
제12조 목적예비비	32,000	35,000	3,000	9.4
제14조 기업특별회계 전출금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10,553	11,807	1,253	11.9
- 우체국예금특별회계→공적자금상환기금	900	909	9	1.0
- 조달특별회계→일반회계	1,143	9	△1,133	△99.2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일반회계	-	-	-	-
제15조 기업특별회계 전입금				
- 일반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	18,560	17,514	△1,045	△5.6
- 일반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696	3,813	116	3.1
- 일반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160	98	△62	△38.7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5,212	5,270	58	1.1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10,553	11,807	1,253	11.9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944	1,072	128	13.5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 합계 한도액	33,818	35,465	1,647	4.9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각 연도 예산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내용 분석

(1) 세입세출예산 총액(예산총칙안 제1조)

2027년도 예산총칙안 제1조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31조 5,021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206조 7,252억원(33.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00조 1,171억원(37.9%), 특별회계는 131조 3,850억원(12.1%)이다. 일반회계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2027년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총괄계정)으로의 전출금 158조 4,720억원이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된 데 등에 기인한다.

또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2조 5,660억원)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조 2,656억원)가 신설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폐지³⁾를 전제하여, 특별회계는 21개에서 22개로 늘어났다.

(2) 계속비(예산총칙안 제3조)

① 현 황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하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계속비 사업을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총칙안에 포함되어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으나,⁴⁾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3개 사업이 종료연도로서 마지막으로 편성된 후 2022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편성되지 않고 있다.

3) 동 특별회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18호, 박정의원 대표발의)이 상임위 계류중임.

4)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견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정부는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함으로써 계속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속비 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5조⁵⁾에서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23조⁶⁾에서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4~2027년 계속비 사업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계속비 사업의 총액은 2014~2017년간 20조원대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계속비 사업이 없어 2018년 17.9조원(11개 사업) → 2019년 4.8조원(5개 사업) → 2020년 2.7조원(4개 사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 기존 사업 3개가 종료연도로서 편성된 이후 2022년 예산부터는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

[2014~2027년도 계속비 사업 편성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2027
계속비 사업 수	15	17	15	14	11	5	4	3	-
계속비 총액	251,813	279,523	257,404	246,190	179,229	48,361	26,739	24,833	-

자료: 각 연도 예산총칙(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5)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장기계속계약 및 총사업비관리제도를 통해 대규모 공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계속계약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을 부기하되 각 회계연도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⁷⁾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⁸⁾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은 다년도 사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① 계속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둔 예산제도인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한 계약제도인 점, ② 계속비는 총사업비 및 연부액을 의결하여 총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1차년도 예산만이 확보될 뿐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③ 계속비는 총공사금액의 확정에 따라 사업자와 1회만 계약하는 일괄계약 방식이지만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금액만 정해져 있을 뿐, 매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점, ④ 계속비 사업기간은 5년 이내(예외적으로 연장 시 10년 이내)인데 비해 장기계속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제한이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⁹⁾¹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8)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9) 김대인,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61호, 2020.5. p.90

10) 홍성진,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의 공법적 쟁점과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제87집, 2019.8. pp.238~239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의 비교]

구분	계속비	장기계속계약
대상사업	다년도 사업	
근거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55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23조,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 등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 등
국회의결	총사업비 및 연부액 의결	단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매년 의결 (국회의결없이 총사업비 변경 가능)
총예산 확보	확보	미확보(당해연도분만 확보)
입찰	총공사금액	
계약체결 방법	총공사금액으로 계약 (연부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연차별 계약, 총공사금액 부기)
사업기간	5년 (단, 국회 의결로 10년 이내로 연장 가능)	제한 없음

자료: 홍성진,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의 공법적 쟁점과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및 근거 법률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면, 계속비는 처음부터 국회가 사업기간에 맞추어 사실상 다년도 예산을 승인하는 이른바 ‘다년도 수권’ 방식으로 서,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수행을 위해 단년도 예산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계속비는 허용된 경비총액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고,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반면, 계속비 총액이나 연부액을 변경하거나 지출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재정경직성의 우려가 있거나 총사업비 변경

가능성이 큰 경우 등에는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이행하므로 연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와 연차별 재원이 미리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년도의 대규모 사업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총사업비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계속비 사업이 아닌 장기계속계약 및 총사업비관리제도를 통해 대규모 공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계속비 사업은 헌법상 재정 제도이고 「국가재정법」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정부는 계속비가 아닌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및 계속비 제도의 취지, 그간 국회의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계속비 사업은 헌법상 재정 제도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 제39조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재해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하는 계약제도의 일종인바, 「국

11)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그 밖에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사업성격, 사업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계약법」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의 대상 사업을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같은 법 시행령¹²⁾을 근거로 이를 공사 계약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법률 제11377호, 2012.3.21. 개정) 개정 시 부대의견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헌법」 제55조제1항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2013년 6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장기계속공사의 헌법 합치 여부 및 법적 근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계속비 사업은 헌법상 재정 제도이고 「국가재정법」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정부는 계속비가 아닌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및 계속비 제도의 취지, 그간 국회의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속비 사업은 그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 국회 의결로 관리되는 반면, 장기계속계약과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회 승인 없이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므로,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확대를 위한 계속비 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계속비 제도는 도로·철도 등 다년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국회가 총 규모 및 이를 위한 재정소요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계속비 의결 시 국회가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 총사업비 및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연부액에 대해 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별 투자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사업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매년 당해연도의 예산을 편성·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시행하는 제도이므로, 해당연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총사업비나 연차별 투자액에 대해서는 국회가 의결할 수 없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관련 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기는 하나,¹³⁾ 총사업비나 연부액이 국회 의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은 계속비 사업과 달리 국회 승인 없이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하여 사업비가 빈번하게 증액될 수 있고,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므로 전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예산안 심의를 부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은 그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 국회 의결로 관리되는 반면, 장기계속계약과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회 승인 없이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므로,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확대를 위한 계속비 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별로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 간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을 바탕으로 계속비 편성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와 연부액이 국회 의결로 미리 확정되기 때문에 수년간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장기계속계약 및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고 총사업비 변경이 용이하므로, 진행 중인 공사의 연차별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다

13)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른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분산투자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소관¹⁴⁾ 2019년 및 2020년 준공 건설공사 57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사비 증액분 중 공사기간 지연 정도와 비례해서 나타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의 비율이 장기계속공사는 47.9%, 계속비는 16.4%로 장기계속공사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¹⁵⁾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공사비 증감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당초공사비 (A)	변경공사비 (B)	증액된 공사비 (C=B-A)	추가지급된 물가상승액(D)	물가상승액 비율 (D/C)
계속비	4,040	5,473	1,433	234	16.4
장기계속	29,081	33,807	4,727	2,262	47.9
합 계	33,121	39,280	6,160	2,497	40.5

주: 국토교통부 소관 2019년 및 2020년 준공 건설공사 57건(계속비 8건, 장기계속 49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기계속공사 계약 및 예산배정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2020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21.3.

14) 국토부가 직접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도로공사 대상

1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기계속공사 계약 및 예산배정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2020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2021.3.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¹⁶⁾ 및 「예산안 편성지침」을 근거로 계속비 편성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장기계속 계약을 통해 계속비 제도를 우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비 제도의 규정 취지 및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¹⁷⁾하는 등 계속비 제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의2(계속비 예산안 편성의 예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여건상 계속비로 편성하면 지나치게 재정 경직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으로 구분되는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나. 해당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관련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성격상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나.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 다. 낙찰차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간의 차액을 말한다)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 라.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 마. 법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나 타당성재조사에 앞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제22조와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타당성재조사나 수요예측재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사업기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거나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남은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단일 대규모 개발사업의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17) ① 기능적·경제적차원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사업, ② 턴키사업, ③ 실시설계 확정 등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이 적은 사업, ④ 다년도 계약으로 진행 시 공급수량이 적거나 초기 비용이 커져 경쟁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등에는 계속비 제도의 확대시행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기계속계약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 2011.6.30.)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① 현 황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¹⁸⁾ 이에 따라 예산총칙안에 포함되어 국회 의결을 받고 있다.¹⁹⁾ 2027년도 예산총칙안에는 재정경제부 소관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사업에 대해 2,411억 1,127만원의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편성되었으며, 상황은 2028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023년도 예산에 같은 사업으로 1,412억원이 편성된 이후 2024~2026년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25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

이에 따른 2027년도 예산안의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1조 5,000억원이 편성되었다.

18)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19)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20)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2027년도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단위: 억원)

구 분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	증 감	
			B-A	(B-A)/A
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5,000	15,000	0	0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분석의견

국가의 부담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사전의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일부 존재하여 헌법 및 「국가재정법」상 사전의결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국회의 재정통제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부담 현황 및 향후 발생 규모 등에 대해 국회에 사전보고하거나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58조에서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²¹⁾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공공기관 등의 특정한 계약이나 행위 등에 따라 곧바로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 편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사실상 채무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국가채무로 관리되지 않아 국가채무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국고채무부담행위 편성 등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사업²²⁾은 양곡수급조절(시장격리)을 대행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동 회사가 집행한 양곡매입비 등을 정부가

21) 「대한민국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2) 코드: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60의 내역사업

연차별로 분할하여 보전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4억 6,000만원(△12.9%) 감액된 5,00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부양곡매입비	1,768,193	1,600,409	1,581,294	△19,115	△1.2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545,211	575,024	500,564	△74,460	△12.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2005년부터 쌀 풍작시 쌀값 폭락 완화를 위하여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격리를 발표하면 농협이 민간의 쌀을 매입하고, 추후에 정부가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사업을 통해 농협의 매입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3-2026 현재 쌀 시장격리 실시 및 상환 현황]

(단위: 천톤, 억원)

쌀 연 산	차수 (매입기간)	매입량	매입액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잔액
'23 년 산	1차 ('24.1~2월)	50	1,096	968	128	-	-	-
	2차 ('24.3~4월)	50	1,103	-	159	454	-	490
	3차 ('24.9월)	50	1,092	-	-	-	-	1,092
'24 년 산	1차 ('24.9~12)	105	2,127	-	-	140	-	1,987
	2차 ('24.10~12)	86	2,100	-	-	-	-	2,100
합계		341	7,518	968	287	594	-	5,66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5차례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농협경제지주의 자금으로 총 34만 1,000톤, 7,518억원 규모의 쌀을 매입하였으며, 이 중 968억원은 공공비축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2024년도 말에 조기상환하였다. 이후 2025년과 2026년 각각 287억원, 59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24년 매입물량에 대한 현재 기준 잔액은 5,669억원이다.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쌀 시장격리 상황 발생 시 미곡 매입을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해당 미곡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자산으로 편입함과 동시에 미곡 매입대금 및 이자비용을 농협경제지주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장격리 재원 조달 방식 등이 「국가재정법」 제25조²³⁾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나, 정부는 같은 법률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감사²⁴⁾를 청구하였다.

해당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25년 5월 그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감사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안으로써 심의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는 쌀 시장격리는 당해연도 쌀 시장격리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그 시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농협경제지주에 지급하여야 하는 시장격리곡 매입대금은 매입이 종료되어야 확정되어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는 상환연도와 채무부담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국가재정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장격리 자금조달 방식은 「

23)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24) 의안번호 제6647호,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쌀 시장격리가 결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 자금으로 우선 매입하도록 하고, 이후 분할상환(외상거래)하고 있음. 이러한 외상거래 방식은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성격을 지니지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지도 않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²⁵⁾

감사원이 언급했듯이 예산안 제출 시점에는 쌀 시장격리의 시행 여부와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성을 고려하더라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미리 국회 의결 대상으로 한 취지는 국가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채무부담에 대한 엄격한 사전통제에 있다는 점²⁶⁾을 고려하면, 장기간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대규모 ‘외상거래’가 반복 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은 발생 여부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 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대신 그 상한만 국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²⁷⁾

2025년 8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 매입가격·규모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²⁸⁾ 그러나 이는 매입 결정 이후의 사후보고로서, 채무 규모를 예산으로 미리 정하는 사전통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양곡관리법」에 보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재해복구의 경우처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쌀 시장격리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채무의 한도액만이라도 다음 연도 예산안으로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5) 이와 함께 감사원은 양곡매입 전에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예산통제가 가능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가격과 매입 규모 등에 대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별도로 개선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6) 박기영, 「한국재정」(2014)

27)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28)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관리양곡 매입 시 매입가격과 매입량에 대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 등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둘째,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건설지원²⁹⁾, 수도권광역급행철도³⁰⁾ 등 민간투자 방식의 SOC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다.

2026년도 민자도로건설지원 사업에 편성된 건설보조금(민간자본보조)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공사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497억 9,500만원의 건설보조금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에도 829억 6,100만원의 건설보조금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민자도로건설지원 사업 건설보조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민자도로건설지원	275,836	275,836	136,856	△138,980	△50.4
민간자본보조	149,795	149,795	82,961	△66,834	△44.6
광명-서울	149,795	149,795	82,961	△66,834	△44.6

자료: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도 건설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B노선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51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C노선 사업에 715억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GTX 사업 건설보조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GTX-B)	165,990	165,990	92,499	△73,491	△44.3
민간자본보조	51,660	51,660	51,660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GTX-C)	110,155	110,155	71,641	△38,514	△35.0
민간자본보조	-	-	71,526	71,526	순증

자료: 국토교통부

29)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1831-303

30)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2833-313(B노선), 2833-314(C노선)

이와 같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나 철도 등 SOC 시설물의 건설과정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총사업비의 30~50% 수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³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³²⁾에 따르면, 국가 등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건설보조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지급 근거를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든 SOC 건설사업에 국가의 건설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위 사업들을 포함한 BTO방식의 SOC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건설보조금의 규모와 연차별 지급계획이 사전에 결정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설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지급이 연기되는 경우 기준이자율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실시협약 내용에 사실상 귀속

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3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4.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공사기간이나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되고 있는데, 건설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실시협약은 정부와 민자사업자간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는 공법상 계약³³⁾의 성격을 띤다. 대법원은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실시협약을 헌법 제58조에 따라 국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예산 외의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³⁴⁾ 다만, 이는 실시협약이 헌법 제58조에 따른 사전 의결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으로, 실시협약에 따라 국가의 장래 지급의무가 사실상 확정된다는 점, 이에 따라 재정소요의 검토를 위해 자료를 사전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는 별론인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상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권을 갖게 되고, 시설물 준공시점에서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을 고려하면, 국가가 시설물 건설에 필요한 건설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행위 자체는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국가가 최종적으로 시설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비용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비 계약을 통한 다년간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즉, 민자사업자가 일정기간 시설물 운영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초기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실질은 일반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SOC 사업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별 총액과 연차별 지급계획을 국회의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업별 건설보조금의 규모와 연차별 지급계획이 실시협약을 통해 미리 정해지는 반면 국회는 매년 해당 연도 지급액만을 심사하게 되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체 재정소요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어렵고 사전적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 지급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각 민자사업별 건설보조금 지급 연도와 연도별 건설보조금 금액을 포함한 계획을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사전적 통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의 장래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정이

33)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 판결

3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나 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후 그 상환 비용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관행이 다수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국회는 해당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 소요 총액 및 향후 재정투입 소요 등을 미리 심의하기 어렵고,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비용을 매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게 되어 국회의 재정통제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으나,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건설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별 총액과 연차별 지급계획을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쌀 시장격리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채무의 한도액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민자사업 건설보조금의 사업별 총액과 연차별 지급계획 등 국가의 장래 지급의무에 관한 사항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가 이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26년 예산안 의결 당시 채택된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관리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4)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

① 현 황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재정증권의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의 연중 최고한도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통합계정,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³⁵⁾

2027년도 예산총칙안 제8조에 따른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의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0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³⁶⁾

35)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2027년도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

(단위: 억원, %)

구 분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	증 감	
			(B-A)	(B-A)/A
통합계정	400,000	400,000	-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2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0	100,000	-	-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	2,000	-	-

주: 통합계정은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9개 특별회계 적용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예산안」, 2026.9. 및 각 연도 예산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분석의견

첫째,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국고금 관리법」 규정 및 대정부 일시대출 관련 한국은행의 부대의견 취지를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³⁷⁾

자금 조달시 재정증권의 발행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규정³⁸⁾은 2016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한은 일시차입 의존도가 높은 문제는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재원 조달의 신속성과 편의성, 예측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시차입에 비해 재정증권은 입찰공고, 투자자 모집, 발행 등 「국고금 관리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긴 시일이 소요된다. 또한 재정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단기 자금 조달 수요가 세수 결손과 같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의한 경우, 단기간에 재정증권 발행만으로 자금 수요 전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36) 다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및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신설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폐지계획에 따라 통합계정의 적용 대상은 18개 특별회계에서 19개 특별회계로 늘어났다.

37) 일시차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5.10. 참고

38)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와 한은 간의 비공개적인 협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개 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발행되어 금리와 규모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재정증권과 달리 재정 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투명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은 일시차입은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새로 찍어(본원통화 발행) 정부에 빌려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시중에 늘어난 통화량은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과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³⁹⁾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재정증권에 비해 한은 일시차입의 조달금리가 높다는 문제가 있다. 2012년 이후 평균 조달금리를 비교해보면, 2018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한은 일시차입의 금리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2~2025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평균 조달금리 비교]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정증권	3.30	2.64	2.56	1.69	1.45	1.34	1.57
일시차입	3.463	2.734	2.648	1.985	1.664	1.522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재정증권	1.71	0.74	0.55	1.43	3.56	3.51	2.62
일시차입	1.796	1.004	0.704	1.339	3.562	3.537	2.755

주: 재정증권은 발행 낙찰금리

일시차입은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0%를 더한 이율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4년 1월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의결 시 과거와 달리 ① 일시차입 시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②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이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 통화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39) 물론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접적인 통화량 증가는 일시적이다. 그러나 늘어난 통화량이 금융기관의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시중에 연쇄적으로 예금과 대출로 확산되면, 실제 통화량(광의통화, M2)은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및 2024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대정부 일시대출 관련 부대의견]

구분	2023	2024
부대의견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초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초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평균 차입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과 관련하여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평잔 기준 재정증권 발행이 한은 일시차입을 매년 상회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부대의견 (가)의 취지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1년 및 2022년과 비교하면 2023년부터는 한은 일시차입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5년 기준으로 한은 일시차입 평잔 규모도 5.8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상환⁴⁰⁾ 비용도 2024년 44억 8,200만원, 2025년 35억 600만원 발생하는 등 통합계정 외에 기금에서도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2025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적]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차입실적 (평잔)	재정증권 발행	7.7	4.9	2.8	7.5	8.2	7.6
	한은 일시차입	4.8	0.1	1.8	4.4	5.9	5.8
차입실적 (누적)	재정증권 발행	45.3	28.9	16.3	44.5	49.8	48.0
	한은 일시차입	97.2	7.5	34.2	117.6	165.0	155.5

자료: 재정경제부

40)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71-760

누계액 기준으로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일시차입이 재정증권을 초과하였으며, 2023년 이후에는 연간 117.6조~165.0조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25년에는 일시차입이 주로 발생하는 상반기 외에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 과정의 시차 등으로 7~9월에 대규모 일시차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2027년도 예산안에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⁴¹⁾ 예산으로 전년 본예산(1,100억원) 대비 272억원(24.7%) 증액된 1,37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2027년에도 상당 규모의 일시차입을 전제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임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국고금 관리법」 및 대정부 일시대출 관련 한국은행의 부대의견 취지를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실적이 전무하고 여유자금 규모도 충분함에도 연례적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재점토가 필요하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2011년 신설 이후 2012년도 예산총칙부터 매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바, 2013년 및 2014년은 3,000억원, 2015년부터는 매년 2,000억원의 한도를 설정해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 최고액]

(단위: 억원)

구 분	2013~2014	2015~2025	2026.9.	2027(안)
예산상 연도별 한도액	3,000	2,000	2,000	2,000
연중 차입·발행액	-	-	-	-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각 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성

이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대규모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그 특성상 일시적으로 지출 대비 수입에 결손이 발생하여도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41) 코드: 일반회계 2272-561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2026년 예산안 심사 당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수입-지출 간 불일치 발생 등에 대해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바,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관리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2027년 계획안에 따르면, 1조 6,414억 5,400만원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1조 6,000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될 계획인데, 이는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2026년 예산 대비 7,220억 1,200만원(78.5%) 증가한 규모이며, 공자기금 예탁의 경우 전년대비 1,500억원(10.3%) 증가한 규모이다.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및 공자기금 예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안
여유자금 운용	통화금융 기관예치	156,744	-	5,500	5,500	5,500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577,418	-	1,041,185	913,942	1,635,954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960,000	1,500,000	1,350,000	1,450,000	1,600,000
합계		1,694,162	1,500,000	2,396,685	2,369,442	3,241,454

주: 계획은 당초 계획액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7년 계획안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금의 규모는 2027년 사업비 계획안 1조 1,977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자금 사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또한, 2027년도 계획안 기준 총지출 규모가 1조원 이상인 20개 사업성 기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규모 총계 대비 여유자금 비중(37.0%)은 3번째, 총지출 대비 여유자금 비중(137.1%)은 2번째로 높으며, 절대적인 규모도 1조 6,414억 5,400만원으로 미래대응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7년도 계획안 기준 총지출 1조원 이상인 사업성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계	총지출	여유자금	여유자금 비중 (총계 대비)	여유자금 비중 (총지출 대비)
미래대응기금	215,162,316	45,385,847	103,361,383	48.0%	227.7%
주택도시기금	95,422,906	40,669,232	20,749,776	21.7%	51.0%
공공자금관리기금	310,105,936	40,442,819	3,975	0.0%	0.0%
기후대응기금	8,510,545	7,600,938	110,623	1.3%	1.5%
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	12,538,976	7,118,976	0	0.0%	0.0%
농업발전기금	8,833,171	6,285,132	999,157	11.3%	15.9%
복권기금	10,152,837	6,211,046	1,056,749	10.4%	17.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498,551	4,379,099	259,360	4.7%	5.9%
국민건강증진기금	4,269,998	3,714,914	260,249	6.1%	7.0%
전력산업기반기금	3,629,670	3,559,740	69,930	1.9%	2.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3,230,282	3,123,860	106,422	3.3%	3.4%
대외경제협력기금	2,057,556	1,865,031	96,233	4.7%	5.2%
국민체육진흥기금	3,385,888	1,850,737	722,545	21.3%	39.0%
자원안보기금	2,455,532	1,401,128	112,330	4.6%	8.0%
수산발전기금	1,760,982	1,387,647	58,060	3.3%	4.2%
관광진흥개발기금	2,342,620	1,275,220	901,346	38.5%	70.7%
국유재산관리기금	4,439,133	1,197,679	1,641,454	37.0%	137.1%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2,693,064	1,080,867	812,197	30.2%	75.1%
축산발전기금	2,776,572	1,037,959	200,923	7.2%	19.4%
남북협력기금	1,181,962	1,011,495	101,625	8.6%	10.0%

주: 순서는 총지출 순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2027년의 경우에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기금 설치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일시차입 등 한도 설정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²⁾

42) 특히,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일시차입금 이자지출 계획안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매년 지속적으로 국유기금 일시차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다소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한도액

① 현 황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으며,⁴³⁾ 이 경우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⁴⁴⁾

2027년도 예산총칙안 제9조에 따른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을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9조원(△1.3%) 감소한 224.5조원,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표시 외평채는 전년 본예산 대비 30억달러(60.0%) 증액된 80억달러이며,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표시 외평채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13조 6,650억원이다.

[2027년도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

(단위: 억원, %)

구 분	2026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B-A)/A
주택도시기금	190,000	190,000	19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	2,274,000	2,274,000	2,245,000	△29,000	△1.3
외국환평형기금	50억달러	50억달러	80억달러	30억달러	60.0
외국환평형기금(원화)	136,650	136,650	136,650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43)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44)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바·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은 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② 분석의견

2025년 1월부터 재발행하고 있는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은 국채임에도 발행 금리가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1년물 대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6년 들어 원화표시 외평채 1년물과 통화안정증권 1년물 금리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바, 동 기금은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⁵⁾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표시 외평채를 1년물로만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기준 평균만기가 13.7년 수준인 국고채 대비 만기가 짧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자금의 조달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은행도 금융시장에서 국채수준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통화안정증권⁴⁶⁾을 91일물 등 일물 외에 2년물, 3년물 뿐 아니라 원화표시 외평채와 만기가 동일한 1년물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화표시 외평채와 동일 연물인 통화안정증권 1년물과의 비교를 통해 조달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원화표시 외평채와 같이 국채로 분류되는 국고채의 경우 1년물을 발행하고 있지 않다.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는 12회에 걸쳐 13조 6,650억원이 발행되었는데, 12월을 제외한 11회 모두 통화안정증권 1년물보다 0.5~15.5bp 높은 금리로 발행되었다. 2025년 및 2026년 1~8월 원화표시 외평채와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1년물은 월 1회씩 총 20회 발행되었으며, 2025년 연평균으로는 통화안정증권 1년물 조달금리가 원화표시 외평채 대비 2.8bp 낮게 발행되었다. 2026년 1~8월 중에도 원화표시 외평채 조달금리가 통화안정증권 1년물 대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25년 대비 금리차가 확대되었다. 2026년 1~8월 중 금리차는 5~37bp 까지 확대되었고 평균 15.2bp로 2025년 평균 2.8bp 대비 5.4배 이상 확대되었다. 2026년 9월에는 금리차가 43bp로 더 벌어져 1~9월 평균 금리차는 18.3bp에 이른다. 2026년 및 2027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물량 13.7조원에 대해 금리차 15.2bp는 연간 208억원의 이자비용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물론, 통화안정증권 1년물은 매월 둘째 주 전후, 원화표시 외평채는 셋째 주 전후에 입찰이 이루어지므로, 금리 상승기에는 입찰 시점의 차이로 외평채 금리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외평채 입찰일 이후에 실시된 다음 달 통화안정증권

45)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참고

46)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통화량 증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한국은행, [한국의 외환시장과 외환제도], 2023.).

1년물 입찰 결과와 비교하여도 8개월 중 7개월은 외평채 금리가 더 높았고, 47) 이 경우의 평균 금리차는 10.9bp였다. 따라서 입찰 시점 차이만으로는 금리차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 낙찰금리 비교(2025.1.~2026.9.)]

(단위: 억원, %, bp)

입찰시기	외평채 낙찰액	외평채 낙찰금리	통안증권 1년물 낙찰금리	차이
2025.1.	8,000	2.750	2.640	11.0
2025.2.	8,000	2.690	2.630	6.0
2025.3.	12,000	2.690	2.600	9.0
2025.4.	16,200	2.460	2.420	4.0
2025.5.	18,200	2.375	2.370	0.5
2025.6.	17,000	2.415	2.290	12.5
2025.7.	12,250	2.360	2.280	8.0
2025.8.	10,000	2.340	2.250	9.0
2025.9.	12,000	2.300	2.270	3.0
2025.10.	10,000	2.495	2.340	15.5
2025.11.	9,000	2.550	2.540	1.0
2025.12.	4,000	2.580	2.580	0.0
2025	136,650	2.474	2.446	2.8
2026.1.	13,000	2.760	2.550	21.0
2026.2.	13,200	2.750	2.700	5.0
2026.3.	12,500	2.940	2.700	24.0
2026.4.	8,000	3.010	2.900	11.0
2026.5.	12,000	3.270	2.900	37.0
2026.6.	11,000	3.370	3.100	27.0
2026.7.	10,000	3.420	3.370	5.0
2026.8.	11,000	3.600	3.350	25.0
2026.9.	9,000	3.860	3.430	43.0
2026.1.~8.	90,700	3.121	2.969	15.2
2026.1.~9.	99,700	3.188	3.005	18.3

주. 차이(A-B)의 단위는 bp로서, 1bp=0.01%

자료: 2025년은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6년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7) 예외적으로, 2026. 6. 발행한 외평채의 경우 2026. 7. 발행한 통안증권 1년물과 금리가 같았음.

원화표시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간 금리차이는 2025년 원화표시 외평채가 2003년 이후 처음 발행되며 외국인 투자자 등 채권 투자자에게 시장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점 등이 조달 금리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통화안정증권 1년물 대비 다소 많은 발행량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도 원화표시 외평채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수요가 주로 증권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인지도가 제고되며 원화표시 외평채의 수요가 외국인뿐 아니라 은행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외평채와 통화안정증권 1년물간 금리 차이가 2025년 1월 11bp에서 5월 0.5bp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6월~10월 이후 금리차가 재차 확대되며 3bp~15.5bp 기록한 점, 특히 발행 이후 1년 반 이상이 도과한 2026년 9월에 역대 금리차 중 가장 큰 금리차를 보였다는 점, 추경에 따른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물량 감액 등으로 5월 1조 8,000억원 발행 이후 8월 1조원으로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시기에도 금리차이가 확대 양상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의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원화표시 외평채는 국가 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채권 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국채로 동년물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대비 발행금리가 낮거나 동일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있다는 점, 2026년 들어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과 금리 차이가 확대 양상을 보인 점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화표시 외평채 도입 배경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기준금리(국고채 10년물) 대비로는 2025년 평균 53bp 낮은 수준으로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존재하며, 2026년 1~8월에도 원화표시 외평채 평균 낙찰금리(3.12%)는 같은 기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3.71%)보다 낮았다. 이를 통해 이자비용의 일부 절감효과는 가져올 수 있겠으나, 동일 만기 국채 수준의 안전자산인 통화안정증권 대비 추가적인 조달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정리하면, 재정경제부는 외평기금의 원화 자원 조달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발행 실적을 살펴보면, 원화표시 외평채(1년물)의 금리가 통화안정증권 1년물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

행 목적인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재정경제부는 2027년 13.7조원이 계획되어 있는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시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 시장조성을 포함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시장의 수요 및 발행여건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목적예비비

① 현 황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일반예비비와 예산총칙에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목적예비비로 구성된다.⁴⁸⁾

2027년도 예산총칙안 제12조에 따르면 목적예비비는 3조 5,000억원으로,⁴⁹⁾ 2026년 본예산 3조 2,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되었고, 제1회 추경 대비로는 4조 7,000억원이 감액되었다.

48)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49) 「2027년도 예산총칙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5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황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령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2027년도 예비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비비	31,550	40,000	90,000	45,000	△45,000	△50.0
일반예비비	9,538	8,000	8,000	10,000	2,000	25.0
목적예비비	22,011	32,000	82,000	35,000	△47,000	△57.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 이후 목적예비비 편성액을 살펴보면, 2017~2019년까지는 1.8조원 내 외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4.2조원, 2021년에는 8.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2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23년에는 2.8조원, 2024년에는 2.2조원 수준으로 감액되었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3.2조원으로 일정수준 증액된데 이어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가 8.2조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지출액은 2017년에는 1조원 미만으로 편성액 대비 실제 지출액은 20% 미만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부터 지출 금액 및 편성액 대비 비중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편성액의 97.9%인 4.1조원, 2021년에는 편성액의 97.2%인 7.9조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이후 지출규모가 다시 감소하여 2022년에는 편성액 대비 36.7%인 1.4조원, 2023년에는 7.6%인 2,121억원을 지출, 2024년에는 영유아보육료지원 및 감염병 피해지원 등의 목적으로 5,584억원(25.4%)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목적예비비의 84.7%인 2조 2,011억원을 지출하였다.

[2018~2025년도 목적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편성액(A)	18,500	18,000	42,100	81,000	37,000	28,000	22,000	26,000
지출결정액	11,909	15,925	42,056	81,000	15,527	2,121	5,703	22,707
지출액(B)	11,236	15,887	41,228	78,713	13,575	2,121	5,584	22,011
편성액 대비 지출액(B/A)	60.7	88.3	97.9	97.2	36.7	7.6	25.4	84.7

주: 편성액은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연도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목적예비비의 사용 용도는 ① 재해대책비, ② 인건비, ③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④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⑤ 예산회계예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⑥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⑦ 국제부담금, ⑧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⑨ 법령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⑩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이다. 2026년도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⑨의 "법률개정"이 "법령개정"으로 변경되었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추가된 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027년도 목적예비비 규모 및 목적]

구분	2026년도		2027년도 예산총칙
	본예산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예비비 중 3조 2,0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중 8조 2,0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중 3조 5,000억원
목적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전년 동일)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전년 동일)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전년 동일)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전년 동일)
	예산회계예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년 동일)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전년 동일)
	국제부담금		(전년 동일)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전년 동일)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법령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 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추경예산 동일)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6년도 예산»,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목적예비비의 새로운 유형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은 2026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수반되는 손실보상 소요 및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소요를 위하여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신설되었고, 2027년 예산총칙안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2026년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판매가격에 최고액을 정하고 이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분석의견

첫째,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이므로 예측 가능한 소요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 목적예비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불가피한 소요에 한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신설된 목적예비비 용도의 활용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전 소요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산업통상부 일반회계의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⁵⁰⁾에 1조 4,497억원⁵¹⁾이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목적예비비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분리 편성에 대하여 정부는, 세부사업 편성분은 2026년 4분기 손실에 대한 것으로 정유사의 손실 자료 제출이 2027년 2월 말에 이루어지고 이후 정산위원회의 정산을 거쳐야 보전액이 확정되므로 시기상 2026년 목적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어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2027년도 목적예비비는 2027년에도 최고가격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한 손실보전 재원이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정책의 손실보전 재원이 손실 발생 시기에 따라 2026년 목적예비비, 2027년 세부사업, 2027년 목적예비비로 나뉘어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발생시기에 따른 재원 구분]

손실 발생 시기	보전 재원	비고
2026.3.13.~6.30. (1차 정산대상기간)	2026년 목적예비비(제1회 추경으로 5조원 증액, 총 8조 2,000억원)	정산위원회 심의 2026.10~11월, 연내 지급 계획 (2026.10.6. 현재 미지급)
2026.7.1.~9.30. (3분기)	2026년 목적예비비	자료 제출 11월 말, 정산위원회 심의 12월, 연내 지급 계획
2026.10.1.~12.31. (4분기)	2027년도 산업통상부 사업예산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1조 4,497억원(신규)	자료 제출 2027년 2월 말 이후 정산·확정, 2026년 목적예비비 집행 불가(산업통상부 설명)
2027.1.1. 이후 (최고가격제 지속 시)	2027년도 목적예비비 3조 5,000억원(기획예산처 설명)	종료 시점 미정, 2027년 시행분에 대한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 및 기획예산처 설명을 바탕으로 재작성

50) 코드: 일반회계 5432-303

51) 손실보전 재정지원 1조 4,490억원, 정산위원회 등 운영지원 7억 1,400만원

이처럼 2026년 4분기 손실분을 산업통상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제는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정책으로 2027년 이후에도 실시될 여지가 있음에도, 2027년 시행분에 대한 손실보전은 사업예산 없이 전액 목적예비비를 통한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사업예산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는 산업통상부가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등을 고려하여 종료 시점을 정하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며, 정부가 2027년에도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다면 그에 따른 손실보전 소요는 정부가 알고 시행하는 정책의 결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예산(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국회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⁵²⁾

물론 유가·환율 등 외부 변수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목적예비비로 대응할 여지는 있다. 다만 이는 사업예산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반영한 이후의 초과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목적예비비를 사업예산을 대체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사업예산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확정 과정에서 금액과 사업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의결하는 반면, 예비비는 「대한민국 헌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총액으로만 국회의 의결을 얻고 그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⁵³⁾ 즉 예비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정부가 먼저 지출한 뒤 국회의 승인을 받는 구조이므로, 지출이 이루어진 이후의 승인은 사전 의결에 비하여 통제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차기국회의 승인’을 다음 연도 결산 시점에 일괄하여 받도록 하고 있다.⁵⁴⁾ 2026년 2월 「국가재정법」 개정⁵⁵⁾

5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10.)참고

53)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4)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적시에 보고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보고에 해당하며 개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국회의 승인은 여전히 결산과 함께 일괄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진 후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야 결산과 함께 그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며, 그 사이 회기 중에는 개별 예비비 지출의 승인 여부를 판단할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⁵⁶⁾⁵⁷⁾

따라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에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는 경우를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불가피한 소요로 한정하는 등 신설된 용도의 대상 지출과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여 국회에 제시하고,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용도의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7년에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목적예비비에 의존하기보다 사업예산 등으로 소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설된 목적예비비 용도 중 공급망 위기 대응 부분은 공급망안정화기금·자원안보기금 등 별도의 재원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목적예비비는 이러한 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용도와 활용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단은 목적예비비 외에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는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확보 등을

55)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6) 헌법은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승인을 결산 시점에 받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개별 지출항목마다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국가재정법이 편의상 결산국회에서 종합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배정 전에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미리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57) 특히 2026년에는 제1회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가 8조 2,00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2027년도 예산 총칙안에서도 정책 결정에 따른 손실보전 소요 등이 목적예비비의 용도로 유지되는 등 예비비의 규모와 행정부의 재량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제출되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바탕으로 이후 열리는 국회 회기에서 수시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는 2025~2026년 매년 10조원 규모로 발행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도 미래대응기금에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2,000억원 편성되어 있다.⁵⁸⁾

이 밖에도 2027년도 예산안에는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특별회계가 추가로 마련되어 있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 핵심자원 도입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⁵⁹⁾하여 2조 4,555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석유비축사업출자(3,287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461억원), 다변화원유정제시설고도화지원(425억원), 연안여객선·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764억원) 등 고유가 및 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2조 4,227억원)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도 긴급경영안정·공급망지원자금(융자) 3,825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외에도 기금·특별회계별로 이미 다층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목적예비비에 포괄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 용도를 두는 것은 이들 재원과 기능이 중복될 소지가 크다.

또한 그간 이와 유사한 지출은 일반예비비로 집행되어 왔다. 2023년 “글로벌 공급망 안보 긴급 확보”를 위해 990억원이, 2024년 “글로벌 원자재 긴급 확보”를 위해 1,065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러한 지출을 목적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은 국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규모와 별도로 행정부의 재량적 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8) 코드: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 4335-320

59) 자원안보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221238호,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

[2023~2024년 일반예비비 중 공급망·원자재 관련 지출 내역]

연도	내역	지출결정액	지출액	대통령 결재일
2023	글로벌 공급망 안보 긴급 확보	99,000	91,080	2023-12-05
2024	글로벌 원자재 긴급 확보	106,500	106,500	2024-08-13

자료: 각 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공급망 위기 대응은 기금과 일반예비비 등으로 대응해 온 영역인 만큼, 목적예비비에 포괄적인 용도를 두어 이와 중복되는 지출까지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산총칙을 통해 사용목적을 특정하도록 한 목적예비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설 용도 중 공급망 위기 대응 부분의 대상 지출과 공급망안정화기금·자원안보기금 등과의 역할 구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회에 제시하고,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용도를 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문언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목적예비비 용도 중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가 ‘법령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로 변경됨에 따라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직 신설·개편 경비까지 목적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해당 용도를 법률개정에 따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총칙안은 목적예비비의 용도 중 종전의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로 변경하였다. ‘법령’은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러한 변경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제(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조직 신설·개편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목적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종전의 용도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의 제·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내용을 이미 심의·의결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수반되는 경비를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을 미리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하위법령의 개정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목적예비비의 용도에 포함할 경우 정부가 스스로 조직개편을 결정하고 그 경비까지 국회의 사전 심사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구조가

되어, 국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규모와 별도로 행정부의 재량적 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경비는 인건비·운영비 등 경직성 소요이고,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제·개정되므로 이에 따른 조직개편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 범위 내라 하더라도 하위법령에 따른 조직 신설은 국회가 그 필요성과 규모를 개별적으로 심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 조직개편을 이미 심의·의결한 법률개정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에 근거하여 신규 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경비를 예비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2월 6일 제정된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면서 2026년 3월 23일 예비비 10억 5,400만원을 배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지원단 신설에 필요한 경비 6억원을 2026년 9월 8일 예비비로 승인받았는데, 이는 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훈령으로 공식 설치된 2026년 9월 9일보다 앞선 시점이다.⁶⁰⁾ 이들 사례는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의 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부가 국회의 사전 심사 없이 신규 조직을 설치하고 그 경비를 예비비로 충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목적예비비의 용도를 하위법령에 따른 조직개편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연도 중 예비비로 먼저 설치된 조직의 경비는 다음 연도부터 본예산에 계속 소요로 반영되는데, 실제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운영’⁶¹⁾ 사업 14억 4,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이처럼 예비비로 먼저 설치된 조직의 경비는 국회가 이미 운영 중인 조직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하위법령에 따른 조직신설 경비를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목적예비비 용도를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6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및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2026. 10.) 참고

61) 코드: 일반회계 7035-328

있으며,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직 신설·개편 소요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사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7) 예산안 부대의견의 예산총칙화 필요

국회는 매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세입·세출의 증감 외에도 전반적인 재정 운용과 각 부처별 현안 및 사업별 제도개선, 집행방식 및 조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재정이 수반됨에도 세부사업별 예산의 조정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사항을 부대의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서, 부대의견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며, 정부는 채택된 부대의견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2023년도와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각각 53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 의결시에는 36건이,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의결시에는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의 장·단기 채무 비율, 국채 이자비용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관리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방안을 검토한다.’ 등 총 46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정부는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해당 연도 부대의견을 명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부대의견의 조치 완료 비율은 2023년 87%, 2024년 85%, 2025년 81%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대의견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한계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은 정부의 예산안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그 이행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워 부대의견을 채택한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시한 조치 완료 비율도 2023년 이후 낮아지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분석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2027년도 예산총칙안에도 부대의견을 반영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부대의견에 예산의 효력에 준하는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예산총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20조제1항제3호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예산총칙안은 예산안의 일부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대의견을 예산총칙에 반영하여 확정하는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 하에서 국회의 재정의지를 관철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산총칙이 예산 전반의 일반적인 집행 원칙을 규정하는 반면 부대의견은 제도개선·정책방향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예산총칙에 규율하기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나, 부대의견 중 예산 집행의 조건이나 방식에 관한 사항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 이러한 부대의견부터 예산총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부대의견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총칙에 부대의견 준수 의무를 선언하는 조항을 두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가 채택한 부대의견 전문(全文)을 예산총칙의 별표로 첨부하여 예산과 함께 의결·확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부대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만 수록되는 경우 그 이행 여부는 사실상 정부의 자율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나, 부대의견을 예산총칙에 첨부하면 부대의견 자체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어 정부의 이행 의무가 분명해지고, 국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그 준수 여부를 예산 집행의 문제로 점검하여 시정요구 등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⁶²⁾ 따라서 국회는 2027년도 예산안 의결 시 아래와 같이 예산총칙에 부대의견 준수 조항을 신설하는 동시에, 채택된 부대의견을 예산총칙의 별표로 첨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대의견을 반영한 예산총칙안 수정의견]

현행	수정안
〈신설〉	제19조 ①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국회의 부대의견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부대의견은 별표와 같다.

62) 부대의견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집행 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라는 점에서 ‘부대조건’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가. 현 황

(1) 임대형 민자사업의 의의

사회기반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SOC)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과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도로·철도·항만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유치원·학교·도서관·복합문화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공청사·보훈시설 등 공용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용 시설 등이 포함된다.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건설·운영하여 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이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법인·민관합동법인 등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민자사업이 도입되었다.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1)에 따른 민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687)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은 학교·병원·군생활관 등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주로 활용된다. 이들 시설의 경우 사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기 곤란하여 수익형 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으로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대형 민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설이 준공되어 운영이 개시된 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을 받게 된다.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된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 투자비에 대한 대가이고, 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대가이다.

(2)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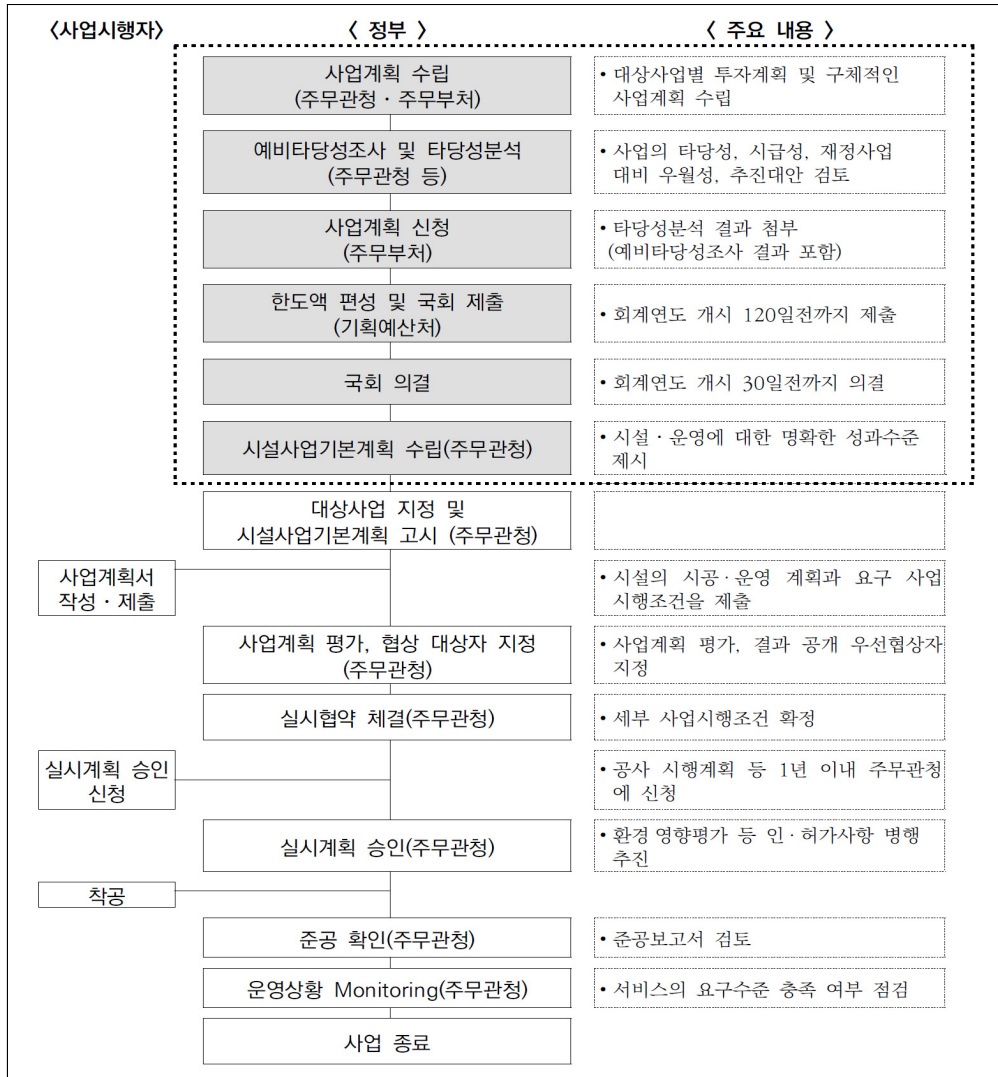
민자사업은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이 제안하고 이를 주무관청이 심사하여 추진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된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사업계획을 신청한다. 기획예산처는 주무관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이하 ‘BTL 한도액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의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면 민간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후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절차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등 절차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임대형 민자사업(정부고시사업)의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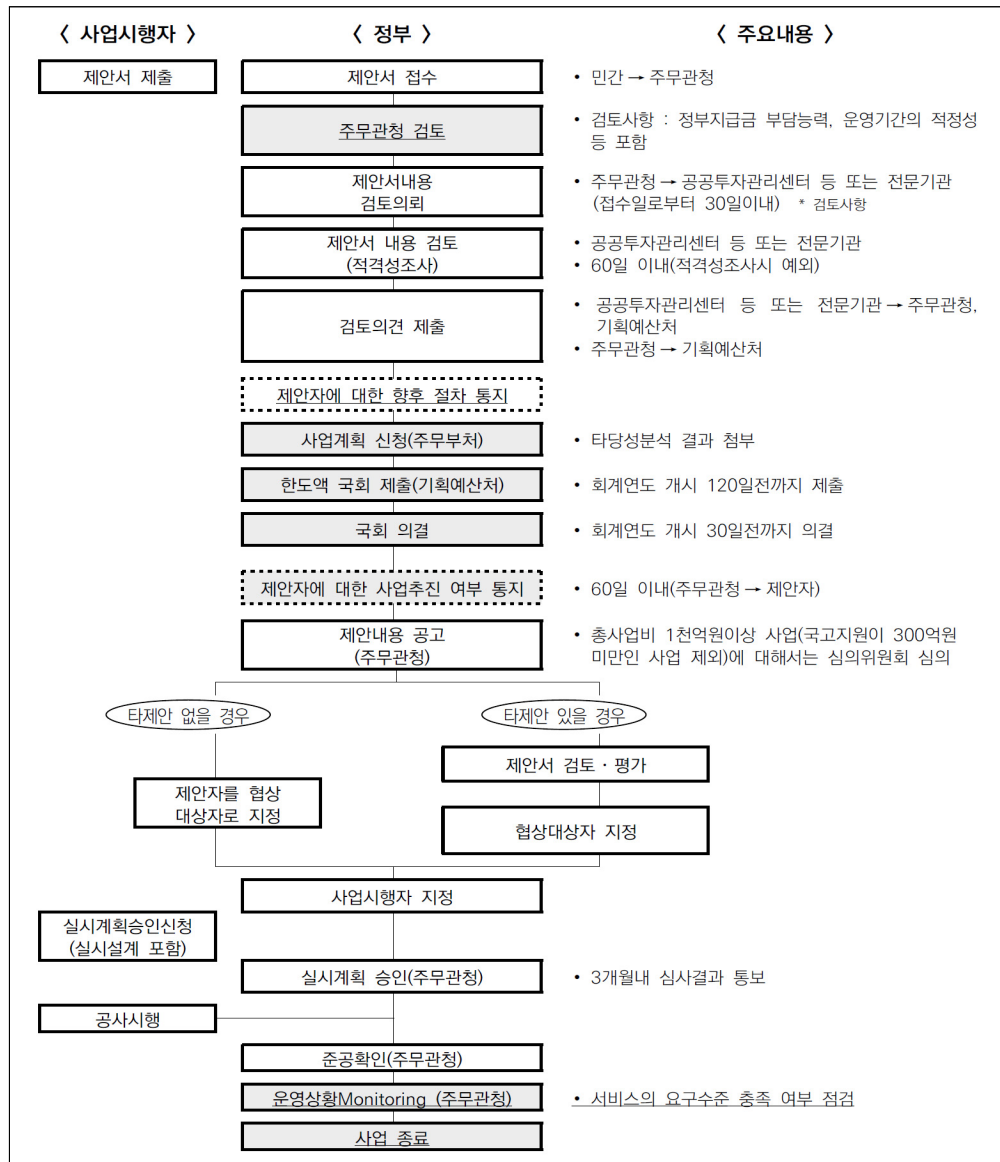
자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②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 부담능력 및 운영기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한다.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안자에게 향후 절차를 통지하고, 타당성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에 사업계획을 신청한다. 기획예산처는 주무관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BTL

한도액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후 절차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제안내용 공고 후 타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자와 협상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자료: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3) 2025년도 민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민간투자법 제51조의2²⁾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이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민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2026년 5월 3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① 총괄 현황

1994년에 민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5년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민자사업은 총 910개이고, 총투자비(민간투자비+정부투자비)는 159.1조원이다. 이 중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으로 추진·운영된 사업은 289개(총투자비 117.6조원)이고,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운영된 사업은 620개(총투자비 38.7조원)이다. 혼합형 민자사업(BTO+BTL)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1개(총투자비 2.8조원)이다.

[민자사업 추진·운영 현황: 1994~2025년]

(단위: 개, 조원)

구 분	사업 수					누적 투자규모			
	합계	준비중	시공중	운영중	종료	합계	민간투자	정부투자	
								건설보조금	토지보상비
수익형	289	13	22	189	65	117.6	73.6	26.5	17.5
임대형	620	23	42	537	18	38.7	37.9	0.8	0.03
혼합형	1	1	-	-	-	2.8	1.6	1.2	0.07
합 계	910	37	64	726	83	159.1	113.1	28.5	17.6

주: 지방정부 투자실적을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26. 5.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에는 76개 사업에 대해 총 4.7조원의 투자비가 집행되었다. 이 중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0.9조원), 광명-서울 고속도로(0.4조원), 동북선 도시철도(0.3조원) 등 30개 사업에 3.6조원이 집행되었고,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강원대학교 생활관 제3차(0.4조원), 여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0.04조원) 등 45개 사업에 0.9조원이 집행되었으며, 혼합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1개 사업에 0.1조원이 집행되었다.

[2025년 민자사업 집행실적]

(단위: 개, 조원)

구 분	사업 수					'25년 집행액			
	합계	준비중	시공중	운영중	종료	합계	민간투자	정부투자	
								건설보조금	토지보상비
수익형	30	5	21	4	-	3.6	1.8	0.8	1.0
임대형	45	2	25	18	-	0.9	0.9	0.03	-
혼합형	1	1	-	-	-	0.1	0.07	0.01	0.04
합 계	76	8	46	22	-	4.7	2.8	0.9	1.0

주: 지방정부 투자실적을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26. 5.

②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추진 현황

2025년에는 수익형으로 추진되는 철도 5개(1.3조원), 도로 7개(1.7조원), 환경 16개(0.5조원) 등 30개 사업에 대해 3조 6,222억원의 투자비가 집행되었다. 한편, 2025년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11개 사업에 대해 600억원이 지급되었고, 최소비용보전(MCC)에 따라 16개 사업에 대해 7,491억원이 지급되었다.

[2025년 수익형 민자사업 투자 및 MRG · MCC 지급 실적]

(단위: 개, 억원)

주무관청	사업 수					'25년 투자비	'25년 MRG		'25년 MCC	
	합계	준비중	시공중	운영중	종료		사업수	지급액	사업수	지급액
합 계	30	5	21	4	-	36,222	11	600	16	7,491
국토교통부	6	1	4	1	-	23,511	1	301	1	4,104
해양수산부	1	-	1	-	-	81	4	105	3	176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23	4	16	3	-	12,630	6	194	12	3,211

주: 지방정부 투자 및 지급실적을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26. 5.

③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현황

2025년에는 임대형으로 추진되는 교육 42개(0.8조원), 복지 1개(0.04조원), 환경 1개(0.04조원) 사업 등 45개 사업에 대해 9,349억원의 투자비가 집행되었다. 한편, 2025년에는 537개 사업에 대해 3조 1,914억원 규모의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이 지급되었다.

[2025년 임대형 민자사업 투자 및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단위: 개, 억원)

주무관청	사업 수					'25년	'25년 정부지급금	
	합계	준비중	시공중	운영중	종료	투자비	사업수	지급액
합계	45	2	25	18	-	9,349	537	31,914
경찰청	-	-	-	-	-	-	5	193
고용노동부	1	-	1	-	-	30	8	4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9	1,076
국방부	-	-	-	-	-	-	94	7,089
국토교통부	-	-	-	-	-	-	4	3,820
보건복지부	-	-	-	-	-	-	1	41
성평등가족부	-	-	-	-	-	-	1	79
해양수산부	-	-	-	-	-	-	1	151
질병관리청	-	-	-	-	-	-	1	56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44	2	24	18	-	9,319	413	18,977

주: 지방정부 투자 및 지급실적을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26. 5.

④ 혼합형 민자사업(BTO + BTL) 추진 현황

2025년에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1개 사업에 대해 투자비 1,147억원이 집행되었다.

[2025년 혼합형 민자사업 투자 등 실적]

(단위: 개, 억원)

주무관청	사업 수					'25년	MRG		MCC		정부지급금	
	합계	준비중	시공중	운영중	종료	투자비	사업수	지급액	사업수	지급액	사업수	지급액
국토교통부	1	1	-	-	-	1,147	-	-	-	-	-	-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26. 5.

(4) 2026년 기준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현황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법 제24조의2³⁾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주무부처별 및 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BTL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함)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조의2⁴⁾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BTL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2026년 기준)」⁵⁾에 따르면, 2026년도부터 사업종료일까지 국가 사업에 지급될 정부지급금은 23조 2,708억원,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지급될 정부지급금은 4조 2,092억원으로 전망되어, 향후 총 정부지급금 규모는 27조 4,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현황(2026년 기준)]

(단위: 억원)

국가사업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합계		
임대료	운영비	합계	임대료	운영비	합계	임대료	운영비	합계
189,901	42,807	232,708	42,092	-	42,092	231,993	42,807	274,800

자료: 기획예산처,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2026년 기준)」, 2026. 9.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 2026년 3월 10일 「국가재정법」이 일부개정되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9조의2제4호가 신설되었다. 해당 조항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5) 2026년 5월 31일 기준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BTL 사업(중앙정부가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을 대상으로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한 것이다.

[연도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현황(2026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274,800	20,197	21,031	22,243	22,198	21,663
국가사업	232,708	15,933	16,616	17,751	17,703	17,554
- 임대료	189,901	13,180	13,696	14,572	14,416	14,230
- 운영비	42,807	2,752	2,920	3,179	3,287	3,323
국고보조 ¹⁾	42,092	4,264	4,415	4,492	4,496	4,110
- 임대료	42,092	4,264	4,415	4,492	4,496	4,110
- 운영비	-	-	-	-	-	-
구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종료일
합 계	20,397	18,262	15,671	13,739	11,520	87,879
국가사업	16,985	15,438	13,374	12,190	10,222	78,943
- 임대료	13,703	12,399	10,634	9,655	8,322	65,094
- 운영비	3,282	3,040	2,740	2,535	1,900	13,849
국고보조 ¹⁾	3,412	2,823	2,298	1,549	1,297	8,936
- 임대료	3,412	2,823	2,298	1,549	1,297	8,936
- 운영비	-	-	-	-	-	-

주: 1)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1. 국고로 지급되는 정부지급금만을 대상으로 집계(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제외)

자료: 기획예산처,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2026년 기준)」, 2026. 9.

2026년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2025년 기준)」에서 추계한 2025년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정부지급금 25조 7,047억원 대비 1조 7,753억원(6.9%) 증가하였다. 국가사업 정부지급금은 전년 추계 대비 1조 9,209억원(9.0%)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정부지급금은 전년 추계 대비 1,457억원(△3.3%) 감소한 것이다.

국가사업의 경우 2026년 추계에 학교 신규 운영 사업 13개('27년 10개, '28년 3개), 군주거시설 신규 운영 사업 9개('27년 2개, '28년 7개) 및 철도시설 신규 운영 사업 1개('32년)가 추가로 반영된 반면,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신규 운영 사업 1개('27년)만 추가 반영되었다.

국가사업은 2035년까지 철도·학교·박물관·군주거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 88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고,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은 공공보건의료·문화복합시설·과학관·하수관거시설 등 101개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국가사업의 시설별·연도별 종료사업 개수]

(단위: 개)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철도	-	-	-	-	-	-	-	1	1	-
학교	-	-	1	3	8	2	1	2	-	3
박물관	-	-	-	-	-	-	-	1	-	-
군주거시설	-	-	1	-	1	3	13	22	16	8
청소년 수련시설	-	-	-	-	-	-	-	-	1	-

자료: 기획예산처,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2026년 기준)」, 2026. 9.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의 시설별·연도별 종료사업 개수]

(단위: 개)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공공보건의료	-	-	-	-	-	1	2	2	3	2
문화복합시설	-	-	-	-	-	-	1	-	-	-
과학관	-	-	-	-	1	1	1	1	-	2
하수관거	-	-	-	1	5	19	22	10	17	10

자료: 기획예산처,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2026년 기준)」, 2026. 9.

(5)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① 2027년도 BTL 한도액안 주요 내용

임대형 민자사업은 일단 사업이 추진되면 정부지급금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적인 통제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간투자법은 2005년부터 정부가 매년 다음 연도에 실시할 BTL 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이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최근 10년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이하 'BTL 한도액안'이라 함)을 살펴보면 국가사업의 경우 교육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부처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다. 2027년도 BTL 한도액안에는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사업 8건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고 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2건이 반영되었다.

[연도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소관 부처]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교육부	○	○	○	○	○	○	○		○	○
국방부	○	○	○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	○
고용노동부	○		○	○				○	○	○
경찰청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해양경찰청									○	
국토교통부									○	

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舊 환경부 포함

자료: 연도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BTL 한도액안에 반영되는 대상사업별 한도액은 각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추정치⁷⁾를 말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BTL 한도액안을 살펴보면, 2027년도 총한도액은 전년 대비 3조 3,846억원(△84.6%) 감소한 6,14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2조 7,503억원(△86.5%)이 감소한 4,280억원,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의 한도액은 전년 대비 4,731억원(△75.0%) 감소한 1,576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대상사업별 한도액 합계의 20% 이내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이 감소함에 따라 2027년도 예비한도액은 전년 대비 1,612억원(△84.6%) 감소한 293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단위: 억원, %)

구분	2026(A)	2027(B)	증감(B-A)	(B-A)/A
총한도액	39,995	6,149	△33,846	△84.6
국가사업	31,783	4,280	△27,503	△86.5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6,307	1,576	△4,731	△75.0
예비한도액 ¹⁾	1,905	293	△1,612	△84.6

주: 1)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의 5% 수준을 예비한도액으로 계상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6. 9.

7) 기획예산처는 BTL 한도액안에 제시되는 총사업비를 민자사업 기준이 아닌 재정사업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의 총사업비를 사전에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민간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민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027년도 BTL 한도액안을 소관 부처별·대상시설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체국 건립 사업의 한도액이 1,523억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교 기숙사 사업 4개에 총 1,663억원, 고용노동부 소관 한국폴리텍대학 강릉 및 익산캠퍼스 2개 사업에 총 676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부산광역시 및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2개 사업에 총 1,576억원의 한도액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소관 부처별·대상시설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단위: 억원)

구분	부처명	시설유형	사업명	한도액안
국가사업	교육부	대학시설 (기숙사)	경상국립대학교 기숙사	44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	436
			한국해양대학교 기숙사	418
			대구교육대학교 기숙사	361
	고용노동부	대학시설 (시설개선)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297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379
	국방부	국방시설	수방사 간부숙소	41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공청사시설	우체국 건립(5개 권역, 48국 신·개축)	1,523
소 계		8개 사업	4,280	
국고보조 지방자치 단체사업	기후에너지 환경부	하수관로시설	부산광역시 1개 (동대신·서대신 하수관로정비)	860
			시흥시 1개 (시흥스마트허브 하수관로정비(2권역))	716
	소 계		2개 사업	1,57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6. 9.

② 2025년 지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

정부는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3항⁹⁾에 따라 BTL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25년도에 예비한도액 82억 5,8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상 시설별로는 대학시설 중 충남대·공주대 세종공동캠퍼스 사업에 사업비 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해 27억 6,900만원, 공공보건의료시설 중 경찰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사업의 건축면적 조정과 시설 추가 등을 위해 12억 5,200만원,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의 공사비 부족분 조정을 위해 42억 3,7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25년 지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

(단위: 억원)

구분	부처명	시설유형	사업명	변경전 한도액	변경후 한도액	2025 예비한도 지출액
국가사업	교육부	대학시설	충남대·공주대 세종공동캠퍼스	591	619	27.7
국고보조 지방자치 단체사업	경찰청	공공보건 의료기관	경찰병원 (경찰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289	301	12.5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의료기관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596	639	42.4
합 계						82.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6. 9.을 바탕으로 재작성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분석의견

(1) 임대형 민자사업 발굴체계 개선 및 민자적격성조사 신뢰성 제고 필요

기획예산처는 다양한 시설유형에서 민간의 효율성과 위험관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2016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재무적 할인율을 재산정하는 등 VfM(Value for Money) 산정방식 전반을 재검토하여 민자적격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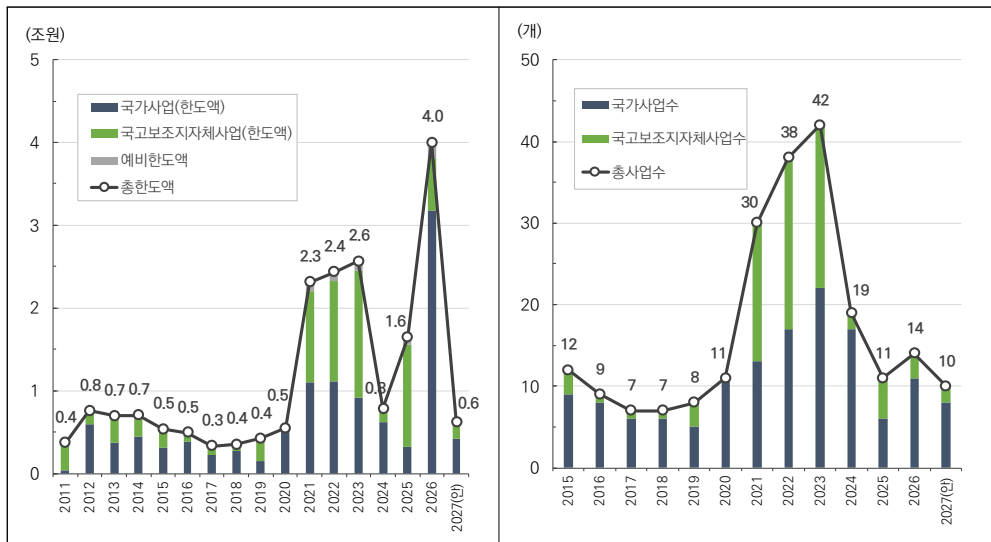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재정사업과 달리 설계·건설·운영을 연계하고 사업 위험의 일부를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민간의 자금조달비용이 정부의 직접 조달비용보다 높고 장기간에 걸쳐 정부 지급금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민간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생애주기비용 절감, 적정한 위험 이전 및 운영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엄격히 선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BTL 한도액안에 반영되는 사업규모를 보면 신규 사업의 발굴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7년도 BTL 한도액안에 반영된 사업은 10개, 총 한도액은 6,149억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도 BTL 한도액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4개 감소하였고 총한도액은 3조 3,846억원(△84.6%) 감소하였다. 이 중 국가사업 한도액은 전년 대비 2조 7,503억원(△86.5%) 감소한 4,280억원,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은 4,731억원(△75.0%) 감소한 1,576억원으로,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사업 모두 신규 추진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가장 많은 42개의 임대형 민자사업이 편성되었던 2023년도와 비교하더라도 2027년도 총한도액은 1조 9,503억원(△76.0%) 감소한 수준이다.

BTL 한도액안 도입 이후의 편성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30~40개 수준으로 확대되었던 사업 수가 202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5년 이후에는 다시 2015~2020년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2026년도 한도액은 위례과천선과 CTX 등 사업비 규모가 큰 철도사업 2건이 반영됨에 따라 전체 한도액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027년도 한도액안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일한 정부안 단계에서 비교하더라도 2027년도 한도액은 전년 대비 1조 4,112억원(△69.7%) 감소하였고, 2026년도 정부안에서 위례과천선 사업을 제외하여 비교하더라도 전년 대비 2,903억원(△32.1%) 감소하는 등 최근 신규 BTL 사업 추진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현황]



주: 2011~2026년은 BTL 한도액, 2027년은 BTL 한도액안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6. 9.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0년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민자사업 대상시설의 규정방식이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되어 다양한 시설 분야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2027년도 BTL 한도액안에 포함된 사업은 국립대학 기숙사, 군 간부숙소, 우체국 시설 및 하수관로 등 기존에 BTL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설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즉, 제도적으로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시설유형의 발굴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만을 근거로 BTL 사업의 규모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민간투자방식은 재정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아니라,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식이기 때문이다. OECD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의 투자 필요성을 먼저 판단한 뒤에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추진 방식을 결정할 때에도 민자사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적·절차적·회계적 편향 없이 사업 특성 및 위험배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VfM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⁰⁾

따라서 BTL 정책의 초점은 단순히 한도액이나 사업 수를 확대하는 데 두기보다,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BTL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공공시설 확충·개량 수요를 폭넓게 조사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예정되어 있거나 노후화에 따른 개량·재구축 수요가 예상되는 시설 중 설계·건설·운영의 통합관리, 생애주기비용 절감 및 민간으로의 적정한 위험이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BTL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 발굴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BTL 방식이 적합한 사업을 발굴할 때 해당 사업이 실제로 재정사업보다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민자적격성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자적격성조사(Value for Money, VfM)는 해당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실행대안(PSC)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대안(PFI)의 사업기간 전체에 걸친 정부부담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고, 민간투자대안의 정부부담액이 더 작은 경우 민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 발굴단계에서 BTL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적격성조사 단계에서는 어느 방식에도 편향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BTL 방식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의2¹¹⁾에 따른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수익형 민자사업 4.5%, 임대형 민자사업 2.5%로,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10)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rinciples for Public Govern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2012, Principles 4~5.

1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의2(재무적 할인율)

① 제65조 제2항 제2호의 적격성 판단에서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4.5%,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2.5%를 적용하고, 혼합형 민자사업의 경우 수익형 부분은 4.5%, 임대형 부분은 2.5%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재무적 할인율은 경제 및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할인율 조정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국가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할인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3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6년 수행된 KDI 연구¹²⁾를 기초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재산정되지 않았다. 동 연구는 BTL 사업에 참여한 266개 건설회사의 2000~2014년 재무자료와 운영 중인 397개 BTL 사업의 자본구조 및 평균조달금리 등을 이용하여 건설기간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과 운영기간의 요구수익률을 추정하였다. 또한, 무위험이자율로 2005~2014년 또는 2010~2014년의 5년 만기 국고채 평균수익률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약 10년이 경과한 현재의 금융·사업 여건을 반영하여 기초자료와 주요 가정을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

할인율의 수준뿐만 아니라 산정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연구에서도 정량적 VfM 분석은 정부의 관점에서 PSC와 PFI의 정부 현금흐름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각 대안의 현금흐름에 내재된 체계적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PSC와 PFI에 수반되는 현금흐름의 체계적 위험이 상이하므로 각각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개별 사업의 위험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무적 할인율은 PSC와 PFI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화하는 기준으로서 민자적 격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BTL은 재정사업에 비해 정부지급금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 민간투자대안의 현재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년 후 지급되는 실질 100원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2.5%인 경우 약 61.0원이지만, 할인율이 1.5%이면 약 74.2원, 3.5%이면 약 50.3원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할인율의 수준이나 위험 반영방식에 따라 민자적격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자적격성 판단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BTL 사업의 양적 확대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시설유형에서 민간의 효율성과 위험관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 대비 비효율적인 민자사업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근 금융시장 및 민간 투자사업의 자금조달·운영실적 등을 토대로 재무적 할인율을 재산정하는 한편

12)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사회적 할인율* 산정에 관한 연구」, 2016. 12.

* 사회적 할인율 산정에 관한 연구이나, 동 연구 제5장에서 재무적 할인율 산정을 함께 수행하였음

PSC와 PFI의 위험 차이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 VfM 산정방식 전반을 재검토함으로써 민자적격성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민자적격성조사 보고서 사후 공개를 통한 책임성·투명성 확보 필요

기획예산처는 민간의 공정한 경쟁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BTL 한도액안의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민자적격성조사 보고서 원문 등의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이로 인해 BTL 한도액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민자적격성조사에 대한 사후적인 점검과 사업 추진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보고서는 최소한 제안내용 공고 이후 등 비공개 필요성이 해소되는 시점에는 공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면, 해당 한도액안에 반영된 BTL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확정된다.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2026년 기준)」에 따르면, 2026년 5월 31일 기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BTL 사업에 대하여 2026년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총 27조 4,800억원의 정부지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처럼 BTL 사업은 일단 추진이 확정되면 장기간에 걸쳐 재정지출을 발생시키므로, 국회가 BTL 한도액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방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7조의2¹³⁾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과 전년도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나 타당성 분석자료, KDI 등 전문기관의 민자적격성조사 보고서 등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도액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자료의 제출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가재정법」이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비롯하여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그동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별 BTL 사업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산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법정 첨부서류 등 비교]

구분	예산안(「국가재정법」 제34조)	BTL한도액안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첨부 서류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없음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구분	예산안(「국가재정법」 제34조)	BTL한도액안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첨부 서류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 지방비 소요 추계서	없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舊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BTL 한도액안부터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정부는 2027년도 BTL 한도액안에 처음으로 개별사업 설명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사업목적·기간 등 사업 개요, 사업 추진경위,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민자적격성 확보 여부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개별 사업 설명자료(예시)]

〈경상국립대학교 기숙사 BTL 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학 통합에 따른 캠퍼스 재배치로 기숙사 수용률 하락하여, 생활관 관리동 철거 후 개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기 제공
사업내용	연면적 13,300m ² , 수용인원 560명
사업기간	(건설) 24개월 (운영) 준공 후 20년
사업시행주체 및 추진방식	교육부 및 경상국립대학교 / 정부고시
BTL한도액	'27년 BTL 한도액(안) : 총사업비 457억원 ¹⁾
국고지원율	(시설임대료) 국비 100% (운영비) 자체부담 100%
(2) 사업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11. ~ 12.) '27년 BTL 대상사업 수요조사 ○ (25. 12. ~ '26. 1.) '27년 BTL 대상사업 선정 추진계획 보고 및 현장실사 	

- ('26. 5. 26. ~ 28.)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
- ('26. 5. 29.) '27년 BTL 대상사업 한도액 요구안 제출

(3)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 KDI 검토 결과, 민자적격성 확보($VfM \geq 0$)

(4) 향후 추진일정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매입	기본계획 수립	사업승인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	'25.11. ~ '26.02.	'26.05.	'27.06.	'27.10. ~ '28.03.	'28.03.	'28.07.	'28.07.

주: 1) 조정 전 한도액으로,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BTL 한도액안에 반영된 금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6. 9.

다만, 현재 제출되는 설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국회가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민자적격성조사의 핵심 결과인 VfM(Value for Money) 산출값과 그 산출근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는 사실상 전문기관이 민자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와 그 검토를 거쳐 조정된 총사업비 등을 전제로 한도액안을 심의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민자적격성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별 사업의 적정성을 국회가 독자적으로 검토하기 어렵고, 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국회 심의 사례를 보더라도, 최초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2010년도 BTL 한도액안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된 사례는 다수 있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한도액안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한도액이 감액되거나 사업 자체가 제외된 사례는 사실상 없었다. 2014년도 BTL 한도액안에서 공공청사를 BTL 대상 시설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한도액이 감액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해당 사업의 민자적격성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 결과라기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2010~2026년도 BTL 한도액안 국회 심의 경과]

BTL 한도액안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비고
2026년도	2025-09-03	2025-12-02	수정가결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신규 반영(1조 7,235억원) · 우체국 건립 및 우주상황인식 정보관 신규 반영(656억원) · 강원 영월의료원 신규 반영(903억원)
2025년도	2024-09-02	2024-12-10	원안가결	
2024년도	2023-09-01	2023-12-21	원안가결	
2023년도	2022-09-02	2022-12-24	수정가결	· 하수관로정비 사업 1개 지역 신규 반영(633억원)
2022년도	2021-09-03	2021-12-03	수정가결	· 충남대학교·공주대학교 세종공동캠퍼스 신축 등 신규 반영(592억원) · 대장-홍대 광역철도 신규 반영(4,477억원) ·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신규 반영(7,578억원) · 지방의료원(서부산) 1개소 신규 반영(780억원)
2021년도	2020-09-03	2020-12-02	원안가결	
2020년도	2019-09-03	2019-12-10	원안가결	
2019년도	2018-09-03	2018-12-08	원안가결	
2018년도	2017-09-01	2017-12-06	원안가결	
2017년도	2016-09-02	2016-12-03	원안가결	
2016년도	2015-09-11	2015-12-03	원안가결	
2015년도	2014-09-22	2014-12-02	원안가결	
2014년도	2013-10-02	2014-01-01	수정가결	· BTL 대상에 공공청사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125억원 감액
2013년도	2012-09-28	2013-01-01	원안가결	
2012년도	2011-09-30	2011-12-31	수정가결	· 충남대 등 국립대학시설 2,496억원 증액 등
2011년도	2010-10-01	2010-12-08	원안가결	
2010년도	2009-10-01	2009-12-31	원안가결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5항¹⁴⁾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사항을 접수일부터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고,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도 민자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고시·공고 이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물론이고, 타당성 분석 보고서 및 민자적격성조사 보고서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제안자의 영업상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관련 자료를 비공개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BTL 사업의 한도액을 국회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민자적격성 판단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고시사업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전제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는 등 국회가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는 민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과 정보보호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BTL 한도액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고 민자적격성조사에 대한 사후적인 점검과 사업 추진의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자적격성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안내용 공고 이후 등 비공개 필요성이 해소되는 시점에는 공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⑮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10항에 따른 제안 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제10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의 정보 제공 강화 필요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BTL 한도액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에 대상 시설별 한도액 편성 연도 및 한도액 변경 내역, 편성연도별 예비한도액 누적 사용액 및 잔액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항¹⁵⁾은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BTL 한도액안을 편성할 때 해당 연도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의 20% 범위에서 예비한도액을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 BTL 한도액안을 편성할 때 매년 대상 시설별 한도액 합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한도액으로 계상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의3¹⁶⁾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당초 한도액의 20%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한도액 변경 규모는 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대상시설의 한도액을 당초 한도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거나, 해당 연도에 국회가 의결한 예비한도액을 초과하여 한도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예비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각각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BTL 한도액안에 포함된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액 한도라는 점에서, 국회가 예비한도액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상시설의 사용액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한도액이 편성된 연도의 예비한도액 총액, 누적 사용액 및 잔액을 함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에는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정부가 2027년도 BTL 한도액안과 함께 제출한 2025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에는 각 대상시설의 한도액이 어느 연도의 BTL 한도액안에 편성되었는지, 과거에 해당 시설의 한도액이 변경된 적이 있는지, 해당 편성연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의 예비한도액이 누적하여 얼마만큼 사용되었고 잔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출된 명세만으로는 개별 사업의 한도액 변경 경과와 해당 편성연도 예비한도액의 소진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 사업은 2019년도 BTL 한도액안에 당초 한도액 56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의 한도액 합계 4,036억원과 그 5%에 해당하는 202억원의 예비한도액을 편성하였고, 국회는 이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후 정부는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에 대하여 두 차례 예비한도액을 사용하였다. 2021년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응하여 태양광설비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당초 한도액의 5.5%인 3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5년에는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초 한도액의 7.5%인 42억 4,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한도액은 당초 565억원에서 638억 6,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까지 사용된 예비한도액은 총 73억 6,000만원으로 당초 한도액의 13.0%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5년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만을 보면 2025년에 해당 사업에 예비한도액 42억 4,000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어, 동 사업이 이미 2021년에 31억 2,000만원의 예비한도액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나 누적 사용액이 당초 한도액의 13.0%에 이른다는 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동 사업이 어느 연도에 편성된 사업인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아, 제출자료만으로는 관련 연도 예비한도액의 누적 사용 규모와 잔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삼척의료원 외에도 예비한도액의 사용 규모가 정부가 통상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한도액의 5% 수준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정부가 제출한 2011~2025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를 보면,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은 2021년에 당초 한도액 1,040억원의 19.6%인 203억 8,000만원,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은 2024년에 당초 한도액 780억원의 10.1%인 78억 7,000만원의 예비한도액을 각각 사용하였다. 특히 예비한도액은 동일한 편성연도에 포함된 여러 대상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총액 한도이므로, 일부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예비한도액을 사용할 경우 다른 대상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예비한도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 : 2011~2025년]

(단위: 억원, %)

지출 연도	편성 연도	구분	소관부처	시설유형	사업명	한도액 (A)	예비한도 지출액(B)	한도액 대비 (B/A)
'25	'22	국가	교육부	대학	충남대·공주대 세종공동캠퍼스	592 ¹⁾	27.7	4.7
	'23	지자체	경찰청	공공보건의료	경찰특화 의료·연구복합센터	289	12.5	4.3
	'19	지자체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565	42.4	7.5
'24	'22	지자체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서부산의료원 건립	780	78.7	10.1
'23	'23	국가	교육부	대학	전북대 시설개선	268	11.5	4.3
	'23	국가	교육부	대학	서울과기대 시설개선	280	13.0	4.6
	'23	국가	교육부	대학	부산대 시설개선	254	6.2	2.4
'21	'21	국가	문체부	문화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1,040	203.8	19.6
	'19	지자체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565	31.2	5.5
'15	'12	국가	교육부 ²⁾	대학	국립대학교 대학시설	5,014	10.7	0.2

주: 1) 충남대 312억원, 공주대 280억원

2) 舊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대한민국국회, 연도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및 대한민국정부, 연도별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액안」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따라서 정부는 국회가 예비한도액의 사용 경과와 잔여 한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국회가 의결한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에 ① 대상시설별 한도액 편성 연도, ② 대상시설별 당초 한도액 및 연도별 한도액 변경 내역, ③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누적 사용액, ④ 편성연도별 예비한도액 총액·연도별 사용액·누적 사용액 및 잔액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 개요 및 현황

(1) 국가보증 및 국가보증채무 개요

국가보증이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사항을 채무자로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채무를 대신 상환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주로 공적기관 또는 민간이 자금을 더 쉽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증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보증을 공급받는 채무자 또는 기관 입장에서는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체적인 담보 능력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기술력 또는 미래 사업성 등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국가가 채무를 보증하거나, 서민의 주거비, 생활비 등에 필요한 대출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보증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국가보증은 정부 재정 여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보증만으로 민간금융시장 등의 자금을 간접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국가보증채무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이는 국가의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확정 채무는 아니지만, 유사시 국가의 지출 소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미확정 채무의 성격을 갖는다. 즉 국가가 채무 상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기로 약속함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한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¹⁾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²⁾ 이에 정부는 매년 9월 초 재정 관련 자료로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대규모 채권 발행에 따른 국가보증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

(2) 국가보증채무 현황

2026년 7월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20.6조원으로 2025년말 대비 5.0조원 증가하였다. 또한, 보증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2025년말 대비 0.1%p 상승하였다.

2026년 7월 기준 보증채무 20.6조원은 한국장학재단채권 11.2조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8.1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2026년 처음 발행되었으며 2026년 보증한도는 15.0조원이다.

[국가보증채무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보증채무 (GDP 대비)	10.9 (0.5)	10.6 (0.5)	10.5 (0.4)	11.0 (0.4)	15.6 (0.6)	20.6 (0.7)
- 한국장학재단채권	10.2	9.9	10.0	10.4	10.8	11.2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	-	-	0.4	4.9	8.1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	-	-	-	-	1.3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0.8	0.7	0.5	0.2	-	-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1)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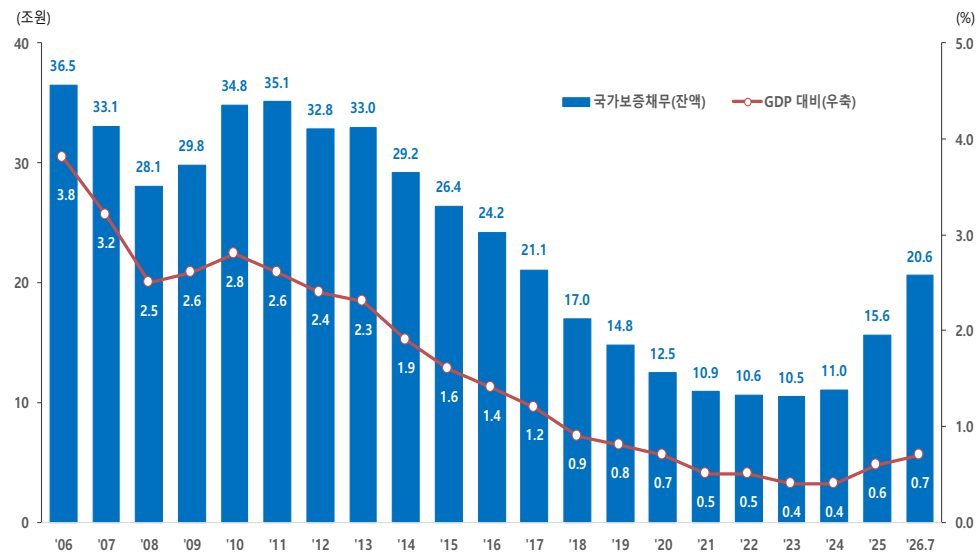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연도별 보증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2006년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회수를 진행하면서 보증채무 규모는 2008년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보증채무 규모가 증가하였고, 2010년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채권을 신규로 보증하면서 보증채무 규모는 2011년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각 보증채무 상환 규모 증가로 인해 2023년까지 감소하던 보증채무는 2024년 신규 보증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량 증가와 학자금대출 소요 증가로 인해 2024년부터 다시 증가로 전환되며 2026년 7월 기준 20.6조원을 기록하며 201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 GDP 대비 국가보증채무 비율은 2010년 2.8%에서 2024년 0.4%까지 하락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26년 7월 기준 0.7%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국가보증채무 추이]



주: 보증잔액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2027년도 국가보증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계획

「국가재정법」이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매년 9월 다음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발행 채권에 대한 동의안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채권(발행 한도: 원화 기준 3조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발행 한도: 원화 기준 1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발행 한도: 원화 기준 18조원), 한미전략투자채권(발행 한도: 미국 달러 기준 70억 달러(10.4조원)) 등 총 4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발행 한도 규모는 2026년 27.9조원 대비 13.5조원 증가(48.4%)한 41.4조원이다.

[2027년 국가보증동의안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6 (A)	2027 (B)	증감	
			B-A	(B-A)/A
한국장학재단채권	29,000	30,000	1,000	3.4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100,000	100,000	0	0.0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50,000	180,000	30,000	20.0
한미전략투자채권	-	104,000 (미 달러 기준 70억 달러)	104,000	순증
계	279,000	414,000	135,000	48.4

주: 국가보증채권 보증한도 기준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①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한국장학재단채권³⁾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7년에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이다.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채무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
채권자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소유자
발행액	3조원 이내
보증액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발행방법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발행금리	시장금리
상환기간	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상환재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금사용계획	2027년도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2027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상환

자료: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는 2027년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을 위한 2조 7,030억원과 2027년 만기 도래 채권의 상환을 위한 2조 1,708억원 등의 사업비에서 기존 학자금대출 회수분 1조 8,718억원을 차감하여 3조 2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발행 한도를 3조원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동의안을 제출하였다.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 한도]

구분	금액
한국장학재단 자금 소요 전망(A)	4.9조원
- 한국장학재단채권 상환	(2.2조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7조원)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0조원)
한국장학재단 대출 회수 전망(B)	1.9조원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 규모(A-B)	3.0조원

자료: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②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이 2027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보증하고자 제출된 것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6월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해당 기금의 재원은 경제안보품목 등의 확보·도입 및 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⁵⁾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채무자	한국수출입은행
채권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소유자
발행액	원화 기준 10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 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보증액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발행방법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발행금리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상환기간	채권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상환재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자금사용계획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자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9조(기금의 재원)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2항 참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려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2027년 채권 발행 한도는 10조원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2027년 신규 자금소요 15.2조원과 2027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차환을 위한 4.0조원 등 사업비에서 기존 대출 원리금 회수분 9.7조원을 차감하고 유동성대응자금 0.5조원을 합산한 규모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 한도]

구분	금액
자금집행 (A)	15.2조원
자금회수 (B)	9.7조원
채권상환 (C)	4.0조원
필요자금 (D=A-B+C)	9.5조원
유동성 대응 자금 (E)	0.5조원
채권 발행 한도 = D + E	10.0조원

자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③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⁶⁾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2025년 9월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2025년 9월 설치된 것으로, 해당 기금의 재원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방산 등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⁷⁾

6)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 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7)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 및 제29조의8 참고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채무자	한국산업은행
채권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소유자
발행액	원화 기준 18조원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 당시 매매기준율 적용)
보증액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발행방법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발행금리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상환기간	채권 발행일로부터 19년 이내*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만기는 기금 운용기간(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반영한 산은법 개정안의 시행일인 2025.12.10.로부터 20년) 이내로 설정
상환재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자금사용계획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자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7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려는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 한도는 18조원으로, 이는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3.5조원, 기금채권 차환발행 자금 2.9조원에 유동성대응자금 1.6조원이 포함된 것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한도]

구분	금액
자금집행 (A)	13.5조원
자금회수 (B)	-
채권상환 (C)	2.9조원
필요자금 (D=A-B+C)	16.4조원
유동성 대응 자금 (E)	1.6조원
채권 발행 한도 = D + E	18.0조원

자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④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한미전략투자채권⁸⁾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2027년도에 발행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2026년 6월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해당 기금의 재원은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⁹⁾

[한미전략투자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채무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채권자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소유자
발행액	미국 달러 기준 70억달러 이내 (외화의 경우 발행 당시 매매기준을 적용)
보증액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
발행방법	공모 또는 사모발행
발행금리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별도 결정
상환기간	채권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
상환재원	「한미전략투자법」 제41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자금사용계획	「한미전략투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

자료: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8) 「한미전략투자법」

제40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제4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제4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전략적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한미전략투자법」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 참고

2027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려는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 한도는 70억 달러로, 이는 연간 사업비 200억 달러에서 정부(외평기금),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 별도 조달재원 135억 달러를 차감하고 유동성 대응자금 5억 달러를 더한 규모이다.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한도]

구분	금액
자금집행 (A)	200억 달러
별도 조달 자원 (B)	135억 달러
채권상환 (C)	-
필요자금 (D=A-B+C)	65억 달러
유동성 대응 자금 (E)	5억 달러
채권 발행 한도 = D + E	70억 달러

자료: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 계획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2026년말 27.7조원에서 2030년말 157.3조원으로 129.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GDP 대비 국가보증채무 비율도 2026년 GDP 대비 1.0%에서 2030년 GDP 대비 4.4%로 3.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증채무별 2026~2030년 계획을 살펴보면, 장학재단채권의 국가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 지원 조건 완화 및 이자면제 지원 확대 등으로 보증 잔액이 2026년 11.6조원에서 2030년 14.3조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2026년 9.7조원에서 2030년 22.8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경우 2026~2030년 증가세를 지속하며 2026년 6.4조원에서 2030년 78.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규모를 2030년까지 9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한미전략투자채권은 2026년 6월 「한미전략투자법」 시행과 함께 2027년부터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집행 수요를 고려할 때, 보증 잔액은 2030년 41.7조원 규모로 증가할 계획이다.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 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증채무 (GDP 대비, %)	27.7 (1.0)	60.0 (1.9)	91.8 (2.8)	124.7 (3.7)	157.3 (4.4)
- 한국장학재단채권	11.6	12.4	13.0	13.7	14.3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9.7	15.7	17.9	20.3	22.8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6.4	21.5	40.1	59.4	78.5
- 한미전략투자채권 (억 달러)	-	10.4 (70)	20.8 (140)	31.3 (210)	41.7 (280)

주: 1.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 반영

2. 한미전략투자채권 달러 기준의 경우 예산 편성 환율(1USD = 1,490원) 적용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나. 분석의견

(1) 국가보증채무 확대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검토 필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의 직접적인 채무는 아니므로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증 대상인 주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직접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되어 국가채무로 전환되며, 특히 2027년 이후 한미전략투자기금채권 신규 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될 계획이므로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¹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¹¹⁾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하여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2025년 15.6조원에서 2026년 27.7조원으로 12.1조원, 7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27년에는 2026년의 2배를 상회하는 60.0조원, 2030년에는 157.3조원(GDP 대비 4.4%)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증가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5~2030년 기간 국가보증채무는 908.3% 증가할 계획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58.8% 수준이다. 또한 GDP 대비 국가보증채무 비율은 2025년 0.6%, 2026년 1.0%, 2027년 1.9%까지 상승하며 2030년에는 GDP의 4.4%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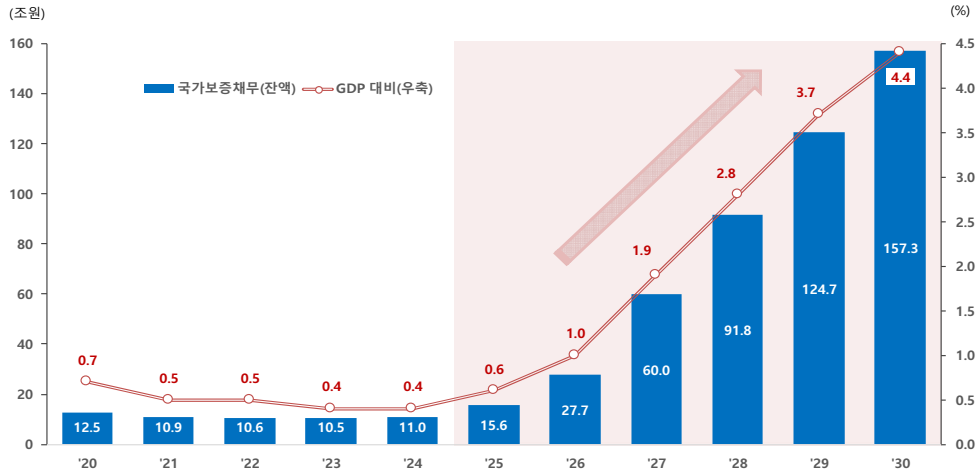
10)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⑦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보증채무 추이 및 계획]



주: 2026년 이후 계획치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5~2030년 국가보증채무 증가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국가보증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신규발행 및 발행량 확대 등에 기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보증채무 중 2026년 신규로 발행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잔액은 2026년 6.4조원에서 2030년 78.5조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며, 2027년부터 신규로 보증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은 2027년 10.4조원에서 2030년 41.7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잔액은 2025년 4.9조원에서 2030년 22.8조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며, 한국장학재단채권은 동기간 10.8조원에서 14.3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2030년 보증채무별 국가보증채무 잔액 추이]

(단위: 조원, %, %p)

구분	2025(A)	2026	2027	2028	2029	2030(B)	증감(B-A)
국가보증채무	15.6	27.7	60.0	91.8	124.7	157.3	141.7
(GDP 대비)	(0.6)	(1.0)	(1.9)	(2.8)	(3.7)	(4.4)	(3.8)
-장학재단채권	10.8	11.6	12.4	13.0	13.7	14.3	3.5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4.9	9.7	15.7	17.9	20.3	22.8	17.9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	6.4	21.5	40.1	59.4	78.5	78.5
-한미전략투자채권	-	-	10.4	20.8	31.3	41.7	41.7

주: 2025년은 결산 기준, 「2026~2030년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의 확정채무가 아니므로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특히 2030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적시 반영 필요

2027년에 발행 예정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1조 2,100억원은 근거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법률 제정 및 국회 보증동의 이후 이를 관리계획에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의 기금채권은 2027년 발행될 예정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보증채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제1호¹²⁾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는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한미전략투자채권이 국가보증채무로 제시되어 있을 뿐,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6~2030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 보증채무	27.7	60.0	91.8	124.7	157.3
(GDP 대비 ¹⁾ , %)	(1.0)	(1.9)	(2.8)	(3.7)	(4.4)
- 한국장학재단채권	11.6	12.4	13.0	13.7	14.3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9.7	15.7	17.9	20.3	22.8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6.4	21.5	40.1	59.4	78.5
- 한미전략투자채권 ²⁾	-	10.4 (70억 달러)	20.8 (140억 달러)	31.3 (210억 달러)	41.7 (280억 달러)

주 1)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 반영

2) 발행액을 달러 기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예산 편성 환율(1USD = 1,490원) 적용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12)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시점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기금채권 1조 2,1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현행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국회가 동 채권의 발행이 국가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2028년 이후의 기금채권 발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국가보증채무의 증가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동 기금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작성 시점에 채권 발행이 가능하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현행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것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제정되어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직 보증잔액이 없고 2027년부터 발행될 예정인 단계에서도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신규 보증채무를 발행 이전이라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도 법률 제정 및 보증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동 기금채권 관련 법률 제정 및 국회 보증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증채무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적시 반영하고, 동 채권발행에 따른 국가보증채무 계획의 변동 규모와 중기 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 기금의 보증채무를 포함한 총국가보증채무 규모, 증가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국가의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잔액 일부 국회 동의 절차 미이행 문제 등

국가가 지급보증함에 따라 사실상 보증채무의 성질을 갖는 보증잔액 중 일부가 국회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국가 재정으로 대신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시 중·장기적인 국가의 재무관리 계획과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채무 상환을 보증하는 역할만으로는 곧바로 국가의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불확정채무이기 때문에 확정채무인 국가채무 관

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정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예·결산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처럼 국가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고 미래 시점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 투입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국회의 재정통제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국가가 지급보증함에 따라 사실상 보증채무의 성질을 갖는 지급보증액 중 일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가 결산심사시 제출한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지급보증액은 기획재정부 소관 15.6조원 외에 국가보훈부 보훈기금의 지급보증액 6,374억 7,300만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급보증액 442억 1,60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급보증액 442억 1,600만원의 경우 2022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지급을 보증하여 추가적인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국가보훈부의 금융기관을 통한 대부(융자)의 경우 2026년과 2027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급을 보증하므로 국회에 보증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는 2027년 한국장학재단채권(3조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18조원), 한미전략투자채권(10.4조원, 미화 70억 달러) 총 41.4조원에 대해서만 국가보증동의안을 제출하였다.

[2025년말 기준 지급보증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보증처	피보증처	구분	지급보증액
재정경제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채권발행 지급보증	10,750,000
	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발행 지급보증	-
	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발행 지급보증	4,870,000
	소계		15,620,000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국민은행	장기저리 대부 지급보증	486,749
	농협은행	장기저리 대부 지급보증	150,724
	소계		637,473
중소벤처기업부	하나은행	대환대출 지급보증	28,392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신한은행	대환대출 지급보증	15,825
	소계		44,216

주: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급보증은 2022년에 시행된 대환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자료: 「2025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국가보훈부의 지급보증금액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저금리 위탁대부 사업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가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보훈부는 1962년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접 대부 사업을 수행해왔으나,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7년 위탁대부 방식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위탁대부는 민간은행 전용 상품인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데, 국가보훈부는 시중금리와 보훈금리 간의 차이를 보훈기금 재원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신용에 문제가 있어 민간은행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민간은행 위탁대부 상품을 통해 실시된 대출의 주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국가보훈부가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대출채권액을 지급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과 2027년에도 저금리 위탁대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금리 위탁대부의 이차보전을 위해 2026년 111억원, 2027년 94억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저금리 위탁대부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보훈부 대부(응자) 사업 개요]

구분	대상	대출기관	재원	담보	금리
위탁대부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또는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제대군인	위탁은행 (AA은행, BB은행)	은행자금 (금리차 국가 지원)	보훈급여금, 부동산, 보증보험	고정금리
직접대부	상기 대출 대상 중 은행 대출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 등	보훈관서	보훈기금	보훈급여금, 부동산, 연대보증	고정금리
채권양수	6개월 이상 미납된 위탁대부 채권		보훈기금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의 지급보증금액 또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증채무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의 규정대로 보증채무 부담을 위한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살펴본 바와 같이 2027년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급보증함에 따른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채권 발행 주체 또는 채권의 성질 등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외 없이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 재정 소요에 대한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회의 심의 및 동의 과정에서 국가 보증채무를 과소계상하고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 전체에 대해 국회에 보증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한 국가보증 총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보증채무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국가보증채무가 직접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국가 보증 하에 발행된 각 채권의 성격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보증채무는 그

자체로 정부의 지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각 채권의 주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 또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확정적인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증채무가 국가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확정채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보증하에 발행된 채권의 부실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가가 보증한 발행 채권의 성격을 바탕으로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가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채무 증가요인과 부실 발생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① 한국장학재단채권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의 경우 2026년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소득구간 확대 등 따라 보증잔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 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지출 소요는 2027년 4.9조원에서 2030년 6.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기준]

현행	변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초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 자녀 등 ▶(면제기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 의무상환 개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기초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지역대학의 경우 200% 이하), 다자녀 가구 자녀, 자립지원대상 등 ▶(면제기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지속 지원

주: 2026.2학기 기준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그러나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으로 최대 20년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지는 채권의 성격과 채무자가 취업을 한 후 본격적인 상환이 가능해지는 특성상 장학재단의 수입을 구성하는 대출 회수액은 지출 소요의 증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7년 1.9조원 수준인 대출 회수액은 2030년 2.2조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장학재단 발행 채권 관련 수입·지출 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출	취업후학자금대출	1.6	1.7	1.7	1.7	1.7
	일반학자금대출	1.0	1.0	1.0	1.1	1.1
	채권원금상환	1.8	2.2	3.0	2.9	3.6
	소계	4.4	4.9	5.7	5.7	6.4
수입	대출 회수액	1.8	1.9	2.1	2.1	2.2
채권발행액		2.6	3.0	3.6	3.6	4.2
보증잔액		11.6	12.4	13.0	13.7	14.3

주: 2026년 이후는 계획치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따라서 학자금대출 관련 보증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완화된 지원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학자금대출의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금융 관련 정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 실행 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금융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연체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대출지원 노력이 필요하며,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과다 채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 단계별 대출자 관리 및 1인당 총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출 실행 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안내하거나 저소득·저신용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및 기초복지 제도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말 기준 9.7조원으로 예상되는 보증잔액은 2030년 22.8조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신규 자금 집행 규모가 2026년 10.2조원에서 2030년 18.1조원으로 증가하고, 채권원금 상환 규모가 2026년 3.4조원에서 2030년 11.9조원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발행 채권 관련 수입·지출 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출	신규 자금 집행	10.2	15.2	16.6	17.3	18.1
	유동성 대응 자금	0.5	0.5	0.5	0.5	0.5
	채권원금상환	3.4	4.0	9.5	10.2	11.9
	소계	14.1	19.7	26.6	28.0	30.5
수입	기금 회수액	5.9	9.7	14.9	15.4	16.1
채권발행액		8.2	10.0	11.7	12.6	14.4
보증잔액		9.7	15.7	17.9	20.3	22.8

주: 2026년 이후는 계획치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그런데 2026년 2월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며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전략물자에 대한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출 소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금의 신규 자금 집행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채권 발행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이에 연동하여 국가보증채무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금관리 주체인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발된 공급망 교란, 전략물자에 대한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대상 분야와 필요한 지원 규모, 관련 기업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국가보증 채권 발행 전망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운용 과정에서는 재원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금융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출이 실행된 기업의 실제 자금 집행 현황과 신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③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이차전지 등 국가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정부는 2025년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발표 당시 기금 운용 규모를 향후 5년간 총 50조원(연간 10조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국민성장펀드 운용규모

확대와 함께 2025년 9월 75조원, 2026년 7월에는 90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이 제출되었고 국가가 보증할 발행 채권 규모 및 보증잔액 계획치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30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보증잔액은 78.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발행 채권 관련 수입·지출 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출	신규 자금 집행	5.8	13.5	17.0	18.7	18.1
	유동성 대응 자금	0.6	1.6	1.6	1.6	1.6
	채권원금상환	-	2.9	7.6	13.5	17.3
	소계	6.4	18.0	26.2	33.8	37.0
수입	기금 회수액	-	-	0.0	1.0	0.6
채권발행액		6.4	18.0	26.2	32.8	36.4
보증잔액		6.4	21.5	40.1	59.4	78.5

주: 2026년 이후는 계획치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AI 등 특정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AI 데이터센터(AIDC), 퍼지컬 AI) 등 첨단산업 관련 투자수요 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첨단전략산업기금 역할 증대에 따른 지출 소요 확대와 그에 따른 국가보증 채권 발행 규모 증가가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위험지표 개발을 통해 차주의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보증채무를 발생시키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금 집행 방식 및 유형별(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로 적절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후적으로 자금용도 확인, 신용등급 정기점검 및 부실사업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기금지원 사업의 부실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적기에 회수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저리대출 지원 또는 인프라 용자 방식의 경우 대상 기업의 자금 용도 및 신용등급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대출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으며,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펀드) 방식의 경우 투자 분야의 예상 수익률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획사업의 진척도 등에 기반한 대출금 지출 관리, 대출금 회수 관리, 차주의 약정준수 여부 파악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

④ 한미전략투자채권

한미전략투자자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2026.6월)에 따라, 전략적 투자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지원대상은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선정된 대미투자(2천억 달러) 및 조선협력투자(1,500억달러) 사업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집행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보증할 발행 채권 규모 및 보증잔액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채권 보증잔액은 2027년 10.4조원(70억 달러)을 시작으로 2030년 41.7조원(2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채권 관련 수입·지출 계획]

(단위: 억 달러(괄호 안은 조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출	신규 자금 집행	-	65(9.7)	65(9.7)	65(9.7)	65(9.7)
	유동성 대응 자금	-	5(0.7)	5(0.7)	5(0.7)	5(0.7)
	채권원금상환	-	-	-	-	-
	소계	-	70(10.4)	70(10.4)	70(10.4)	70(10.4)
수입	기금 회수액	-	-	-	-	-
채권발행액		-	70(10.4)	70(10.4)	70(10.4)	70(10.4)
보증잔액		-	70(10.4)	140(20.8)	210(31.3)	280(41.7)

주: 2026년 이후는 계획치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동 기금은 엄격한 기금지원 절차 이행, 전문적·객관적 사업심의, 지원사업의 리스크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원활한 자금 회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 및 투자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해 주요 투자사업, 기금 운용 및 조달 계획의 적정성, 리스크 수준 등 주요 리스크 지표(투자위험, 금리·유동성 위험, 환 위험 등)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 실행 및 채권발행 이후에도 투자원금 회수금, 배당금 등 투자 수익과 발행 채권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연계한 자산·부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 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기위험지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의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4¹⁾에 따라 수립된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²⁾ 및 연도별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의해 운영된다. 2022년 (구)기획재정부는 성과에 기반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 8)을 수립하였다. 현재의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해당 계획에 따라 운영·추진되고 있다.

2023년은 해당 기본계획의 첫 이행연도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부처별 대표성과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시기였다. 그리고 2024년은 성과관리의 실행 및 운영단계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가 시범 도입되어 성과창출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PI보드³⁾를 도입해 분기별 성과점검체계를 구축하였다. 2025년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며, 성과관리의 행정부담 경감, 예산 편성 환류 강화, 대국민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6년은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20여년 만에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하였다. 먼저,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이중 평가체계(부처 자체평가 → 기획예산처 확인·점검)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현행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사시 필수적인 세부사업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eie@assembly.go.kr, 6788-3777)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는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도와 제도개선 진행상황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하여 관리·공개하는 ‘성과관리 상황판’이다.

한편, 2023~2024년 기간 중 도입되었던 12대 핵심재정사업, 부처별 대표성과 지표, 다부처 협업과제, PI보드 등의 관리제도는 폐지되었다.

[최근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현황]

연도	추진목표	추진현황
2022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계획 수립	• '22-'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2023	• 성과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 12대 핵심재정사업 선정 • 부처별 대표성과지표 도입
2024	• 성과창출 기반 마련	• 다부처 협업과제 도입 • PI보드 도입
2025	• 제도 운영의 내실화	• 행정부담 경감(성과지표수 축소, 1,068→507개) • 예산편성 환류 강화 등
2026	•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	•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 • 성과계획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보 강화

주: 2023~2024년 기간 중 도입되었던 12대 핵심재정사업, 부처별 대표성과지표, 다부처 협업과제, PI보드 등의 관리제도는 2026년도부터 폐지

자료: (구)기획재정부,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크게 성과목표관리와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목표관리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⁴⁾ 성과계획서는 재정 운용에 앞서 프로그램별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해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미흡 원인 등을 보고한다.

4)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 ③ (생략)

④ 제14조의4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성과계획서 - 차년도(n+1년도) 프로그램별 성과지표·목표 설정(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①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성과 등을 중립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
② 성과보고서 - 전년도(n-1년도)의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 보고 (결산보고서 구성항목으로 국회 제출)	② 개별부처 주관 평가 - 복관기금평가(기획처), R&D평가(과기부), 재난안전사업평가(행안부), 균형발전사업평가(지방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③ 보조사업 연장평가 - 3년 주기 보조사업 실효성 등 평가(16~) (평가 결과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④ 재정사업 심층평가 - 객관적 성과검증 필요 사업군 심층 분석(05~)
	⑤ 기금평가 - 기금 운용 및 존치 타당성 평가(00~) (평가결과는 국무회의 보고 후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 제출)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6.1.

2026년부터 통합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①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 ②개별부처 주관 평가, ③보조사업 연장평가, ④재정사업 심층평가, ⑤기금평가 등으로 평가 항목과 방식이 정비되었다.

4-1. 2027년도 성과계획서 분석

가. 현황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성과계획서는 사업실시 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성과계획서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목적과 의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고, 사업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하는 것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8. 성과계획서 제85조의6(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작성 대상기관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2개 중앙관서(국가정보원 제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6.9.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열린재정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이며, 202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62개 중앙관서이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6조(예산회계)⁵⁾에 따라 성과계획서 작성기관에서 제외된다.

최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가 작성·제출되고 있다. 2024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프로그램 1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대표성과지표가 부처별 성과계획서에 수록되었다. 2025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관리와 사업 단위 성과평가를 연계하고 있다. 2027회계연도부터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 완화,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현황을 성과계획서에 포함하여 국회 예산 심사시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성과계획서 작성 경과]

회계연도	주요 내용
2009	• 2009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국가재정법」 제34조, 제71조)
2022	• 2022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024	• 2024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프로그램 1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 대표성과지표가 부처별 성과계획서에 수록
2025	• 2025회계연도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관리와 사업 단위 성과평가를 연계, 성과계획서 활용도를 제고
2027	• 2027회계연도부터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 완화,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현황을 성과계획서에 포함하여 국회 예산 심사시 활용도 제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6.9.

5) 「국가정보원법」

제16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62개 중앙관서의 성과관리 체계는 프로그램 목표 533개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는 2022년 1,047개에서 '1프로그램 1지표' 원칙 도입에 따라 2024년 509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원칙 완화에 따라 2027년 625개로 다소 증가하였다.

2027년도 성과지표는 성격별 분류에 따라 투입지표 24개(3.8%), 과정지표 22개(3.5%), 산출지표 180개(28.8%), 결과지표 399개(63.8%)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여부별 분류에 따르면 정량지표 485개(77.6%), 정성지표 140개(22.4%)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성과지표 설정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효과를 포괄적·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및 정량 지표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결과지표의 비중은 2024년 70.7%에서 2027년 63.8%로 감소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량지표의 비중은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 및 성과지표 추이]

(단위: 개, %)

회계 연도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정량	정성
2022	473	1,047 (100.0)	42 (4.0)	15 (1.4)	287 (27.4)	703 (67.1)	759 (72.5)	288 (27.5)
2023	475	1,069 (100.0)	16 (1.5)	30 (2.8)	295 (27.6)	728 (68.1)	794 (74.3)	275 (25.7)
2024	476	509 (100.0)	18 (3.5)	12 (2.4)	119 (23.4)	360 (70.7)	386 (75.8)	123 (24.2)
2025	488	529 (100.0)	15 (2.8)	17 (3.2)	137 (25.9)	360 (68.1)	412 (77.9)	117 (22.1)
2026	535	560 (100.0)	22 (3.9)	22 (3.9)	142 (25.4)	374 (66.8)	432 (77.1)	128 (22.9)
2027	533	625 (100.0)	24 (3.8)	22 (3.5)	180 (28.8)	399 (63.8)	485 (77.6)	140 (22.4)

주: 괄호 안은 성과지표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각 연도별 「성과계획서(총괄편)」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프로그램 평가에 따른 예산 환류장치 강화 필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성과목표 관리’와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구분되는데, 프로그램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목표 관리는 세부사업 단위로 시행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비해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제한적이므로 환류장치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단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으로서 정책적 독립성을 가지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부터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였던 4대 재정개혁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본적인 틀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예산체계를 정책목표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⁶⁾보다 성과 중심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4대 재정개혁의 관계]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의 활용방식
국가재정운용계획	• 중기(5년) 측면에서 전략적 자원배분의 단위로 프로그램을 활용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 부처별 지출한도(총액)의 배분단위로 프로그램을 활용
성과관리	•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 추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재정운영(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성과관리 등)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실시 - 재정운영의 핵심단위인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

자료: 기획예산처, 「정책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2004.11.)을 바탕으로 재작성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프로그램을 성과관리의 기본 단위로 상정하였으며 이후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

6)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 물건비 등의 용도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예산을 용도별로 분류하는 비목 역시 복잡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성과관리 등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성과계획서 작성이 법제화된 2007년 이후 정부는 ①부처의 존재이유(목적)와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임무, ②임무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미래상에 해당하는 비전, ③임무와 비전 등으로부터 도출된 전략목표, ④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인 성과목표, ⑤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인 관리과제로 구성된 성과계획서 작성을 추진하였다.

2021회계연도까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프로그램과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 부처의 업무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2회계연도부터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으로 설정되던 성과지표 역시 이때부터 프로그램 단위로만 설정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부터 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안 편성에 활용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재정 운용에 환류하고자 하였다.

2027회계연도부터는 ‘1프로그램 1지표’ 원칙을 개선하여 세부사업 규모, 사업 목적의 이질성 정도 등에 따라 별도 성과지표 설정 또는 프로그램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성과관리의 기본단위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이]

회계연도	주요 내용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회계연도부터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및 거시적·전략적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제출(지침 개정)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프로그램 1지표’를 원칙으로 성과지표를 설정(지침 개정) 대표성과지표가 부처별 성과계획서에 수록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안 편성에 활용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
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7회계연도부터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 완화,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현황을 성과계획서에 포함하여 국회 예산 심사시 활용도 제고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6.9.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 기반한 성과관리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당시 취지와 유사하게 볼 수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의 성과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85조의2는 재정사업에 대해서 ①성과목표 관리와 ②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⁷⁾ 그런데 성과목표관리는 프로그램 단위로,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세부사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단위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분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리제도	① 성과계획서 ② 성과보고서	①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② 개별부처 주관 평가 ③ 보조사업 연장평가 ④ 재정사업 심층평가 ⑤ 기금평가
재정사업 단위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세부사업
평가결과 환류체계	☐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제도·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환류 •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내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프로그램 간 자원배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계 ☐ 성과목표관리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2025년~) • 우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지원 조치로 제한	☐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안 편성에 있어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것을 목적 •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경우,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의 15%를 구조조정하는 한편 성과개선계획을 수립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7)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 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살펴보면, 성과목표관리의 경우 정부는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제도·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환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목표 미달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진단·분석·점검하고, 컨설팅·성과평가 연계 등을 통해 성과개선을 유도한다. 목표 미달성 프로그램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주요 장애요인, 성과관리 대응노력 등을 분석하고, 성과평가 등과 연계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내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프로그램 간 재원배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프로그램 평가 초점은 프로그램 내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프로그램 간 재원배분 조정에 맞추어져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부처에서 프로그램 내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이 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최근 5년간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별 우선순위 조정이나 재원배분은 큰 변화 없이 기존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별 자원배분 추이]

(단위: 억원, %)

전략 목표	프로그램	2022	2022비중 (A)	2027 (안)	2027(안) 비중(B)	비중증감 (B-A)
1	농가경영안정	41,918	24.9	56,469	26.9	2.0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21,807	13.0	23,049	11.0	△2.0
	농업생산기반정비	19,225	11.4	21,663	10.3	△1.1
	소계	82,950	49.4	101,181	48.1	△1.3
2	양곡관리	22,353	13.3	26,194	12.5	△0.8
	축산업진흥및동물복지향상	10,718	6.4	10,056	4.8	△1.6
	국제협력협상	1,190	0.7	1,113	0.5	△0.2
	소계	34,261	20.4	37,363	17.8	△2.6
3	농업신산업육성	6,842	4.1	5,658	2.7	△1.4
	식품외식산업육성	9,178	5.5	9,779	4.7	△0.8
	종자관리	1,036	0.6	1,092	0.5	△0.1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11,387	6.8	25,967	12.4	5.6
	소계	28,443	16.9	42,496	20.2	3.3
4	농산물품질관리	917	0.5	1,049	0.5	-
	농림축산검역검사	1,406	0.8	1,482	0.7	△0.1
	가축방역및축산물안전관리	3,669	2.2	3,688	1.8	△0.4
	소계	5,992	3.6	6,219	3.0	△0.6
5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15,831	9.4	28,094	13.4	4.0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41	0.0	41	0.0	-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560	0.3	395	0.2	△0.1
	소계	16,432	9.8	28,530	13.6	3.8
합계		168,078	100.0	210,294	1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정부는 2025년도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일환으로 성과목표관리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다. 우수·미흡 프로그램은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결과지표 등 정량 기준과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한 성과개선 노력과 우수성과 같은 정성적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우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는 개선계획 수립 등 행정지원 조치로 그친다.

2026년도에는 각각 6개의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는데, 이들 프로그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수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전년대비 3~22% 증액 편성되었으나, 항공기사업(방위사업청)과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프로그램

(국가데이터처)의 경우 전년대비 감액되었다.⁸⁾

미흡 프로그램의 경우 온실가스감축(새만금청), 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우정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나, 산림재난관리(산림청),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민주평통), 기금증식(보훈부)의 경우 전년대비 9~586% 증액 편성되는 등 미흡 프로그램 평가에 따른 환류의 일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수·미흡 프로그램의 2027년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부처명)		2026 예산	2027 예산안	증감	증감률
우 수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식약처)	69,682	72,373	2,691	3.9
	소비자 후생증진(공정위)	64,736	78,762	14,026	21.7
	국내관광 활성화(문체부)	1,057,683	1,148,476	90,793	8.6
	항공기사업(방사청)	3,525,132	1,874,649	△1,650,483	△46.8
	지방교육정책 지원(교육부)	6,212,945	6,421,036	208,091	3.4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데이터처)	188,290	142,020	△46,270	△24.6
미 흡	온실가스감축(새만금청)	12,028	8,104	△3,924	△32.6
	산림재난관리(산림청)	144,436	990,642	846,206	585.9
	구입·전세자금(국토부)	10,301,581	5,280,000	△5,021,581	△48.7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민주평통)	8,793	9,567	774	8.8
	우정서비스(과기부)	1,068,431	1,029,335	△39,096	△3.7
	기금증식(보훈부)	22,785	24,935	2,150	9.4

자료: 각 부처별 「성과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환류체계를 살펴보면,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안 편성에 있어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경우,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의 15%를 구조조정하는 한편 성과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8)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은 5년 단위 기본통계 종료로 인한 자연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에 비해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각 부처가 평가에 대응하는 우선순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어,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성과관리의 예산안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관리 단위(프로그램)와 예산심의 단위(세부사업)가 달라 성과와 예산의 연계가 사실상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성과관리 대상 제외 사업의 성과정보 제공 강화 필요

총지출 중 성과관리 예산의 비중은 약 59% 수준이고 타부처 수행사업 등은 소관부처의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예산소관 부처와 집행부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소관 부처의 성과계획서 등에 이들 재정사업의 종합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정보를 수록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프로그램 내 구성 사업 전부가 교부금, 정부내부거래, 타부처 수행사업 등 성과관리 제외대상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성과관리 대상 및 제외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성과관리 대상	□ 원칙적으로 예산 체계상 모든 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작성
성과관리 제외	□ 프로그램 내 구성 사업 전부가 인건비, 기본경비, 정부내부거래, 타부처 수행사업 등 성과관리 제외 대상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제외
	인건비, 인건비 성 비용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 해당 프로그램 사업범위 내의 인건비는 성과 관리대상에 포함
	기본경비, 기본 경비성 비용
	• 기본행정경비,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등의 기본경비 및 기본경비성 비용 * 해당 프로그램 사업범위내의 기본경비는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
	정부내부거래
	•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 보전지출
	교부금
	• 법정 교부금,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예비비
	• 예비비
성과관리 제외	차입이자상환, 원리금 상환
	• 차입이자상환, 원리금 상환, 대출금 또는 원금상환 이차지원 * 사업성 대출지원 및 이차보전은 성과관리대상에 포함
	청사관리
	• 청사시설 확충·개선사업, 청사관리비용
	타부처 수행사업
	• 타부처 수행사업
	위원회 운영 등
	• 위원회 운영, 자문회의 등의 운영사업
성과관리 제외	기관 운영 출연금 사업
	• 매년 지급되는 기관운영 출연금 사업, 소속기관 운영지원 사업 * 기관운영 출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기관운영 성격이 아닌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
성과관리 제외	부처특성 (대외공개 곤란)
	• 관계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 대외공개가 곤란한 경우

주: 일반재정·정보화 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26.4.

2027년도 성과계획서의 경우 정부 총지출(안) 819.8조원 중 성과관리 대상으로 설정된 예산은 481.7조원으로 58.8%이다. 정부 총지출의 약 40%는 타부처 수행사업, 교부금 등의 사유로 제외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경우 미래대응기금 등 소관 기금이 타 중앙관서의 성과관리대상으로 설정되어 자체 성과관리 대상 설정비율이 낮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경우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중이 높아 성과관리 대상 설정 비중이 낮다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비율]

(단위: 억원, %)

구분		2026년도			2027년도		
		총지출 (A)	설정예산 (B)	비중 (B/A)	총지출 (C)	설정예산 (D)	비중 (D/C)
전체 부처		7,520,977	4,383,519	58.3	8,198,176	4,816,730	58.8
성과관리 비중이 낮은 부처	기획예산처	109,447	666	0.6	571,202	2,852	0.5
	행정안전부	863,935	118,643	13.7	847,036	67,527	8.0
	재정경제부	387,590	37,605	9.7	397,223	47,171	11.9
	교육부	1,111,733	228,877	20.6	1,126,647	262,066	23.3
성과관리 비중이 높은 부처	금융위원회	21,526	93,081	432.4	12,992	123,636	95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30	2,216	303.6	922	2,531	274.5
	질병관리청	5,254	11,475	218.4	5,686	12,348	217.2
	원자력안전위원회	1,045	2,108	201.7	1,328	2,212	166.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26.9.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⁹⁾에 따라 국가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될 계획이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총 운용규모(안)는 215조 1,623억원이고, 이중 총지출 규모는 45조 3,858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 소관이지만, 실제 사업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계정 17개 부처 130개 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될 예정이다.

9) 2026년 9월 3일 정부안(의안번호 21052)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집행부처별 총지출(안)]

(단위: 억원)

구분	사업수	2027예산안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총괄	합계
행안부	5	-	-	85,902	-	-	85,902
과기부	38	-	66,006	-	17,145	-	85,151
교육부	13	-	-	-	49,315	-	49,315
국토부	10	30,759	10,350	1,800	-	-	42,919
복지부	3	36,254	377	-	-	-	36,631
금융위	7	20,386	15,000	-	-	-	35,386
기후부	14	-	24,874	-	1,576	-	26,450
고용부	5	21,060	-	-	4,068	-	25,667
중기부	9	14,855	1,966	-	1,366	-	18,188
농식품부	3	-	-	11,921	-	-	11,921
문체부	3	8,320	-	1,523	-	-	9,843
재경부	4	-	8,500	1,000	-	-	9,500
산업부	7	-	7,099	-	2,019	-	9,118
우주청	5	-	7,465	-	-	-	7,465
성평등부	1	1,663	-	-	-	-	1,663
해수부	2	-	-	507	-	-	507
기획처	1	-	-	-	-	233	233
합계	130	133,296	141,638	102,662	76,029	233	453,858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미래대응기금의 예산 소관은 기획예산처가 하고, 실제 사업집행은 산업부 등 17개 부처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각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에 대해서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예산은 기획예산처 소관이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실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정보는 기획예산처가 아닌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17개 개별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 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재정관리는 단순히 개별사업이나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보다는 기금관리주체의 비전-임무-전략-프로그램 등 일련의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다.

따라서 예산소관 부처와 집행부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소관 부처의 성과계획서에 집행부처의 성과정보를 수록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책임성 강화 필요

첫째, 조직의 실·국장이 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담당부서가 원칙적으로 국 단위와 일치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담당부서가 여러 실·국에 달하고 있어 프로그램 성과,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책임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은 연계성, 포괄성, 동질성, 책임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책임성 원칙은 조직의 실·국장이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담당부서가 원칙적으로 국(局) 단위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원칙]

구분	주요 내용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의 전략목표와 인과관계 및 연계성이 높게 구성 성과목표체계는 임무-비전-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로 이루어지므로 프로그램은 상위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논리가 분명할 필요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결과 도출을 전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의 일부만이 아닌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 의미있는 결과지표 설정이 가능
동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내 하위 단위 및 세부 사업은 동일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동질적인 사업으로 구성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실·국장이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달성 여부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담당부서가 원칙적으로 국 단위와 일치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26.4.

이와 같이, 정부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관리를 실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프로그램별 책임자를 프로그램에 속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실·국의 관리자(실·국장)로 명시하여 프로그램과 사업수행주체(조직)를 연계하는 방식의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담당부서가 여러 실국에 달하고 있어 프로그램 성과,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책임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의 경우 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과목표담당관은 농촌소득에너지국이지만, 사업수행은 농업정

책국, 농촌소득에너지국, 농산업혁신국, 축산정책국, 식량정책국 등 5개 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소관 실·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소관 실국 및 과	2027 예산안
피해보전직불	농업정책국	12,2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농업정책국	1,93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출연	농업정책국	200,000
재보험금	농촌소득에너지국	50,000
농업재해보험	농촌소득에너지국	956,768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농촌소득에너지국	128,782
재해대책비	농촌소득에너지국	180,000
농업정책보험금응원 기관운영비 지원	농촌소득에너지국	11,659
농업자금이차보전	농업정책국	607,724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	농산업혁신국	2,599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농산업혁신국	8,608
필수농자재등 지원체계 구축	농산업혁신국	1,154
농지이양은퇴직불	농촌소득에너지국	31,218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촌소득에너지국	122,754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농업정책국	182,400
직불제이행점검	농촌소득에너지국	48,013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촌소득에너지국 축산정책국 식량정책국 전략작물육성팀	3,061,522
사업관리비	농촌소득에너지국	14,905
농기계임대(자율)	농산업혁신국	24,797
19개 세부사업	5개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농촌소득에너지국 소관 농업재해보험 등 사업의 “농업재해보험 가입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 예산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과목표담당관은 종합교통정책관이지만, 사업수행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빌리티국, 종합교통정책관 등 3개 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육성 프로그램 소관 실·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소관 실국 및 과	2027예산안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45,304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865,154
모빌리티활성화지원	모빌리티국	2,845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국	2,294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종합교통정책관	8,550
택시산업지원	종합교통정책관	12,187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종합교통정책관	244,135
운수종사자안전적격성검사	종합교통정책관	400
관광중심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종합교통정책관	3,120
9개 세부사업	3개 국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정부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러 조직이 1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달성여부,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하게 확보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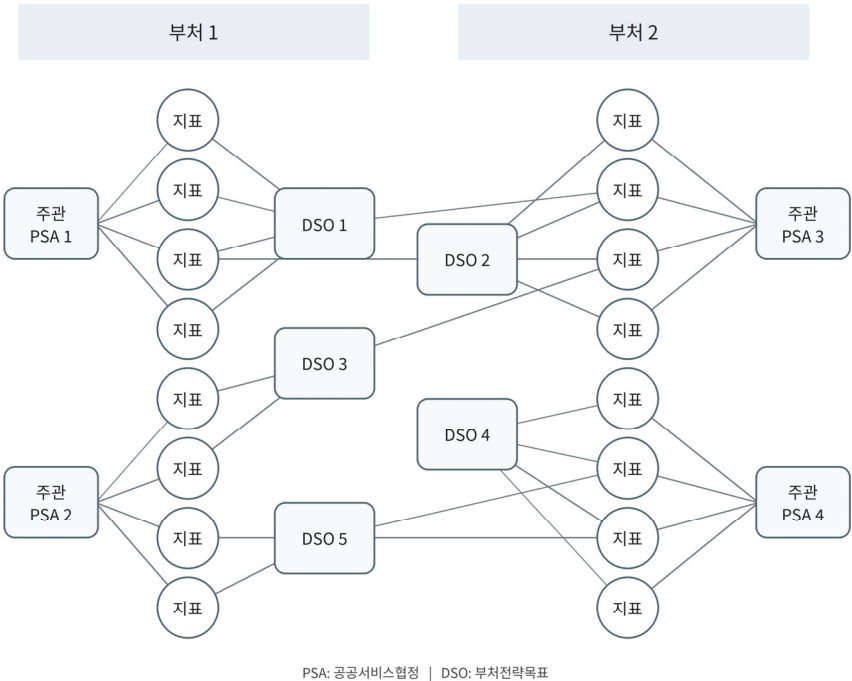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례는 이외에도 전 부처에 걸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획예산처는 사례를 추가 조사하고, 성과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의 프로그램에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성과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총괄 책임자와 참여 조직별 역할을 정하고, 공동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로 영국은 과거 공공서비스협정(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을 통해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 성과목표와 부처별 전략목표를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하였다.¹⁰⁾

각 협정에는 성과목표와 측정지표, 달성전략 및 주관·협력 부처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주관 부처 장관에게 협정 이행의 책임을 부여하고 고위책임담당관을 지정하였으며, 주관·협력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와 관련 내각 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였다.

[다른 주관부처와의 협력관계]



PSA: 공공서비스협정 | DSO: 부처전략목표

주: DSO: 부처별 전략목표(Departmental Strategic Objectives)
 자료: 최영준 외, 「대전환기 정책의 키워드: 성장, 분배, 가치 성과」, 박영사, 2023.

10) 동 내용은 최영준의 「대전환기 정책의 키워드: 성장, 분배, 가치, 성과」(박영사, 2023.)의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PSA는 경직된 목표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체계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2010년 폐지되었다. 다만, 현행 영국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s) 체계에서도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공동의 성과목표와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예산 및 연차 실적보고와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제도의 존속 여부와 별개로 여러 조직이 참여하는 성과목표에 대한 공동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부처 간 공동 성과목표 관리 사례: 범죄 감소]

구분	주요 내용
공동 성과목표	범죄 감소(Reduce crime)
주관 및 책임자	내무부(Home Office)가 주관하고, 담당 장관과 고위 책임자를 계획에 명시
참여 부처별 역할	교육부: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 / 보건사회복지부: 범죄 관련 건강 취약요인 완화 및 피해자 의료지원 / 법무부: 사법처리 및 재범 감소 / 노동연금부: 범죄 연루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등
성과지표	살인사건 수, 흉기 피해로 입원한 25세 미만 인원, 강도·절도 등 생활주변 범죄 발생 건수 등
예산과의 연계	지출검토 과정에서 예산요구가 성과목표와 지표 개선에 기여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재원배분 판단에 활용
이행점검 및 공개	재무부·내각부에 정기적으로 실적을 보고하고, 연차보고서 및 결산서를 통해 이행성과 공개

주: 2021년 성과달성계획(Outcome Delivery Plans) 체계의 사례임

자료: Home Office, Outcome Delivery Plan: 2021 to 2022, 제C절 '1. Reduce crime'; HM Treasury, Spending Review 2021: Priority outcomes and metrics, 2021.10., 2~3쪽 및 11쪽을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는 다부처 연계협업이 요구되는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협업과제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사업별로 예시와 같이 다부처 협업과제 해당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당시 정부는 재정운용혁신을 위해 다부처 정책수단이 필요한 복잡한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협업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¹¹⁾

11) 기획재정부,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 2024.8. (구)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발표하면서 협업예산에 대한 3대 유형 16개 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6대 과제는 인구감소지역 패키지지원, 문화가 있는 산단, 바이오 성과도약 프로젝트(Bio 원팀) 등이며, 이들 과제에는 최소 24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당시 2025년도 성과계획서 상 협업과제로 명시된 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협업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도 부재하였다. 이러한 협업과제의 성과관리는 2026년도부터 폐지되었다.

[202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중 협업예산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작성 내용	<div>□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부처 연계협업이 요구되는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협업과제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지표를 설정 세부사업별로 다부처 협업과제 해당 여부를 기재 																																																
예시	<div>[성과계획서 상 협업과제 명시 예시]</div> <div>(단위: 백만원)</div> <table> <tr> <th rowspan="2"></th><th rowspan="2">회계 구분</th><th rowspan="2">'23결산</th><th rowspan="2">'24예산</th><th rowspan="2">'25 예산안</th><th colspan="2">재정사업 성과평가</th><th rowspan="2">비고</th></tr> <tr> <th>평가명</th><th>결과</th></tr> <tr> <td>(1) 단위사업명(예산코드)</td><td>일반 회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세부사업명(코드)</td><td></td><td></td><td></td><td></td><td>자율</td><td>우수</td><td>(R&D)</td></tr> <tr> <td>세부사업명(코드)</td><td></td><td></td><td></td><td></td><td></td><td></td><td>(협업과제)</td></tr> <tr> <td>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환경부)(600)</td><td>기후 기금</td><td>114,457</td><td>148,429</td><td>37,563</td><td></td><td></td><td>협업과제</td></tr> </table>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 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평가명	결과	(1) 단위사업명(예산코드)	일반 회계							세부사업명(코드)					자율	우수	(R&D)	세부사업명(코드)							(협업과제)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환경부)(600)	기후 기금	114,457	148,429	37,563			협업과제
	회계 구분	'23결산	'24예산	'25 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평가명	결과																																											
(1) 단위사업명(예산코드)	일반 회계																																																
세부사업명(코드)					자율	우수	(R&D)																																										
세부사업명(코드)							(협업과제)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환경부)(600)	기후 기금	114,457	148,429	37,563			협업과제																																										

자료: 기획재정부,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24.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실·국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을 총괄하는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참여 부서별 역할과 성과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관 세부사업의 실적과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구성 및 자원배분 조정에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 국가·부처의 주요 재정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수단 마련 필요

핵심재정사업과 대표성과지표 관리제도가 2026년도부터 폐지되었는데, 국가·부처의 주요 재정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수단을 마련·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정부의 핵심 정책비전(국정과제)이 반영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조기 성과창출을 지원하여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그래픽 정보로 공개하여 국민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되었다가 2026년부터 폐지되었다.

[핵심재정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도입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핵심 정책비전(국정과제)이 반영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조기 성과창출을 지원하여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도입(2026년부터 폐지) 평가결과를 그래픽 정보로 공개하여 국민 관심 및 이해 제고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사업별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구)기획재정부, 소관부처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 12대 핵심재정사업 군을 5년간(2023~2027)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음 연중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투자 방향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대국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를 성과포털 등을 통해 공개
해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MA모델 중장기 전략(PMA)과 성과계획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우선순위(CAP) 목표와 부처별 우선순위(AP)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계획 작성 및 목표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시행 분기마다 성과(진행상황)를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Key Milestones(이정표, 프로젝트 일정관리를 위한 개념)라는 정성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행주체와 기한을 명시해 공개

자료: (구)기획재정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로는 대상사업별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구)기획재정부, 소관부처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하고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5년간(2023~2027)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연중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투자 방향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한편 2023년 1월부터 핵심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를 성과포털 등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동 제도는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수행하는 PMA(President's Management Agenda)와 CAP(Cross-Agency Priority)를 모델로 도입되었다. 미국은 새 정부 출범 시에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는 4년 단위 중장기 전략(PMA)과 2년 단위 연간 성과계획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우선순위(CAP) 목표와 부처별 우선순위(AP; Agency Priority)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계획 작성 및 목표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분기마다 성과(진행상황)를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Key Milestones(이정표, 프로젝트 일정관리를 위한 개념)라는 정성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행주체와 기한을 명시해 공개하여 왔다.¹²⁾

12대 핵심재정사업은 ①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②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③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④ 생활물가 안정 지원, ⑤ 지역 균형 발전, ⑥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⑦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⑧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⑨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⑩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⑪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⑫ 국격·외교 역량 강화이다.

[핵심재정사업 현황(2022~2025년)]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관련 사업(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1)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장애인돌봄
	(3)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약계좌
	(4) 생활물가 안정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 지역균형 발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6)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AI반도체 사업화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7)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 구축
	(8)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외투기업 및 유턴기업 지원
	(9)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TIPS 프로그램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 책임강화	(10)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산불대응능력 강화
	(11)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12) 국격·외교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ODA

자료: (구)기획재정부

12) 2026년 현재 PMA와 CAP Goals는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정권이 바뀌면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목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표성과지표는 중앙행정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주요임무 등 부처의 핵심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성과지표이다.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각 부처 성과계획서에 수록되어 있었다가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서는 폐지되었다.

대표성과지표는 부처 핵심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지향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기관은 성과목표관리 대상 58개 부처 중 업무특성,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45개 부처로 선정되었다. 대표성과지표는 부처별로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검토와 기획재정부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1~5개로 선정되었으며, 대표성과지표는 총 105개이다.

[대표성과지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요	□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주요임무 등을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과지표로 설정·공개
설정방향	□ 부처 핵심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설정기준	□ (핵심성 및 포괄성) 개별사업 지표 → 핵심업무 포괄 지표 • 국정과제, 업무계획, 예산규모가 큰 사업 등 부처 핵심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 □ (국민 체감도) 행정편의적 복합지표 → 직관적 지표 •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적 관심 및 확산효과가 커서 수용가능성이 높은 지표 □ (신뢰성) 주관적 지표 → 공신력 있는 객관적 지표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근거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출처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지표
대상 기관	□ 성과목표관리 대상 58개 부처 중 업무특성,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45개 부처를 선정(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대상) • 제외부처(13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민주평통, 감사원, 국무조정실, 인권위, 5·18위원회, 과거사위원회, 공수처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3.1.

[부처별 대표성과지표(105개) 현황]

(단위: 개)

구분	지표수	대표성과지표명
기재부	2	관리재정수지, 1인당 GNI
교육부	3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대학생 1인당 교육비, 평생학습 참여율
과기부	3	국내외 SCI논문 질적수준, ICT산업 생산(매출)액, 세계적 수준 달성 전략기술 육성
외교부	3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건수, 국별 협력사업 성과달성도, 재외국민보호 제도 만족도
통일부	2	북한정보포털 공개자료 등록증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법무부	3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범률,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국방부	3	군장비가동률, 사이버보안 수준 강화 이행률, 병영생활 만족도
행안부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비율 건전성 유지,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을
보훈부	2	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 보훈문화의식 개선도
문체부	2	콘텐츠산업 생산지수, 국민여행 총량, 생활체육참여율
농식품부	5	농가소득 증가율, 전략작물 자급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률, 농축산물 안전 적합률, 농촌 삶의 질 만족도
산업부	3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수출액, 에너지원단위
복지부	3	상대적 빈곤율,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환경부	3	하천 수질목표 달성률,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고용부	5	15~64세 고용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인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일터혁신 실태조사 점수, 사고사망만인율
여가부	3	여성·아동폭력피해자 통합지원 건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국토부	5	공공주택 공급실적, 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 실적, 물류산업 매출액, 통행시간 단축률, 고속일반 광역열차 이용객수
해수부	3	해운산업 수송능력, 수산물 생산액, 해양생태계 건강성
중기부	3	자금공급 수혜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 창업지원기업 평균 매출액, 정책수혜 소상공인 생존율
인사처	2	인재 수요부처 만족도, 공직윤리 개선 체감도
법제처	2	정부입법 제때 마련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
식약처	2	식품 등 안전성 확보율,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방통위	2	공익적 방송 프로그램 만족, 통신분쟁조정 해결률
공정위	2	소비자피해해결 조치비율,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도
금융위	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상환 부담 완화, 혁신성장펀드 조성실적
권익위	1	국가청렴도
원안위	2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6mSv 이상 피폭 종사자수
개보위	1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율
국세청	2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관세청	2	집중관리품목 수입검사 핵심 적발건수,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분쟁 해소율
조달청	1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실적
통계청	1	통계정보서비스(KOSIS, SGIS, MDIS) 이용률
병무청	2	병역판정검사 정밀검사율, 군소요 충원율
방사청	2	적기 요구성능 달성률, 적기 추진율
경찰청	3	총범죄 검거율,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
소방청	1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유산청	2	국가유산 보존관리 역량지수, 문화유산 활용사업 향유인원수
농진청	1	전략작물 개발품종 대체율
산림청	2	산림재난 발생면적,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율
특허청	2	고객지향적 심사·심판 품질 지수, 위조상품 유통차단 실적
질병청	2	주요 만성감염병 사망자 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기상청	2	강수유무정확도, 지진정보 제공 신속도
행복청	1	종합공정률
새만금청	1	새만금 주요시설 공정률
해경청	2	민·관·군 구조자원 1시간 이내 도착률,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

주: 부처명은 변경 이전의 명칭임

자료: 각 부처의 「2025년도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제작성

기획예산처는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2026.1) 등에서 구체적인 폐지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핵심재정사업 관리제도는 폐지하고¹³⁾ 다부처·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수단으로서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핵심재정사업은 국정과제와 관련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매년 평가대상이 바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성과지표의 경우에도, 성과목표관리 정보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부처별 대표성과지표는 폐지하고, 부처별 성과목표관리 시각화 자료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8월까지 열린재정 포털에서 부처별 성과목표관리 결과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0월말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고,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도 제외되어 있다.

[핵심재정사업 및 대표성과지표 폐지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핵심 재정사업 관련	☐ 재정사업 심층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재정사업 관리제도는 폐지 • 다부처·대규모 사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 수단으로서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를 강화 • 단기적으로 지출 효율화가 어려운 다부처 사업군, 대규모 사업 등 평가 난이도·중요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평가 추진
대표 성과지표 관련	☐ 성과목표관리 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대표성과지표는 폐지하고, 부처별 성과목표관리 시각화 자료로 대체 • 열린재정 포털에서 부처별 성과목표관리 결과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공(8월) → 10월말 현재 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텍스트 기반 자료로 정보가 여러 페이지에 분산되어 가독성이 낮음 • 부처별 임무-전략목표-프로그램 성과목표 및 달성도를 단일 화면형 콘텐츠로 구성하여 공개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6.1.

13) 현재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br/UOPKOBRA05>)에는 12개 핵심재정사업 중 10개 사업의 추진현황이 게시되어 있으나, 2024회계연도 이후 실적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한편, 대표성과지표의 성과달성도 현황을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의 경우 전체 105개 지표 중 67개(63.8%)만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27개(25.7%)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11개(10.5%)는 지표가 미집계되거나 신규 지표로서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4회계연도의 성과달성도는 58.1%로 하락한 바 있다.

[대표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2023~2024회계연도)]

(단위: 개, %)

구분		달성	미달성	미집계 등	합계
2023회계연도	지표수	67	27	11	105
	비중	63.8	25.7	10.5	100.0
2024회계연도	지표수	61	19	25	105
	비중	58.1	18.1	23.8	100.0

주: 미집계 등은 성과계획서 작성 당시 지표가 미집계되거나 신규 지표로서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것
 자료: 각 부처의 각년도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핵심재정사업과 대표성과지표 제도의 경우 성과달성도도 하락하고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지표라는 점에서 개편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다만, 이들 관리제도가 그동안 국가와 부처를 대표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알기 쉽게 국민과 국회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2.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안 연계 분석

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개요

정부는 2026년부터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본격 도입·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중앙관서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예산처가 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평가제외 및 평가결과의 관대화 등 자율평가 방식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기존 개별 평가와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권기금사업, 재난안전사업, 균형발전사업,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통합평가체계를 운영한다. 개별 평가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평가 대상은 중앙관서가 수행하는 주요 재정사업이며,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선정하되, 도로, 철도 등 물리적·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 국가연구개발 평가대상 사업, 종료사업, 소액사업 등 평가실익이 낮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은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이다.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은 사업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평가항목이 추가 적용된다.

평가절차는 ①중앙관서가 제출한 기초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 서면평가 실시, ② 부처 소명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면평가 실시, ③이견이 크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쟁점사업평가 및 추가 대면평가 수행, ④분과회의 및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 확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예산편성, 성과관리 개선계획 및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도입배경 및 목적	<p>□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2026년부터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본격 도입·운영 • 기존에는 중앙관서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예산처가 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평가제외 및 평가결과의 관대화 등 자율평가 방식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 <p>□ 재정성과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성과 달성 수준 뿐만 아니라 사업 필요성, 집행 효율성, 재정지원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재정투자의 효과성 제고 • 유사·중복사업 정비, 성과 부진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 •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 개선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환류체계를 구축
개별 평가와 연계·운영 강화	<p>□ 통합평가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기금사업, 재난안전사업, 균형발전사업,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통합평가 • 개별평가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 평가결과를 지출구조조정 및 성과관리 개선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재정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개선 유도
통합평가 대상	<p>□ 평가대상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관서가 수행하는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실시 • 평가대상은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선정하되, 도로, 철도 등 물리적·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평가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을 포괄하여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점검 수행 <p>□ 평가 제외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 국가연구개발 평가대상 사업, 종료사업, 소액사업 등 평가실익이 낮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p>□ 평가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개 중앙관서 소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총 2,48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집행효율성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2026.6.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2,487개 사업 중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감액+통합+폐지 등급) 수는 901개(36.2%)로 평가되었다.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

구분	평가대상 사업	평가결과					지출구조 조정대상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통합	폐지	
사업수	2,487	89 (3.6)	1,497 (60.2)	858 (34.5)	40 (1.6)	3 (0.1)	901 (36.2)
예산액	1,854,354	57,763 (3.1)	1,245,192 (67.1)	509,657 (27.5)	41,688 (2.2)	145 (0.0)	551,490 (29.7)

주: 지출구조조정 대상은 감액+통합+폐지를 합한 것임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2026.6.

나. 평가결과와 예산안 편성과의 연계 강화 필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정상추진 등급을 받은 사업의 예산안이 감액되거나 통합·폐지 등급을 받은 사업의 예산안이 증액되는 등 평가결과가 예산안에 환류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미이행 사유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는 한편, 성과부진의 원인을 외생적 요인과 개선가능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투자 또는 구조개편 등 차등적인 예산환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강력하게 연계한다는 방침이다.¹⁴⁾ 우선, 성과 부실(감액·폐지 등급) 판정 사업은 엄격한 지출구조조정 원칙 하에 부처 예산요구안에 감액 반영(감액사업 15% 이상, 폐지사업 전액 삭감)된다. 사업개선으로 평가된 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성과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성과 우수사업은 증액 권고, 차년도 평가 유예 및 담당자 포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등급별 주요 내용 및 환류방안]

구분		주요 내용 및 환류방안
기본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강력하게 연계 성과부실(감액·폐지 등급) 사업은 엄격한 지출구조조정 원칙 하에 감액 반영
평가등급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하고 정책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적정 소요 등 지속 지원 필요 성과 우수 사업은 증액 권고, 차년도 평가 유예 및 담당자 포상 추진
	사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역사업별 통합, 수혜자 대상 조정, 비목 전환 등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성과 저조, 집행부진 등으로 예산 규모 감액이 필요 전년 대비 15% 이상 감액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년도 예산 반영 불가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중복 사업 및 관련 사업과 통합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2026.5.18.

그런데, 정상추진 등급을 받은 사업의 2027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감액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업개발협력 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AI정밀의료SW선도기반 조성사업,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사업 등은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되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전체 159개 평가 대상 사업 중 3개 사업이 정상추진 판정을 받았으나,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의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액되었다.

한편, 지출구조조정 대상(감액, 폐지, 통합) 중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미반영사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정상추진 등급을 받은 사업 중 감액사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상추진 등급 주요 사업의 2027년 예산안 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처명)	2026 예산	2027 예산안	증감	감액사유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농식품부)	341,351	336,238	△5,113	제시하고 있지 않음
농업개발협력(ODA)(농식품부)	41,440	29,338	△12,102	
AI정밀의료SW선도기반 조성(과기부)	12,650	10,900	△1,750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행안부)	6,330	6,091	△239	
국가시험원운영(복지부)	9,000	8,965	△35	
응급의료정보망구축(복지부)	8,833	7,957	△876	
공업용수도 안정화(기후부)	26,825	8,353	△18,472	
소규모댐건설(기후부)	9,550	3,804	△5,746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국토부)	114,812	99,637	△15,175	
항공산업발전지원(국토부)	1,642	1,421	△221	
연안선박현대화 지원(해수부)	19,465	7,422	△12,043	
사이버안전센터구축 및 운영(해수부)	3,630	3,235	△395	
국민영양안전관리(식약처)	3,563	3,338	△22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식약처)	6,647	5,971	△676	
KBS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방미통위)	5,916	5,261	△655	
희귀질환자지원(질병청)	23,344	22,737	△607	
감염병예방및관리종합정보시스템(질병청)	5,731	5,147	△584	

주: 전체 정상추진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기재한 것임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2026.6.) 및 각 부처 예산안 설명자료

폐지 등급을 받은 사업은 총 3개 있는데, 이중 해양수산부의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은 2027년도에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35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출구조조정(폐지) 미이행사유로서, 동 사업은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고 그동안 사업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며, 해양치유자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폐지 등급 사업의 2027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처명)	2026 예산	2027 예산안	미이행사유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과기부)	4,551	0	
서울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국토부)	6,407	0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해수부)	3,500	3,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그동안 사업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며, 해양치유자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에 차질 발생 우려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2026.6.

그리고, 통합 등급을 받은 사업 중에도 2027년도에 사업이 통합되지 않고 계속 사업이 유지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교육문화(손익계정)와 창의전시관운영(자본계정) 사업, 교육부의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기후환경에너지부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등은 2027년에도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증액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미이행사유로서 예산 운영의 혼란 및 회계처리 불가(과학교육문화, 창의전시관운영), 협의 진행중(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지원 형태 상이(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등을 들고 있다.

[통합 등급 주요 사업의 2027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처명)	2026 예산	2027 예산안	미이행사유
과학교육문화(손익계정) (과기부)	3,724	3,573	• 평가 결과에 따른 통합 시,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세입의 구분도 어려워져 예산 운영의 혼란 야기 및 회계 처리 불가
창의전시관운영(자본계정) (과기부)	7,650	8,732	• 평가 결과에 따른 통합 시, 자본예산과 손익예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세입의 구분도 어려워져 예산 운영의 혼란 야기 및 회계 처리 불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교육부)	1,800	1,620	• 기획예산처와 사업간 통합 편성 협의 예정(7월~) 현행 2개 세부사업 → 1개 세부사업, 2개 내역사업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교육부)	3,050	3,000	• 기획예산처와 사업간 통합 편성 협의 예정(7월~) 현행 2개 세부사업 → 1개 세부사업, 2개 내역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기후부)	2,710	2,700	• 기금 담당 부서에서 부처간 통합 논의중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국토부)	260,856	339,253	• 수혜대상의 경우 매입·전세 사업과 경상보조 사업이 유사해보이나, 사업비의 경우 직접 지원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경상보조비는 간접 지원되는 형태로 상이함
수출지원기반활용 (중기부)	150,203	313,678	• 통합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부처별 바우처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통합운영 방안도 검토중

주: 전체 통합 등급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기재한 것임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2026.6.

이와 같이,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2027년 예산 편성과 강력하게 연계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편성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안에 환류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감액 등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예산 감액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의 경우, 재난 발생 및 피해규모는 호우·폭염·산불 등 이상기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사업 주관부처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부처의 사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확충이나 장비 보강이 미흡한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성과개선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과부진의 원인이 외생적 요인에 있는지, 사업설계·집행·성과관리 등 부처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에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과부진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적 요인에 있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감액보다는 재난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사업규모와 재정투입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업추진 방식, 집행부진, 부적절한 성과지표, 미흡한 사업관리 등 부처의 개선노력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과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 연도 평가와 예산편성에 보다 엄격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사업 평가는 단순한 등급 산정이나 일률적인 지출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 성과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투자와 구조개선을 선택적으로 유도하는 실질적인 성과관리·예산환류 수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개별 부처 주관 평가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연계 강화 필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부처 주관 평가 결과, 동일 사업에 대하여 결과가 상반된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데, 재난안전·중소기업지원 사업평가 등의 평가취지 및 정책성과가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평가제도 간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기존 개별 평가와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권기금사업, 재난안전사업, 균형발전사업,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통합평가체계를 운영하는 데, 개별 평가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법상 평가의 연계 운영 강화]

구분	주요 내용
개별법상 평가와 연계 운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중복 및 부처 평가부담 최소화, 평가결과의 체계적 환류를 위해 개별평가를 통합 성과평가와 연계·통합 운영한다는 계획 재난안전사업, 균형발전사업,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통합평가 체계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사업 연장·복권기금평가) 통합 성과평가에 통합하여 실시 (일자리사업·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평가간 상호 연계보완 (재난안전·균형발전사업평가) 정책성 평가 성격으로 차별화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6.1.

그런데,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부처 주관 평가 결과, 동일 사업에 대하여 결과가 상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이하, ‘재난안전사업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¹⁵⁾에 따라 추진되는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향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후 사업 개선과 다음연도 재난안전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다. 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우수등급 사업 중 모범사업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전협의 시 반영, 차년도 평가면제, '행안부장관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미흡 등급 사업은 투자축소 대상이며, 각 부처는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 사회적약자보호활동(경찰청), 철도치안관리(국토교통부),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기상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농촌진흥청), 산림헬기도입운영(산림청) 사업 등은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감액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7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다.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 우수 사업 중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감액 사업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재난안전사업 평가 ¹⁾		'26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5	'26	결과	환류
경찰청	사회적약자보호활동	미흡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38.0%
국토부	철도치안관리	미흡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9%
기상청	지진관측망확충및운영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기상청	지역기후정보생산및활용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농진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방미통위	재난방송운영지원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산림청	산림헬기도입·운영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6.4%
성평등부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미흡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0.23%
소방청	소방교육훈련운영	우수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3.9%
질병청	국가결핵예방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
행안부	재난안전교육원운영	보통	우수	감액	지출구조조정 △15.0%

주: 재난안전사업의 '26년 평가란 전년도인 '25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26년에 실시한 평가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각 부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 환류계획」(2026. 6.)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승강기안전관리개선(행정안전부),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규제(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은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으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정상추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 미흡 사업 중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정상추진 사업 현황]

부처	세부사업명	재난안전사업 평가 ¹⁾		'26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	
		'25	'26	결과	환류계획
행안부	승강기안전관리개선	보통	미흡	정상추진	정상추진
질병청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우수	미흡	정상추진	정상추진
원안위	원자력안전규제	미흡	미흡	정상추진	정상추진

주: 1) 재난안전사업의 '26년 평가는 전년도인 '25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26년에 실시한 평가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각 부처 「202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2026. 6.)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재난안전사업평가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등은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재정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적정성 등을 별도로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재난안전사업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로 배점이 설정되어 있으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항목(부처 자체평가의 평가기준)]

(단위: 점)

단계 (배점)	평가항목	측정기준	배점	
			신규	계속
계획 (2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난안전 목적과의 부합성	10	4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15	6
	환류 및 개선 노력	전년도 평가의견의 반영 정도	-	10
		외부 지적사항 등의 개선 실적	-	5
관리 (2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5	
		사업추진 현황점검 및 조치 실적	7	
	사업 집행의 적정성	사업집행률	5	
		사업 집행관리의 노력도	3	
결과 (55점)	성과 달성도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30	
	성과 우수성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15	
		사업성과 확산 노력도	10	
가·감점 (+7점/ -3점)	성과지표의 도전적 목표치 설정		+3	
	행안부가 실시한 컨설팅 결과 반영		+3	
	사업집행의 절감		+1	
	부당행위 및 일정 미준수 등		-3	
총점			100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고려사항
① 재정사업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 여부
	재정지원 필요성	■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예산 외의 정책수단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민간·지자체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유사중복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내용이 정책목표·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지원규모 적정성	■ 작간접 수혜자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적절한지 여부
③ 집행 효율성		
	집행 적정성	■ 실행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사업 추진·전달체계 효율성	■ 사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및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부정수급 등 관리	■ 부정수급 모니터링·점검·후속조치 등 부정수급 관리 여부 ■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수행, 실적보고, 공시, 감사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환류 및 개선노력	■ 외부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성과달성도 및 우수성		
	성과 달성도·우수성	■ 당초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 그 외 사회경제적 정책 및 가치에 대한 기여, 국민 체감도·만족도 높은 사업 등 성과의 우수성이 관련 통계를 포함해 근거자료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 ■ 정보화·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지원사업은 특성화항목 함께 고려

주: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기획예산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¹⁶⁾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수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있다.

16)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평가 및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이하, 생략>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개선필요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개선필요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출구조조정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사업개선에 연계하는 환류장치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결과, 연수사업(중소벤처기업부), 반려동물연관산업 해외수출 산업화(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시티확산(국토교통부) 등은 개선필요 등급을 받았지만,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감액이 아닌 사업개선으로 분류되었으며, 친환경선박보급촉진(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다.

반대로 관광산업용자지원,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제도약 지원자금(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등급을 받았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불일치한 주요 사례]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명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통합재정 평가결과	2027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률
중기부	연수사업	개선필요	사업개선	49,861	△0.9
중기부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개선필요	사업개선	4,135	△3.3
중기부	소상공인재가지원	개선필요	사업개선	408,898	16.3
농식품부	반려동물연관산업 해외수출 산업화	개선필요	사업개선	4,421	△51.4
국토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	개선필요	사업개선	36,734	△22.1
해수부	친환경선박보급촉진	개선필요	사업개선	20,890	26.6
문체부	관광산업용자지원(용자)	우수	감액	711,991	10.5
문체부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	우수	감액	62,488	△17.0
중기부	제도약지원자금(용자)	우수	감액	840,000	37.1

자료: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2026년) 및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정책중요도, 운영적절성, 지원사업 성과, 제도개선 여부 등으로 공통된 평가요소가 있으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재정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적정성 등을 별도로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항목]

(단위: 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기획	정책 중요도	❶ 지원사업 추진 근거의 명확성 * 국정과제, 국가적·사회적 현안 등과의 연관성 ❷ 지원사업 추진방식의 효율성 * 재원분담 및 사업방식, 수요예측 적정성 등 ❸ 타 사업과의 연계·협력 방안 ❹ 지원기업 성장 촉진 전략 * 지원기업 성장 지원전략, 관련 정책, 사업 추진 방안 등	5
운영	운영 적절성	❶ 운영절차 및 예산집행 효율성 ❷ 지원성과 우수기업 선별 노력·실적 ❸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점검 ❹ 전달체계 개선노력 및 실적 * 제출서류 수, 작성양식 간소화, 신청프로세스 개선 등 ❺ 지원기업 성장 촉진 활동 * R&D/마케팅/직원훈련/정보화/경영활동 등	15
성과	지원사업 성과	❶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간 연계성, 성과지표 구체성 ❷ 자체성과지표 적절성 및 달성도 ❸ 민간참여 확대노력 및 실적(사례) * 민간 협력방식, 민간투자 유입실적, 자부담 강화 등 ❹ 지원기업 성장·성과 사례 * 지원기업 지원 전·후 성과, 고성장 기업 사례 등	30
환류	제도개선 노력	❶ 국회·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 반영 노력 * 당해연도 지적사항 및 반영내용 중점 검토 ❷ 中企지원사업 평가결과 반영실적 ❸ 기관 자체 발굴 등을 통한 제도개선 ❹ 지원기업 성장·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20

자료: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2026년)

이와 같이 개별 평가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사업 운영 및 성과 등을 공통적으로 평가하지만 평가범위와 판단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으며, 동일 사업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들이 확인된다. 평가별 결과가 상이한 것 자체는 평가제도의 목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다른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반된 평가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해석하고 최종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각 평가의 목적과 판단기준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하여 이루어진 2개 평가의 결과에서, 한 평가에서는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평가에서는 감액 대상으로 판단하는 등 서로 다른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관부처의 사업 관리와 예산편성 방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라. 평가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평가인력 및 지원체계 보강 필요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도입되었으나,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비해 통합재정사업 평가단의 평가 강도 및 부담(1인당 4.9개 → 16.3개 사업)이 증가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인력 및 지원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그동안 운영되었던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관대화 경향, 예산 환류 미흡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로 도입되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교]

구분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처별 자체평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개요 (평가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사업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체계 사업 수행부처 자율평가 → 기재부 확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당국 직접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 개편
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처 주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부처별 5인 이상, 1/2이상 민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처가 통합평가단 일괄 구성 15개 분야, 총 153명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855개 사업(2025년도) 타부처 개별평가 대상(재난안전·균형발전 일자리·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532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487개 사업(2026년도) 부처별 자체평가 + 타부처 개별평가 + 보조사업연장평가 + 복권기금평가 포함
평가 통합·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주관부처(행안부·고용부·중기부·지방위)에서 평가별 각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평가·복권기금·균형발전 통합 실시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 타당성·계획·집행·성과 등 실질적 내용 평가
평가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월

주: 1. (구)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수는 2025년도 기준이며, 평가단인원은 2022년도 기준으로 집계하였는데, 열린재정에서 각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단 인원수는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수를 합한 것임

3. 통합재정사업 평가는 2026년도 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총 153명의 외부(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평가위원의 약 10%를 시민사회(직접참여+추천인사)에서 위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1,855개 사업에 대해 전체 376명 수준의 평가단이 참여하여 1인당 평균 4.9개의 사업을 평가하였던 것에 비해,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2,487개 사업에 대해 153명의 평가단이 참여하여 1인당 평균 16.3개의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통합재정사업평가의 평가단 및 평가사업수 비교]

(단위: 개, 명)

구분	평가대상 사업수 (A)	평가단 인원수 (B)	1인당 평가사업수 (A/B)
(구) 재정사업 자율평가	1,855	376	4.9
(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2,487	153	16.3

주: 1. (구)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수는 2025년도 기준이며, 평가단인원은 2022년도 기준으로 집계하였는데, 열린재정에서 각 부처별 자체평가위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음

2. (구)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단 인원수는 전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수를 합한 것임

3. 통합재정사업 평가는 2026년도 기준임

자료: 각 연도 평가결과(열린재정)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비해, 재정지원 타당성·계획·집행·성과 등 실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평가강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평가사업 수는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비해 높아져,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6월 개최되었던 통합재정사업평가 간담회에서 평가위원들은 짧은 기간 안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을 토로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단 간담회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일시	• 2026년 6월 26일
평가위원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기간 안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한계와 애로사항 토로 •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 활용 필요 •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평가 결과가 단순한 점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자료: 기획예산처

이와 같이,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도입되었으나,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비해 통합재정사업 평가단의 평가 강도 및 부담이 증가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인력 및 지원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평가기관의 행정부담 및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¹⁷⁾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7)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평가(일반회계 2644-300)」 세부사업 예산은 2025년 33억원에서 2026년 52억원, 2027년(안) 6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6년 8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21개) 및 기금(67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지분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이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된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성질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 계정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정부 재정구조]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21개)		기금(67개)
세입	기업특별회계(5개)	기타특별회계(16개)	사회보험성기금(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 • 관세 • 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 양곡관리 • 조달 • 책임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도작업 • 지역균형발전 • 농어촌구조개선 • 등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에너지및자원사업 • 우체국보험 • 한미군기지이전 • 환경개선 • 국방·군사시설이전 • 혁신도시건설 • 교통시설 • 영유아 •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안전화 • 고등 평생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 • 고용보험기금 등
세출			금융성기금(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 사회복지 • 교육 • 문화및관광 • 환경 • 과학기술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교통및물류 • 농림수산 • 국방 • 통일/외교 • 공공질서및안전 • 일반/지방행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 • 무역보험기금 등
			계정성기금(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사업성기금(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도시기금 • 남북협력기금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을 토대로 재작성

한편,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특별회계 2개와 기금 5개를 신설하고, 특별회계 1개와 기금 3개를 폐지하는 등 회계·기금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¹⁾

특별회계의 경우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기존 21개에서 2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금의 경우 미래대응기금, 전략수출금융기금, 자원안보기금, 농업발전기금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등 5개를 신설하고,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3개를 폐지하여 기존 67개에서 6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정부안 기준 중앙정부 재정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2개 및 기금 69개 등 총 92개 회계·기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7년도 정부안에 따른 중앙정부 회계·기금 개편 현황]

구분	2026년	신설	폐지	2027년 정부안	신설·폐지 내역
일반회계	1	-	-	1	-
특별회계	21	2	△1	22	(신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폐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금	67	5	△3	69	(신설) 미래대응기금 전략수출금융기금 자원안보기금 농업발전기금 공익신고장려기금 (폐지)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합계	89	7	△4	92	

주: 2027년도 정부안에 따른 개편계획으로, 관계 법률의 제·개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2027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2027년 예산안」, 기획예산처, 2026.9.

5-1. 회계·기금 간 거래 개요

가. 법적 근거

특별회계 및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4조와 제5조2)에 따라 특정 사업 및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독립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계·기금 간 지나치게 제한적인 재정운용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13조3)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4)는 기업특별회계의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⁵⁾, 「복권 및 복권

2)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3)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기금법」⁶⁾ 등의 개별 법률에서도 회계·기금 간 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내부거래 의의

회계·기금 간 거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부족한 자금의 보전이나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회계·기금 간 전입·전출, 예탁·예수 등 자원 이전을 “내부거래”라고 하는데, 내부거래는 단순히 회계·기금 간 재원이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고 회계·기금 간 거래를 단순 합산할 경우 실제 수입과 지출이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표되는 총수입·총지출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일반회계에서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총지출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⁷⁾ 이하 분석에서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거래”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
-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4.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 6.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 3. 특별회계
-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7) 보증·보험등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그 수입과 지출이 실질적인 재정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수입·총지출에서 제외되고 있다.

[내부거래 관련 세입과목 및 세출과목]

세 입			세 출	
관	항	목	목	세목
(40) 정부 내부수입 및 기타	(91) 전입금	(911)일반회계전입금	(610) 전출금 등	(610-01)일반회계전출금
		(912)특별회계전입금		(610-02)특별회계전출금
		(913)기금전입금		(610-03)기금전출금
		(915)계정간전입금		(610-04)계정간전출금
		(916)기타전입금	(710) 예비비 및기타	(710-03)반환금및손실금
	(92) 예탁원금 회수	(921)일반회계예탁원금회수	(510) 상환지출	(510-04)예수금원금상환
		(922)특별회계예탁원금회수		
		(923)기금예탁원금회수		
		(925)계정간예탁원금회수		(510-06)전대차관원금상환
		(926)타회계전대차관원금회수		
		(927)기금전대차관원금회수		
	(94) 예수금	(941)일반회계예수금	(480) 예탁금	(480-01)일반회계예탁금
		(942)특별회계예수금		(480-02)특별회계예탁금
		(943)기금예수금		
		(945)계정간예수금		(480-03)기금예탁금
		(946)기타민간예수금		
	(95) 예탁 이자수입	(951)일반회계예탁이자수입	(510) 상환지출	(510-03)차입금이자
		(952)특별회계예탁이자수입		(510-05)예수금이자
		(953)기금예탁이자수입		
		(955)계정간예탁이자수입		
		(956)타회계전대차관이자수입		
		(957)기금전대차관이자수입		
	(96) 기타	(961)당기순이익전입금	(610) 전출금등	(610-06)감가상각비
		(962)감가상각비전입금		(610-07)당기순이익
		(963)제충당금전입금		

주: 목별 일반적인 분류를 표시한 것임

자료: 기획예산처

5-2. 회계·기금 간 거래 현황

가. 전체 현황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387조 7,897억 원(24.0%) 증가한 2,006조 3,902억원이고, 정부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94조 1,575억원(48.5%) 증가한 594조 6,488억원으로, 총계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계의 유형별 현황]

(단위: 억원, %, %p)

구 분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A)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B)	증 감	
			(B-A)	(B-A)/A
예산 및 기금 총계(a)	16,186,005	20,063,902	3,877,897	24.0
일반지출 ¹⁾	7,496,241	8,390,242	894,001	11.9
정부내부거래(b)	4,004,913(100.0)	5,946,488(100.0)	1,941,575	48.5
회계·기금 간	1,755,714(43.8)	3,586,363(60.3)	1,830,649	104.3
회계 간	749,751(18.7)	772,536(13.0)	22,785	3.0
기금 간	1,450,751(36.2)	981,171(16.5)	△469,580	△32.4
계정 간	48,698(1.2)	606,418(10.2)	557,720	1145.3
보전거래	4,684,850	5,727,171	1,042,321	22.2
차입금원금상환	1,696,433	1,747,699	51,266	3.0
여유자금운용 등 기타	2,988,417	3,979,473	991,056	33.2
비율(b/a)	24.7	29.6	4.9	20.2

주: 1) 일반지출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 총지출규모와 차이가 있음

1. 2026년 일반회계/특별회계는 확정예산, 기금의 경우는 8월말 기준 수정 계획임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의 내부거래 지출은 총 290조 3,43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총계) 700조 1,171억원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4%p 증가하였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69조 2,470억원, 기금의 전출금 및 상환지출은 221조 965억원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의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6년 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출금	675,433(55.2)	692,470(23.9)	17,037	2.5
일반회계→기금	전출금	291,897(23.9)	1,915,565(66.0)	1,623,668	556.2
	상환지출	255,584(20.9)	295,400(10.2)	39,816	15.6
	소계	547,482(44.8)	2,210,965(76.1)	1,663,483	303.8
합계(a)		1,222,915(100.0)	2,903,435(100.0)	1,680,520	137.4
일반회계 예산 규모(b)		5,075,997	7,001,171	1,925,174	37.9
비율(a/b)		24.1	41.5	17.4	72.2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기준 특별회계의 내부거래 지출은 총 28조 8,690억원으로 특별회계 총계(131조 3,850억원)의 22.0% 수준이다. 특별회계 간 전출금 8조 7억원, 기금으로의 전출금 20조 8,62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7년 예산안 특별회계의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6년 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특별회계→일반회계	전출금	1,378(0.8)	59(0.0)	△1,319	△95.7
특별회계→특별회계	전출금	72,940(44.0)	80,007(27.7)	7,067	9.7
특별회계→기금	전출금	49,906(30.1)	126,390(43.8)	76,484	153.3
	예탁금	31,571(19.1)	69,992(24.2)	38,421	121.7
	상환지출	9,911(6.0)	12,242(4.2)	2,331	23.5
	소계	91,388(55.2)	208,624(72.3)	117,236	128.3
합계(a)		165,706(100.0)	288,690(100.0)	122,984	74.2
특별회계 예산 규모(b)		1,171,771	1,313,850	142,079	12.1
비율(a/b)		14.1	22.0	7.9	56.0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기금의 내부거래 지출은 총 214조 7,945억원으로 기금 총계 1,174조 8,881억원의 18.3% 수준이다. 기금 간 상환지출 51조 7,093억원, 기금 간 예탁금 39조 2,789억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100조 64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의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6년 기금운용계획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B-A)/A
기금→일반회계	전출금	1,493	1,493	131,871	130,378	8,729.9
	예탁금	1,083,041	1,050,321	1,000,644	△49,677	△4.7
	상환지출	1,050	1,050	-	△1,050	순감
	소계	1,085,585	1,052,865	1,132,516	79,651	7.6
기금→특별회계	전출금	9,369	9,369	1,860	△7,508	△80.1
	예탁금	29,125	32,820	3,605	△29,215	△89.0
	상환지출	21,790	21,790	28,793	7,003	32.1
	소계	60,284	63,979	34,259	△29,720	△46.5
기금→기금	전출금	76,304	78,297	71,289	△7,008	△9.0
	예탁금	618,228	626,763	392,789	△233,975	△37.3
	상환지출	745,632	745,691	517,093	△228,597	△30.7
	소계	1,440,164	1,450,751	981,171	△469,580	△32.4
합계(a)		2,586,033	2,567,595	2,147,945	△419,650	△16.3
기금운용계획 규모(b)		9,907,588	9,938,236	11,748,881	1,810,645	18.2
비율(a/b)		26.1	25.8	18.3	△7.5	△29.1

주: 2026년 수정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6년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기준 동일 회계·기금 내 계정 간 내부거래 지출은 특별회계
계정 간 전출금 7조 1,363억원, 기금 계정 간 내부거래 53조 5,056억원이다.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회계·기금 내 계정 간 내부거래 지출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A)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¹⁾ (B)	증 감	
				(B-A)	(B-A)/A
특별회계 계정 간	전출금	42,891	70,700	27,809	64.8
	기타 ²⁾	1,076	663	△413	△38.4
	소계	43,967	71,363	27,396	62.3
기금 계정 간	전출금	4,731	535,056	530,325	11,210.7
	상환지출	-	-	-	-
	소계	4,731	535,056	530,325	11,210.7
합 계		48,698	606,418	557,721	1,145.3

주: 1) 2026년의 경우 일반회계/특별회계는 2026년 확정예산, 기금은 2026년 8월 말 기준 수정 계획임

2) 당기순이익 및 감가상각비를 의미함

자료: 기획예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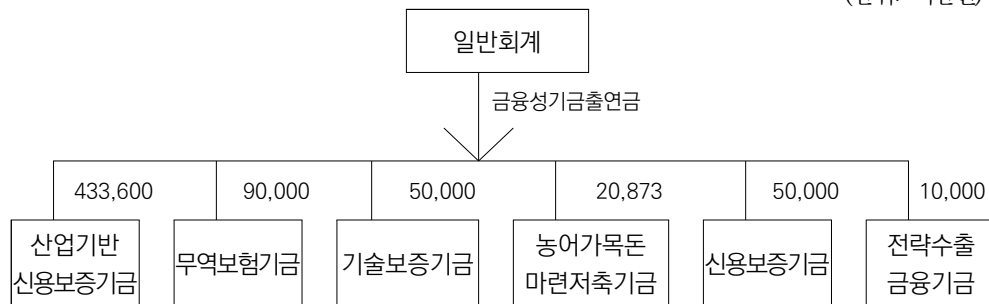
한편, 8개 금융성기금⁸⁾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보증·보험 등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그 수입과 지출이 실질적인 재정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 기금 자체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정부 총수입·총지출 산정 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 이들 기금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실질적 지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으로의 재원 이전에 해당하므로 민간에 재원을 이전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고, 기금전출금(610-03)이 아닌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으로 편성하여 해당 재원은 정부 총지출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금융성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기금전입금(91-913)이 아닌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에 계상한다.

2027년 일반회계로부터 금융성기금으로 지출되는 출연금은 총 6,544억 7,300만원이고, 금융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은 없다.

[2027년도 일반회계와 금융성기금과의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기획예산처

8)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다만, 2027년도 정부안에는 관련 법률의 개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23.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을 전제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기금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나. 일반회계와 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

일반회계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과 정부 출자기업의 배당·지분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⁹⁾이다.

일반회계는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 회계 및 기금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탁금과 구분된다.

먼저, 일반회계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공무원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전출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의 특정 세입재원을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출하거나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전출금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외에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등이 편성되어 있다.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전출금은 260조 8,0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조 706억원(169.6%)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2027년도에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출금 158조 4,720억원이 신규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전출금은 전체 증가액의 96.6%를 차지한다.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회계/기금명	2023	2024	2025	2026	2027(안)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46,491	59,470	68,874	127,136	144,608
	교통시설	79,054	120,118	131,962	137,840	133,960
	농어촌구조개선	35,022	33,426	52,213	45,017	48,403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22,170	20,223	21,829	23,084	22,58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207	1,006	1,050	981	641
	양곡관리	17,700	20,343	22,715	18,560	17,514
	에너지및자원사업	1,814	-	-	-	-
	우편사업	136	140	195	160	98
	유아교육지원	33,583	32,106	31,843	-	-
	영유아	-	-	-	92,671	93,522
	조달	-	-	-	-	-

9)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단위: 억원, %)

구분	회계/기금명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책임운영기관(특허청계정 제외)	3,003	3,151	3,258	3,696	3,8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202	1,248	2,118	2,859	5,669
	혁신도시건설	73	226	-	-	-
	환경개선	50,385	53,117	63,616	54,622	54,032
	고등·평생교육지원	95,951	155,927	159,252	168,807	141,977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	-	-	-	25,651
기금	고용보험	3,000	4,000	5,500	6,000	9,000
	공공자금관리	192	52	-	-	-
	공무원연금	52,076	58,864	64,896	69,423	67,067
	공적자금상환	3,039	25,000	25,000	24,988	43,618
	관광진흥개발	174	244	75	75	75
	국민연금	105	111	113	118	121
	군인연금	31,017	34,170	37,021	41,095	45,240
	남북협력	572	1,000	788	1,000	1,030
	농어업재해해보험	-	-	-	-	-
	대외경제협력	7,873	12,187	12,374	13,343	10,425
	문화예술진흥	300	300	300	300	300
	범죄피해자보호	942	861	888	911	855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0,900	10,112	9,693	8,266	8,675
	사학진흥	-	-	1,210	-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200	213	213	313	363
	소상공인시장진흥	5,700	16,350	38,256	21,964	9,16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927	927	926	938	960
	양곡증권정리	1,609	1,609	1,609	1,609	2,054
	양성평등	-	-	-	-	-
	응급의료	2,339	2,542	2,954	2,901	3,042
	임금채권보장	1	1	1	1	1
	주택도시	30,392	33,060	37,070	68,116	94,028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11,642	14,444	17,929	18,519	22,522
	지역신문발전	25	-	-	-	-
	군인복지	-	-	671	530	564
	기후대응	12,223	10,970	13,092	11,489	8,800
	미래대응	-	-	-	-	1,584,720
	공익신고장려	-	-	-	-	2,946
합 계		564,039	727,518	829,504	967,332	2,608,038

주: 1.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예산, 2027년은 예산안 기준

2. 9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전출금은 제외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됨

한편,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도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의 경우 등기특별회계에서 49억 5,900만원, 조달특별회계에서 9억 3,5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며, 미래대응기금에서 12조 5,000억원, 기후대응기금에서 4,817억 2,700만원, 자원안보기금에서 1,292억 100만원의 전출금을 편성하였다.

[타 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회계/기금명	2023	2024	2025	2026	2027(안)
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11,176	-	-	23,496	4,959
	조달특별회계	47,357	213,800	132,700	114,274	93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지식재산처)	140,496	77,666	93,182	-	-
기금	공무원연금기금	6,309	37,409	58,488	113,311	47,68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6,100	42,170	49,897	36,036	28,519
	기후대응기금	-	-	-	-	481,727
	미래대응기금	-	-	-	-	125,000
	자원안보기금	-	-	-	-	129,201
합 계		251,438	371,045	334,267	287,117	13,193,023

주: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예산, 2027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용자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19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용자계정, 차관계정의 3개 계정으로 구분된다.

① 총괄계정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상환 등의 관리, 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② 용자계정은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회수 등을 관리¹⁰⁾하기 위한 것이며, ③ 차관계정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차관자금의 회수 및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10) 2006년 재정용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 재정용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용자특별회계로부터 승계되는 기능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하여 용자계정 및 차관계정을 신설하였다.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규모는 310.1조원이다.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별 운용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총괄계정	284.3	327.3	333.6	327.9	310.0
(비중)	(99.6)	(99.9)	(99.9)	(99.9)	(100.0)
융자계정	0.8	0.2	0.2	0.2	0.06
(비중)	(0.3)	(0.1)	(0.1)	(0.1)	(0.0)
차관계정	0.4	-	-	-	-
(비중)	(0.1)	-	-	-	-
계	285.4	327.4	333.8	328.1	310.1

주: 1. () 안은 해당연도의 계정별 운용 규모 비중을 나타냄

2.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8월말 기준 수정계획, 2027년은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연도별 예수·상환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예수액에서 예수상환액을 차감한 순예수액은 2023년 △7조 7,199억원, 2024년 1조 7,955억원, 2025년 △5,831억원 등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신규예수액은 26조 3,793억원으로 2026년 수정계획 대비 1조 6,833억원 증가하는 반면, 예수상환액은 24조 1,524억원으로 1조 5,392억원 감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예수액은 2026년 △9,956억원에서 2027년 2조 2,269억원으로 전환되고, 예수잔액은 33조 5,811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신규예수(A)	254,659	260,754	254,077	246,960	263,793
예수상환(B)	331,858	242,799	259,908	256,916	241,524
예수잔액	311,373	329,328	323,498	313,541	335,811
가용재원(C=A-B)	△77,199	17,955	△5,831	△9,956	22,269
신규예수 대비 가용재원 비중(C/A)	△30.3	6.9	△2.3	△4.0	8.4

주: 2025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6년은 8월말 수정계획 기준, 2027년은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2027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35개 기금과 예수·예탁 방식의 내부거래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7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예수잔액은 33조 5,811억원, 예탁잔액은 1,355조 2,97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예수·예탁 잔액]

구분	회계/기금명(계정)	잔액(억원)	구분	회계/기금명(계정)	잔액(억원)
예수잔액	교도작업특별회계	653	예탁잔액	일반회계	10,754,984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	1,986		교통시설특별회계	13,236
	우체국예금특별회계	64,45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3,227
	우편사업특별회계	12,87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2,342
	국민체육진흥기금	12,0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661
	국제교류기금	419		등기특별회계	239
	국유재산관리기금	47,060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033
	근로복지진흥기금	600		고용보험기금	84,70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22,394
	보훈기금	300		국가유산보호기금	916
	복권기금	3,500		국민건강증진기금	70,892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00		군인복지기금	70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0,500		기후대응기금	61,144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30		남북협력기금	36,05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8,000		대외경제협력기금	34,204
	주택도시기금	61,535		방송통신발전기금	18,806
	고용보험기금	20,000		사학진흥기금	3,940
	미래대응기금	10,0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3,162
	자동차사고피해재원기금	1,5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18,776
합 계		335,811		수산발전기금	100
				양곡증권정리기금	36,490
				외국환평형기금	2,024,665
				응급의료기금	3,522
				정보통신진흥기금	35,154
				축산발전기금	500
				청소년육성기금	201
				임금채권보장기금	1,140
				주택도시기금	1,700
				자원안보기금	3,984
				농업발전기금	100
			합 계		13,552,976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일반회계가 세출 규모 대비 국세 수입 등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신규로 예수하는 소위 “일반회계 적자국채” 금액은 2023년에는 55조 4,413억원으로 전년도 2회 추경 대비 큰 폭으로 감액(△35.7%)되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다시 전년 대비 41조 1,971억원이 증액(74.3%)되었으며 2025년의 경우도 전년 대비 17조 186억원(17.6%) 증액되었다. 2027년 예산안에서는 2026년 대비 4조 9,677억원이 감액(△4.7%)된 100조 644억원의 신규 예수가 편성되었다.

[연도별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신규예수 현황]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882,000	862,000	554,413	966,384	1,136,570	1,050,321	1,000,644

주: 2025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6년은 예산, 2027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5-3. 분석의견

(1) 주택도시기금의 중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한 이차보전 규모 설정 필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에서 이차보전 방식의 활용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이차보전 확대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와 기금의 재원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이차보전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의 전출금은 9조 4,028억원으로, 2026년 6조 8,116억원 대비 2조 5,912억원 증가하였다.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이차보전 사업비도 2022년 4,982억원에서 2027년 2조 72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차보전은 직접용자와 달리 지출한 재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대출잔액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중장기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용자와 이차보전은 국민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재원 회수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 직접용자는 단기에 큰 재원이 소요되지만 원리금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반면, 이차보전은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재원으로 더 많은 수요자에게 용자를 공급할 수 있으나 지출된 재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체 사업비 대비 이차보전 사업비 비중은 2022년 1.6%에서 2027년 5.1%로 높아졌으며, 2026년 대비 이차보전 사업비도 1,000억원 증가하였다. 또한 2027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소요 예상액 중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비중은 각각 81.7%, 83.7%로, 2026년 계획 당시의 75.4%, 76.5%보다 확대되었다.

[최근 6년간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현황 및 비중]

(단위: 억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A)	318,114	304,611	372,266	349,260	364,627	406,689
이차보전(B)	4,982	9,297	13,902	18,398	19,720	20,720
비중(B/A)	1.6	3.1	3.7	5.2	5.4	5.1

주: 2022~2025년은 결산 기준, 2026년은 계획 기준, 2027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매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참고자료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이차보전 사업은 예상 대출잔액과 시중금리 등을 기준으로 지출규모를 추계하므로, 대출 수요 증가나 금리 인상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23년에는 금리차 확대 및 대출 수요 증가로 당초 계획액 대비 2,439억원(약 32%)을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증액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7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소요 예상액 중 각각 81.7%, 83.7%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2026년 계획 당시의 75.4%, 76.5%보다 지원비율을 확대하였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요 예상액에 대한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비중]

(단위: 조원, %)

구분		2026년	2027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예상액	27.6(100.0)	19.6(100.0)
	직접융자	6.8(24.6)	3.6(18.3)
	이차보전	20.8(75.4)	16.0(81.7)
전세자금	대출 소요 예상액	14.9(100.0)	10.4(100.0)
	직접융자	3.5(23.5)	1.7(16.3)
	이차보전	11.4(76.5)	8.7(83.7)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2~2024년 약 120조원 이상의 정책대출 공급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급감함에 따라, 정책대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차보전 확대가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021년 48조 9,800억원에서 2025년 말 14조 3,900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여유자금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21	48,982,497	48,982,497 (3.29)	319,402 (0.45)	784,983 (1.37)	47,878,112 (3.37)
2022	28,722,459	28,722,459 (△3.58)	422,544 (0.60)	1,415,036 (0.33)	26,884,879 (△3.78)
2023	18,866,252	20,227,954 (8.26)	87,121 (3.38)	2,659,643 (5.74)	17,481,190 (8.70)
2024	10,102,159	18,836,429 (3.35)	188,553 (3.33)	4,541,714 (3.45)	14,106,162 (3.56)
2025	14,387,229	11,507,128 (5.27)	166,867 (2.13)	2,404,652 (3.45)	8,935,609 (5.85)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차보전 방식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차보전은 직접융자와 달리 대출잔액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하며, 시중금리 상승 등에 따라 재정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은 30년, 버팀목대출은 최장 20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출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한 직접융자의 적정 규모 산출과 이차보전 확대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및 국회 제출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직접융자와 이차보전 방식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를 비교·분석하고, 기금의 자체재원 조달 여건과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재정지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이차보전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과 국고채 발행의 연계 운용 필요

추가세수로 조성한 미래대응기금이 약 100조원의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동시에 일반회계가 유사한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구조는 최근 국고채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자기금이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의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적자국채 발행량으로 나타난다. 즉, 일반회계가 재원 부족분만큼 공자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다. 2027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의 공자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에 전년 추경 대비 4조 227억원 증액된 29조 5,4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일반회계의 공자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8,636,671	25,558,448	25,517,233	29,539,964	4,022,731	15.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비록 이는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상환분으로서 내부거래이므로 총지출에는 계상되지 아니하나, 내국세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사업성 지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공자기금도 일반회계 예탁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전제하므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도 계획안에 따른 여유재원 운용 규모는 총괄계정을 포함하여 104조 3,614억원¹¹⁾에 달하는데, 이는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11) 미래대응기금의 공자기금 예탁 1조원 포함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계정	사업명	규모
총괄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1,000,000
총괄계정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5,861,383
지방계정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000,000
교육·인재계정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500,000
합계		104,361,38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리하면, 2027년 일반회계는 공자기금으로부터 100조 644억원을 예수하며, 공자기금은 그 재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같은 해 미래대응기금은 103조 3,614억원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정부 전체로 보면 국고채 금리로 차입한 자금과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그보다 낮은 수익률로 예치할 경우, 그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회계·미래대응기금·공자기금 간 자금흐름(2027년)]

(단위: 조원)

흐름	금액	성격
① 일반회계 → 미래대응기금	158.5	추가세수 적립(전출)
② 미래대응기금 → 일반회계	12.5	재전출
③ 미래대응기금 → 비통화금융기관	103.4	국고 밖 예치
④ 미래대응기금 → 공자기금	1.0	예탁
⑤ 공자기금 → 일반회계	100.1	예탁(국고채 발행으로 조달)
⑥ 일반회계 → 공자기금	29.5	예수금에 대한 이자

자료: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국고채 조달비용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2025년 2.66%에서 2026년 1~9월 평균 3.76%로 1.10%p 높아졌고, 월별로는 6월(4.02%)에 4%를 넘어선 뒤 9월에는 4.25%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응찰률은 2025년 267%에서 2026년 1~9월 246%로 21%p 낮아져 시장의 소화 여력도 약해지고 있다. 특히 9월에는 조달금리가 전월(4.10%) 대비 0.15%p 오르고 응찰률은 243%로 전월(251%) 대비 8%p 하락하여, 금리 상승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최근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및 응찰률]

(단위: %)

구분	2025	2026.1~9	2026.1	2026.3	2026.6	2026.8	2026.9
평균조달금리	2.66	3.76	3.18	3.50	4.02	4.10	4.25
평균응찰률	267	246	259	230	243	251	243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2026.10.)

반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 최소 목표 운용수익률은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인 약 3.8%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즉, 최근 국고채 조달금리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운용수익률이 예상되는데, 재정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¹²⁾

물론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를 곧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여유재원 및 미래투자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은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12조 5,000억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 효과로 설명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국고채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¹³⁾, 미국·한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조원을 상회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 일부를 일반회계에 추가로 전출하거나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현재 계획보다 확대함으로써, 공자기금의 신규 국고채 발행 부담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국고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공자기금 예탁비용은 다른 기금에 비해 낮은 편인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12) 미래대응기금 계획안은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아 정부의 목표수익률이 예산상 확인되지 않는다.

13) 2026년 9월 21일 국고채 10년물의 유통금리는 4.457%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육박하였다.

[주요 기금의 공자기금 예탁비율(2027년 계획안)]

(단위: 억원, %)

기 금	여유자금 운용	공자기금 예탁	예탁비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8,122	8,000	98.5
국유재산관리기금	16,415	16,000	97.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70,303	50,500	71.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9,019	40,000	58.0
미래대응기금	1,043,614	10,000	1.0

자료: 각 기금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여유재원을 국고채 발행 축소에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일반회계 전출 확대와 공자기금 예탁 확대를 들 수 있다. 일반회계 전출 확대는 적자국채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 방안이나 기금 재원이 소진되는 한계가 있고, 공자기금 예탁 확대는 기금의 자산으로 남아 필요할 때 회수할 수 있어 재정안정화 기능과 충돌하지 않는다.

[여유재원의 국고채 발행 축소 연계 방안 비교]

구 분	일반회계 전출 확대	공자기금 예탁 확대
국고채 발행	전출액만큼 적자국채 감소	예수금이 조달재원을 대체하여 발행 감소
일반회계 이자부담	감소	변동 없음(공자기금 차입 유지)
기금 재원	소진	유지(회수 가능)
순비용(역마진)	해소	해소(이자가 정부 내부에서 이전)
유의점	세수결손 대비 완충 재원 축소	대규모 회수 시 재조달 필요 → 예탁 만기·회수시기 조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를 들어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외한 기금 여유재원 중 30조원을 전출 또는 예탁하여 국고채 발행을 줄이면, 편성금리 4.1% 기준으로 연간 약 1조 2,300억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재원 중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유동성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하여 국고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규모 및 법적 근거 검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개별법상 세출 용도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원분담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 용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특회계 지역지원·세종·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으로의 전출금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상 구조개선사업계정 세출 용도]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자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그럼에도 농특회계에서는 개별법상 전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2025회계연도에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각각 6,550억원 및 5억원을 전출하였으며, 202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2026년 추경에서는 농특회계에서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이 본예산 대비 4조 6,946억원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에서 동일 계정으로의 전출금은 4조 5,562억원 감소하였다.

[2026년 추경에 따른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금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전출대상	26년도 예산(A)	26년도 추경(B)	증감(B-A)
일반회계	7,038,984	2,482,828	△4,556,156
농특회계	686,805	5,381,429	4,694,6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러한 조정은 농특회계의 추가 재원을 활용하여 기존 일반회계가 부담하던 지특회계 전출금 소요를 상당 부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26년 추경에서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증액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원 수준이었던 반면, 농특회계 전출금은 4조 6,946억원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전출금 증액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의 추가 재정수요에 직접 대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러한 재원이전 구조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2027년도 농특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서 지특회계로의 전출금은 2조 3,482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8,229억원 증가하였다. 이 중 개별법에 직접적인 전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지역지원·세종·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은 총 9,015억원이며, 축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으로도 각각 1조 8,879억원 및 7,387억원을 전출하도록 편성하였다.

[2027년도 농특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주요 전출금 현황]

(단위: 백만원)

전출대상	26년 본예산	27년 예산안	개별법상 직접 근거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837,239	1,446,712	있음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686,805	822,000	없음
지특회계 세종계정	1,275	2,167	없음
지특회계 제주계정	-	77,293	없음
축산발전기금	145,500	1,887,939	없음
수산발전기금	128,792	738,692	없음

주: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주요 전출사업 기준

2. 개별법상 직접 근거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전출 대상 명시 여부를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물론 「국가재정법」 제13조¹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전입·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이 전출 가능한 회계·기금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에 직접 규정되지 않은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전출을 「국가재정법」상 일반적인 여유재원 전출 규정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은 개별법상 세출 용도의 규정 취지와 재원배분의 투명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은 2027년도 세입 10조 2,051억원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이 10조 696억원으로 9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입구조에서 다른 회계·기금으로 상당한 재원을 반복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특회계의 본래 사업을 위한 재정수요와 전출 가능한 재원 규모 뿐 아니라,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이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를 농특회계가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특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5 결산	26 본예산	26 추경	27 예산안
세입 총계(A)	8,185,238	7,670,667	12,674,526	10,205,103
일반회계전입금(B)	4,431,331	3,747,860	3,747,860	4,033,331
계정간전입금(C)	3,075,756	3,793,367	8,797,226	6,036,219
전입금 소계(D=B+C)	7,507,087	7,541,227	12,545,086	10,069,550
전입금 비중(D/A)	91.7	98.3	99.0	9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법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타 회계·기금 전출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특회계의 재정여건과 지특회계의 사업수요 및 일반회계와의 재원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출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4)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4)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에 따른 재원이전 기준 검토 필요

복권위원회는 법정배분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타 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배분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과 평가항목별 배점 및 가·감점 기준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복권기금은 법정배분금 중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지원을 기금 전출금 방식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7년도 타 기금 전출 규모는 총 5,679억 2,700만원이다. 현행 법정배분제도에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배분액이 조정되므로, 평가결과가 타 기금으로의 재원이전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그러나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법정배분사업 101개 중 79개 사업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에서도 전체 129개 사업 중 116개 사업이 우수등급을 받는 등 높은 평가를 받은 사업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성과평가보고서는 대부분 사업의 세부 성과지표 달성도가 10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높은 성과달성도가 실제 사업성과의 개선에 따른 것인지 또는 달성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결과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과거 실적과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이는 지표의 목표수준을 조정하는 등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주요 결과]

구분	전체 사업	법정배분사업	주요 내용
종합평가 대상	129개	101개	법정배분 101개, 공익 28개
종합평가 우수	96개	79개	우수등급 비중이 높음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	116개	-	대부분 세부 성과지표 달성도가 100% 수준

주: 성과목표 달성도 등급별 사업 수는 성과평가보고서에서 전체 기준으로만 제시하고 있음
 자료: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성과평가에 포함되는 개별 가·감점 항목이 실제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성과평가는 복권기금 홍보실적 및 홍보효과에 최대 4

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복권 관련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에는 최대 4점의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평가사례를 보면 한 법정배분사업은 홍보실적으로 3.6점의 가점을 받은 반면, 불용액 반납 및 집행실적 제출기한 미준수 등 두 건의 의무 위반에는 0.8점이 감점되었다. 법령·지침상 의무 준수는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책임성에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홍보실적에 대한 가점과 의무 위반에 대한 감점이 각각 평가결과에 미치는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주요 가·감점 항목 비교]

구분	평가내용	최대 배점	실제 적용 사례
가점	복권기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실적·효과	+4점	+2.4점, +3.2점, +3.6점 등 높은 점수 적용
감점	복권 관련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	△4점	불용액 반납 미준수 △0.4점 불용액 반납·집행실적 제출기한 미준수 등 2건 △0.8점 결산명세서·실적보고서·집행실적 제출기한 미준수 등 3건 △1.2점

자료: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이러한 점검은 기관별 평가점수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2025년도 기관별 종합평가 결과 하위 4개 기관의 평가점수는 83.96~84.75점으로 7위와 10위 간 점수 차이가 0.79점에 불과하였다. 기관별 배분액은 평가점수 자체가 아니라 종합순위에 따라 차등 조정되므로, 점수 차이가 작다는 사실만으로 배분액 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별 평가항목에서 발생하는 점수 차이가 최종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평가요소가 기관 간 점수 차이를 형성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5년 기관별 종합순위 및 2027년 성과평가 반영액]

(단위: 점, 백만원)

순위	기관	평가점수	기초법정배분액	성과평가 반영액
7위	지방자치단체지원	84.75	206,420	△8,257
8위	국민체육진흥기금	84.50	123,981	△11,158
9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84.02	206,420	△24,770
10위	과학기술진흥기금	83.96	150,425	△27,076

주: 성과평가 반영액은 자금소요 등에 따른 기타 조정액, 추가배분 및 결산정산액과 구분된 금액

자료: 기획예산처

한편 정부는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복권수익금의 35%에서 '35% 범위 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배분비율 조정폭을 $\pm 20\%$ 에서 $\pm 40\%$ 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법률 개정으로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이 확대될 경우, 평가결과가 기금 간 재원이전 규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으므로 성과평가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권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가 타 기금으로의 재원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이는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수준을 점검하고, 홍보실적에 대한 가점과 법령·지침상 의무 위반에 대한 감점 등 개별 평가요소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1) 지출구조조정의 의의 및 추진 경과

지출구조조정은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기존 재정사업의 필요성, 성과 및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지출을 축소·폐지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 규모를 감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지출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관리 수단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필요성을 점검하는 지출구조조정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량지출의 조정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의 예산 감액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과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중요하다.

OECD는 기존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재원배분을 개선하는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주요 재정관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¹⁾ 지출검토가 기존 지출의 적정성과 정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라면, 지출구조조정은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예산의 감액이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출구조조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면서 각 중앙관서는 재정당국이 제시한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후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예산의 원칙으로 규정²⁾되

이석원 예산분석관(seokwon@assembly.go.kr, 6788-3736)

1) 「Government at a Glance 2025」, OECD

2)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었으며,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각 부처가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이상의 자율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법률에 명시되었으며³⁾,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는 2018년 지출혁신 1.0을 통해 주요 재정사업의 효율화와 재원배분 조정을 추진하였고, 2019년 지출혁신 2.0에서는 전략적 지출검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재정지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지출을 조정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출구조조정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부터 매년 20조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재량지출 감액과 의무지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약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지출구조조정의 기준과 추진방안을 최초로 공개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 폐지·개선 등 지출구조조정 대상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성과에 기반한 재정사업 정비와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존 재량지출의 조정과 의무지출 제도개편 효과를 포함한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발표하였다.⁴⁾

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단, 현행 63개 중앙관서 중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7개 기관의 지출구조조정 내역은 지출구조조정 실적이 없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함

(2) 2027년도 지출구조조정 규모 및 구성 내용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총 107.6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도 예산안의 약 27조원에 비해 크게 확대된 규모로, 기존 재정사업의 폐지·축소 등을 통한 재량지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에 대한 제도개편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023년도 24.1조원, 2024년도 22.7조원, 2025년도 23.9조원, 2026년도 약 27조원 수준이었으나, 2027년도에는 재량지출 구조조정 38.6조원과 의무지출 제도개편에 따른 절감 효과 69.0조원을 합산하여 107.6조원으로 발표하였다.

[연도별 지출구조조정 규모]

구분	규모	주요 내용
2023년도 예산안	24.1조원	재량지출 재구조화, 한시지출 정상화
2024년도 예산안	22.7조원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R&D·보조사업 정비
2025년도 예산안	23.9조원	사업 우선순위 조정,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정비
2026년도 예산안	27조원 수준	사업구조 개편, 경상비 절감, 의무지출 제도개선
2027년도 예산안	107.6조원	재량지출 38.6조원, 의무지출 제도개편 69.0조원

주: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조 단위 미만의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음

자료: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도 지출구조조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38.6조원으로 전체 발표 실적의 35.9%를 차지하고, 의무지출 제도개편에 따른 절감 효과는 69.0조원으로 64.1%를 차지한다.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15% 감축 목표에 따라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체 내역사업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농어업 정책자금 통폐합, 연구개발(R&D) 사업 조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지출규모와 제도개편 이후의 지출규모를 비교하여 69.0조원의 구조조정 효과를 산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30.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5조원 및 구직급여 1.4조원

등이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개편 효과가 총 63.0조원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 실적의 91.3%를 차지한다.

[2027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규모 및 구성]

구분	구조조정 실적	전체 실적 대비 비율
합 계	107.6조원	100.0%
재량지출 구조조정	38.6조원	35.9%
의무지출 제도개편	69.0조원	64.1%
- 지방교부세	30.5조원	28.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5조원	30.2%
- 구직급여	1.4조원	1.3%
- 기타 제도개편 효과 ¹⁾	4.6조원	4.3%

주: 1) 기타 제도개편 효과 4.6조원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실적 69조원에서 별도로 제시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구직급여 관련 실적을 차감한 금액

1. 의무지출의 구조조정 실적은 제도개편 이전과 이후의 지출규모를 비교하여 산정한 정부 발표 기준이며, 재량지출 사업의 감액 실적과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음

자료: 「2027년도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유형별 지출구조조정 현황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지출구조조정 방식을 ① 제도개선, ② 평가·지적, ③ 민간·지방정부 재원분담, ④ 유사중복, ⑤ 집행부진, ⑥ 우선순위, ⑦ 공공부문 경비, ⑧ 행사·홍보성 경비, ⑨ 관행적 경상경비 지원, ⑩ 기타 등 10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출구조조정 유형]

구분	유형	주요 내용
1	제도개선	전달체계 효율화, 지원조건 합리화, 의무지출 구조·체계 효율화, 세입구조 개선 등
2	평가·지적	정부 재정사업 평가 및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 반영
3	민간·지방정부 재원분담	민간·지방 이양 및 재원분담 비율 확대
4	유사중복	유사 사업 통폐합 및 역할 재분담
5	집행부진	연례적 불용·집행부진 사업을 집행 가능 수준으로 조정
6	우선순위	정책여건 변화,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
7	공공부문 경비	업무추진비·여비·운영비 등 절감
8	행사·홍보성 경비	행사·홍보 횟수 감축 및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
9	관행적 경상경비 지원	사업성과 재검토 없이 연례적으로 지속된 경상경비 지원 감축
10	기타	①~⑨ 이외의 사유로 추진하는 지출 절감

자료: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개된 2027년도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56개 기관의 지출구조조정 유형별 내역은 총 5,375건이며, 구조조정 실적은 100조 9,050 억원이다.⁵⁾ 유형별 건수는 우선순위 조정이 1,966건(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가·지적 741건(13.8%), 기타 663건(12.3%), 집행부진 584건(10.9%), 유사중복 509건(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조조정 실적 규모는 제도개선이 73조 5,393억원(72.9%)으로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집행부진 9조 5,093억원(9.4%), 우선순위 조정 8조 2,118억원(8.1%), 유사중복 4조 753억원(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2027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실적]

(단위: 백만원, %)

구조조정 유형	유형 수 기준		금액 기준	
	유형 수	비중	구조조정 실적	비중
합계 (56개 기관 기준)	5,375	100.0	100,905,013	100.0
제도개선	335	6.2	73,539,338	72.9
평가·지적	741	13.8	2,506,273	2.5
민간·지방정부 재원분담	72	1.3	1,785,111	1.8
유사중복	509	9.5	4,075,269	4.0
집행부진	584	10.9	9,509,262	9.4
우선순위	1,966	36.6	8,211,776	8.1
공공부문 경비	229	4.3	52,861	0.1
행사·홍보성 경비	123	2.3	50,129	0.0
관행적 경상경비 지원	153	2.8	73,124	0.1
기타	663	12.3	1,101,870	1.1

- 주: 1.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7개 기관(대통령비서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제외
 2. 교육부가 '의무지출'로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3개 항목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 지출구조조정 사유를 고려하여 제도개선 유형으로 포함함
 3.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서 여러 유형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유형 수의 합계와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세부사업 수의 합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제도개선은 전체 유형별 건수의 6.2%인 335건에 불과하지만 구조조정 실적의 72.9%를 차지하고 있어, 유형별 건수와 구조조정 실적 규모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대규모 의무지출 관련 구조조정 실적이 제도개선 유형에 포함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5) 지출구조조정 내역이 비공개된 기관이 있기에 정부가 발표한 총 107.6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4) 회계·기금별 지출구조조정 현황

56개 기관이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실적은 총 100조 9,050억 1,3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회계 부문의 지출구조조정 실적은 82조 3,254억 3,800만원(81.6%)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3조 3,259억 6,800만원(72.7%), 특별회계가 8조 9,994억 7,000만원(8.9%)을 차지하였다. 한편, 기금의 지출구조조정 실적은 18조 5,795억 7,500만원(18.4%)으로 나타났다.

[회계·기금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구조조정 실적	전체 대비 비율
지출구조조정 실적(56개 기관 ¹⁾)	100,905,013	100.0
회계 계	82,325,438	81.6
- 일반회계	73,325,968	72.7
- 특별회계	8,999,470	8.9
기금 계	18,579,575	18.4

주: 1)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7개 부처(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등) 제외

1. 세부사업 수는 부처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잠정치이며, 지출구조조정 실적에는 제도개편에 따른 조정액 등 개별 세부사업의 직접적인 예산 감액과 구분되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기관별 지출구조조정 현황

56개 기관이 제출한 지출구조조정 규모 100조 9,050억원은 2026년도 본예산 총지출 656조 9,140억원의 약 15%에 해당한다. 기관별로는 교육부(35조 1,331억원), 행정안전부(30조 6,573억원), 국토교통부(9조 5,894억원) 순으로 실적이 높았으며, 이들 3개 기관이 전체 실적의 약 75%를 차지하였다. 특히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실적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에 따른 조정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이 개별 재정사업의 지출 절감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한편, 56개 기관의 2027년도 총지출은 746조 3,367억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89조 4,226억원 증가하였다.

[기관별 2027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실적]

(단위: 개, 백만원, %)

부처명	세부 사업수	총지출			지출구조조정 실적(B)	'26 본예산 대비 비율 (B/A)
		2026 본예산(A)	2026 추경예산	2027 예산안		
합계 (56개 기관 ¹⁾)	2,771	656,914,027	684,675,452	746,336,664	100,905,013	15.4
교육부	66	106,360,749	111,173,257	112,664,736	35,133,064	33.0
행정안전부	100	76,905,548	86,393,527	84,703,615	30,657,301	39.9
국토교통부	198	62,806,888	63,027,365	64,716,019	9,589,411	15.3
고용노동부	87	37,676,128	38,092,612	36,297,473	4,020,052	10.7
중소벤처기업부	54	16,523,307	18,213,591	16,253,645	3,320,417	20.1
농림축산식품부	102	20,136,180	20,513,729	21,029,415	2,785,760	13.8
기후에너지환경부	165	21,758,837	22,374,377	23,086,851	2,750,227	12.6
보건복지부	145	137,494,919	137,840,975	148,769,702	2,548,263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1	23,762,180	23,818,448	21,304,945	2,427,328	10.2
산업통상부	176	9,434,233	10,532,280	13,257,270	1,507,302	16.0
재정경제부	87	34,303,009	38,758,950	39,722,292	1,154,096	3.4
해양수산부	148	7,356,579	7,501,382	8,013,968	984,632	13.4
문화체육관광부	152	7,855,547	8,316,985	8,650,231	709,240	9.0
인사혁신처	21	30,304,329	30,304,329	31,262,891	375,029	1.2
산림청	41	3,025,967	3,028,267	3,158,221	326,846	10.8
외교부	57	3,615,177	3,616,855	3,703,256	312,970	8.7
성평등가족부	32	1,968,268	1,968,268	1,913,720	244,615	12.4
국가유산청	54	1,497,132	1,498,562	1,664,501	193,012	12.9
우주항공청	25	1,120,101	1,120,101	902,523	172,255	15.4
농촌진흥청	41	1,139,440	1,139,440	1,213,415	170,022	14.9
경찰청	59	14,262,141	14,262,141	14,983,166	148,287	1.0
국가보훈부	43	6,687,016	6,687,616	7,219,030	147,164	2.2
통일부	20	1,244,701	1,244,701	1,254,874	144,704	11.6
금융위원회	13	2,152,836	2,152,836	1,299,168	128,520	6.0
법무부	53	4,704,644	4,705,389	5,405,598	109,082	2.3
질병관리청	59	525,406	525,406	568,584	94,225	17.9
식품의약품안전처	76	832,027	832,027	882,919	92,526	11.1
기상청	27	548,987	548,987	616,060	82,072	14.9
지식재산처	25	630,825	640,325	710,616	72,838	11.5

(단위: 개, 백만원, %)

부처명	세부 사업수	총지출			지출구조조정 실적(B)	'26 본예산 대비 비율 (B/A)
		2026 본예산(A)	2026 추경예산	2027 예산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4	104,462	104,462	132,829	56,972	54.5
기획예산처	9	10,190,762	10,944,662	57,120,193	45,213	0.4
대법원	17	2,507,173	2,507,173	2,647,604	43,241	1.7
소방청	23	336,463	336,463	371,275	41,970	12.5
국회	19	810,089	810,089	847,849	37,714	4.7
해양경찰청	23	2,088,487	2,088,487	2,229,163	33,826	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8	72,968	73,679	92,248	31,826	43.6
관세청	23	689,932	689,932	728,440	30,940	4.5
국가데이터처	32	456,670	456,670	421,717	29,916	6.6
국세청	25	2,097,794	2,311,158	2,481,341	28,671	1.4
새만금개발청	4	202,767	202,767	216,589	20,843	10.3
병무청	11	517,822	517,822	524,932	16,653	3.2
공정거래위원회	20	189,199	189,199	225,211	15,781	8.3
조달청	8	296,135	297,304	372,301	13,610	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	288,727	288,727	568,120	12,965	4.5
재외동포청	10	112,716	112,716	136,875	10,680	9.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	72,884	72,884	83,817	8,848	12.1
국민권익위원회	20	111,719	111,719	140,540	5,645	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	484,745	484,745	441,808	5,297	1.1
국무조정실	16	852,956	852,956	915,713	3,896	0.5
법제처	7	60,588	60,588	70,032	3,461	5.7
국가교육위원회	1	11,313	11,313	11,644	1,742	15.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37,171	37,171	40,703	1,500	4.0
국가인권위원회	11	43,869	43,869	46,014	1,048	2.4
헌법재판소	4	62,109	62,109	70,835	775	1.2
감사원	5	144,365	144,365	149,490	523	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	29,695	29,695	20,677	197	0.7

주: 1)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7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등) 제외
 1. 세부사업 수는 기관별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잠정치이며, 지출구조조정 실적에는 제도개편에 따른 조정액 등 개별 세부사업의 직접적인 예산 감액과 구분되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의견

(1) 지출구조조정 실적의 실질성 및 산정기준 개선 필요

①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자원 이전을 고려한 지방이전자원 구조조정 실적 적정성 검토 필요

기획예산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자원배분 변경 효과와 재정소요 감소 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확보된 자원의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배분 및 지출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의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총 107조 6,000억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에 따른 구조조정 실적⁶⁾은 각각 30조 4,900억원과 32조 5,332억원으로, 합계 63조 23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지출구조조정 실적의 약 58.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다만 이러한 실적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였을 경우의 추정 소요액과 2027년도 정부안의 차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실제 감액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7년도 정부안 합계는 156조 617억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오히려 15조 380억원 증가하였다.

[2027년도 지방이전자원 지출구조조정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6년 본예산	제도개선 전 소요(A)	27년 정부안(B)	구조조정 실적(A-B)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감
지방교부세	693,550	1,076,799	771,899	304,900	78,349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716,687	1,114,049	788,718	325,332	72,030
합계	1,410,237	2,190,848	1,560,617	630,232	150,380

주: 구조조정 실적은 전년 대비 감액이 아니라 종전 제도를 유지하였을 경우의 추정 소요액과 제도개편 후 예산안의 차액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홍보자료」(2026.9.)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6.9.)

우선, 지방교부세의 구조조정 실적은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재원 이전에 따른 교부세 산정대상 내국세의 축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교부하는 법정률을 유지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교부세 산정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2027년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인 금액은 158조 4,720억원으로, 여기에 법정 교부율 19.24%를 적용하면 약 30조 4,900억원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가 지방교부세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사실상 일치한다. 따라서 해당 실적은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을 직접 감축한 결과라기보다, 일반회계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면서 교부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 효과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종전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는 방식을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⁷⁾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교육부는 종전 제도 유지 시 추정 소요액 111조 4,049억원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2027년도 정부안 78조 8,718억원의 차액인 32조 5,332억원을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교부금 산식 변경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 효과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의 실적 산정방식과 차이가 있다.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구조조정 실적 분석]

(단위: 억원)

구분	산정방식	금액
제도개선 전 소요액(A)	기존 내국세×20.79%+교육세분	1,114,049
2027년도 예산안(B)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788,718
정부 산정 구조조정 실적(A-B)	제도개선 전 소요액과 정부안의 차액	325,332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지방이전재원에 대한 재정소요가 감소하였더라도 해당 재원이 미래대응기금 등 다른 재정사업에 배분되는 경우, 그 전액을 국가 전체의 재정지출 절감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2027년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158조 4,720억원을 전출할 계획이며, 미래대응기금의 총지출은 45조 3,858억원으로 편성하였

7) 교부금 = 전년도 교부금 × (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다. 따라서 지방이전재원 감소에 따른 재정소요 축소 효과와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적립 등 재원 운용 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이전재원 제도개편을 통해 의무지출 소요를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다른 정책에 배분하는 것도 재정지출의 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지출구조 조정 실적으로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재원배분 방식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실적이 국가 전체의 재정지출 절감 규모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지방이전재원 제도개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산정할 때, 교부세 산정대상 변경에 따른 재원 이전 효과와 교부금 산식 개편에 따른 재정소요 감소 효과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적립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재원배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이전재원 구조조정이 국가 전체 재정지출의 실질적인 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기존 계획에 따른 감액과 실질적 구조조정의 구분 필요

정부는 사업 종료, 기존 계획에 따른 예산 감소, 타 사업·회계·기금으로의 이관 및 사업 추진 일정 변경 등에 따른 감액을 실질적인 지출구조조정 실적과 구분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지출구조조정 실적에는 기존 사업계획에 따라 예정된 감액이나 사업간 재원 이전,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에 따른 감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계획에 따른 감액은 정부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따른 성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 이관이나 추진 일정 변경에 따른 감액은 전체 재정지출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감액의 발생 원인과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 중장기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실적을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별도의 지출구조조정 조치가 없더라도 기존 계획에 따라 예산 감소가 예정되어 있던 사업을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다.

① (재정경제부) **대미투자지원 프로그램 사업**은 2027년도 출자예산을 2,000억 원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당초 총 2조원의 출자계획에 따라 2026년 1조 1,000억원에 이어 잔여 출자금 9,0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추가

적인 재정절감으로 보기 어렵다.

② (국토교통부) **디지털국토정보기술 개발사업(R&D)** 등 16개 연구개발사업은 1,048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사업들은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③ (산업통상부)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은 526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한 것이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은 300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사업기간이 1년 인 일부 과제의 종료에 따른 예산 감소이다.

⑤ (교육부)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255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동물실험실 구축대상 9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2026년에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예산소요가 감소한 것이다.

⑥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등) 사업**은 191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2026년 한시적으로 추진한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⑦ (기상청)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등 2개 연구개발사업**은 173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사업들은 2026년에 연구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었던 사업이다.

⑧ (농촌진흥청)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R&D)(농업인안전재해관리 기술개발 등 5개 내역사업)**은 105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과제들은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연구개발사업이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청사이전 지원비)사업**은 103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연차별 건축계획에 따라 2027년도 공사비 및 감리비 소요가 감소한 것이다.

⑩ (산림청) **산림생물소재 활용 기반 기술개발(R&D)**은 2027년도 예산안에 미 편성(2026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3,300만원 감액)된 지출구조조정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완료 계획인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출구조조정과 무관하게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계획이 없었던 사업이다.

⑪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사업은 90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6억원을 전액 편성하여 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⑫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은 102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2026년 연구개발 완료에 예정되어 있어 2027년도 예산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감소의 지출구조조정 실적 산정 사례]

(단위: 백만원)

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실적	유형
재경부	일반회계	대미투자지원 프로그램	1,100,000	900,000	△200,000	제도개선
국토부	일반회계	디지털국토정보기술 개발사업(R&D)	13,514	-	△13,514	우선순위 조정
산업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K-온디바이스AI 반도체기술개발(R&D)	166,554	113,980	△52,574	우선순위 조정
과기부	일반회계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 생활 등)	40,500	10,500	△30,000	우선순위 조정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국립대학실험실습 기자재확충(실험실 안전 환경 기반조성)	38,661	13,193	△25,468	집행부진
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39,483	20,403	△19,080	우선순위 조정
기상청	일반회계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12,172	-	△12,172	우선순위 조정
농진청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사업(R&D)(농업인안전 재해관리기술개발)	1,060	-	△1,060	우선순위 조정
식약처	일반회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청사이전 지원비)	14,012	3,737	△10,274	평가, 지적

(단위: 백만원)

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실적	유형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생물소재 활용 기반 기술개발(R&D)	2,133	-	△2,133	우선순위 조정
기후부	기후대응기금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8,970	-	△8,970	우선순위 조정
질병청	일반회계	공공백신개발지원 사업 (R&D)	10,188	-	△10,188	우선순위 조정

주: 복수 사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실적을 산정한 사례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사업의 이관·통합 및 예산 편성방식 변경에 따라 종전 사업의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다른 사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①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舊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은 7,983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이 8,966억원 규모로 별도 편성되어 관련 사업의 전체 재정소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은 3,381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미래대응기금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 8,254억 7,700만원,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3,793억 100만원 등 유사한 취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 편성되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의 감액과 신규 사업 편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의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기반구축(R&D)(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은 600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미래대응기금의 과학기술AI혁신인재양성(R&D)(AI 기반 대학 과학기술 혁신) 사업에 350억원이 편성되어 실제 절감액은 이관 이후의 재정소요를 반영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④ (기상청)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사업은 348억원을 감액하여 구조

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관련 연구개발 기능이 2개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324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실제 재정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⑤ (소방청)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R&D) 및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은 총 92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미래에너지·인프라 화재대응 기술개발(R&D) 사업으로 통합되어 계속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출구조조정 실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⑥ (산업통상부)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R&D) 사업**은 62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관련 사업이 SDV용핵심반도체기술개발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70억원이 편성되었다.

⑦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장애인인턴제) 사업**은 66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은 69억원으로 확대되었다.

⑧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사업**은 35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범죄피해자 치료비 및 생계비) 사업의 예산이 같은 금액만큼 증액되어 한 사업으로 일원화되었다는 점에서 감액 금액 전체를 지출구조조정 실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업 이관·통합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실적 산정 사례]

(단위: 백만원)

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실적	유형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2,140,335	1,342,085	△798,250	제도개선
노동부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338,129	-	△338,129	제도개선
과기부	일반회계	기초연구기반구축(R&D)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60,000	-	△60,000	유사중복 정비
기상청	일반회계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R&D)	34,801	-	△34,801	제도개선
소방청	일반회계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 개발(R&D)	1,300	-	△1,300	유사중복 정비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R&D)	7,900	-	△7,900	유사중복 정비
산업부	일반회계	SDV용 AI가속기 반도체기술개발(R&D)	6,188	-	△6,188	유사중복 정비
노동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인턴제)	6,558	-	△6,558	제도개선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3,540	-	△3,540	제도개선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지막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총사업비가 불변하거나 사업 지연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에 인한 것으로 향후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① (국토교통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26개 철도건설사업**은 집행부진 등을 사유로 1조 3,815억원을 감액, **계양-강화 고속도로건설 등 37개 도로건설사업**은 집행부진을 사유로 6,760억원을 감액, **가덕도신공항건설 등 7개 공항건설사업**은 집행부진

을 사유로 2,557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사업들의 총 사업비는 변경되지 않아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른 지출시기 변경에 해당한다.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사업**은 집행부진을 사유로 72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총사업비는 변경되지 않아 연차별 재정투입 시기가 조정된 것이다.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회덕IC 연결도로 사업**은 13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2026년 총사업비를 60억원 증액하고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한 데 이어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99억원의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당해연도 예산 감액과 달리 중장기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④ (재정경제부) **팬데믹 대응 기금 지원(ODA) 사업**은 39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당초 약정한 공여 총액은 유지한 채 납입 종료시기를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⑤ (질병관리청)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사업**은 35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시기만 늦어진 것으로 총사업비는 유지되고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사업**은 집행부진을 사유로 31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총사업비 438억원은 유지되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규모댐 건설(항사댐 건설)사업**은 57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총사업비 1,092억원은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절감보다는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에 해당한다.

⑧ (국가유산청)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은 2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설계공모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졌을 뿐 총사업비 258억원은 유지되고 있다.

[총사업비가 불변하거나 사업 지연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사업을 실적으로 산정한 사례]
(단위: 백만원)

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실적	유형
국토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철도계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466,300	202,773	△263,527	집행부진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계정)	계양-강화고속도로건설	313,080	203,191	△109,889	집행부진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공공항계정)	가덕도신공항 건설(공항)	631,562	405,200	△226,362	집행부진
행복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19,513	12,300	△7,213	집행부진
		회덕IC 연결도로	9,350	8,007	△1,343	우선순위 조정
재경부	일반회계	팬데믹 대응 기금 지원 (ODA)	13,800	9,933	△3,867	우선순위 조정
질병청	일반회계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3,457	-	△3,457	집행부진
문체부	국민체육 진흥기금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5,180	2,072	△3,108	집행부진
기후부	일반회계	소규모댐 건설 (항사댐 건설사업)	6,606	861	△5,745	우선순위 조정
유산청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	650	455	△195	집행부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실적에는 기존 사업계획에 따라 예정된 예산 감소, 사업 이관·통합에 따른 편성구조 변경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른 감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감액은 당해연도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반드시 정부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나 중장기적인 재정부담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계획에 따라 예정된 감액과 추가적인 구조조정 조치를 구분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사업 이관·통합이나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의 경우 관련 사업의 전체 재정소요와 향후 재정부담의 변화를 함께 검토하는 등 지출구조조정 실적의 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재원분담 및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실적 산정

2027년도 지출구조조정 실적 중 재원분담 및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감액은 기존 재정지원의 축소뿐 아니라 다른 재원의 증액이나 향후 재정부담 증가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지원방식 변경 전후의 전체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실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역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면서 동일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을 증액하거나 사업비 배분방식을 변경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직접재정지원에서 민간투자 또는 다른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당해연도 지출을 감축하였으나, 향후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먼저 재원분담 및 사업비 배분방식 변경에 따른 감액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예산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일반출연)** 사업은 일반출연금 400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특별출연금 4,236억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체 출연금은 오히려 전년 대비 3,836억원 증가하였다.

②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사업비 배분비율을 포물리와 인센티브 간 5:5에서 4:6으로 조정하면서 포물리 예산 감액분 525억원을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전체 지원예산의 감소 없이 배분비율만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재정절감으로 보기 어렵다.

③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출자·영구임대출자·행복주택출자 사업**은 총 471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사업들은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었으며, LH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활용하여 출자예산을 상계한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 감액과 별도 재원 활용에 따른 재정적 효과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은 민간·지자체 재원 분담을 사유로 192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당초 2026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하고 2027년 이후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절감 효과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재원분담 및 사업비 배분방식 변경 지출구조조정 실적 산정 사례]

(단위: 백만원)

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실적	유형
기획처	일반회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일반출연)	50,000	10,000	△40,000	민간·지자체 재원분담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전문대학 혁신 지원	262,350	209,880	△52,470	제도개선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국민임대출자	33,271	-	△33,271	제도개선
		영구임대출자	4,091	-	△4,091	제도개선
		행복주택출자	9,775	-	△9,775	제도개선
과기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19,151	-	△19,151	민간·지자체 재원분담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재정지원방식 전환에 따른 감액은 당해연도 예산 감소뿐 아니라 향후 재정소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건립(건축공사 및 부대비용) 사업**은 신규 공사의 민간투자방식(BTL) 전환 등을 반영하여 443억원을 감액하였으나, 향후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PBS 제도개선⁸⁾ 관련 52개 세부사업**은 정부수탁과제 예산 1,060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PBS 폐지에 따

8) PBS(Project-Based System)는 출연연 연구자가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인건비를 확보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6~2030년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부수탁과제 종료에 따른 인건비를 기관에 직접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수탁과제 감액 실적은 8개 회계·기금, 52개 세부사업에 분산되어 있음

라 출연연 인건비 지원예산이 1,506억원 증액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수탁과제 예산 감액과 인건비 지원 확대에 따른 전체 재정소요의 변화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출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 이차보전) 사업**은 대납이자 지원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944억원을 감액하여 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기존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이자면제 지원분이 별도 내역사업으로 823억원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지원방식 변경 전후의 전체 재정소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 방식 전환을 지출구조조정 실적으로 산정한 사례]

(단위: 백만원)

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실적	유형
과기부	우편사업 특별회계	우체국건립(건축공사)	88,867	46,107	△42,760	민간-지자체 재원분담
		우체국건립(부대비용)	3,157	1,599	△1,558	민간-지자체 재원분담
과기부	3개 회계/ 5개 기금	출연연 PBS 제도개선 ¹⁾ (52개 세부사업)	106,041	-	△106,041	제도개선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한국장학재단 출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 이차보전)	227,267	132,820	△94,447	제도개선

주: 1) 출연연 PBS 제도개선(52개 세부사업)은 실제 세부사업명이 아닌 합산 항목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재원분담이나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감액은 당해연도 예산을 감소시키더라도 관련 사업의 전체 재정소요가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민간 투자방식 전환이나 지원체계 개편은 당해연도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대신 향후 연도의 임대료·운영비·인건비 등으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원분담 및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산정할 때 감액된 내역사업뿐 아니라 관련 사업의 전체 예산과 향후 재정소요를 함께 고려하고, 중장기 재정부담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구조조정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및 성과평가와의 연계 강화 필요

① 지출구조조정 대상 선정 및 감액 수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감액 규모를 결정할 때 집행부진 및 성과미흡의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액 대상과 규모가 실제 문제점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행실적이나 성과평가 결과를 근거로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실제 감액 대상이 평가 지적사항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집행부진의 원인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감액 이후에도 사업의 주요 기능이 유지되고 당초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예산 절감이 오히려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액 사유와 대상 간 연관성, 감액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평가·지적사항과 감액 대상 간 연관성, 집행부진의 원인 및 감액 이후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인프라 확충 사업**은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30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다. 그러나 평가 지적사항은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의 유사중복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모바일신분증 플랫폼 운영,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등 성격이 다른 내역사업까지 감액한 것은 평가결과와 감액 대상 간 연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② (법무부)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재난대응 시설개선)사업**은 우선순위 조정을 사유로 78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2027년도에는 내진보강 공사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내진설계를 완료한 38개소 중 19개소는 보강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시설의 안전성과 기존 내진보강계획 등을 고려하여 감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 사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은 집행부진을 사유로 96억 900만원을 감액하였다. 그러나 2026년도 인건비 지원수준이 최저임금의

24~42%로 낮아진 가운데 같은 해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13.8%에 그쳤다는 점에서, 지원조건이 집행부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감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의 자활성공지원금은 집행부진을 사유로 14억 7,100만원(75%)을 감액하였다. 그러나 동 제도는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충분한 집행실적이 축적되지 않았으며, 2027년도 예산 산정 시 지급률 25%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지급률의 산출근거와 향후 지원수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사업**은 우선순위 조정을 사유로 12억원을 전액 감액하여 2027년도 신규 확충 물량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가 2023·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설치단가 현실화와 연례적인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설치 지연의 원인을 개선하지 않은 채 신규 확충 물량을 전부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사업**은 우선순위 조정을 사유로 3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에 따라 검체 수거물량은 4,125건에서 3,272건으로 감소하고 합동단속 횟수도 5회에서 2회로 축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자체 재원 확보 가능성과 감액 이후 식품안전 감시 수준의 유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출구조조정 대상 선정 및 감액 수준의 적정성 검토 사례]

(단위: 백만원)

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실적	유형
행안부	일반회계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19,514	16,497	△3,017	평가·지적
법무부	일반회계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재난대응 시설개선)	8,960	1,085	△7,875	우선순위 조정
노동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32,100	22,491	△9,609	집행부진

(단위: 백만원)

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실적	유형
보건 복지부	일반회계	자활사업(자활성공 지원금 지급·관리)	1,960	489	△1,471	집행부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아동보호전문 기관 신규설치)	1,200	-	△1,200	우선순위 조정
식약처	일반회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식품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1,135	757	△378	우선순위 조정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이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별 실제 수요와 감액 이후의 사업 수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시설 확충 및 개선이 지연되거나 지원·점검 물량이 축소되는 등 당초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집행부진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감액하면 사업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될 수 있으며, 필수적인 재정소요를 단년도 감액 대상으로 조정하는 경우 미충족 수요가 누적되거나 향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집행률이나 감액 규모뿐 아니라 사업별 실제 수요, 필수 사업물량 및 감액에 따른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소요는 적정하게 반영하고, 집행부진의 원인이 지원조건이나 사업 운영방식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예산 감액이 사업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지출구조조정 실적 간 연계관리 강화 필요

기획예산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지출구조조정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와 이후 예산변동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감액 판정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26년도 예산 대비 15% 이상을 감액하여 2027년도 예산을 요구

하도록 하였다. 다만 감액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027년도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56개 기관의 「202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을 집계한 결과 평가대상은 총 2,369개 세부사업이며, 2026년도 예산액은 167조 6,818억원이다.⁹⁾

이 중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825개, 폐지 3개, 통합 39개로, 전체 평가대상의 약 37%인 867개 사업이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이는 성과평가에 따른 판정 결과로서 실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감액·폐지·통합이 이루어진 사업 수와는 구분된다.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현황(56개 기관)]

(단위: 개, 억원)

평가결과	세부사업		26년 예산	주요 후속조치
	수	비중		
정상 추진	87	3.7	57,005	사업 정상 추진
사업 개선	1,415	59.7	1,094,843	성과관리 개선계획 수립
지출구조조정 대상	867	36.6	524,970	감액·폐지·통합 등
감액	825	34.8	483,364	15% 이상 감액 요구
폐지	3	0.1	145	사업 폐지
통합	39	1.6	41,461	사업 통합·구조개편
합계	2,369	100.0	1,676,818	

주: 1. 정부가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56개 기관 기준

2. 예산액은 평가대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으로, 2027년도 지출구조조정 실적과는 구분됨

자료: 각 기관 「202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환류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성과평가의 지적사항은 예산 규모뿐 아니라 사업구조, 집행관리 및 성과 지표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부 내역사업의 예산 감액만으로 평가에서 지적된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전체 사업의 예산은 증가하였음에도 기존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역사업에만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문제가 지속·반복될 수 있다.

9) 지출구조조정 사업과 별개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대상이 된 사업의 규모를 의미함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사업의 경우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단순 접속자 수 중심의 성과측정을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2027년도 사업설명자료에는 예산 감액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을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로 제시하였을 뿐, 사업별 성과관리체계의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비 확대와 바닥충격을 성능검사 정보화시스템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73억 7,900만원 증액되었으나, 제시된 성과지표는 공공데이터 활용 실적 등 포괄적인 지표로서 개별 시스템의 국민 편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및 2027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주택공급·임대차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26년 성과평가	감액 판정. 단순 접속자 수 중심의 성과측정에서 벗어나 국민 편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27년 예산안	73억 3,500만원 → 147억 1,400만원(73억 7,900만원 증액)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성과평가에서 폐지·통합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실제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 전년도와 동일한 35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통합 판정을 받았으나, 2027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며, 관계기관 간 통합운영 방안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2027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명	평가결과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미이행사유
해수부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폐지	3,500	3,500	국정과제 연계 등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	통합	150,203	313,678	방안 협의 중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사례는 성과평가에서 감액·폐지·통합 등의 개선방향이 제시되더라도 실제 예산편성 및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평가결과와 다른 예산편성이 반드시 부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정부는 미이행 사유의 타당성과 당초 평가 지적사항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고, 통합·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폐지·통합 등의 실제 이행 여부와 사업개선 조치의 추진실적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특히 신규·확대 내역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사업계획, 성과지표 및 집행관리체계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출구조조정 실적의 관리 및 검증체계 개선 필요

① 지출구조조정 실적의 작성기준 및 국회 제출체계 개선 필요

기획예산처는 지출구조조정 실적의 검증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별 감액 대상·규모 및 산정근거에 관한 공통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과 총괄 실적을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하여 매년 국회에 정례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56개 기관의 사업목록에는 사업명, 전년도 본예산, 다음 연도 정부안, 지출구조조정 실적 및 유형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회계·기금명과 세부사업코드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부 내역사업의 감액액이나 복수 세부사업의 합산 실적 등이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개별 사업의 감액 대상과 범위 및 실적 산정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정보화) 사업을 동일한 세부사업명으로 2개 항목에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2026년 본예산액을 각각 22억 4,300만원과 6억 3,500만원, 구조조정 실적을 7,200만원과 6,400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감액 대상인 내역사업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개 회계·5개 기금에 걸친 52개 세부사업의 출연연 PBS 제도개선에 따른 구조조정 실적 1,060억 4,100만원을 하나의 항목으로 합산하여 제시하고 있어, 개별 세부사업의 감액 규모와 회계·기금별 실적을 구분하기 어렵다.

[지출구조조정 공개 사업목록의 작성 단위 불명확 사례]

(단위: 백만원)

기관	공개자료 사업명	26 본예산	27 정부안	구조조정 실적
문체부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정보화)	2,243	2,171	△72
		635	571	△64
과기부	출연연 PBS 제도개선	106,041	-	△106,041
농림부	기금 정비	460,000	10,000	△450,000
법무부	일반회계전입금	12,516	-	△12,51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처럼 감액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개별 사업의 조정내역과 회계·기금별 및 유형별 총괄 실적 간 대응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계획에 따른 감액, 사업 이관·통합, 지출시기 조정 등이 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감액 규모뿐 아니라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산정근거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코드 및 공식 사업명을 공통 작성 항목으로 정하고, 일부 내역사업을 감액하거나 복수 사업의 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별 감액액을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기준액, 감액 사유 및 산정방식을 명시하여 사업별 구조조정 실적의 산출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출구조조정 실적의 제출이 기관별 자료 공개에 그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가 사업별 세부내역과 회계·기금별 및 유형별 총괄 실적을 통합하여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자료의 제출 시기와 범위, 작성기준을 제도화하고, 개별 사업의 조정내역과 정부 발표 총규모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재정사업 정보의 연계·활용을 통한 지출구조조정 검증체계 개선

기획예산처는 정부·국회·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정사업 정보의 연계·활용을 강화하여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의 선정과 실적 검증을 체계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하는 지출구조조정 목록에는 사업별 예산액, 감액 규모 및 구조조정 유형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결과, 사업 이관·통합 내역 및 이후 예산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유사·중복 사업이나 반복적인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재정정보뿐 아니라 국회의 예·결산 심사 지적사항,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사업 및 평가정보의 표준화와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¹⁰⁾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사·중복 재정사업 탐지, 집행패턴 분석 및 성과평가 지원 등의 기능을 제안하는 등 재정정보의 분석·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¹¹⁾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축적된 예산·집행·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의 감액 사유와 이후 예산변동 및 성과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발굴과 실적 검증을 위해 관계기관 간 재정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AI 분석기술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개선 방안」, 2024.11.

11) 한국재정정보원, 「재정관리 관점의 AI 기술 적용 방안」, 2026.5.

가. 현 황

(1) 의무지출의 개념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한다¹⁾. 이에 반해,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은 법률상 의무가 없는 지출로서, 국가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하며, 그 지출 규모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교]

구분	의무지출	재량지출
지출 구분 근거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3
지출 발생 요인	지출의무가 명시된 재정수반법률	사업추진 근거법 등
지출 규모	법령에 따라 결정	국회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
예산 변경방법	재정수반법령의 제·개정(입법과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규모 조정
예산안 심사관점	편성 규모의 정확성 등	정책(사업)과 규모의 타당성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오규환 예산분석관(ogh2221@assembly.go.kr, 6788-4636)

1)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2027년도 의무지출 예산안 개요

2027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426.8조원으로,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0%이다.

의무지출 사업의 최근 5년간(2023~2027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예산안 기준 426.8조원으로 86.5조원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5%로 의무지출의 증가율(5.8%)보다 0.7%p 높은 수준을 보인다.

[최근 5년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비중 변화]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	2027년도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638.7	656.6	703.3	753.0	820.9	6.5
의무지출	340.3	347.4	364.8	397.5	426.8	5.8
(비중)	(53.3)	(52.9)	(51.9)	(52.8)	(52.0)	
재량지출	298.4	309.2	338.4	355.6	394.1	7.2
(비중)	(46.7)	(47.1)	(48.1)	(47.2)	(48.0)	

주: 2023~2026년은 최종(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3.3%에서 2027년도 예산안 기준 52.0%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부터 지속적으로 총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6~2030년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계획되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2025~2029년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3% 대비 2.2%p 상향 조정되었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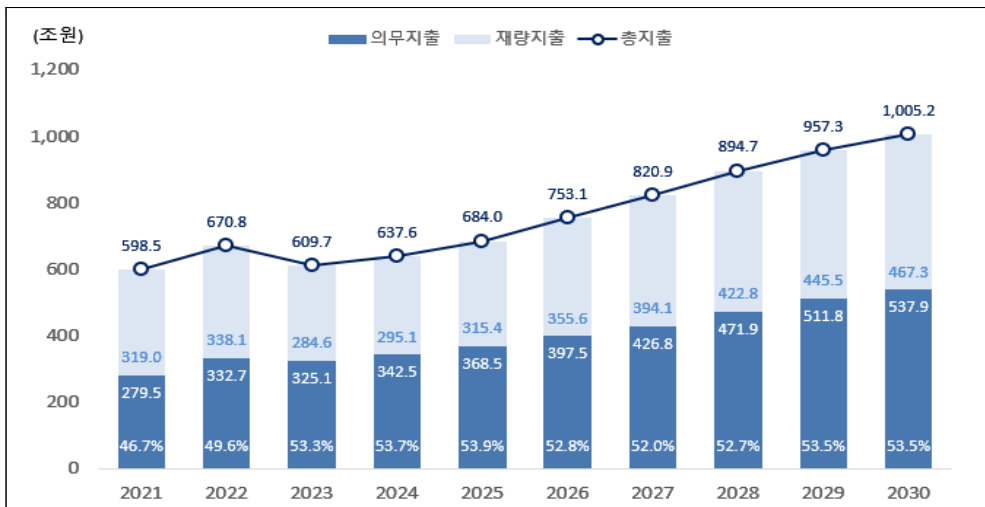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25~'29 계획							
■ 재정지출	703.3	728.0	764.4	802.6	834.7	-	4.4
- 의무지출	364.8	388.0	415.1	441.3	465.7	-	6.3
- 재량지출	338.4	340.0	349.3	361.3	369.0	-	2.2
◇'26~'30 계획							
■ 재정지출	-	753.0	820.9	894.6	957.4	1,005.2	8.4
- 의무지출	-	397.5	426.8	471.9	511.8	537.9	8.5
- 재량지출	-	355.6	394.1	422.8	445.5	467.3	8.3

주: '26~'30 계획상 2026년은 최종(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의무지출 규모는 재량지출보다 빠른 속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총지출의 53.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의무지출의 비중·규모 확대는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 내국세 증가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 확대, 그리고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2030년 의무지출 규모와 총지출 대비 비중]



주: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최종(추경)예산, 2027~2030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d-Brain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7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의무지출 예산안의 56.6%에 해당하는 241.6조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고, 2.5%에 해당하는 10.8조원이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40.9%에 해당하는 174.3조원이 기금에 편성되었다. 2027년도 예산안 상 의무지출 세부사업의 수는 총 154개로 2025년과 동일하다.

[2025~2027년도 회계·기금별 의무지출 예산(안) 현황]

(단위: 개, 조원, %)

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2027년도 예산안		
	세부 사업수	금액	비중	세부 사업수	금액	비중	세부 사업수	금액	비중
회계 일반회계	83	213.4	58.5	82	219.7	56.6	80	241.6	56.6
특별회계	28	6.2	1.7	32	10.9	2.8	27	10.8	2.5
소 계	111	219.6	60.2	114	230.6	59.5	107	252.4	59.1
기 금	43	145.2	39.8	43	157.3	40.5	47	174.3	40.9
합 계	154	364.8	100.0	157	388.0	100.0	154	426.8	100.0

주: 최종(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3) 의무지출 유형별 예산안 현황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의무지출 사업을 복지분야 법정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장애인연금 등으로 구성되고, ②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③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이자 상환 등으로 구성되고, ④ 기타 의무지출은 공익기능증진직불금, UN 평화유지활동(PKO) 예산분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의무지출 사업 유형별 분류체계]

대분류		소분류
복지 분야 법정 지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노인부문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아동·보육부문	아동수당, 부모급여
	고용·노동부문	구직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산재보험급여, 기타
	보훈부문	보상금, 수당 및 일시금, 보훈의료복지 등
	기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WHO 의무분담금 납부 등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등
이자지출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등
기타 의무지출		공익기능증진직불금, UN PKO 예산분담금 등

자료: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7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을 의무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213.3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이전재원이 159.6조원, 이자지출 40.0조원, 기타 의무지출 13.9조원 순이었다.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5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9.4%에 해당하였으며, 기타 의무지출은 전년과 동일한 3.3% 수준이었다. 반면, 지방이전재원의 비중은 전년 대비 1.4%p 감소한 37.4%이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2026년도 추경예산 대비 모든 의무지출 유형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16.7조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지방이전재원은 5.2조원, 이자지출은 6.3조원, 기타 의무지출은 1조원이 증가하였다.

[2027년도 유형별 의무지출 예산안]

(단위: 조원, %)

구분	2026년 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가액 (B-A)	증가율 (B-A)/A
합계	397.5	426.8	29.3	7.4
복지분야 법정지출	196.6	213.3	16.7	8.5
(비 중)	49.5	50.0	-	-
지방이전재원	154.4	159.6	5.2	3.4
(비 중)	38.8	37.4	-	-
이자지출	33.7	40.0	6.3	18.7
(비 중)	8.5	9.4	-	-
기타 의무지출	12.9	13.9	1.0	7.8
(비 중)	3.3	3.3	-	-

주: 1. 비중은 전체 예산(안)에서 해당 의무지출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

2. 2026년도 예산은 최종(추경)예산 기준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유형별 의무지출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출, 노인부담 지출 등의 증가가 크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자 증가에 따라 2026년 54.5조원 대비 5.0조원이 증가한 59.5조원이 편성되었고, 공무원연금 역시 수급자와 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 2026년 28.6조원에서 1.0조원 증가한 29.6조원이 편성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지출이 증가하여 2026년 22.5조원 대비 4.7조원 증가한 27.2조원이 편성되었다. 기초연금의 경우 고령화 및 지급단가 인상 등에 따라 2026년 23.1조원에서 2.5조원 증가한 25.7조원이 편성되었다.

둘째,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예산안의 대부분이 내국세 세입예산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²⁾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³⁾으로 구성되는데, 2027년부터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모수가 총액 대신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

2) 내국세 총액(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및 전년도 정산액(내국세·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의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

3) 내국세 총액(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제외)의 20.79%와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분을 제외한 금액

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일부와 교육세 대신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산식⁴⁾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추계한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입 전망치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2026년 69.4조원 대비 7.8조원 증가한 77.2조원이 편성되었다.

셋째, 이자지출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 상환액이 2026년 29.2조원에서 5.9조원 증가한 35조원이 편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 벼 중심의 생산구조의 전환, 농가의 소득확충 등을 감안하여 공익기능증진직불금을 지속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2026년 12.9조원에서 1.0조원 증가한 13.9조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유형별 의무지출 예산안 상세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6년 본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가액 (B-A)	증가율 (B-A)/A
합 계	3,876,640	4,267,566	390,926	10.1
1. 복지분야 법정지출	1,962,816	2,133,001	170,185	8.7
(1) 국민기초생활보장	224,665	271,742	47,077	21.0
① 생계급여	91,727	108,004	16,277	17.7
② 의료급여	98,400	122,973	24,573	25.0
③ 주거급여	32,309	38,328	6,019	18.6
④ 교육·해산·장제	2,229	2,437	208	9.3
(2) 건강보험	137,991	149,698	11,707	8.5
① 가입자지원(일반)	107,820	117,923	10,103	9.4
② 가입자지원(기금)	19,351	20,116	765	4.0
③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	10,820	11,659	839	7.8
(3) 4대 공적연금	939,334	1,004,018	64,684	6.9
① 국민연금	545,085	594,767	49,682	9.1
② 공무원연금	286,455	296,124	9,669	3.4
③ 사학연금	60,699	64,485	3,786	6.2
④ 군인연금	47,095	48,642	1,547	3.3
(4) 노인부문	257,227	282,565	25,338	9.9
① 기초연금	231,378	256,530	25,152	10.9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25,849	26,035	186	0.7
(5) 아동·보육부문	48,547	51,968	3,421	7.0

4) 전년도 교부금 × (1 +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 +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35)]

(단위: 억원, %)

구분	2026년 본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가액 (B-A)	증가율 (B-A)/A
① 영유아보육료 지원	23,726	22,695	△1,031	△4.3
② 아동수당	24,822	29,272	4,450	17.9
(6) 고용·노동부문	196,839	203,046	6,207	3.2
① 구직급여	115,376	116,799	1,423	1.2
② 산재보험급여	81,463	86,246	4,783	5.9
(7) 보훈부문	56,456	61,478	5,022	8.9
① 보상금	37,175	39,764	2,589	7.0
② 참전명예수당 등 수당	5,978	5,934	△44	△0.7
③ 6.25자녀, 고엽제 등 수당	5,699	6,288	589	10.3
④ 보훈·위탁병원진료 등	7,604	9,492	1,888	24.8
(8) 기 타	101,756	108,487	6,731	6.6
2. 지방이전재원	1,449,180	1,596,154	146,974	10.1
① 지방교부세 ¹⁾	693,550	771,899	78,349	11.3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²⁾	716,687	788,718	72,031	10.1
③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38,943	35,537	△3,406	△8.7
3. 이자지출	336,078	399,765	63,687	19.0
① 공공자금관리기금	291,639	350,163	58,524	20.1
② 주택도시기금	16,867	21,254	4,387	26.0
③ 기 타	27,573	28,347	774	2.8
4. 기타 의무지출	128,566	138,647	10,081	7.8
① 공익기능증진직불금	29,703	30,615	912	3.1
② 유엔 PKO 예산분담금	1,777	1,558	△219	△12.3
③ 기 타	97,086	106,473	9,387	9.7

주: 1)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됨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일반회계의 보통교부금,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지역현안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됨

자료: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지출유형별 예산(안) 추이를 살펴보면,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7.4% 대비 0.4%p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9.3%, 이자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0.7%, 기타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0.2%로 총지출 대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2018년 이후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이자지출도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자지출의 증가율은 2023년 이후 10.6~21.9%에 달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2018~2027년도 지출유형별 예산(안)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안)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432.7 (5.5)	475.4 (9.9)	554.7 (16.7)	604.9 (9.0)	679.5 (12.3)	638.7 (△6.0)	656.6 (2.8)	703.3 (7.1)	753.0 (7.1)	820.9 (9.0)	7.4
의무지출	217.0 (7.9)	239.8 (10.5)	255.3 (6.5)	279.1 (9.3)	329.7 (18.1)	340.3 (3.2)	347.4 (2.1)	364.8 (5.0)	397.5 (9.0)	426.8 (7.4)	7.8
복지분야 법정지출	95.8 (9.1)	107.2 (11.9)	123.4 (15.2)	131.4 (6.5)	139.7 (6.3)	154.7 (10.7)	169.2 (9.4)	183.1 (8.2)	196.6 (7.3)	213.3 (8.5)	9.3
지방이전재원	99.4 (9.1)	111.5 (12.2)	108.4 (△2.8)	122.1 (12.6)	157.8 (29.2)	155.4 (△1.5)	139.8 (△10.1)	140.4 (0.5)	154.4 (9.9)	159.6 (3.4)	5.4
이자지출	16.0 (△0.9)	15.9 (△0.4)	16.9 (6.2)	17.9 (5.9)	18.8 (4.9)	22.9 (21.9)	27.0 (17.7)	29.8 (10.6)	33.7 (13.1)	40.0 (18.6)	10.7
기타 의무지출	5.8 (△4.0)	5.2 (△10.6)	6.6 (26.8)	7.7 (16.6)	13.4 (75.1)	7.3 (△45.4)	11.5 (56.4)	11.5 (0.0)	12.9 (12.1)	13.9 (7.8)	10.2
재량지출	215.7 (3.2)	235.6 (9.2)	299.4 (27.1)	325.8 (8.8)	349.8 (7.4)	298.4 (△14.7)	309.2 (3.6)	338.4 (9.4)	355.6 (5.1)	394.1 (10.8)	6.9

주: 1.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2. 2018~2026년은 최종(추경)예산 기준, 2027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 유형은 지방이전재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계획되었다.

[2026~2030년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단위: 억원, %)

의무지출 합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연평균 증가율
	3,876,640	4,267,566	4,718,516	5,118,442	5,378,548	8.5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	1,962,816	2,133,001	2,260,634	2,407,666	2,566,615	6.9
○ 국민기초생활보장	224,665	271,742	301,490	338,350	378,352	13.9
○ 건강보험	137,991	149,698	156,760	164,236	171,899	5.6
○ 4대 공적연금	939,334	1,004,018	1,056,432	1,133,219	1,211,239	6.6
○ 노인부문	257,227	282,565	310,223	320,374	331,140	6.5
○ 아동·보육부문	48,547	51,968	52,001	50,087	53,616	2.5
○ 고용·노동부문	196,839	203,046	209,104	218,972	229,584	3.9
○ 보훈부문	56,456	61,478	60,818	61,733	62,691	2.7
○ 기타	101,756	108,487	113,806	120,695	128,094	5.9
② 지방이전재원	1,449,180	1,596,154	1,886,983	2,105,570	2,169,819	10.6
○ 지방교부세	693,550	771,899	1,010,100	1,171,012	1,207,405	14.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6,687	788,718	842,674	901,226	926,810	6.6
○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38,943	35,537	34,209	33,332	35,605	△2.2
③ 이자지출	336,078	399,765	425,833	456,972	489,482	9.9
○ 공공자금관리기금	291,639	350,163	376,739	407,195	441,167	10.9
○ 주택도시기금	16,867	21,254	22,583	23,502	21,987	6.9
○ 기타	27,573	28,347	26,511	26,276	26,329	△1.1
④ 기타 의무지출	128,566	138,647	145,066	148,234	152,631	4.4
○ 공익기능증진직불금	29,703	30,615	33,291	34,792	36,723	5.4
○ 유엔 PKO 예산분담금	1,777	1,558	1,720	1,603	1,489	△4.3
○ 기타	97,086	106,473	110,055	111,839	114,418	4.2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나. 분석의견

이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급여지급, 아동기본수당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 내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이자지출 증가에 대한 경직성 심화 우려, 기타 의무지출인 국가배상금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전면 개편됨에 따라 별도로 분석하였다⁵⁾.

5)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26. 10.)의 “지방교부세 개편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분석” 참고

(1) 복지분야 법정지출 분석

의무지출 유형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구직급여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정 의무지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급액, 노인·아동·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복지분야 법정지출 예산안 상세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6년 본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가액 (B-A)	증가율 (B-A)/A
1. 복지분야 법정지출	1,962,816	2,133,001	170,185	8.7
(1) 국민기초생활보장	224,665	271,742	47,077	21.0
(2) 건강보험	137,991	149,698	11,707	8.5
(3) 4대 공적연금	939,334	1,004,018	64,684	6.9
(4) 노인부문	257,227	282,565	25,338	9.9
(5) 아동·보육부문	48,547	51,968	3,421	7.0
(6) 고용·노동부문	196,839	203,046	6,207	3.2
(7) 보훈부문	56,456	61,478	5,022	8.9
(8) 기 타	101,756	108,487	6,731	6.6

자료: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2027년도 예산안 기준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213조 3,001억원이며, 이 중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지출이 100조 4,018억원으로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47.1%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연금 등 노인부문 지출이 28조 2,565억원으로 13.2%,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출이 27조 1,742억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의무지출 증가폭이 가장 큰 부문은 4대 공적연금으로 6조 4,684억원 증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 4조 7,077억원, 노인부문이 2조 5,338억원 증가하였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21.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노인부문은 9.9%, 건강보험은 8.5% 증가하였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를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급여, 자활급여 등 7종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

[2017~2027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추이]

(단위: %)

연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증가율	1.73	1.16	2.09	2.94	2.68	5.02	5.47	6.09	6.42	6.51	6.70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만 6,042원으로 결정되었다.

[2026년도 및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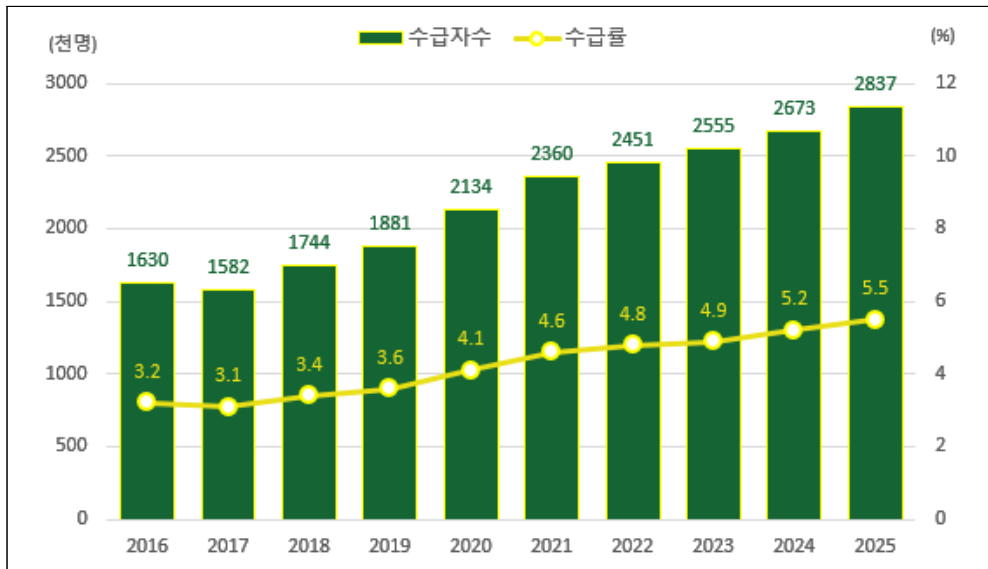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6년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27년	2,736,042	4,480,645	5,718,091	6,929,885	8,063,019	9,129,201
생계급여 (중위 32%)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27년	87만 5,533	143만 3,806	182만 9,789	221만 7,563	258만 166	292만 1,344
의료급여 (중위 40%)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27년	109만 4,417	179만 2,258	228만 7,236	277만 1,954	322만 5,208	365만 1,680
주거급여 (중위 48%)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27년	131만 3,300	215만 710	274만 4,684	332만 6,345	387만 249	438만 2,016
교육급여 (중위 50%)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27년	136만 8,021	224만 323	285만 9,046	346만 4,943	403만 1,510	456만 4,601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 기준의 상향⁶⁾ 등에 따라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기준 158만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2025년 284만명으로 79.3% 증가하였으며, 총인구대비 수급자 수로 나타난 수급률은 2017년 3.1%에서 2025년 5.5%로 2.4%p 증가하였다.

[2016~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 e-나라지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026년도 본예산 대비 4조 7,077억 원(21.0%) 증액된 27조 1,742억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의료급여가 12조 2,973억 원(4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급여가 10조 8,004억원 (39.7%), 주거급여가 3조 8,328억원(14.1%) 편성되었다. 상위 3개 급여가 전체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99.1%를 차지한다.

6) 2024년에 생계급여 수급 기준(30% → 32% 이하)과 주거급여 수급 기준(43% → 48% 이하)이 상향됨

[202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	증가액 (B-A)	증가율 (B-A)/A
국민기초생활보장	224,665	271,742	47,077	21.0
① 생계급여	91,727	108,004	16,277	17.7
② 의료급여	98,400	122,973	24,573	25.0
③ 주거급여	32,309	38,328	6,019	18.6
④ 교육·해산·장제	2,229	2,437	208	9.3

자료: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⁷⁾.

첫째,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일부 상쇄되는 구조가 있어, 2027년 하후상박 개편에 따른 기초연금 인상 효과가 저소득 노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의 규모는 2021년 56.8만 명에서 2025년 78.3만 명으로 4년 사이 37.9% 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 수치의 증가만 놓고 보면 단순히 수급자 수가 늘어났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초연금이라는 정책 수단이 노인빈곤 완화라는 본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수급자 현황]

(단위: 만명, 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동시수급자 수	62.1	64.4	68.6	78.3
동시수급자 평균 기초연금수급액	29.7	31.2	32.4	33.1
65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 수	71.0	74.8	80.8	92.5

자료: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만큼을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이때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은 그대로 소득으

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10.

로 반영된다. 즉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기초연금이 아무리 인상되어도 동시수급자의 최종 가처분소득, 즉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합산한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 기초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그대로 생계급여 지출 감소분으로 흡수되어 정부 재정 내에서 항목만 바뀌어 이동할 뿐, 수급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동시수급자 규모가 커질수록 그 파급력도 함께 커진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65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 수는 2022년 71.0만 명에서 2025년 92.5만 명으로 30.3% 늘었고, 이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중은 87.5%에서 84.6%로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절대 규모로 보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는 인원이 2022년 8.9만 명에서 2025년 14.2만 명으로 59.6% 늘었다는 뜻이다. 이는 극빈층 노인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설령 동시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그 인상 효과가 생계급여 감액으로 상쇄되어 실질적인 빈곤 탈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 지급 규모의 확대와 그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는 통계상으로는 '노인 복지 확대'로 나타나지만, 동시수급자 78.3만 명(2025년 기준)에게는 이 확대가 생계급여 예산의 절감으로 상쇄될 뿐 실제 가처분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확대되고(2021년 14조 9,634억 원→2025년 21조 3,514억 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미치는 실질적 기여도가 예산 증가폭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두 제도 간 정합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기초연금 인상이라는 정책 수단이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최하위 빈곤층에서는 그 효과가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상쇄 구조는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하후상박(下厚上薄) 차등지급 계획의 실효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 수준에 따라 하위 30%, 30~45%, 45~70%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 중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30% 구간(약 363만 명)에는 현행보다 월 3만원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하위 30%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극빈층 노인 대부

분이 이 구간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대로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수급자는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액으로 그대로 상쇄되는 구조에 놓여 있으므로, 별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27년 하위 30% 구간에 대한 월 3만원 인상 역시 이 구간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계급여 동시수급 노인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즉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계한 하후상박 개편이,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하위 소득 구간에서는 생계급여 상쇄 구조로 인해 그 취지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생계급여 지출이 줄어드는 예산상의 순환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 계층에게는 정책 확대의 실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두 제도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개선하지 않는 한, 2027년 하후상박 개편과 같은 향후의 인상 조치 역시 최취약 노인층에게는 그 효과가 생계급여비로 수렴되어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 본연의 정책 목표는 정작 가장 필요한 계층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역설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 수와 1인당 급여비 등 실제 의료수요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의료기관 미지급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25년도 의료급여 본예산은 8조 6,882억 100만원이었으나 결산액은 8조 8,222억 6,300만원이었으며, 연말 의료기관 미지급금도 2,244억 4,900만원 발생하였다. 결산액과 미지급금을 합산하면 실제 소요재원은 본예산보다 3,585억 1,100만원 많았다.

[의료급여 예산 편성액, 결산액 및 미지급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본예산 (추경)	8,123,234	9,098,368	8,937,713	8,688,201 (8,822,328)	9,839,997 (10,122,834)
결산액	7,884,031	8,362,283	8,437,605	8,822,263	집행 중
본예산 부족액	-	-	-	358,511	집행 중
미지급금	-	-	-	224,449	집행 중

주: 본예산 부족액 : (결산액+미지급금) - 본예산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미지급금과 2026년 예상 미지급액을 합한 5,829억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2026년 예상 미지급액은 약 3,585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부족액과 유사하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 전년보다 상당 폭 증가하였음에도 유사한 규모의 미지급액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월별 진료비 청구·지급실적, 수급권자 수 및 1인당 급여비 변화를 반영한 구체적인 추계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본진료비 산출의 핵심 변수인 수급권자 수와 1인당 단가도 보다 정교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수급권자는 174만 5,000명으로 2026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8만 8,000명(5.3%)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신규 유입과 기존 수급자의 자연증감, 정책 간 중복 및 시행시점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인당 단가의 경우 2027년도 산출단가는 기초 1종 1,067만 8,000원, 2종 305만 3,000원으로, 2025년 실제 급여비보다 각각 12.3%, 13.8%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를 202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각각 약 6.0%, 6.7%로, 2021~2025년 실제 급여비 증가율인 1종 5.6%, 2종 8.1%와 차이가 있다. 특히 2종은 최근 실제 급여비 증가율에 비해 예산상 단가 증가율이 낮은 반면, 외래 이용 일수는 2021년 42.5일에서 2025년 48.1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이용 추세가 단가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급권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급여비, 외래 내원일수 및 입원일수 추이]

(단위: 천원, 일)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인당 진료비	전체	6,398	6,815	7,347	7,686	8,201
	1종	7,833	8,237	8,806	9,152	9,738
	2종	2,112	2,322	2,520	2,685	2,868
1인당 급여비	전체	6,224	6,626	7,139	7,476	7,981
	1종	7,650	8,037	8,587	8,933	9,508
	2종	1,965	2,167	2,351	2,509	2,683
1인당 입원일 수	전체	32.1	32.4	32.7	32.3	32.1
	1종	40.7	40.6	40.5	39.8	39.4
	2종	6.4	6.3	6.7	6.8	6.9
1인당 외래일 수	전체	89.6	90.9	92.3	92.0	92.4
	1종	105.4	105.3	106.1	105.0	105.2
	2종	42.5	45.2	46.7	47.7	48.1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예산이나 미지급 규모를 단순 준용하기보다 수급권자 증감, 종별 입원·외래 이용량, 1인당 급여비 및 수가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본진료비를 추계하고, 2027년도 본예산이 당해연도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수와 단가의 산출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미지급금이 반복될 경우 당해연도 진료비의 일부를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미지급금을 보전하기보다 당해연도 소요를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전년도 예산이나 미지급 규모를 기준으로 소요액을 추계하기보다 수급권자 수, 종별 입원·외래 이용량, 1인당 급여비 및 수가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본진료비를 추계하고, 2027년도 본예산으로 당해연도 발생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②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의 소득보장 효과와 재정영향 검토 필요⁸⁾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⁹⁾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하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한다. 2027년도 계획안은 59조 4,766억 5,000만원으로 2026년도 계획 54조 5,084억 6,400만원 대비 4조 9,681억 8,600만원(9.1%) 증가하였다.

본인의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수급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복지급률이 실제 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유족연금 30% 추가지급 방식의 소득보장 효과와 다른 공적연금과의 차이, 지급률 조정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법」 제56조¹⁰⁾에 따르면 동일한 수급권자에게 두 개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한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장애연금 일부가 추가 지급되지 않고 해당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의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하여 발생한 사람은 2021년 12만 3,994명에서 2025년 20만 8,242명으로 67.9%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은 사람은 2025년 17만 1,547명으로 전체의 82%이며, 유족연금을 선택하여 본인의 노령·장애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3만 6,695명으로 전체의 18%이다.

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10,

9) 코드: 일반회계 2133-300

10)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연금포기비율]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중복수급권 발생 인원(A)	123,994	143,995	159,527	182,653	208,242
노령·장애연금 선택(B)	104,049	120,601	132,572	151,201	171,547
비율(B/A)	84.0	84.0	83.0	83.0	82.0
유족연금 선택(C)	19,945	23,394	26,955	31,452	36,695
비율(C/A)	16.0	16.0	17.0	17.0	18.0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은 2000~2025년 중복급여 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변화와 수급자의 급여 선택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7년부터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고,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30%로 상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확대된 이후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복지급률이 수급자의 급여 선택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적 요인임을 보여주지만, 급여 선택에는 중복지급률 외에도 본인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의 상대적 크기, 수급권의 발생순서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2021년 84%에서 2025년 82%로 나타난 노령·장애연금 선택비율의 변화나 유족연금 선택비율의 상승만으로 현행 30%의 소득보장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선택 유형별 실제 급여수준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액,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액, 중복급여 조정 이전의 수급권액 및 조정 이후 실제 지급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액 수준별로 선택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과 주요 직역연금 간에는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본인의 퇴직·조기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유족연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1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유족연금 자체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

로 산정된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0조 및 제55조 등을 준용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중복 시 유족연금액의 50%가 지급된다. 군인연금 역시 퇴역연금 수급자가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퇴역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시 50%가 지급된다.

[연금제도별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구분	유족연금 자체의 산정방식	본인연금과 중복 시	중복지급률	주요 법적 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본인 노령·장애연금 선택 시 본인연금 전액 + 유족연금 일부	30%	「국민연금법」 제56조제2항제1 호, 제74조
공무원연금	사망자의 퇴직·조기퇴직연금액의 60%	본인 퇴직·조기퇴직연금 + 퇴직유족연금의 1/2	50%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1항, 제55조제1항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규정을 준용하여 60%	공무원연금 규정을 준용하여 유족연금의 1/2	5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55조 준용
군인연금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퇴역연금액의 60%	본인 퇴역연금 + 퇴역유족연금의 1/2	50%	「군인연금법」 제19조제1항, 제30조제2항

주: 중복지급률은 이미 산정된 유족연금액에 적용되는 비율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중복급여 조정 대상을 급여 선택유형별로 구분하여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액, 유족연금액, 중복급여 조정 전 수급권액 및 조정 후 실제 지급액을 제시하고, 현행 유족연금 30% 추가지급 방식이 수급자의 노후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역연금과의 비교도 단순한 중복지급률 차이에 그치지 않고 유족연금 산정방식과 실제 급여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중복지급률을 조정하거나 유족연금 선택 시 본인의 노령·장애연금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경우에는 수혜인원과 평균급여 변화,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추가 재정소요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③ 아동기본수당: 법적 근거와 기금 이관 정비 및 제도 병존에 따른 형평성 및 장기 재정 소요 검토 필요¹¹⁾

아동기본수당 사업¹²⁾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0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2조 4,821억 6,900만원 대비 4,450억 7,400만원(17.9%) 증액된 2조 9,272억 4,300만원이다.

첫째, 아동기본수당은 현행 제도와 지급액·지급방식 등이 달라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신설 기금으로 이관하는 만큼 관련 법률의 입법 경과와 국회의 재정통제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지급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본수당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는 지급연령 확대보다는 아동수당의 명칭과 지급액,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간 적용관계, 지급방법 등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정비하는 데 있다. 특히 현행법은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계획한 신규 급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규 제도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방안도 법률 개정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신규 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급여체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방법 변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영아·가구의 온라인 육아용품 구매 등 실제 소비행태를 고려하여 사용지역과 사용처가 제한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양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계 및 소관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미래 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법률안은 총괄 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계정을 설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1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10.

12)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5-310

이와 함께 제출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기준(20%)보다 정부의 운용 재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향후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의 설정단위에 따라 국회의 사전 재정통제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출생아 추계와 실제 집행 간 차이 등에 따라 예비비나 이·전용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고 국회는 결산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점검해 왔다. 이러한 대규모 급여사업이 신설 기금으로 이관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특례가 사업비 조정과 국회의 사전통제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간 사업 집행·성과관리·결산 책임의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¹³⁾.

따라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의 입법 경과를 확인하고, 아동 대상 의무적 급여를 청년계정에 편성하는 정책적·재정적 근거와 기금 이관에 따른 국회의 재정통제 및 부처 간 책임체계를 함께 검토하면서 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안은 출생시점에 따라 장기간 서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일부 영아기에는 기존 제도보다 지원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도 전환에 따른 수급자 간 형평성과 급여구조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에게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적용하는 반면,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하루 차이에 불과하더라도 이후 장기간 서로 다른 급여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동일 가구 내 형제·자매 간에도 적용제도와 지원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연령과 출생시기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헌법상 허용되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첫째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0~12세 누계 지원액은 수도권의 기존 제도에서는 3,560만원이나 신규 기본지역에서는 4,840만원으로 1,280만원 증가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과 신규 우대지역을 비교하면 각각 3,872만원과 6,900만원으로 3,028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1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출생 시기에 따른 0~12세 지원액 비교(첫째아 가정 양육시)]

(단위: 만원)

구분		0세	1세	2~12세	0~12세				
기본 급여		아동수당(10)							
		부모 급여 (월 100)	부모 급여 (월 50)						
		첫만남							
수 도 권	月	110 (첫달 +200)	60	10	-				
	年	1,520	720	120	3,560				
인구 감소 지역 (특별)	月	112 (첫달 +200)	62	12					
	年	1,544	744	144	3,872				

→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기본수당(20)			
가정보육 가산금 (30)			
아이 맞이 지원금			
50 (분기별 +250)	50	20	
1,600	600	240	4,840
60 (분기별 +375)	60	30	
2,220	720	360	6,900

자료: 보건복지부

생애 누계 지원액이 증가하더라도 출생시점과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전환에 따른 형평성을 검토하고 적용대상과 경과조치 및 거주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6월 30일 출생아와 7월 1일 출생아는 하루의 출생일 차이로 서로 다른 급여체계를 장기간 적용받게 된다. 정부가 2027년 1~6월 출생아에게 신규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다. 또한 소급 적용은 해당 기간 출생아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출생아와의 제도 차이는 남게 된다. 따라서 국회 심사과정에서는 출생시점별 지원 격차와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함께 검토하여 신규 제도의 적용범위와 기존 수급 아동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산정조건에 따르면 개편 후 생애 누계 지원액은 수도권 4,840만원, 인구감소지역 6,900만원으로, 지역 간 차이가 2,06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차등 지원은 지역별 양육 여건과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이전하여 지원받는 등 부

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원금 수령 후 전출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급여별 지급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 전출 시 지급기준 및 부정수급 환수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 전환의 형평성은 0~12세 누계 지원액뿐 아니라 출생시점, 거주지역 및 양육방식에 따른 연령별 급여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가구 유형별 지원액 변화를 제시하고, 누계 지원액이 증가하더라도 특정 연령이나 양육단계에서 지원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하여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기본수당은 신규 수급아동이 매년 누적되는 동시에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연령도 확대되면서 중장기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제도별 지출 증가요인을 구분한 재정전망과 이에 대응한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도입 첫해의 예산규모만으로 향후 재정부담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2027년에는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신규 제도가 적용되어 관련 국비 소요가 약 1,835억원으로 제한되지만, 이후 매년 신규 출생아가 추가되고 기존 수급아동에 대한 지급도 지속되므로 재정소요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이다. 또한 2027년 6월 이전 출생아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해당 급여의 지급연령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므로 두 제도의 재정소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존 아동수당과 신규 아동기본수당을 합산한 국비 소요는 2026년 2조 4,822억원에서 2027년 2조 9,272억원, 2030년 5조 3,616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26년 대비 2조 8,794억원(116.0%) 증가한 규모로,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1.2%에 이른다.

[아동기본수당 지출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증가율
아동(기본)수당	29,272	40,214	48,927	53,616	21.2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다만 이러한 재정소요 증가는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확대와 신규 아동기본수당 수급자의 누적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전체 증가액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2030년까지 지급연령이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더라도 신규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만 적용되므로, 모든 지급대상 아동이 신규 제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증가분, 신규 아동기본수당의 지급액 인상과 수급자 누적에 따른 증가분을 구분하여 재정소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규 아동기본수당은 출생 시점에 따라 수급자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제도이므로, 2030년까지의 중기 재정전망만으로는 제도가 완전히 적용되었을 때의 재정부담을 파악하기 어렵다. 신규 제도의 지급대상인 0~12세 전체 연령에 적용되는 장기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수급아동 수, 지역별 지급단가, 가정보육 가산금, 국고보조율 등을 반영한 재정소요를 별도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기존 아동수당을 유지하는 경우와 신규 제도로 전환하는 경우를 동일한 지급대상 및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제도개편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아동기본수당만의 재정소요 증가가 출산·양육지원체계 개편 전체의 순재정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등의 지출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아이맞이지원금 등의 지출은 증가하게 되므로, 관련 급여의 감소분과 증가분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 추가 재정부담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국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총재정소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과 기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을 포괄하여 제도개편 전후의 연도별 국비·지방비 및 순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신규 수급아동이 누적되어 제도가 전체 지급연령에 적용되는 시점까지의 재정부담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생아 수, 지역별 수급자 비중, 가정보육 이용률 및 국고보조율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④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급여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¹⁴⁾

산재보험급여 사업¹⁵⁾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 장애급여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 계획 대비 4,783억 3,700만원(5.9%)이 증액된 8조 6,24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다.

선보장 급여 체계는 관련법 개정과 연계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고, 상병수당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 업무 조정, 부정수급 최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치료비와 소득보전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와 건강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이나, 현실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에 어렵고 행정적 판정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잦아 승인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판정 절차 장기화시 근로자는 치료비와 생계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치료 지연과 직장 복귀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된다¹⁶⁾. 실제로 산재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218.5일에 달하여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6.10.

15)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자금 4051-350

16)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이 지체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원칙적으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산재승인 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산재 승인 후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됨.)

[산재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업무상 사고	처리건수	116,856	122,066	131,281	135,384	134,146	79,341
	평균 처리기간	15.3	15.9	16.5	17.7	18.9	19.0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	24,871	28,796	31,666	38,219	50,946	39,636
	평균 처리기간	175.8	182.0	214.5	227.7	244.7	218.5

자료: 근로복지공단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일정 수준의 급여 또는 치료비를 선지급받고 사후에 산재 승인 여부에 따라 정산할 수 있게 되어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기간을 법정화¹⁷⁾하고 기간 초과시 산재보험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여 선보장 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선보장 급여 예산 435억 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선보장의 대상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한정하였는데, 산재보험 선보장제도가 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장기화되는 동안 재해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과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바, 이에 직접 대응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¹⁸⁾.

17) 고용노동부는 산재 신청 후 90일 이내, 특별진찰·역학조사 등 의학자문 시 180일 이내로 계획 중

18) 재해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요양이 종료된 후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됨. 요양이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은 산업재해 승인 전 치료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선보장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임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재해조사기간 초과* 시 재해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 산재 신청 후 90일 이내, 특별진찰·역학조사 등 의학자문 시 180일 이내
지급대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수준	산재 요양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최저임금 60%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원 * 보건복지부 추진 상병수당 지급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환수조치	최종 재해 불승인 시 기 지급된 선보장 급여는 환수조치 하되 요양금액이 큰 질병은 환수 유예기간 및 분할납부를 통해 환수부담 최소화
예산	요양급여 166억 9,100만원 휴업급여 268억 7,5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선보장 제도 도입으로 산재근로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는 선보장 급여 체계 도입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선보장 체계의 도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수반하는 것인바 법안 심사와 연계한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산재보험 선보장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¹⁹⁾이 계류되어 있는바 이들 법안의 심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차년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²⁰⁾’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계·정산, 차액지급 및 환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0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8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106호)

20) 코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4931-309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전국 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중에 있다²¹⁾.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내용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대상지역	총 8개 지역('26.9월 기준) / 공모선정 * 2단계('23.7~, 4개 시군구) 및 3단계('24.7~, 4개 시군구) (1단계 시범사업은 '24.12월 종료) ** 대구달성, 안양, 용인, 익산, 전주, 원주, 충주, 홍성
대상	만 15~64세 취업자(일정 소득 이하) * (취업자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 ** (소득기준) 25.5부터 소득기준은 폐지되었음(기존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 적용)
보장수준	일당 49,540원(최저임금 60%) 또는 직전 소득의 60%(49,540원~68,100원, 건강보험가입자 한정), 최대보장기간 150일

자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먼저 산재보험 선보장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선보장으로 지급된 산재급여를 환수하되, 휴업급여의 경우 상병수당과 정산·상계 하여 재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재보험 선보장 급여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상병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향후 국민건강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인바, 소관과 재원이 다른 두 급여 사이의 정산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각에서 선보장 급여 시행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보장 급여 지급 시 일부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음에도 신청만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산재 불승인 이후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도적 허점을 통한 재정 누수가 지속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선보장 급여 체계의 도입과 함

21) 보건복지부는 추후 동 사업을 정식사업으로 편성하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음

계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설계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위 내용에 유의하여 선보장 급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⑤ 대지급금 지급: 최우선변제권 초과 범위 변제금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 필요²²⁾

대지급금 지급²³⁾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7년 지출 계획안은 2026년 당초 및 수정 계획 대비 305억 1,300만원(4.1%) 증액된 7,76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최근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불일치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지급금 회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제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²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에 대해 사업주의 총 재산에 대하여 최우선 순위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⁵⁾.

2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6.10.

23) 코드: 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24)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유사하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되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시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또한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할 수 있는 권리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상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 포함되어 있다²⁶⁾.

기존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대지급금 지급의 범위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의 범위가 일치하였으나,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동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2026.8.20.)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범위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의 범위가 불일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6개월분의 대지급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이 3개월분에 불과한바, 대지급금 회수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대지급금 회수율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여러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그 회수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리고 회수율의 악화는 장기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체불임금 관련 회수율]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대지급금 회수율	32.2	31.9	30.9	30.0	29.7	29.9
도산대지급금 회수율	39.8	40.7	41.1	41.2	41.3	41.3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14.6	16.0	16.4	17.0	18.1	19.1

자료: 고용노동부

26)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수입(A)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736,848	542,980
지출(B)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807,518	485,614
사업비 지출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789,845	475,106
대지급금 지급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367,089
수지차(A-B)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70,670	57,366
적립금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276,596	333,962
여유자금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270,746	327,566
공자기금 예탁금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0	0
한국은행 예치금	4,965	4,188	4,980	3,601	4,576	5,850	6,39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임금, 퇴직급여 등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확대는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 및 재산권 축소 등 민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중장기적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한 대지급금 지급액은 채권 우선순위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특성상 사실상도산 인정 절차 또는 법원의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재산조사 등 절차를 거침에 따라, 그 과정에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 국세채납처분절차에 따른 신속한 집행으로 채권확보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²⁷⁾.

다만 고용노동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변제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7) 고용노동부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올해 5.12.부터는 국세채납처분절차^{**}를 적용한 신속한 변제금 회수 추진 등 회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업종 특성별 책임재산 발굴 강화(PG사, 카드매출채권, 진료비 채권 등), 채권 특성별(단기/고액/정상가동 사업장) 집중관리, 체불사업주 숨은 재산 찾기 등 회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임.

* '26.5.29.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원)에 대해 첫 신용제재 실시

** '26.8월말부터 압류, 강제집행 등 국세채납처분절차 본격 가동

⑥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확대의 적정성 검토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 성과관리 필요²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등 지원²⁹⁾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1억 4,600만원이 증액된 5,96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전년 대비 235억 7,900만원 증액된 5,957억 8,200만원이다.

첫째, 한부모가족복지급여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물량 추계가 실제 수급현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향후 단계적 확대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물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원대상 확대계획 및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한부모가족복지급여의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물량을 2026년 약 25만 7천명에서 2027년 약 27만명으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토대로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증가율 1.9%를 적용하고,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7%와 최저임금 인상률 3.7%의 차이인 3.0%를 추가 반영하여 지원물량을 산정하였다.³⁰⁾

[2027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물량 산출근거]

구분	지원물량	증가율	산출근거
2026년 지원물량	약 257천명	-	기본물량
소득기준 65→66% 확대	약 262천명	+1.9%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반영	약 270천명	+3.0%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자료: 성평등가족부

2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2026.10,

29) 코드: 양성평등기금 2331-431

30) 기준중위소득 인상률(6.7%)이 최저임금 인상률(3.7%)을 상회함에 따라 그 차이(3.0%)만큼 지원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다만, 한부모가족복지급여의 지원물량은 당해연도 실집행률을 기초로 다음 연도 기본물량을 산정하고,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24) 등을 활용하여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증가분을 추계하고 있어 실제 수급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제 수급가구의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가구·아동 수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추출되지 않아 소득구간별 실제 수급현황을 물량 추계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수급 및 집행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원물량 추계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득구간별 수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 65% 초과~66% 이하 가구를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아동 1인당 월 1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월 12만원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액인 월 23만원과 지원기준 초과 시 지원액 0원의 중간 수준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국정과제에 따른 향후 연도별 지원 소득기준·지원단가·대상인원 및 재정 소요 등 구체적인 단계적 확대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방식 역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도 향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연도별 지원기준과 재정소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연도별 지원기준과 재정소요 등을 구체화하고,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단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이 한부모가족복지급여에 통합되는 만큼 청소년한부모의 지원실적과 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7년부터 기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6억 5,000만원과 자립촉진수당 1억 100만원 등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에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효율화와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기존 국회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통합하여 편성되었다.

한편,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의 수혜인원은 2022년 1,785명에서 2025년 1,162명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실집행액도 33억 5,100만원에서 20억 2,5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 역시 2020년 3,651가구에 서 2024년 1,862가구로 감소하는 등 사업대상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집행 및 수혜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예산현액	4,913	3,786	2,852	2,582
실집행액	3,351	2,895	2,418	2,025
수혜인원	1,785	1,639	1,412	1,162

주: 수혜인원은 각 연도 12월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으로, 연도 중 수급 후 탈락한 인원 등은 제외되어 있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따라서 사업 통합 이후에도 청소년한부모의 지원인원·집행실적을 내내역사업 단위로 별도 관리하고, 사업대상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이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 우려

의무지출 중 이자지출은 법률에 따라 국채 발행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의 채무상환을 위한 경직성 지출에 해당한다. 국채는 국가가 세입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이미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 상환액이 대표적인 이자지출 항목이다.

이자지출은 복지분야 법정지출이나 지방이전재원과 달리 특정 정책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다만, 적정 수준의 국채 발행은 필요한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공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채 발행이 과도할 경우 이자지출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자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발행되는 국채의 종류로는 국고채권, 개인투자용 국채, 재정증권, 외환표시·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로, 「국채법」에 근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다. 국채 중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가장 많으며,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지표금리의 역할을 한다.

개인투자용국채는 국채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 최초 발행되었으며,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이다. 국고채권과 마찬가지로 「국채법」에 근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다.

재정증권은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로,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이 가능한 회계에 한함)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국채이다³¹⁾.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국채로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며, 표시 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과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으로 구분된다.

[국채의 종류]

구분		발행목적	발행조건			
			발행방법	만기	이율(%)	이자지급
국고채권		사회복지정책 등 공공목적 수행	경쟁입찰	2,3,5,10, 20,30,50년	발행 시 결정	매6월 후급
개인투자용 국채		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청약방식	10,20년	사전 공고	만기일에 일괄지급
재정증권		일시부족자금조달	경쟁입찰	1년 이내	0%	할인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화표시	외화자금매입 해외부문통화관리	경쟁입찰	발행 시 결정	발행 시 결정	매6월 후급
	원화표시	원화자금매입 외환시장 안정화 지원	경쟁입찰	1년	발행 시 결정	매6월 후급

자료: 국채시장 누리집(ktb.moef.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31)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일시적 자금 불일치로 발생하는 국고 부족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발행한 연도 내에 전액 상환하기 때문에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채와는 달리 첨가소화채권(특정 거래나 등기·등록,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발행되는 국채이다.

[국민주택채권]

구분		내용	만기	금리
국민주택채권	1종	- 등기·등록, 인허가 시 첨가소화채권으로 발행	5년	연 1.30%
	2종	- 공공택지내 85㎡초과 주택공급시 발행(채권입찰제) - 1999년 아파트 채권입찰제 폐지로 발행이 중단된 후, 2005년 「8. 31. 부동산 제도개혁방안」에 따라 재도입되었으나 2013년부터 발행중단	10년	연 0%
	3종	- 공공택지분양시 건설업체에게 발행 - 채권입찰제 부활에 따라 발행중단	10년	연 0%

자료: 국채시장 홈페이지(ktb.moef.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자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로 개인투자용국채를 포함한 국고채 이자상환액을 의미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은 2027년 예산안 기준 전체 이자지출 40.0조원의 87.6%인 35.0조원을 차지하며, 2026년 29.2조원에서 2030년 44.1조원 수준까지 연평균 10.9%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규모가 2026년 추경예산 기준 1,412.8조원에서 2030년 1,734.1조원으로 약 22.7%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³²⁾

이에 따라 의무지출 중 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8.7% 수준에서 2030년에는 9.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지출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 재정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2) 반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2024.10.)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4년 1,177.1조원(GDP 대비 46.2%)에서 2028년 1,565.2조원(GDP 대비 52.4%)으로 연평균 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2030년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단위: 억원, %)

의무지출 합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연평균 증가율
	3,876,640	4,267,566	4,718,516	5,118,442	5,378,548	8.5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	1,962,816	2,133,001	2,260,634	2,407,666	2,566,615	6.9
② 지방이전재원	1,449,180	1,596,154	1,886,983	2,105,570	2,169,819	10.6
③ 이자지출	336,078	399,765	425,833	456,972	489,482	9.9
(비중 - 의무지출 대비)	(8.7)	(9.4)	(9.0)	(8.9)	(9.1)	-
○ 공공자금관리기금	291,639	350,163	376,739	407,195	441,167	10.9
○ 주택도시시기금	16,867	21,254	22,583	23,502	21,987	6.9
○ 기타	27,573	28,347	26,511	26,276	26,329	△1.1
④ 기타 의무지출	128,566	138,647	145,066	148,234	152,631	4.4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본예산	추경				
국가채무	1,413.8	1,412.8	1,519.8	1,600.3	1,659.1	1,734.1
(GDP대비)	(51.6)	(50.6)	(48.3)	(48.9)	(48.8)	(49.0)
경상GDP	2,741.6	2,793.8	3,144.2	3,270.0	3,400.8	3,536.8

주: 1. 2026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경상GDP는 2026년은 국회 확정시 기준, 2027년 이후는 2026년 8월 전망 기준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3) 국가배상금 예산안의 규모 검토 필요³³⁾

배상금³⁴⁾ 사업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가배상금 지급’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배상금(310-02)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동 세부사업에는 그 외에 ‘소송비용’이 일반수용비(210-01)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3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26.10.

34) 코드: 일반회계 1031-301의 내역사업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951억 6,500만원 증액된 8,400억원을 편성하였다.

첫째, 법무부는 현재 제기되어 있는 사건과 향후 제기될 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2027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들에 대해 보상을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법의 진행 경과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배상금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국가배상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과거사 사건의 금액 및 비율이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금액 중 과거사 사건의 비율이 2023년에는 56.7%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에는 75.3%, 2025년에는 95.9%에 달하였고,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94.8%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 현황(금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8.
전체 (A)	1,379	1,077	4,373	3,830
과거사 (B)	782	811	4,193	3,631
과거사 비율 (B/A)	56.7	75.3	95.9	94.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진실규명 결정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 추이를 반영하여 2027년 배상금 예산안을 6,951억 6,5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그런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³⁵⁾이 발의된 상황이다.

35)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039,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1445,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해당 법률안은 진실규명 결정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별도의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도 개별 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으나,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송 절차 없이 보상 절차를 통해서도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부분만큼 소송에서 차감 지급되므로 2027년도 배상금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법률안의 국회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국가배상금 지급 판결이 지자체와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배상금 중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담 비율이 미정인 상태이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7년 배상금 예산안 편성시 현재 제기된 사건을 소액사건, 단독사건 및 합의사건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소송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에 선고될 사건에 대하여 인용 비율인 50%로 2027년 예산안을 산출하였다.

[2027년도 배상금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 배상금 143,895백만원 가. 법원 판결금 · 336건×402백만원 = 135,059백만원 나. 배상심의회 결정금 · 73건×2.2백만원 = 159백만원 다. 소송비용 확정액 · 507건×17.1백만원 = 8677백만원	○ 배상금 839,060백만원 가. 법원 판결금 · 소액사건 1,650백만원 · 단독사건 137,219백만원 · 합의사건 686,129백만원 나. 배상심의회 결정금 · 67건*6,000,000원 = 402백만원 다. 소송비용 확정액 · 1,415건*13,000,000원= 18,395백만원 ■ 판결금은 '27년 선고될 사건에 대한 소가 x 인용률적용 * 소가 1.65조원 × 인용비율 50%

자료: 법무부

또한, 2026년 8월말 기준 배상금을 지급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이 있으며, 이 중 선감학원은 총 28건 269억원을, 형제복지원은 총 49건 189억원을 지급하였다.

[주요 과거사 사건별 2026년 국가배상 판결금 지급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건수	28건	49건	20건	56건
금액	269	189	75	262

주: 1. 2026년 8월 31일 기준

자료: 법무부

그런데 형제복지원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한 예가 있고,³⁶⁾ 선감학원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마찬가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예가 있다.³⁷⁾

이와 같이 올해 및 차년도 배상금 중 일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³⁸⁾ 현재로서는 국가와 부산광역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연대채무에 관한 조항이 유추적용되고(「민법」 제414조), 피해자는 가해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국가에 배상금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우선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6)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18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 선고 2024나204319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48062 판결.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합569301 판결.

3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6년 부산광역시 및 경기도와 내부 구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지 1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공동불법행위 관련 법무부 협의 현황]

지자체	협의 현황
형제복지원(부산)	부산시와 2차례 실무자급 회의 진행('26. 3. 9., '26. 7. 30.)
선감학원(경기도)	경기도와 1차례 실무자급 회의 진행('26. 2. 24.) '26. 9. 21. 2차 협의 예정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따라서 법무부는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와 구상비율에 대해 협의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전액 일시 지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게 될 구상금은 세입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1) 유사·중복 사업의 정의 및 관련 제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법령상의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서로 비슷하거나 동일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미국 감사원(GAO)은 법률¹⁾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유사·중복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유사·중복을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분절, 유사 및 중복으로 유형화하고 있다.²⁾

김유진 예산분석관(jeane@assembly.go.kr, 6788-4634)

1) 「공공부채의 법정상한 인상(Increasing the statutory limit on the public debt)」, PUBLIC LAW 111-139—FEB. 12, 2010. 이 법은 공공부채의 법정상한을 인상하면서, PAYGO 원칙의 복원(TITLE I) 및 중복으로 낭비되는 정부지출을 제거하기 위해 감사원(GAO)으로 하여금 정부지출의 중복성을 조사하고 사업 통폐합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TITLE II)하도록 하고 있다.

2) GAO, Additional Opportunities to Reduce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d Achieve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Annual Report), 2026. 5.

[중복적인 정부활동의 유형(GAO)]

유형	정의	해소방안
분절 (Fragmentation)	동일한 영역의 국가적 목적 달성에 다수의 기관 혹은 조직이 관련되어 있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 상황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동일한 활동이나 지원 업무를 소수의 제공자로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효율적인 중복 제거
유사 (Overlap)	여러 부처나 프로그램이 비슷한 목표를 갖거나,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을 실행하거나, 유사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발생	유사한 목표나 활동을 가진 기관들이 범정부적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며 역할을 명확히 하여 업무 수행시의 충돌 방지
중복 (Duplication)	두 개 이상의 부처나 프로그램이 동일한 활동을 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수혜자에게 제공할 때 발생	동일한 국가적 필요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공식적인 조정 메커니즘(실무 그룹, 서면 합의, 공동 훈련 등)을 구축하고 협력 강화

자료: GAO, GAO-26-108505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방지를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기획예산처장관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주요 재정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R&D사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지능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방안’,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협의’ 등을 두어 사업유형별·지원대상별 유사·중복을 조정하고 있다.

[유사·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예시)]

제도	대상사업	평가주체	내용	근거
신규사업 유사·중복 사전점검	신규	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 시 신규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점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재정사업 심층평가	전체	기획예산처	집행 시 유사·중복 사업 심층평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사회 보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R&D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예산안 편성 시 유사·중복 사업 조정 내역 제출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정보화 중복 투자 방지	정보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일자리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설·변경 시 통보	「고용정책 기본법」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협의	「중소기업기본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유사·중복 사업 현황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기획예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평가 주체를 통해 사업 유형별·지원 대상별 유사·중복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들의 경우 부처 내·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2027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24개 부처의 총 44개 세부(내역)사업이 부처 내·부처 간⁴⁾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이며, 동 사업들의 예산안 합계는 1조 9,609억 3,100만원이다. 이 중 유사·중복성 비교대상 사업이 동일 부처 내 존재하는 경우

3)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도 예산안을 위원회별로 분석한 결과, 그 중에서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나타난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4) 이 보고서는 부처 소관 사업과 부처가 아닌 공공기관 등 소관 사업과 유사·중복이 있는 경우,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부처 내)는 총 44건 중 25건으로 예산안은 1조 8,097억 6,500만원이고, 비교대상 사업이 다른 부처 사업인 경우(부처 간)는 12건으로 예산안은 1,171억 5,400만원이며, 비교대상 사업이 부처 내 사업과 타 부처 사업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7건으로 예산안은 340억 1,200만원이다.

[2027년도 유사·중복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부처 내		부처 간		부처 내·부처 간		합계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합계	25	1,809,765	12	117,154	7	34,012	44	1,960,9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6. 10.

유사·중복 사업의 부처별 현황을 사업 수 기준으로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7개이고,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 3개씩이며, 교육부, 해양수산부, 성평등가족부 및 재정경제부가 각 2개씩이고, 고용노동부 등 나머지 14개 부처는 각 1개씩이다. 예산안 규모 면에서는 교육부가 9,283억 3,10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고용노동부 4,895억 4,4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 1,699억 3,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1,500억원 순이다.

[2027년도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부처 내		부처 간		부처 내·부처 간		합계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교육부	2	928,331	-	-	-	-	2	928,331
고용노동부	1	489,544	-	-	-	-	1	489,544
기후에너지환경부	6	104,837	1	65,100	-	-	7	169,937
문화체육관광부	1	150,000	-	-	-	-	1	150,000
중소벤처기업부	2	34,900	1	25,000	-	-	3	59,900
해양수산부	2	55,500	-	-	-	-	2	55,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5,600	-	-	1	12,000	3	37,600
행정안전부	-	-	1	8,020	2	6,120	3	14,140
통일부	2	995	-	-	1	7,052	3	8,047
소방청	-	-	-	-	1	6,240	1	6,240
산업통상부	1	5,910	-	-	-	-	1	5,910
개인정보보호위	1	2,466	2	3,270	-	-	3	5,736
농림축산식품부	1	5,500	-	-	-	-	1	5,500
국토교통부	-	-	1	5,000	-	-	1	5,000
보건복지부	1	5,000	-	-	-	-	1	5,000
우주항공청	-	-	1	4,200	-	-	1	4,200
성평등가족부	-	-	2	3,468	-	-	2	3,468
재정경제부	-	-	2	2,700	-	-	2	2,700
조달청	-	-	-	-	1	2,000	1	2,000
외교부	-	-	-	-	1	600	1	600
감사원	1	510	-	-	-	-	1	510
국무총리비서실	1	422	-	-	-	-	1	422
새만금개발청	-	-	1	396	-	-	1	396
기획예산처	1	250	-	-	-	-	1	250
합계	25	1,809,765	12	117,154	7	34,012	44	1,960,931

주: 1. 사업 수와 예산안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유사·중복 분석의 대상이 된 사업의 수와 예산안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6. 10.

나. 분석의견

(1) 총평

2027년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① 중복 지원 배제,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 ③ 사업 간 연계 추진, ④ 사업 간 차별성 강화 등 유사성 및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수 및 예산안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중복 지원 배제 필요	통합 추진 필요	사업간 연계 필요	차별성 강화 필요	합계
사업 수	13	4	18	9	44
예산안	671,950	31,000	584,066	673,915	1,960,9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6. 10.

먼저, ① 지원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는 교육부의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패키지’ 등 13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중복 지원 배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7년 예산안	분석내용
교육부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600,000	사립대학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융자사업과 연구장비 구축·공동활용 R&D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수요와 대학의 자체 투자 여력을 확인하여 별도 신규사업을 통한 지원 필요성 검토 필요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청년창업패키지)	30,000	초기창업패키지·창업중심대학 등 기존 사업과 지원대상 및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사업 내 청년 우대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 신규 편성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6. 10.

교육부의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사립 대학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융자사업과 연구장비 구축·공동활용 R&D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수요와 대학의 자체 투자 여력을 확인하여 직접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적정 지원규모를 구체화하고, 공동 활용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를 중심으로 신규 구축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패키지 사업은 업력 3년 이내, 대표자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인프라, 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기존 초기창업패키지·창업중심대학과 지원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사업에서도 청년 우대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규 편성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 간 차별화 또는 통·폐합 등 재구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 청년 AX·DX’ 등 4개 사업이다.

[사업 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7년 예산안	분석내용
과기부	AI컴퓨팅 자원활용 기반 강화 (소형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19,600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과 목적 및 지원내용 등에서 유사하므로 두 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중기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 청년 AX·DX)	4,900	기존의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사업과 지원대상·지원방식·지원내용 등에서 유사·중복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사업을 통·폐합 조정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6.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 산업 성장 지원 사업은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과 목적 및 지원내용 등에서 유사하고,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후속 조치에 ‘AIDC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랜드마크 사업 모델 내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프라와 생태계가 집적되는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은 같은 세부사업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중 내내역사업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사업과 지원대상·지원방식·지원내용 등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③ **사업 간 연계 추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사업**으로는 교육부의 ‘5급 3특 인재양성지원/첨단분야 공유대학’,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청호 수질개선대책 사업/도암호 수질개선대책 사업/소양호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영산강 섬진강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낙동강(상류) 수질개선 사업/낙동강(하류) 수질개선 사업’ 등 18개 사업이다.

[사업 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7년 예산안	분석내용
교육부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5급3특 인재양성지원/첨단분야 공유대학)	328,331	첨단분야 공유대학 내역사업과 5급3특 인재양성지원 내역사업 간 지원 분야·참여대학·교육 과정이 중첩되므로 사업별 역할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 간 연계관리를 강화할 필요
기후부	대청호 수질개선대책 사업/도암호 수질개선대책 사업/소양호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영산강 섬진강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낙동강(상류) 수질개선 사업/낙동강(하류) 수질개선 사업	104,837	수질개선대책사업 중 비점오염저감 사업, BMPs 사업, 거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사업은 기 시행중인 비점오염저감사업의 내역사업인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비점오염원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방식과 상당부분 유사하므로, 두 사업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6. 10.

교육부의 5극3특 인재양성지원과 첨단분야 공유대학 사업은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두 내역사업 간 지원 분야·참여대학·교육 과정이 중첩되어 유사한 자원이 별도로 구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별 역할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 간 연계관리를 강화하는 등 중복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질개선대책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 사업, BMPs 사업, 거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사업은 기 시행중인 비점오염저감사업의 내역사업인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비점오염원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방식과 상당부분 유사하고, 대상지역이 중복되는 등 두 사업의 범위가 겹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두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④ 유사·중복 해소를 위해 **사업 간 지원대상 및 내용의 차별성을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K-청년뉴딜아카데미’,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수도권 호텔 건립 융자지원’ 등 9개 사업이다.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	2027년 예산안	분석내용
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K-청년뉴딜아카데미)	489,544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사업과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차별성 확보 노력 필요
문체부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	150,000	호텔 신축자금을 융자한다는 점에서 기존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한 반복이나 증액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차별성 확보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6. 10.

고용노동부의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은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일명 KDT사업)과 직무 과정과 내용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고, 두 훈련이 모두 직무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훈련기관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두 사업의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수도권 호텔건설 용자지원 사업은 호텔 신축자금을 용자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관광산업 용자지원 사업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반복이나 증액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참고] 유사·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현황]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중복 지원 배제 필요 (13개)	교육부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교육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 이공학학술연구기반(R&D) (대학연구기반구축- 기초인프라지원)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청년창업패키지)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과기부	기초연구기반구축(R&D) (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InnoCORE))	과기부 교육부	국가연구소(NRL2.0)
	통일부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통일부	학교 통일교육 강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민주 평통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산업부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산업부	반도체아카데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 정지원
	행안부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정보화) (재난안전 AI데이터 구축)	과기부	AI-Hub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 121종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정보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행안부	기후위기 극한재난대응 지역문제해결 AI플랫폼(R&D)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정보화)	행안부	기후위기 극한재난대응 지역문제해결 AI플랫폼(R&D)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지역현안 AI학습데이터 구축)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지방정부 AI기반 집중호우·태풍 대응 서비스 구축 및 실증사업)
			과기부	고성능 컴퓨팅 기반 고정밀 침수 모델 개발
			기후부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 기반 극한호우 대응 플랫폼 기술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산불위험예보 알고리즘 개발
	우주청	우주항공미래창의연구사업(R&D)	과기부	6개 분야)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구 지원 사업
	개보위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중소 영세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복구 지원)	개보위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 교육 지원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과기부	공존가능한 신뢰 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R&D)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 기술 개발(R&D)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방미통위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온라인피해365센터)
			성평등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감사원	감사활동경비 (국민감사어젠다회의)	감사원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민원 대응체계 강화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 현장 청문 및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운영 업무
통합 추진 필요 (4개)	과기부	AI컴퓨팅 자원활용 기반 강화 (소형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과기부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모두의AI경진대회 (온라인 경진대회)		전국민 AI활용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
	중기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 청년 AX·DX)	중기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재경부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 디자인 사업	한국자산 관리공사	나라On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사업간 연계 필요 (18개)	교육부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5극3특 인재양성지원)	교육부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첨단분야 공유대학)
	기후부	대청호 수질개선대책 사업 도암호 수질개선대책 사업 소양호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영산강 섬진강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낙동강(상류) 수질개선 사업 낙동강(하류) 수질개선 사업	기후부	비점오염저감사업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원 집중관 리사업) (비점오염원 설치 국고보조)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	행안부	햇빛소득마을확산
	행안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AI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과기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
	소방청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단독형 연기감지기 보급)	행안부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확산 지원
			국토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지원
	국토부	건축안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지원)	소방청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성평등부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조달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한국국제 협력단	Global GearUp
			조달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
	새만금청	새만금 첨단 교통서비스 도입·운영	국토부	교통취약지역·시간대 무인 수요응답 형 교통 지원
	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 (청년일자리·소득안전망 보완방향 연 구)	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 (기타정책연구개발) (미래전략센터 연구위탁비)
	해수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용자) (활어유통 결제대금지원)	해수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용자)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해수부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 물류센터(FDC)
	농식품부	스마트폴필먼트센터 구축	농식품부	스마트 APC 지원사업
차별성 강화 필요	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K-청년뉴딜아카데미)	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 성훈련(KDT))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9개)	문체부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	문체부	관광산업 용자지원(용자)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신안보 투자 펀드)	방사청	방산수출 투자지원 (K방산수출펀드)
	복지부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복지부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전략센터 운영) (병원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재경부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PI단체보험
			규제특례 소관부처	규제실증특례 보험
	성평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홀로서기 스쿨 청년 특화 프로그램)	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통일부	통일정책추진 (한반도 평화공존전략 개발·추진)	통일부	기존 수집·관리하고 있는 북한·통일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외교부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K-라운지 구축)	외교부	재외공관 전시장화 사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6. 10.

(2) 부처 내 유사·중복 분류 사업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25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6개,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각 2개,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가 각 1개씩이다. 예산안 규모는 교육부의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6,000 억원으로 가장 크다.

5)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기술), CT(문화기술)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교육부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 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600,000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124,890	중복 지원 배제 필요
			이공학학술연구기반 (R&D) (대학연구기반구축- 기초인프라지원)	36,241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 (5극3특 인재양성지원)	213,331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 (첨단분야 공유대학)	115,000	사업 간 연계 필요
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K-청년뉴딜아카데미)	489,544	내일배움카드(일반)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T))	608,926	차별성 강화 필요
문체부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지원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	150,000	관광산업 융자지원(융 자)	706,200	차별성 강화 필요
기후부	대청호 수질개선대책 사업 도암호 수질개선대책 사업 소양호 오염원 집중관리 사업 영산강 섬진강 오염원 집중 관리 사업 낙동강(상류) 수질개선 사업 낙동강(하류) 수질개선 사업	104,837	비점오염저감사업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오염원 집중관리사업) (비점오염원 설치 국고 보조)	115,897	사업 간 연계 필요
해수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활어유통 결제대금지원)	50,000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 금(융자)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110,000	사업 간 연계 필요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5,500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 터(FPC)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FDC)	4,140 5,475	사업 간 연계 필요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청년창업패키지)	30,000	창업사업화지원 (초기창업패키지)	46,920	중복 지원 배제 필요
			창업중심대학	108,300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소상공인 청년 AX·DX)	4,900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1,000	통합 추진 필요
과기부	AI컴퓨팅 자원활용 기반 강화 (소형데이터센터 기반 AI산 업 성장 지원)	19,600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87,800	통합 추진 필요
	모두의AI경진대회 (온라인 경진대회)	6,000	전국민 AI활용서비스 개발 환경 조성	15,140	통합 추진 필요
산업부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 인력양성	5,910	반도체아카데미	14,005	중복 지원 배제 필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70,000	
농식품부	스마트폴필먼트센터 구축	5,500	스마트 APC 지원사업	27,774	사업 간 연계 필요
복지부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 지원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5,000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 터·전략센터 운영) (병원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9,720	차별성 강화 필요
개보위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체계 운영 (중소 영세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복구 지원)	2,466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 제 활성화)	290	중복 지원 배제 필요
			개인정보 교육 지원 (개인정보보호 전문인 력 양성)	481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536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3,489	차별성 강화 필요
	통일정책추진 (한반도 평화공존전략 개발·추진)	459	기존 수집·관리하고 있는 북한·통일 관련 정보	-	차별성 강화 필요
감사원	감사활동경비 (국민감사어젠다회의)	510	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	-	중복 지원 배제 필요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민원 대응체계 강화	422	민정 현장 청문 및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운영 업무	263	중복 지원 배제 필요
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 (청년일자리·소득안전망 보완방향 연구)	250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 (기타정책연구개발) (미래전략센터 연구위탁비)	850	사업 간 연계 필요
합계		1,809,765	합계	2,213,745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6. 10.

① 교육부의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⁶⁾ (6,000억원)은 전략산업·학교별 특성화 등 분야에 맞춰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이공계 특화 연구·실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의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사학진흥기금)⁷⁾ 사업의 ‘혁신 선도 용자’의 경우 고등교육(연구) 발전과 신산업(AI·바이오·방산·에너지 등) 및 정부 주력산업(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 등) 분야 혁신·선도를 위한 장기·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용자를 지원하고 있어, 이공분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추진 방식(직접지원·용자)이 다를 뿐 지원 대상과 투자 용도가 유사하다.

6) 코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535-380

7) 코드: 사학진흥기금 2861-300

또한 이공학학술연구기반(R&D)⁸⁾ 사업은 이공계 분야 첨단 연구장비 구축 및 공동 활용 기능 측면에서 유사하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연구기반구축 중 ‘기초인프라지원’은 2027년 예산안에 36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학 내 연구장비를 학문분야별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에 집적하고 혁신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최첨단 R&D 장비 구축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기존 사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인프라 수요와 대학의 자체 투자 여력을 확인하고, 사업 간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직접지원이 필요한 영역과 지원규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⁹⁾

[사립대학 이공분야 인프라 구축 지원 관련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2027 예산안	지원 방식	지원 대상
사립대 이공계 실험 실습·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첨단·대형 연구 장비와 대학 특화 교육·R&D 실증 인프라 등 구축, 기업·대학 간 공동 활용 등 지원	600,000	직접 지원 (공모)	사립대학 (일반대 ·전문대)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용자	사립대학의 AI·첨단분야 인프라 투 자 및 지·산·학 협력, 선제적 구조 개선 등 재정 안정화 및 교육안전·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 리 용자 지원	124,890	용자 (사학 진흥 기금)	사립학교 법인 및 사립학교
이공학학술연구 기반(R&D) (대학연구기반구축 - 기초인프라지원)	대학이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 용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내 공동활용시설 중심의 재정 지원	36,241	과제 공모	이공분야 대학 및 연구소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8) 코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535-360

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2026. 10.

② 고용노동부의 ‘K-청년뉴딜아카데미’ 사업¹⁰⁾(4,895억 4,400만원)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첨단·선호분야 직업 능력개발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편 내일배움카드(일반)¹¹⁾ 사업 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사업의 훈련기관 및 훈련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기업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K-청년뉴딜아카데미의 직무 과정과 내용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

두 훈련이 모두 직무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훈련기관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 중복의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특히 두 훈련 모두 대기업 내의 교육 관련 계열사, 사업부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수행 주체가 겹칠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차후 사업 집행 시 이러한 지적에 유의하여 두 사업의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¹²⁾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과 K-뉴딜아카데미의 비교]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뉴딜 아카데미
공급 주체	선도기업 과정 등 기업이 훈련을 제공하는 하나, 훈련기관 및 대학 등이 주된 훈련공급 주체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운영
목적	신기술 분야 중급 이상 현장 실무 인력 양성	청년의 자신감 회복,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
내용	직무훈련만 허용 (주로 6개월 이상 장기 훈련과정)	직무훈련 외에도 직무 외 훈련(소프트스킬·현직자 멘토링 등) 폭넓게 허용 (3개월 내외 운영)

자료: 고용노동부

10)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10의 내역사업

1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1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10.

③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¹³⁾(1,500억원)은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 수요의 지역 대전환과 외래관광객 3천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 소재 호텔 건립의 금융지원을 위한 것이다.

한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관광산업 용자지원¹⁴⁾ 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 사업은 호텔 신축자금을 용자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새롭게 편성되는 동 사업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관광산업 용자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최대 150억 원의 호텔 신축자금을 용자하고 있다. 신규 편성된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 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형 호텔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7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며, 용자 이율과 취급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호텔 신축자금을 용자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대형 호텔'의 구체적인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용자 심사 기준에 결합하는 등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된 면밀한 사업 설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¹⁵⁾

[관광산업 용자지원 사업 내 숙박시설 신축 용자 사업과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 사업의 비교]

구분	관광산업 용자지원	비수도권 호텔건립 용자지원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예정)자	비수도권(지역) 소재 대형 호텔 신축 계획이 있는 사업체
지원규모	반기 최대 150억	연 750억
용자분야	신축자금	신축자금
지원방식	용자	용자
용자이율 ¹⁾	3.80%('26년 3분기)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분기별 고시)	기획예산처 협의 예정

13) 코드: 미래대응기금 4432-300의 내역사업

14)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7-300

1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 10.

구분	관광산업 융자지원	비수도권 호텔건립 융자지원
취급기간 ²⁾	12년(5년거치, 7년상환)	기획예산처 협의 예정
융자조건	관광숙박업 등록	수도권 외 지역에 대형호텔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총 융자금액	2027년 7,062억원 ³⁾	2027년 1,500억원

주: 1)2) 융자 이자율, 대출기간 등 융자조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획예산처 장관 협의 대상

3) 관광숙박업 뿐만 아니라 전체 관광사업자에 대한 2027년 융자 계획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조 우심지역 수질개선대책’ 사업¹⁶⁾(1,048억 3,700만원)은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점검하고 녹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6개 사업을 신설한 것이다.

수질개선대책사업 중 비점오염저감 사업, BMPs¹⁷⁾ 사업, 거버넌스 및 오염원 저감 사업은 기 시행중인 비점오염저감사업¹⁸⁾의 내역사업인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비점오염원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방식과 상당부분 유사한 사업이다.

수질개선대책 사업 대상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고시」상 비점오염원관리지역과 중복¹⁹⁾되는 등 두 사업의 범위가 겹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 사업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²⁰⁾

16)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3-341, 1133-342, 1133-343, 1133-344, 1133-345, 1133-346 등 6개 사업

17)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18)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2

19) 예시로 도암호,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인북천 유역 가야지구,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등은 수질개선 대책 대상 사업지역이면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해당한다.

2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10.

[수질개선대책사업과 비점오염저감사업 비교]

구분	수질개선대책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녹조우심지역에 전액 보조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는 70% 그 외 지역에는 50% 보조
BMPs	물꼬, 완효성 비료, 지표피복 등을 단년도 전액 보조	3~5년 기간 동안 물꼬, 완효성 비료, 지표 피복 등에 50% 보조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⑤ **해양수산부의 ‘활어유통 결제대금지원(용자)’ 사업**²¹⁾(500억원)은 결제대금 지원사업자가 활어 양식업자 및 산지 수집상 등 생산자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하면, 유통사업자가 이를 후정산할 수 있도록 해당 결제대금을 용자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이다.

그런데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용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사업’, ‘산지유통활성화’ 등 출하·유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사업’이 위판장 출하자금 지원을 통한 수산물 거래 대금 결제를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활어유통 결제대금 지원 사업’ 역시 생산자의 대금 회수 및 결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간 지원 목적과 대상 측면에서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활어 생산자가 기존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기존 사업의 대상에서 실제 배제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원 한도 부족으로 별도 사업 신설이 불가피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신규 사업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²²⁾

21) 코드: 수산물발전기금 3465-310의 내역사업

2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 10.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내역 사업 개요]

구분	산지위판장출하지원	산지유통활성화	도매시장출하지원	온라인도매지원
사업 내용	산지위판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산지중도매인 구매자금 용자	생산자(단체)의 판매능력 제고를 위한 원물확보 및 직거래자금 용자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자금 용자	온라인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산,결제자금 용자
시작 년도	■(위판장) '79 ■(중도매인) '01	■(원물확보) '13 ■(직거래) '98	■(어대금) '82 ■(정가수의) '15	■ '25
지원 대상	■ 위판장 ■ 산지중도매인	■(원물확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회원조합 등 생산자(단체) ■(직거래) 직판장 운영수협 등 직거래 업체	■(어대금)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정가수의)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결제자금)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 ■(정산지원자금)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소 운영기관
용자 한도	■(위판장) 사업자당 50억원 * 부산공동어시장 150억원 ■(중도매인) 사업자당 7억원 * 신규 사업자 7천만원	■ 당해 판매사업계획 80% 이내	■(어대금·정가수의) 최근 1년간 거래실적의 12분의 1	■ 업체당 10억
금리 및 상환 기간	■(위판장) 용자 100%, 금리 3%, 1년 상환 ■(중도매인) 용자 100%, 금리 3%, 1년 상환	■(원물확보) 용자 80%, 금리 3%, 3년 상환 ■(직거래) 용자 80%, 금리 3%, 1년 상환	■(어대금) 용자 100%, 금리 3%, 1년 상환 ■(정가수의) 용자 100%, 금리 1.5%, 1년 상환	■(결제자금) 금리 1.5%, 1년 상환 ■(정산지원자금) 정산소 대상 - 무이자, 1년 상환 * 구매자 대상 - 무이자 기간 20일, 연체시 금리 3%, 약정기간 1년 (개별약정)
운영 기관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 aT
요구 내용	■(위판장) 86,515 - 35개소×2,471백만×100% ■(중도매인) 23,485 - 150명×157백만×100%	■(원물확보) 5,800 - 4개소×1,813백만×80% ■(직거래) 3,600 - 3개소×1,500백만×80%	■(어대금) 11,000 - (법인 등) 8개소×750백만×100% - (중도매인) 30명×167백만×100% ■(정가수의) 8,000 - 4개소×2,000백만×100%	■(결제자금) 5,500 - 6개소×917백만×100% ■(정산지원자금) 5,500 - 1,000억원 ÷18.25×0.4
반영 필요성	수산물 유통 단계별 용자지원을 통해 생산자와 유통주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 안정성 및 유통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			

자료: 해양수산부

⑥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패키지²³⁾(출연, 창업진흥원)(300억원)는 성장잠재력 높은 기술기반 청년창업기업에 체계적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청년 CEO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가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인프라,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 내용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 외에는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기존의 창업 지원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교육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또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교육프로그램, 지역창업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률은 세 사업 모두 30%로 동일하다.

그리고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경우 2026년 기준 총 지원기업 수의 약 58.3%를 차지하는 지역기반 트랙의 경우 선정기업의 60%가 청년기업이 되도록 하고, 폐업이력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서류평가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 우대 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창업중심대학 사업 지원대상으로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선정되기에 불리한 측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년창업패키지 사업을 별도로 신규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기존의 창업 지원 사업 간에도 지원 대상, 사업화자금 규모를 비롯한 지원내용, 분담률, 주관기관 등에서 유사·중복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 사업 간 차별화 또는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²⁴⁾

23)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2-300의 내역사업

2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10.

[유사 창업 지원 사업 비교]

사업명	청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2027년도 계획안	30,00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 '창업사 업화지원'의 내내역)	46,92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 '창업사 업화지원'의 내내역)	108,30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지원대상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39세 미만 창업기업 대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은 10년 이내)
2027년 지원기업 수	200개사	520개사	927개사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최대 1.5억원), 창업인프라(공간), 교육·멘토링, 전시회·IR 참여 등	사업화자금 (최대 1~1.5억원*), 교육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등 *딥테크 분야 최대 1.5억원	사업화자금 (최대 1~2억원*), 교육프로그램, 지역창업 페스티벌 등 *딥테크 분야 최대 2억원
분담률 (국비:자부담)	7:3	7:3	7:3
추진기관	선정된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학교, 창조경제혁신센 터, 산학협력단 등)	지정된 창업중심대학 *26년 기준 15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2026년도 사업별 모집 공고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형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사업²⁵⁾(196 억원)은 AI 서비스 개발 수요에 적시 대응 가능한 소규모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의 활용성·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활용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산업 분야별 AI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 산업 성장 지원' 사업은 지역·산업 특화 국산 네트워크 솔루션과 혁신 AI 서비스의 상용 레퍼런스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의 핵심 솔루션·기술의 국산화 및 실증, 전·후방 산업 생태계 동반 육성이라는 목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소형 데이터센터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인 'AI 서비스 및 AI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은 AIDC 클러스터 사업의 'AIDC 전·후방 산업 분야 기업'과 중복될 수 있으며, 두 사업 모두 국내 AI 인프라 기술을 국산화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돕는 동일한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

25) 코드: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 4333-310의 내역사업

더욱이,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형 AIDC와 같은 민간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 가능성과 성과 확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형데이터센터 발굴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목적과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 산업 성장 지원’ 사업은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인프라와 생태계가 집적되는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²⁶⁾

[소형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과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비교]

구 분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 산업 성장 지원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시작	2026~	2027~
예산안	'27년 196억원	'27년 878억원
회계/기금	미래대응기금	미래대응기금
사업시행 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 목적	구축에 장기간·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대규모 AIDC 대신, 신속하게 AI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을 발굴하여, 지역·산업 특화 국산 네트워크 솔루션과 혁신 AI서비스의 상용 레퍼런스 확보·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민간에서 구축하는 대규모 AIDC를 중심으로, AIDC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AIDC 관련 핵심 솔루션·기술을 국산화 → 실증 → 수출산업화하고, 전·후방 산업 생태계까지 동반 육성 추진
지원 대상 · 내용	① 소형 데이터센터 발굴·활용 지원 - 비수도권에 소재한 소형 데이터센터 (또는 소형 데이터센터로 활용 가능한 시설)을 발굴 ② AI 서비스·AI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지원 -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특화 AI 서비스·AI 네트워크 환경의 실증 및 상용 레퍼런스 확보 등 지원	① 테스트베드 구축(10MW 규모) -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대형화·패키지화 된 국산 솔루션 등의 성능 검·인증과 실제 AIDC 운영 환경에서 정상 작동 여부의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랩 조성 ② AIDC 산업 생태계 조성 - 클러스터 내 AIDC 전·후방 산업 분야 기업의 입주·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한 AIDC 관련 기업 성장 기반 강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10.

⑧ 산업통상부의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²⁷⁾(59억 1,000만원)은 남부권(호남·동남·대경)의 지역 특화 반도체 분야별로 혁신기관과 연합공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 예비취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및 산학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은 기존에 산업통상부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아카데미²⁸⁾ 사업과 지원대상, 교육분야 및 교육내용 등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측면에서 반도체아카데미(이하 “기존사업”)는 예비취업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재직자를 고루 지원하고,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이하 “신규사업”)은 이 중 남부권의 취업준비생, 석·박사, 재직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중첩된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설계, 패키징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에서도 소재·부품, 전력반도체, 설계, 패키징 분야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력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취업자 및 재직자 대상의 반도체 분야 교육과정은 기존의 타 사업을 통해서도 이미 추진되고 있고, 서남권의 경우 통합지방정부 지원기금을 통해 인력양성 부문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의 신규 추진 필요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²⁹⁾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간 비교]

구분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반도체아카데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사업기간	2027~2031년	2023~2027년
지원대상	남부권 취업준비생, 석·박사, 재직자	예비취업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재직자
교육분야	소재·부품 , 전력반도체, 설계,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설계, 패키징

27) 코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5404-304

28) 코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5404-305

2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10.

구분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반도체아카데미
교육내용	· 산업현장 문제해결형(PBL) 교육 · 교육-채용 연계 · 공공Fab·기업 인프라 공동활용	· 산업계주도 직무특화 교육과정 · 교육-채용 연계, 대학 학점인정형 교육 ·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인프라 활용
교육운영	연합공대·앵커기업·공동교육운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산업계 주도
지원지역	서남대경동남	전국 (수도권 포함) ※ 비수도권(경남부산충남) 과정 진행
2027 예산안	5,910백만원	14,005백만원 (비수도권 과정: 2,400백만원)
사업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산업통상부

⑨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필먼트센터 구축’** 사업³⁰⁾(55억원)은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2027년 신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산물이 생산자단체 등의 농가 단위 수집을 거쳐 APC(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상품화된 뒤 소비지(도매시장, 대량 수요처 등)로 분산되는데, APC 등 산지에서는 단일 품목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반면, 소비지에서는 다품목 소량 구매를 희망하기에 양자가 상이하여 이를 연결하는 통합물류 기능이 필요하고, 이에 스마트팜필먼트센터를 설립하여 산지 물량을 모아 소비지로 합배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물류의 디지털화와 유통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스마트 APC 지원사업³¹⁾을 통해 산지의 선별·포장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 APC 중 수작업 또는 부분 자동화 수준(Level 0~1)인 곳이 86.3%에 달해 스마트화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수행 중인 APC의 스마트화가 부진한 상황에서 별도의 물류센터를 새로 구축하려는 것은 기존의 스마트 APC 지원사업과 기능 측면에서 유사·중복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산지 APC의 상품화 역량 부족을 별도의 복합물류센터 구축을 통

30) 코드: 미래대응기금(지방계정) 4431-310

31) 코드: 농업발전기금 3033-350의 내역사업

해 보완하기보다, 유통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산지 단계에서의 상품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스마트폴필먼트센터 구축을 신규 추진하기에 앞서, 스마트폴필먼트센터와 스마트 APC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두 시설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분석하였다).³²⁾

⑩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³³⁾(50억원)은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외부 전문 인프라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 신규 편성되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미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전략센터 운영” 내역사업을 통해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의 장비 활용·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병원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내역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방형실험실도 2027년부터 지원 대상 중 일정 비율을 청년기업으로 배정하고, 청년 유니콘 기업 등과의 임상과제 연계에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³⁴⁾

실제로 사업별 지원 내용을 비교하면, 지원기업 13개사 중 10개사가 배정된 Track 1의 기술검증(기초효능·독성 확인, 시제품 테스트·성능 확인)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내용 중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활용 및 실증 지원’, 개방형실험실 지원 내용 중 ‘전용장비 활용’(제품 성능 검증, 안전성 검토, 분석·실험)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⁵⁾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사업으로 충족되지 않는 서비스 수요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³⁶⁾

3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 10.

33) 코드: 일반회계 3039-310의 내역사업

34) 개방형실험실 지원 개편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35) 참고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은 2026년에도 장비 활용·시험분석 178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역센터 지원기업의 34.3%가 청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3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6. 10.

[청년 유니콘 기업 육성 사업(Track 1)과 기존 지원사업 간 비교]

구분	청년 유니콘 Track 1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개방형실험실
지원 방식	기업에 바우처 지급 (기업이 공급기관 선택)	지역 전문기관에 운영비 보조(기관이 기업 지원)	병원에 운영비 보조 (병원이 기업 지원)
지원 대상	대표자 39세 이하, 업력 7년(신산업 10년) 이내 기업	권역 내 창업기업 (최근 5년 지원기업 중 청년기업 34.3%)	창업 7년 미만 기업 (병원별 연 20개사 이상)
주요 지원내용	제품화 설계·기술검증, 공정개발 및 시험분석	병원 연계 임상 지원,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활용 및 실증 지원	임상 자문, 전용장비 활용 (성능 검증·안전성 검토·분석·실험), 사업화 연계
최근 실적 (2026년)	신규	장비 활용·시험분석 178건, 병원 연계 사업화 101건	6개 병원, 147개사 지원 중
2027년 예산안	30억원 (10개사×3억원)	43억 2,000만원 (6개소×7억 2,000만원)	54억원 (9개소×6억원)

주: 개방형실험실의 지원 대상 요건은 2025년 공모 기준이며, 2027년 개편안은 현재 검토 중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부처 간 유사·중복 분류 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12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및 재정경제부에 각 2개씩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6개 부처에 각 1개씩이다. 예산안 규모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51억원으로 가장 크다.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 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기후부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 생에너지사업 (상수원관리지역 햇빛 소득마을 조성)	65,100	행안부	햇빛소득마을확산	461	사업 간 연계 필요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 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신안보 투자 펀드)	25,000	방사청	방산수출 투자지원 (K방산수출펀드)	30,005	차별성 강화 필요
행안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AI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8,020	과기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	-	사업 간 연계 필요
국토부	건축안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지원)	5,000	소방청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 기 보급)	6,240	사업 간 연계 필요
우주청	우주항공미래창의연구 사업(R&D)	4,200	과기부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	2910174	중복 지원 배제
성평등부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2,892	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7,610	사업 간 연계 필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홀로서기 스쿨 청년 특화 프로그램)	576	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9,880	차별성 강화 필요
재경부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2,200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PL단체보험	-	차별성 강화 필요
			규제특례 소관부처	규제실증특례 보험	-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 디자인 사업	500	한국자산 관리공사	나라On	-	통합 지원 필요
개보위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R&D)	2,000	과기부	공존가능한 신뢰 AI 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R&D)	15,241	중복 지원 배제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 기술 개발(R&D)	7,190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 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1,270	방미통위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온라인피해365센터)	833	중복 지원 배제
			성평등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 (지역디지털성범죄피 해지원센터)	1,196	
새만금청	새만금 첨단 교통서비 스 도입·운영	396	국토부	교통취약지역·시간대 무인 수요응답형 교통 지원	32,240	사업 간 연계 필요
합계		117,154	합계		3041,0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6. 1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³⁷⁾(651억원)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참여하여 발전수익금을 마을 주민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³⁸⁾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한 마을이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아 추진되나,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두 사업이 연계 없이 별도로 추진될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융자 부담을 지거나,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비 상수원관리지역 마을이 선정되지 못하는 등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관리지역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비효율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³⁹⁾

37) 코드: 한강수계관리기금 1331-30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34-304, 금강수계관리기금 1337-30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340-302의 내역사업

38) 일반회계 1262-300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안보 투자 펀드’** 사업⁴⁰⁾(250억원)은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투자 관련 사업은 현재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안보전문투자기관으로 하고, 정부 출자금으로 조성된 신안보 전용 펀드를 안보전문투자기관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K방산수출펀드 등이 운용되고 있는데, 해당 펀드와 신안보 전용 펀드 간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신안보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신규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신안보 전용 펀드의 주목적 투자 비율 산출 시 K방산수출펀드 투자 대상인 방위산업 기업보다 기존 펀드에서 주요 투자 대상이 아닌 신산업 분야의 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등 신안보 전용 펀드와 유사 펀드 간 지원대상을 차별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신규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⁴¹⁾

[안보 관련 펀드 현황]

펀드명	신안보 전용 펀드(안)	K방산수출펀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사업명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방위사업청) 방산혁신기업 투자펀드	방산수출 투자지원
조성재원	정부재정 100%	정부재정 + 민간자금 매칭
펀드 운용기관	안보전문투자기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펀드 조성기간	'27~'30	'25~'27
현재 펀드 규모	-	'26년까지 1,000억원 조성 예정 (정부재정 500억원, 민간자금 500억원)
전체 펀드 규모	'30년까지 2,000억원 조성 (정부재정 100%)	'27년까지 1,600억원 조성 예정 (정부재정 800억원, 민간자금 800억원)
투자 분야	안보기관이 제시하는 필요기술 또는 개발역량을 보유한 신안보 ¹⁾ 혁신기업	방위산업 해외수출 보유기업,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진입 추진 기업 등

주: 1) 신안보 분야 예시: ▲무안자율 및 로보틱스, ▲초지능 및 AI 반도체, ▲차세대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및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보안 및 양자 암호기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10.

40)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4264-301

4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10.

③ 행정안전부의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사업⁴²⁾(80억 2,000만원)은 AI서비스 등에서 관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AI학습에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기존에 AI Hub를 통해 추진해 온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과기부는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고 AI Hub를 통해 기업·대학 등의 AI 개발에 제공해 왔는데, 행정안전부 사업은 구축 대상을 공공데이터로 한정하고 제공 플랫폼을 달리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원천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검증하여 AI 개발에 활용하도록 제공한다는 핵심 기능은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안부 사업도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 라벨링, 품질개선 및 데이터 검증 등 과기부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가공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양 사업의 시행주체가 모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담당부처와 제공 플랫폼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가공체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구축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단계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양 부처가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자가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과 AI Hub 간 제공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⁴³⁾

④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지원’ 사업⁴⁴⁾(50억원)은 화재 취약 필로티 공동주택에 설치 용이하고 신속 개선 가능한 소방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필로티 공

42) 코드: 일반회계 2046-502

4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10.

44) 코드: 일반회계 6132-308 의 내역사업

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2025.9.3.)의 일환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필로티 공동주택 11.6만동 중 주차장 여부 등을 고려한 화재 취약 공동주택 3만동⁴⁵⁾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동 대책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방청은 2026년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⁴⁶⁾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 중 연간 50만 세대에 세대당 감지기 3대를 지원하는 3개년(2026~2028년) 사업이다.

이와 같이 2027년에는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 설비 보급이 복수의 경로로 동시에 추진되는데, 사업별 대상이 일부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사업의 대상인 필로티 공동주택은 상당수가 화재안전 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되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해당할 수 있어 범정부 대책의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대상과 겹칠 가능성이 있고, 지원 설비 또한 자동확산소화기로 동일하다. 또한 필로티 구조의 노후 아파트는 소방청 연기감지기 보급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26년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원대상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대상 선정 시 타 사업의 기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건축물에는 보완적인 설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⁴⁷⁾

45) 10년 이상의 노후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물량이다.

46)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소방청), 코드: 일반회계 1133-300

4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10.

[공동주택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설비 지원형 사업 비교]

구분	국토부	범부처(행안부)	소방청
대상	노후 공동주택 3만동	노후 공동주택 668만 세대	전국 취약계층 거주 노후 아파트 149.8만 세대
지원설비	아크차단기,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동확산소화기	연기감지기
추진시기	2027-2031	2027년~	2026-2028
재원분담	국비 50, 지방비 50	(2027년) 지방비(서울 시 시범사업) (2028년) 지방비(전국) (2029년) 국비지원	국비 80, 지방비 20

자료: 국토교통부

⑤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미래창의연구사업(R&D)⁴⁸⁾(42억원)은 우주항공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7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도전형·전략형 연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동 사업 역시 창의적·도전적 개인연구와 공동·융합연구를 지원하고, 우주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기계·전자·AI·바이오 등 타 분야 연구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양 부처의 사업은 지원대상과 연구유형이 상당 부분 중첩되며, 과제 규모에서도 우주항공청 개인연구의 과제당 연간 지원 계획(1억~2억 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우주항공기술) 분야 평균 지원액과 유사하여 뚜렷한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기초연구사업에서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신규사업 추진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자료를 보면 이러한 주장이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ST 분야의 신규과제 선정률은 최근 전체 평균 선정률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며, 지원예산과 과제 수도 기존 사업을 통해 이미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8) 코드: 일반회계 1337-338

결과적으로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ST 분야의 풀뿌리연구가 이미 지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우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⁴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기초연구 및 집단연구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기술분야	2022	2023	2024	2025	2026
과제 수	전체	5,445	3,492	3,256	4,203	7,474
	ST(우주항공기술)	63	45	43	76	125
지원예산	전체	564,246	460,354	734,400	693,624	941,386
	ST(우주항공기술)	5,338	4,066	10,698	14,955	13,948
1과제당 지원예산	전체	104	132	226	165	126
	ST(우주항공기술)	85	90	249	197	11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⑥ **성평등가족부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⁵⁰⁾(28억 9,200만원)은 고립·은둔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상담·학습·활동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발굴·상담 및 일상회복·사회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성평등가족부 사업과 정책대상 및 지원내용이 연계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고립·은둔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사업 간 지원대상의 구분과 서비스 연계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고립·은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청년기까지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대상 및 지원내용을 비교·점검하고, 대상자가 청년으로 성장 시 대상자 의뢰·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⁵¹⁾

4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10.

50) 코드: 일반회계 6132-308 의 내역사업

5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비교]

구분	(성평등가족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위기청년아동지원법
사업목적	우리사회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위기청년 신규 복지정책 개발
지원대상(규모)	9~18세 고립·은둔 청소년	19~34세 고립·은둔 청년
선정기준	고립·은둔 스크리닝 척도 검사	고립·은둔 자가진단 척도 검사
지원내용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거쳐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설득 → 일정수준 회복 후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지원기간	최대 2년	해당없음
관련 인력	48명('26년 14개소 기준)	238('26년 17개소 기준)
수행기관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자료: 성평등가족부

⑦ 재정경제부의 ‘전략경제 제도기반 조성’ 사업⁵²⁾(22억원)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보험사 컨소시엄이 기업별 위험에 맞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기업의 제품 및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제조·판매 제품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9개 광역지자체, 납입 보험료의 20~30% 환급).⁵³⁾ 또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험료의 70%를 지원받고 있다.

52) 코드: 일반회계 1331-303

53)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방식의 단체가입으로 일반 손해보험 대비 20~28% 낮은 보험료로 생산물의 제조·유통·판매 사고를 보장하며,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하여 납입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은 시제품 제작 이후 실증 및 초기 상용화 단계의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과정에서 활용되는 책임보험과도 정책 대상이 유사하다. 또한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성능보험 등 제품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도 정책 목적의 일부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제도로 보장하기 어려운 위험의 범위, 지원대상 기업 및 보험상품의 차이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신규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⁵⁴⁾

[유사 목적의 정책보험 비교]

구분	규제실증특례 보험	중소기업 PL단체보험
소관부처	규제특례 소관부처	중소기업중앙회(운영), 지자체(보험료 지원)
대상	규제실증특례 한정	중소기업 제조·판매 제품
단계	실증	상용화(제조·유통·판매)
보장내용	제3자 배상책임	제3자 신체·재산 손해(생산물배상책임)
보장한도	상한 有 * 대인 사망(1.5억), 부상(3천만), 후유장해(1.5억), 대물 1건당 10억원	가입 조건별 선택(확인 필요)
재정지원	보험료의 70%	9개 광역지자체 보험료 20~30% 환급

(4) 부처 내·부처 간 유사·중복 분류 사업

부처 내 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과 동시에 유사·중복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가 각 1개씩이다. 예산안 규모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0억원으로 가장 크다.

5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 10.

[부처 내·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과기부	기초연구기반구축 (R&D) (연구중심대학 기 반구축 (InnoCORE))	12,000	과기부 교육부	국가연구소(NRL2.0)	95,000 ¹⁾	중복 지원 배제 필요
통일부	사회 통일교육 내 실화 (통일교육위원 역 량강화 및 활동 지 원)	7,052	통일부	학교 통일교육 강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1,564	중복 지원 배제 필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423	
소방청	화재안전 및 시설 기준 개발 (단독형 연기감지 기 보급)	6,240	행안부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	-	사업 간 연계 필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확산 지원	85	
			국토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지 원	5,000	
행안부	재난안전 AI 관제 체계 및 데이터 구 축(정보화) (재난안전 AI데이 터 구축)	4,710	과기부	AI-Hub 재난안전 분야 데이 터 121종	-	중복 지원 배제 필요
			행안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할 성화 지원(정보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62,096	
				기후위기 극한재난대응 지역 문제해결 AI플랫폼(R&D)	4,000	
	재난안전 AI 관제 체계 및 데이터 구 축(정보화) (지역현안 AI학습 데이터 구축)	1,410	행안부	기후위기 극한재난대응 지역 문제해결 AI플랫폼(R&D)	4,000	중복 지원 배제 필요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 이터 구축(정보화) (지방정부 AI기반 집중호우· 태풍 대응 서비스 구축 및 실증사업)	1,554	
			과기부	고성능 컴퓨팅 기반 고정밀 침수 모델 개발	-	
			기후부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	-	

(단위: 백만원)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부처	세부(내역)사업	2027 예산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 기반 극한호우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	
			국립산림과학원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산불 위험예보 알고리즘 개발	-	
조달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2,000	한국국제협력단	Global GearUp	-	사업 간 연계 필요
			조달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	3,040	
외교부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K-라운지 구축)	600	외교부	재외공관 전시장화 사업	350	차별성 강화 필요
			문체부	해외문화거점 사업 지원 (글로벌 K-존)	12,600	
합계		34,012	합계		10,457.3	-

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예산안의 합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6. 1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InnoCORE)’ 사업⁵⁵⁾(120억 원)은 연구 역량이 갖춰진 연구중심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전략 연구분야에 대한 인력·장비 등 연구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 신규 편성되었다.

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InnoCORE) 사업은 국가연구소(NRL2.0) 사업과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원 대상과 목적 측면에서 두 사업 모두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에 있어서 대학당 연간 100억 원 안팎의 대규모 예산을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블록펀딩(Block Funding) 방식’의 종합 재정지원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은 2025년에 도입되어 아직 예산집행률이 낮고 관리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초기 단계에 있다.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은 2025년 사업기간(2025. 9월 ~ 2026. 2월) 동안 200억원의 예산 중 62.1%인 124억 2,3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다소 낮았으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공간 마련, 행정인력 지원이 당초 계획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5) 코드: 일반회계 1235-410의 내역사업

또한 블록펀딩 도입으로 연구 자율성은 확대되었으나,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R&D 과제평가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국가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의 성과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초로 시도되는 블록펀딩 방식인 만큼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먼저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⁵⁶⁾

[기존 대학지원 기초연구사업 비교표]

구 분	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InnoCORE)	국가연구소(NRL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공동
사업시작	2027(안)	2025~
총사업비	1조 8,910억원	1조 1,400억원
목적	대학 연구인력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	국내 대학 내에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대표 연구소 육성
지원 대상	연구 경쟁력 갖춘 대학 20개교	연구 경쟁력을 갖춘 12개 대학 ※'25년, 4개 선정
지원 분야	대학별 5개 전략연구분야 (기초과학 1개 필수)	대학별 강점 분야
지원 규모	대학당 연 100~128억원 (5개 전략연구단)	연구소당 연 100억원
지원기간	지속 지원 (10년 시범 추진 후 확대)	10년(3+4+3년)
재정지원 방식	연구기반 투자(인건비+시설장비) 사업비를 블록펀딩(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	블록펀딩(Block Funding) 방식으로 연구비 예산을 지원하여 연구소가 연구과제 구성, 인력 운영, 시설·장비 구축 등 적재적소에 대규모 예산을 자율적으로 활용

5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10.

구 분		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InnoCORE)	국가연구소(NRL2.0)
지원 내용	전임 연구원	지원(대학당 20명, 연1억)	일부 포함 (전임연구인력 채용지원)
	포닥	지원(대학당 30명, 연 0.7억)	지원
	연구지 원인력	지원(대학당 14명, 연0.5억)	연구소 전담 행정지원인력·장비 엔지 니어 배치
	연구비 (직접비)	미지원(대학 자체 확보 또는 기존 R&D 과제 활용)	지원
	연구시 설·장비	연구장비활용센터	연구시설·장비 구축 지원 포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사업⁵⁷⁾(70억 5,200만원)은 통일교육위원의 위촉·운영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사회통일교육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제25기 위원 구성과 활동 내용을 고려할 때 기존 학교 통일교육 사업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사업과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제25기 위원 1만 명은 초·중·고 교원, 교수, 예비교사 등 현장 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⁵⁸⁾ 기존 학교 통일교육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의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전담 강사를 통해 민간 통일교육 전문가를 학교에 보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두 사업은 제도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교육 대상 및 일부 활동 방식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역할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민주평통은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⁵⁹⁾을 통해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3억 4,800만원), 평화통일 시민교실(2억 4,400만원) 등 청소년·지역주민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7년에는 "자문위원·청소년·일반국민 대상 평화통일교육 사업 확대"를 편성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해외 주니어평통 등 글로벌 평화통일 리더

57) 코드: 일반회계(5031-309)의 내역사업

58) 통일부, 「교육 현장과 함께하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제25기 통일교육위원 15,000명 위촉 추진」, 보도자료, 2026. 3. 13.

59) 코드: 일반회계(1131-302)의 내역사업

양성 사업(8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⁶⁰⁾ 통일교육위원 역시 국내 학생과 해외 동포 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두 기관의 사업이 같은 대상에게 각각 추진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일교육위원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간 겸직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위원 규모 확대에 따라 겸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⁶¹⁾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과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비교]

구분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세부사업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2027년 예산안	활동경비 45억원(2026년 미편성)	15억 6,400만원(2026년 7억 7,900만원)
수행 인력	통일교육위원(국내 위원의 85%가 초·중·고 교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전담 강사
주요 활동	강의·특강, 체험학습, 동아리 지도, 연구모임	초·중·고 방문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산출 규모	강의 3,000명×4회, 체험학습 3,000명×3회 등	840개교×4명×2회
지원 단가	강의 회당 10만원, 체험학습 20만원, 동아리 지도 9만원	강사로 회당 17만 8,060원, 여비 6만 4,202원
최근 실적	신규	2,477회(2025년), 1,506회(2026.7월)

자료: 통일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6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7년도 예산안 개요」, 2026, 3쪽

6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6. 10.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과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관련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통일부)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민주평통)
근거 및 성격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2, 통일교육 실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제29조, 대통령 자문·건의
수행 조직	통일교육위원(교사 중심, 해외 한국학교·한글학교 교사 포함)	국내 229개·해외 45개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주요 대상	초·중·고 학생 등 1020세대, 해외 동포 청소년	청소년, 지역주민, 해외 동포 청소년
2027년 관련 사업(예산안)	위원 활동경비 4,800 (강의·특강 1,200, 체험학습 1,800, 동아리 지도 900, 연구모임 600, 위탁운영비 300)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348 평화통일 시민교실 244 글로벌 평화통일 리더 양성 831(신규)
검직 제한	없음	없음

자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소방청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⁶²⁾(62억 4,000만원)은 화재취약계층(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2026.9.22.)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등이 없어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약 897만 세대 중 소방청이 지원 중인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 외에 일반세대 444만 세대까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9~10월 전남 나주·구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확산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8천 500만원)하여 홍보콘텐츠 제작, 지방정부·소방관서·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대상 교육, 화재취약지역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도에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50억원)하였다. 이는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로 사망 7명, 부상 58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된 대책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필로티 공동

62) 코드: 일반회계 1133-300의 내역사업

주택 11만 6천동 중 취약도가 높은 3만동을 대상으로 소방설비를 지원한다.

이처럼 노후주택·공동주택의 화재예방이라는 동일한 정책목표 아래,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이 각자의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사업을 편성·추진하고 있는바, 소방청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노후주택·공동주택 화재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⁶³⁾

[노후주택 연기감지기·화재안전 관련 부처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법적 근거	2027년 예산(안)
소방청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2026~2028)	노후아파트 화재취약계층 대상 감지기 보급	화재예방법 제2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6,240
행안부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 (나주·구례)	노후 공동주택·농촌 단독주택 일반세대 대상, 화재보험협회·전남 소방본부 재원	-	40 (국비 없음)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확산 지원	홍보콘텐츠 제작, 지방정부·소방관서·관리사무소 대상 교육, 현장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85
국토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지원	필로티 공동주택 대상 자동확산소화기 등 지원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	5,000

자료: 소방청, 행안부,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④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AI데이터 구축’ 사업⁶⁴⁾(47억 1,000만원)은 공유플랫폼, CCTV·드론 영상, IoT 센서 등 다양한 매체의 재난안전데이터를 AI학습용 데이터로 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난안전 분야의 AI 학습데이터는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해 구축·개방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Hub에는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 121종이 공개되어 있으며, 향후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사업에서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을 통해 AI

6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10.

64) 코드: 일반회계 3032-509의 내역사업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 중인데 개방 예정 목록에는 재난안전 분야 12개 과제가 포함된다.

특히 기존 사업과 동 사업은 데이터의 구축 목적과 공개 플랫폼에는 차이가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및 동 사업의 사업수행주체가 모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같은 기관이 재난안전 분야 학습데이터를 AI Hub, 공공데이터포털,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이라는 세 경로를 통해 각각 구축·공개하는 구조가 된다.

이와 함께 2027년 신규 편성된 ‘기후위기 극한재난대응 지역문제해결 AI플랫폼(R&D)’에도 재난 데이터 표준화 및 AI-ready 데이터 패브릭 구축(19억원)과 재난유형별 취약성 데이터 통합(각 11억원) 등 유사한 데이터 구축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 AI데이터 구축 과제는 AI Hub,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및 신규 R&D사업의 구축 대상과 원천자료·가공항목을 대조하여 기존 데이터로 활용 가능한 소요와 별도의 추가 구축이 필요한 소요를 구분하고, 중첩되는 구축·가공 소요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편성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⁶⁵⁾

[기존 재난안전분야 포함 AI데이터 제공사업 및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Hub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AI학습용데이터)																	
· 재난안전환경분야 121종	[구축예정 목록]																	
<table><tr><th>데이터명</th></tr><tr><td>지능형 관제서비스 CCTV영상데이터</td></tr><tr><td>다각도 CCTV생활안전 데이터</td></tr><tr><td>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시설안전데이터</td></tr><tr><td>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결함진단멀티모달</td></tr><tr><td>산불확산위험 대응방안 추론데이터</td></tr><tr><td>어린이보호구역내 등하교및시설물영상데이터</td></tr><tr><td>부산시침수위험복합데이터</td></tr><tr><td>건물균열탐지이미지고도화 등</td></tr></table>	데이터명	지능형 관제서비스 CCTV영상데이터	다각도 CCTV생활안전 데이터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시설안전데이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결함진단멀티모달	산불확산위험 대응방안 추론데이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등하교및시설물영상데이터	부산시침수위험복합데이터	건물균열탐지이미지고도화 등	<table><tr><th>구분</th><th>데이터명</th></tr><tr><td>자연재난</td><td>도시침수·계곡 유량 데이터, 산불위험지수 및 영상 데이터, 전국 싱크홀 위험지역 데이터</td></tr><tr><td>화재·시설안전</td><td>화재대응 영상 데이터, 건물 화재대응시설 데이터, 특수교량 안전점검관리 데이터,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데이터</td></tr><tr><td>산업·생활안전</td><td>산업재해 사고·예방조치 데이터,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이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위반 데이터</td></tr></table>	구분	데이터명	자연재난	도시침수·계곡 유량 데이터, 산불위험지수 및 영상 데이터, 전국 싱크홀 위험지역 데이터	화재·시설안전	화재대응 영상 데이터, 건물 화재대응시설 데이터, 특수교량 안전점검관리 데이터,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데이터	산업·생활안전	산업재해 사고·예방조치 데이터,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이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위반 데이터
데이터명																		
지능형 관제서비스 CCTV영상데이터																		
다각도 CCTV생활안전 데이터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시설안전데이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결함진단멀티모달																		
산불확산위험 대응방안 추론데이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등하교및시설물영상데이터																		
부산시침수위험복합데이터																		
건물균열탐지이미지고도화 등																		
구분	데이터명																	
자연재난	도시침수·계곡 유량 데이터, 산불위험지수 및 영상 데이터, 전국 싱크홀 위험지역 데이터																	
화재·시설안전	화재대응 영상 데이터, 건물 화재대응시설 데이터, 특수교량 안전점검관리 데이터,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데이터																	
산업·생활안전	산업재해 사고·예방조치 데이터,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이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위반 데이터																	

자료: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6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10.

⑤ 조달청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⁶⁶⁾(20억원)은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역량 강화 및 레퍼런스 확보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국제기구 조달시장 벤더등록기업 및 진출 준비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역량 강화, 국제기구 현장연계, 공고분석·제안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300건의 입찰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지원은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Global GearUp을 통해 MDB, UN, 개도국·공여국 정부 등 글로벌 ODA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진단, 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맞춤형 컨설팅, 해외 네트워킹, 입찰·제안서 지원 및 성과관리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중 일부는 기존 수출지원사업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⁶⁷⁾은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컨설팅, 통·번역,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등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KOICA Global GearUp 및 조달청의 기존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과 주요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조달청이 제시한 차별적인 지원 내용도 기존 사업과의 연계·보완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만큼, 2027년도에 별도의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20억원을 편성할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⁶⁸⁾

66)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3-331의 내역사업

67) 코드: 일반회계 3131-301

6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 10.

[국제기구 조달시장 관련 기업지원 사업 비교]

구분	KOICA Global GearUp	조달청 기존 해외조달 지원	조달청 신규 국제기구 지원
목표시장	MDB·UN·개도국·공여 국 정부 등 글로벌 ODA 시장	해외 공공조달시장 전반	UN·MD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지원대상 발굴·선정	중점지원기업 선정 및 역량진단	유망기업 발굴·집중지원	현장수요 기반 기업·품 목 발굴
컨설팅·교육	전담·전문가 컨설팅, 역량강화	기업별 맞춤형 종합지원	국제기구 전문교육
입찰 지원	공고분석, 입찰·제안서 작성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공고 매칭, 제안서 작 성·보완 등
네트워킹	해외 네트워킹, 박람회· 상담회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회	국제기구 발주처·현장 연계

자료: KOICA 및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 황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에 법률의 제·개정권과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법률과 별개의 형식으로 의결되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집행은 법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지출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법률에 지출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집행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과 예산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 사항과 연계하여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안의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연계하여 예산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안에는 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출의 근거가 될 법령이 미흡한 경우에는 법령을 제·개정하여 근거를 보완하거나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분석의견

법령 제·개정 연계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국회에서 심사 중인 경우, 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법적 근거 미비’ 유형이고, 둘째는 법률상 근거나 절차를 우회하여 대통령령, 부처 내부 규정 또는 행정계획 등을 통해 예산안을 편성한 ‘법적 근거 우회’ 유형이다.

2027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법령 제·개정 연계사업은 총 48건으로, 법적 근거 미비 45건과 법적 근거 우회 6건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3건은 두 유형에 중복 해당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역시 법률안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이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의 ‘미래대응기금 분석’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법령 제·개정 연계사업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유형	건수
법적 근거 미비	법률안 미제출 사업	11
	계류 중인 법률안과 연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업	31
	하위법령 미비 사업	3
소 계		45
법적 근거 우회	법정 절차 및 법률상 규정 우회	3
	대통령령에 근거한 기구 설치 및 사업 추진	2
	행정계획에 근거한 출자	1
소 계		6

분석 대상 주제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건, 기획예산처·국세청·법무부·재정경제부가 각각 3건이다.

[법령 제·개정 연계사업 부처별 현황]

(단위: 건)

부처	건수	부처	건수	부처	건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고용노동부	1	공정거래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교육부	1	국가보훈부	2
국세청	3	국토교통부	1	기획예산처	3
기후에너지환경부	1	농림축산식품부	2	대법원	1
방위사업청	2	법무부	3	보건복지부	2
산림청	1	산업통상부	1	성평등가족부	1
소방청	1	재정경제부	3	중소벤처기업부	5
통일부	1	해양수산부	5	행정안전부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합계	48

또한 계류 중인 법률안과 연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업 중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을 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목록]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부처명	사업명	2027년 예산안	관련 법률안
재정경제기획	국세청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	58,5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발전기금	8,833,171	농업발전기금법안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법적 근거 미비

① 법률안 미제출 사업

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함에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와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이다.

[법률안 미제출 사업]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부처명	사업명	2027년 예산안	관련 법률
법제사법	대법원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구축	66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정무	국가보훈부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7,50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지원	627	-
교육	교육부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0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교통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7,052	통일교육 지원법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49,296	해운법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5,500	어촌·어항법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205,0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아동기본수당	2,927,243	아동수당법
		출산지원금 지원	698,111	
성평등 가족	성평등 가족부	혼인지원금	166,282	건강가정기본법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대법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구축’ 사업¹⁾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현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국가보훈부의 ‘청년제대군인 실손보험 가입지원’ 사업²⁾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역 후 18개월간 실손의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7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국가보훈부는 2027년 7월부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 시행에 앞서 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국가보훈부의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지원’ 사업³⁾은 2029년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억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그러나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인 조직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특별법의 제정 여부 및 시행시기와 조직위원회 출범 및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심의가 필요하다.

4) 교육부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사업⁴⁾은 지방 국립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6,9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지원금을 다년도에 걸쳐 적립하고 대학 자체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이 지연될 경우 지원금의 적립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조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6.10.

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6.10.

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6.10.

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10.

5)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사업⁵⁾은 통일교육위원의 위촉·운영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사회통일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70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에서 ‘통일교육위원’을 법률상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 개정 없이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이라는 명칭으로 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정한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개정 등 적절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사업⁶⁾은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항로 단절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 선사를 대상으로 유류세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492억 9,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해운법」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7) 해양수산부의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⁷⁾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정부 출연금을 활용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수산물 유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5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수산물 유통 업무 및 공단의 SPC 출자·운영이 「어촌·어항법」에 따른 공단의 법정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공단의 법정 사업 범위와 사업 시행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8)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⁸⁾은 소상공인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2,0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건강돌봄 지원 사업은

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10.

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0.

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0.

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보건복지부의 ‘아동기본수당’ 사업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2조 9,27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신규 아동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은 1,834억 5,000만원이다.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기존 아동수당 대신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을 13세 미만 아동으로 하고 기본지역에는 월 20만원, 우대지역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액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아동기본수당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급여체계에 맞추어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사업은 아동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된 사업이므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및 심사 경과와 연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10) 보건복지부의 ‘출산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 지원’ 사업¹⁰⁾은 신생아동 가구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6,98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개편하여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와 거주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출생 후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이용권 방식의 첫만남이용권과 매월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새로운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주기 및 지급방법,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간 적용관계 등을 새로운 급여체계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및 심사 경과와 연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10.

1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10.

11) 성평등가족부의 ‘혼인지원금’ 사업¹¹⁾은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일몰하고 혼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직접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1,662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그러나 혼인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법률안의 발의 및 심사 경과와 연계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② 계류 중인 법률안과 연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업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업 중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법률안의 심사 결과가 사업의 추진방식 및 예산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나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의 제·개정이 바람직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또한 이들 사업은 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와 시행시기, 지원대상 및 범위, 소요예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경과와 시행시기,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 제·개정 연계 사업]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부처명	사업명	2027년 예산안	관련 법률안
법제사법	법무부	국가배상금 지급	840,000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1,6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사범 치료 프로그램	2,1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3,110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중소기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1,500	

1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10.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부처명	사업명	2027년 예산안	관련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36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 기획	재정경제부	전략수출금융기금	1,390,311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500,00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31,300	물가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 예산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한국탄소센터 운영)	12,746 (9,746)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특별인프라펀드	200,0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25,649	국세외수입 채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채납관리단 운영	214,765	국세외수입 채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	58,5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투자형 R&D	89,25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	61,75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방위사업청	방산혁신기업 투자펀드	25,000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장보고-Ⅲ Batch-Ⅲ	96,600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행정안전	소방청	119항공정비실 운영	2,6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발전기금	8,833,171	농업발전기금법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 단 출연	200,0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11,15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부처명	사업명	2027년 예산안	관련 법률안
	산림청	산림기술 신고포상금	32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	산업통상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1,500,0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 기업부	청년 창업 안심보험료 지원	30,0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32,320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4,70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R&D)	3,500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	20,0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	8,624,6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	28,60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¹²⁾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 추이 등을 반영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6,951억 6,500만원 증액된 8,40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진실규명 결정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에게 개별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2건(「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8039호,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21445호,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1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6.10.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배상 소송의 제기 규모와 국가배상금 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심사 경과와 보상금 지급에 따른 국가배상금 소요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법무부의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사업¹³⁾은 부산북항에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상륙허가 심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정보화기기를 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1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를 정보화기기에 의한 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법무부는 법률 개정을 전제로 제주항과 강정항에 자동심사대 3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관광상륙허가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216178호(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117호(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바, 법률안의 심사 경과와 연계하여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법무부의 ‘마약사범 치료 프로그램’ 사업¹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156호,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을 전제로 마약류 유통사범 등 2,800명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2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법률 미개정으로 2026년에도 추가 교육대상자 2,800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도 동일한 인원을 반영하였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경과 및 시행시기와 연계하여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익신고장려기금 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사업’¹⁵⁾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공익신고장려기금 운용계획안에 46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안번호 제2221680호,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바, 법률안의

1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6.10.

1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6.10.

1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6.10.

심사 경과와 연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사업¹⁶⁾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증거자료의 은닉·폐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93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221374호,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지급대상이나 산정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소요예산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경과 및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6) 재정경제부의 ‘전략수출금융기금’ 사업¹⁷⁾은 대규모 해외 전략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총 1조 3,90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및 관리·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및 「국가재정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동 기금운용계획안 논의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전략수출금융기금 관련 법안 발의현황]

의안명	의안번호	주요 내용	심사 경과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6289 2217336 2220460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및 운용 전반	소위 계류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5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기금으로 설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7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 관리·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3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과·징수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6.10.

1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10.

7) 재정경제부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¹⁸⁾ 출범을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221706호(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1855호(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연내 의결되더라도 전략투자계정은 2027년 1/4분기 이후에야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

8) 재정경제부의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사업¹⁹⁾은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 시 몰수금·과징금 등 국고 귀속액 등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민간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31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물가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76호,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위반행위 26건에 건당 과징금 40억원과 포상금 지급률 3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312억원의 포상금을 산정하였으나, 개정안은 과징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안 심사 및 하위법령 제정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와 시행시기, 향후 확정될 포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9) 기획예산처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²⁰⁾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탄소크레딧)의 인증·등록·거래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127억 4,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등록기관의 지위와 업무, 거래소의 지정·감독 및 정부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이를 규정한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20793호,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률안 제정과 연계한 사업 심의가 필요하다.

1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10.

1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10.

2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10.

10) 기획예산처의 ‘한국탄소센터 운영’ 사업²¹⁾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탄소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으로, 2027년 5월 센터를 설립하고 7월부터 탄소크레딧 구매를 시작할 계획에 따라 센터 운영비 8개월분인 97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20793호,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동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 중 법률이 제정·공포되더라도 당초 계획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경과 및 시행시기와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편성 규모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기획예산처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사업²²⁾은 민간 투자사업의 자기자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2,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출자 등 투자업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획예산처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근거를 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684호,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률안 개정과 연계한 심의가 필요하다.

12)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사업²³⁾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통합하고, 국세청이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징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256억 4,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국세청의 체납정보 통합관리, 관계기관 정보연계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7125호,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시행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

2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10.

2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10.

2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10.

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정 여부와 시행시기에 따라 시스템 구축 일정 및 예산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경과 및 시행시기와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13)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업²⁴⁾은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사유 등을 확인하여 유형별 맞춤형 징수·지원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2,14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7125호,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황에서 2026년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체납자 실태확인 및 유형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전에는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워 기존 유형분류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법률 제정 이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기존 유형분류 결과를 교차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재분류하는 한편, 법률 제정 전후의 분류 결과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향후 징수·지원 업무에 활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4) 국세청의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 사업²⁵⁾은 조세탈루 또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585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을 위한 최소 징수금액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급률을 인상하는 한편 지급한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현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037호, 정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률안 심사와 연계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투자형 R&D’ 사업²⁶⁾은 희귀·난치질환 유전자·세포치료제 사업화 및 성과환류형 투자 생태계 구축(250억원), 화합물반도체 R&D 상생패 구축(400억원) 및 공공연구성과 기반 투자형 R&D 지원(242억 5,500만원) 등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총 892억 5,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존 출연 방식과 달리 연구개발법인·연구개발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고 투자수익을

2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10.

2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10.

2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10.

회수·재투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출연 방식의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투자형 R&D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정의 조항과 사업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체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951호,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다.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 사업²⁷⁾은 국가 과학기술 AI 자원을 통합하여 연구 현장에 제공하고 AI 기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17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국가과학AI 연구센터가 연구·기술직을 신설하여 AI 과학자 개발 등 직접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규정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 범위에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인공지능 기반 연구기관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800호,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7)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투자펀드’ 사업²⁸⁾은 신안보 분야의 신기술·핵심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전문투자기관을 설립하고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2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신안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펀드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21812호,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사업 심의가 필요하다.

18) 방위사업청의 ‘장보고-Ⅲ Batch-Ⅲ’ 사업²⁹⁾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관련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966억원이 편성되었다.

2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10.

2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10.

2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10.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에 관한 특례, 안전관리, 핵추진잠수함시설 및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20836호,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21677호, 정부)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또한 2026년 9월 현재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비용분석이 진행 중으로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법률안의 제정 여부 및 시행시기와 비용분석 결과에 따른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19) 소방청의 ‘119항공정비실 운영’ 사업³⁰⁾은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26억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현행 「항공안전법」상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정비조직원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체 소방헬기 34대 중 26대(76.5%)를 차지하는 시·도 소유 헬기의 위탁정비에 제약이 있다. 이에 국가기관도 정비조직원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859호,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정비실 개청(2027년 7월) 전까지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

20)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발전기금’³¹⁾은 기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통합하여 농업 분야의 재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신설을 전제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기금 설치 및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법안」(의안번호 제2221142호,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심사와 연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1)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업³²⁾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2,0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7,000억원으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3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10.

3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0.

3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0.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안번호 제2210262호(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482호(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882호(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을 전제로 조건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부적절한 재정 운용으로 법률 개정과 연계한 사업 심의가 필요하다.

22) 해양수산부의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³³⁾은 선박연료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연료공급선의 질량유량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11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에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질량유량계 등 정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201684호(정부), 의안번호 제2218909호(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3) 산림청의 ‘산림기술 신고포상금’ 사업³⁴⁾은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허위 등록 등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3억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현재 포상금 지급을 위한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422호,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경과와 연계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4) 산업통상부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³⁵⁾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반도체지원계정에 2027년부터 4년간 총 6조원을 출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1조 5,0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888호,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소관

3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0.

3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0.

3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또한 동 사업은 법률 개정을 조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며, 법률 개정 이후 실시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와 연차별 사업규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5) 중소기업부의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³⁶⁾은 청년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및 기금 사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826호,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특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험료 지원과 기금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역시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6) 중소기업부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사업³⁷⁾은 신안보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 및 신안보 전용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323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21812호,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률안의 심사 경과 및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7) 중소기업부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R&D)’ 사업³⁸⁾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각각 47억원과 3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현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

3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

3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

3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

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에 공동 지정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 8월 2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특구사업자에게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권자의 범위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218758호(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796호(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률안 심사와 연계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8)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 사업³⁹⁾은 민간투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자 방식으로 1:1 매칭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20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투자형 R&D 사업의 추진 및 출자금 회수·재투자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951호,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또한 투자금 회수에 따른 수익금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 하위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결과 및 시행시기와 연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도부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폐지⁴⁰⁾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18호, 박정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률안 심사 경과와 연계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30)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급여’ 사업⁴¹⁾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3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

4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10.

4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10.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8조 6,246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신규 선보장 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은 435억 6,6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산재 승인 이전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선보장 급여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산재보험 선보장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안번호 제2201406호(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812호(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38호(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106호(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률안의 심사 경과와 연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사업⁴²⁾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에 대비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기본조사설계비 28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외교부·법무부 등 5개 부처를 세종시 이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관련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768호,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또한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부지 확보 등 선행 절차도 완료되지 않아 실제 설계 착수 시기와 소요예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③ 하위법령 미비 사업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하위법령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4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10.

[하위법령 미비 사업]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부처명	사업명	2027년 예산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9,800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16,903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지원	5,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사업⁴³⁾은 북극항로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과 기술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9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9월 현재 하위법령 제정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 중점 육성할 기술 및 산업 분야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2027년도에는 산업 및 기술수요 조사, 실증사업 모델 설계 등 사업 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⁴⁴⁾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취득한 데이터를 우리 기업 등에 공유하여 글로벌 해운기업 육성과 북극항로 상업운항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169억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이 중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안은 7억 5,000만원이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9월 현재 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센터의 지정 여부와 조직·인력 규모 및 운영체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7,500만원과 위탁수수료 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하위법령 제정 및 센터 지정 일정과 운영비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의 적정성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4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0.

4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10.

3)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지원’ 사업⁴⁵⁾은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소방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는 대통령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가 없어 소유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하므로, 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12일 이전에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실제 참여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법적 근거 우회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규정과 달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들 사업은 법적 근거 및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에 따라 ① 법정 절차 및 법률상 규정 우회형, ② 대통령령에 근거한 기구 설치 및 사업 추진형, ③ 행정계획에 근거한 출자형으로 구분하였다.

① 법정 절차 및 법률상 규정 우회

[법정 절차 및 법률상 규정 우회 사업]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부처명	사업명	2027년 예산안
재정경제기획	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25,649
외교통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7,05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K-문샷 추진지원단	6,85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사업⁴⁶⁾은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국세외수입의 체납관리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256억 4,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4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10.

4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10.

그러나 국세청은 202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 기존 정보화사업 예산 4억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7년도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전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2025년에도 엔티스 고도화 ISP를 위해 5억 2,0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규 정보화사업의 ISP 등 사전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예산을 구체화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예산 전용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 사업⁴⁷⁾은 통일교육위원의 위촉·운영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사회통일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70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에서 ‘통일교육위원’을 법률상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 개정 없이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이라는 명칭으로 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향후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위원 운영 및 활동경비 집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개정 등 적절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문샷 추진지원단’ 사업⁴⁸⁾은 국가 대형 R&D 과제 의 기획·관리 및 총괄책임자(PD)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8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에 설치된 추진지원단이 R&D 과제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수행하는 것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규정한 법정 사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 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10.

4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10.

② 대통령령에 근거한 기구 설치 및 사업 추진

1) 행정안전부의 ‘기본사회위원회, 빛의 위원회 및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운영’ 사업⁴⁹⁾은 2026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설된 3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총 14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와 빛의 위원회의 법률상 설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신설하고 각각 44억 6,100만원과 48억 5,1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역시 근거 법률의 시행 이전에 27억 9,200만원의 예비비를 통해 출범시켰다. 이처럼 위원회를 먼저 설치한 후 다음 연도 본예산에 운영경비를 편성하는 방식은 국회의 사전 예산심의 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본사회위원회와 빛의 위원회의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위원회의 사무기구 정원과 파견 공무원 등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한민국 AI숨고찾기 프로젝트’ 사업⁵⁰⁾은 AI 활용·혁신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기업을 발굴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64억 9,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그러나 사업 수행 주체인 국가인 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가 AI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정책이나 공공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고안·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는 공모전에 관한 것으로, 기존 AI 활용·혁신 성과를 발굴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동 사업의 근거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 수행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4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10.

5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10.

③ 행정계획에 근거한 출자

기획예산처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사업⁵¹⁾은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2,0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출자 등 투자업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획예산처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출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 기금은 2025년 특별인프라펀드에 1,000억원, 2026년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한 데 이어 2027년에도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으로, 3년간 총 3,500억원 규모의 출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투자업무 수행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등 투자업무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법률과 예산 간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그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 예산심의에 앞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기본사회위원회, 빛의 위원회 및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운영’ 사업과 같이 국회의 예산심의에 앞서 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사업과 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 국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먼저 추진한 후 이를 전제로 후속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형식화되고 재정민주주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

둘째, 법률상 근거와 재정위험 관리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5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10.

재정운용 방식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 재정부담과 재정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재정경제부의 ‘전략수출금융기금’ 채권 발행과 기획예산처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사업은 채권 발행이나 기금 출자 등 새로운 재정운용 방식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의 재정부담이나 기금의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식에 대한 법률상 근거와 재정위험 관리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경우, 향후 채무상환 부담이나 투자손실 등으로 재정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앞서 특정 제도의 도입이나 사업 추진방식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심사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기본수당’, 성평등가족부의 ‘혼인지원금’, 법무부의 ‘마약사범 치료 프로그램’, 대법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구축’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앞서 특정 제도의 도입이나 사업 추진방식을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된 사례이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는 제도의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방식,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제도와 사업계획을 전제로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적 판단과 심사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넷째, 법률의 제·개정 여부 및 시행시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의 실효성과 재정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사업, 해양수산부의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 및 국세청의 ‘국세 공익 신고포상금’ 사업 등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 여부 및 시행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의 진행 상황과 실제 집행요건 등에 따라 당해연도 재정소요와 예산 집행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회 예산안 심의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적시에 배분하는 데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과 예산 간 불일치 문제에 대응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하여 국회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어렵거나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예산안 의결 시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법률 시행 전 예산 집행의 유보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국회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출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제·개정을 규정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여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별도의 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무지출 등 예산 집행을 위해 법률의 제·개정이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을 세출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여 11월 30일까지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의 심사를 연계함으로써 법률과 예산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법률 개정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운용 방식에 따라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¹⁾이 적용되고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 금지 등 엄격한 자금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외부에서 재정 전반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재정의 역할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적용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용하는 자금이 있는데, 이를 ‘재정 외 정책자금’이라 한다.

‘재정 외 정책자금’은 크게 ① 법률의 근거에 따라 운용되는 경우와 ② 법률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가재정법」²⁾에 따른 기금과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 차관물자대 세입예산 초과분,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액의 세출예산 초과분³⁾, 「국고금 관리법」⁴⁾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과 「정부기업예산법」⁵⁾에 따라 운용되는 국고금통합계정 자금운용수익금과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등이 있다. 이 경우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에 포함되어 기금운용계획⁶⁾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결산 심사를 받으며, 그 밖의 제도들도 법률에 근거하여 운용 범위와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자금은 입법을 통해 예외가 인정된 것이므로 재정운용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의 근거에 따라 자금의 조성 자체는 재정 내에서 이루어지나 공공기관이나 기타 민간이 운용 주체가 되어 운용은 정부 재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금도 있다. 정책펀드의 경우 정부 출자금은 예산이나 기금운용계획에 계상되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되나, 출자 이후 펀드의 운용은 민간 운용사 등 정부 밖에서 이루어져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국민건강보험법」⁷⁾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용하며, 예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되나 통합재정 외로 운용된다. 이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운용된다는 점에서 위법한 것은 아니나, 다만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시점에만 국회 심의를 거치고 이후 회수금과 운용 수익의 재투자 등 운용 과정은 국회 심의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정통제에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⑥ 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고금관리법」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5)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6) 「국가재정법」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인데, 이러한 경우는 크게 ① 정부의 수입·지출 활동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세입이나 기금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정 외로 운용되는 자금과 ② 자금의 운용 주체는 민간이지만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자금임에도 재정 외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표적인 자금으로는 녹색자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위탁선거관리경비 등이 있다. 위 자금들은 개별 법률에서 사업추진의 근거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 외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세부적인 운용방식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가령, 녹색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⁸⁾에 따라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자금이나 재정 외로 운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⁹⁾에 따라 녹색자금회계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기금으로 편입되고 있으나,¹⁰⁾ 여전히 예산·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례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0) 예를 들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부과의 근거는 있었으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이 운용되고 있었는데, 법률 제13389호, 2015. 6. 22, 일부 개정으로 제111조의4가 신설되면서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편입되었다.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2025. 1. 21.>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설치되어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되는 자금으로, 법률상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여 2026년 8월 말 기준 조성액 3,285.1억원 중 52.4%(1,720억원)가 공공기관 출연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기업의 출연에도 출연금의 10% 법인세 세액공제, 기부금 손금산입 등 조세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7,0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어서, 공적 재원의 비중은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외 정책자금은 개념상 포괄하는 영역이 넓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원조성의 목적이라는 기준에 따라 3가지 유형(정책펀드, 용자·보증자금, 기타)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정책펀드는 창업 등 자금 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투자하고 민간 재원 등과 결합하여 일정 기간 운용한 후 회수하기 위하여 조성한 자금이다. ② 용자·보증자금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하여 민간에 자금을 저금리 용자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조성한 자금이다. ③ 기타는 그 밖에 정부가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상호부조 내지 피해보상 등 정책적 보호 및 특정 분야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조성한 자금이다.

다음으로는 재정지원의 방식에 의하여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직접지원이란, 정부가 직접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자금을 뜻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하여 출연·출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간접지원은 직접지원 외에 정부가 부담금·분담금·수수료·이자수익·국공유 시설 사용수익·세금감면액 등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이전의 반대급부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금의 재원 조성 목적과 재정지원의 방식이라는 기준에 따라 재정 외 정책자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예시할 수 있다.

[재정 외 운용자금의 유형별 분류]

구분	정책펀드	융자·보증자금	기타
직접 지원	중소기업모태펀드, 농림수산 식품모태펀드, 글로벌인프라 펀드(GIF),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PIS), 혁신성장펀드, 녹색인프라해외 수출지원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구개발펀드, 대학 창업펀드, K-방산수출펀드, 국민성장펀드	기간산업안정기금*, 공급망 안정화기금*, 갯도굴진사업 자금, 국내자원산업자금, 새 출발기금, 녹색자금, 국민행복기금, 첨단전략산업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예금보험기금*, 중소기업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산림), 주민특별기금
간접 지원	과학기술혁신기금(펀드), 기술 혁신전문펀드, 방산기술혁신 펀드	경협증진자금(EDPF)	채소수급조정충당금, 주민지원기금, 택시운수종사자복지기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위탁선거관리경비

주. *표기된 자금은 법령상으로는 정부출연금 내지 차입금이 재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없었던 경우를 뜻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본 분석은 재정 외 운용자금 6개 유형 중에서 간접지원형 기타 자금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간접지원형 기타 자금은 정부가 직접 출연·출자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조세감면, 수수료, 공공기관 출연 등을 통해 정부 외 주체가 재원을 획득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특정 집단의 보호나 특정 분야의 육성·진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한다.

간접지원형 기타 자금은 실질적으로는 공공재원의 이전이나 그 반대급부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이나 출자가 없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다. 그 결과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서 포착되기 어렵고, 운용현황에 대한 정례적인 국회 보고 절차도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지원형 자금에 비해 재정통제의 공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석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10-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방식이 아닌 일반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 검토 필요¹¹⁾

가. 현 황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법’) 제18조의2¹²⁾에 근거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은 세제 혜택과 평가상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한 금액의 10%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되고, 출연금은 기부금 손금 산입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상생협력 촉진세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은 출연액을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받아 미환류소득에서 출연금액의 3배를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출연 시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최대 3.0점)와 민간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최대 2.0~3.0점)에 반영된다. 지수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일정기간 면제와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등의 혜택도 있다.

11)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고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혜택]

구 분	내 용	근거·비고
법인세 세액공제	2028.12.31.까지 출연한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2호
기부금 손금산입	출연금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과세소득 감소	「법인세법」상 한도 적용
상생협력 촉진세제	출연액을 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인정, 미환류소득에서 출연금액의 3배 차감	대기업 대상, 최대 60% 절세효과
동반성장 평가 반영	공공기관 평가 최대 3.0점, 민간기업 지수 평가 최대 2.0~3.0점 반영 * 지수 평가 시 농어촌ESG실천제도 인정기업은 0.5점 가점	지수 평가 우수기업에 공정위 직권조사 일정기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등
농어촌 ESG 실천제도 가점	농어촌ESG실천제도 진단 시 가점(10점) 부여	인정기업에 3개 부처(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공동 명의 인정패 수여, 지수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 한도·금리 우대 등
포상	출연 우수기업 포상	2026년 장관표창(안) 농식품부 22점, 산업부 20점, 해수부 3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두어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FTA 법에서는 정부 외의 자(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고, 연간 목표 미달 시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금 조성 목표 규정은 법 시행(2017.1.17) 후 10년간¹³⁾만 효력이 있어 2027년 1월 16일 만료 예정이며, 이에 20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 3건¹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1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 칙(법률 제14528호, 2017. 1. 17.)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14) [22102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221048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220488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한편, 2017년 조성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은 3,285.1억원으로 목표액 1조원 대비 32.9%에 불과한 상황이다. 연간 조성액은 매년 목표 1,000억원에 미치지 못했고, 조성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25년도로 490.7억원(49.1%)이었다. 조성액의 52.4%는 공공기관, 47.4%는 민간기업의 출연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자가 용도·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한 지정출연이 3,215.2억원(97.9%)이고 비지정출연금은 69.9억원(2.1%)이다.

조성된 기금은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 사업,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268개 사업에 2,797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6년 8월 말 기준 약 487억 7,000만원이 미집행 상태이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누계(2017~)
조성 (A)	합 계	455.3	354.2	305.0	346.5	490.7	167.9	3,285.1
	공공기관	257.4	159.5	133.9	136.3	130.2	37.5	1,720.0
	민간기업	196.8	192.5	169.4	209.4	360.4	130.4	1,557.6
	개인·단체	1.0	2.3	1.7	0.8	0.05	0.01	7.5
	목표 달성률	45.5	35.4	30.5	34.7	49.1	16.8	32.9
집행 (B)	합 계	289.2	313.3	375.0	440.0	372.7	233.3	2,797.4
	교육·장학(제1호)	16.4	5.5	42.6	12.0	14.1	13.2	137.9
	복지증진(제2호)	62.3	54.6	60.3	86.2	98.6	56.8	541.8
	지역개발(제3호)	125.9	154.4	153.7	229.6	146.5	86.7	1,315.3
	공동협력(제4호)	46.5	56.6	85.6	69.0	68.8	49.1	552.0
	상품권(제5호)	38.1	42.1	32.5	39.0	40.1	24.6	238.1
	운용·관리(제6호)	-	-	0.2	4.3	4.6	3.0	12.1
잔액(C=A-B)								487.7

주: 민간기업 누계에는 다년협약 잔여분(22.5억원)이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민간 기부 한계로 약 7,00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7,000억원을 출연하여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 농어촌 지원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계획안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¹⁵⁾을 위해 2,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15) 코드: 농업발전기금 1072-396

[2027년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	-	-	200,000	20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예산안 편성부터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출연금 7,000억원이 투입될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공적 재원 비중이 8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동 기금에서 정부 출연금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은 일반 재정사업과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제기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방식 대신, 민간기업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법¹⁶⁾에서는 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록 하고, 조성액이 부족할 때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부의 출연 근거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¹⁷⁾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총사업비 7,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임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FTA법 개정안 3건의 통과를 전제로 2026년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26.8.26.)에서 조건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고, 2027년도 계획안에 출연금 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이 출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산 편성을 먼저 진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여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조성액(3,285.1억원)의 52.4%(1,720억원)는 공공기관의 출연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2030년까지 정부 출연금 7,000억원이 더해지면 공적 재원 비중은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향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적 재원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 기금에서 정부 출연금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은 일반 재정사업과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일반 재정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령 출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민간 출연 실적과 연계하는 매칭 방식 등을 통해 정부 재정이 민간 참여를 대체하지 않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운용체계에서는 국회가 기금의 운용 전반을 점검하기 어려워 정부 출연금에 대한 충분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하의 '상생기금 운영위원회'가 연간·중장기 운영계획, 집행의 적정성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고, 그 산하 '심의조정위원회'가 개별 사업의 용도 적합성, 집행점검, 정산·환수를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 조성·지원 현황의 통계자료만 제출받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자료는

17)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대외 비공개로 별도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단은 목적별 사용액 총액만 공개하며, 운영·관리 내부 규정에 따라 출연주체의 동의 없이 출연·지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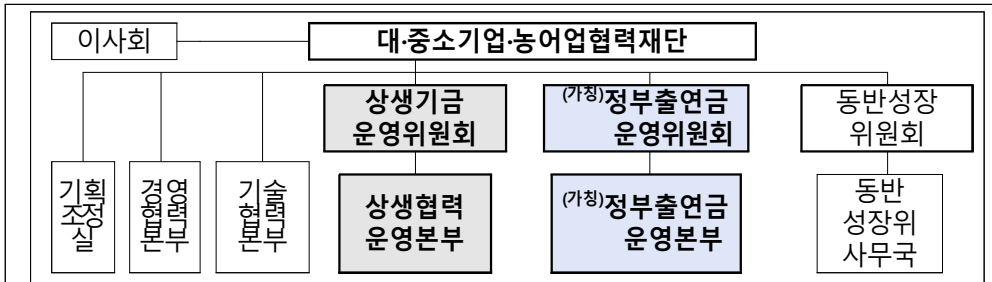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체계 현황]

구 분	내용
설치 근거	「FTA농어업법」 제18조의2제2항,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20명 이내(현 17명): 위원장(민간) 1, 농어업계 4, 기업계 4, 공익대표 4, 정부당연직 4(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해수부 수산정책관,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
의결	정기회의 연 2회,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심의조정위원회	16명 이내,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 사업 용도 적합성·정산·환수 심의
실무 조직	상생기금 운영본부(농어촌기금운영부 8명, 관리부 8명)
농식품부 보고	통계자료 제출만 있음, 심의자료는 재단 내부 비공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7,000억원을 기존 민간 출연금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재단 내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가 민간 출연금의 운영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가칭)정부출연금 운영위원회'와 '(가칭)정부출연금 운영본부'를 추가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에서 출연하는 만큼 순수 민간 출연금보다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운영·심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용처, 성과를 대외에 공개하여 검증받겠다고 설명하였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조직 개편(안)]



□ (현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상생기금 운영위원회’를 두고 상생기금 운영계획 등 심의*

- * ① 상생기금 연간 및 중장기 운영계획, ② 상생기금 집행의 적정성 및 기금사업 성과 평가, ③ 상생기금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④ 상생기금 운영관리비율 결정 등

○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 농업계·기업계·공익대표·정부* 17인 구성

-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 위원장은 민간

- 운영위원회 산하에 ‘상생기금 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상생기금 심의·조정 등*을 하며, 운영위원회에 결과 보고

- * ① 상생기금 사업별 용도 적합성 판단, ② 상생기금 집행실적 점검, ③ 상생기금 정산·환수,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위임받은 사항

○ (운영본부) 상생기금 관리·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2개 부서 운영(16인)

- * 농어촌기금운영부(8명), 농어촌기금관리부(8명)

□ (개편방안) ‘(가칭)정부출연금 운영위원회’ 및 ‘(가칭)정부출연금 운영본부’를 신설하여 정부출연금(7,000억원)을 별도로 관리

○ (운영위원회) 정부·농어업계·공익대표·지방정부 등으로 구성하여 정부출연금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등 수행

○ (운영본부) 정부출연금 관리·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 * 정부출연금 기획·집행부: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지방정부 공모 관리, 협약체결 등 정부출연금 관리·평가부: 집행점검·정산·환수, 성과분석·효과성 평가, 정보공시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출연에 따른 재정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현행법¹⁸⁾상 조성액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 조치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

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출연금 사용내역의 공개와 국회 보고, 출연 이후의 감독·정산·환수, 의사결정구조, 성과관리를 포함한 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개편안은 현행 재단 이사회 아래에 '(가칭)정부출연금 운영위원회'와 '(가칭)정부출연금 운영본부'를 신설하는 것인데, 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재정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출연하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나, 재단의 이사회와 조직·인사·회계는 재단의 체계를 따르고 재단의 소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신설 본부가 재단 내에 있는 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직과 인력, 집행 방식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단 내 신설 본부에서 운영하는 개편안 외에 신설 본부를 별도로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2. 채소수급조정충당금: 재정 내에서 사업 운영 방안 마련 필요¹⁹⁾

가. 현 황

채소수급조정충당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수급안정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사업손실, 수급조절, 판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95년부터 조성·운영되어 왔다.

수급안정지원 사업²⁰⁾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²¹⁾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용자 사업으로, 배추·무·고추·마늘·양파·대파·당근·양배추·감자 등 9개 노지채소의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크게 농협경제지주가 관리하는 지역·품목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관리하는 영농법인·회사법인·협동조합·지방공사 등 그 밖의 조직으로 나뉘며, 정부는 사업대상자(계약주체)에게 계약재배 원물확보 자금 등을 무이자로 용자 지원(국비 80%, 자부담 20%, 5년 상환)하되, 계약물량의 30%에 대해 출하조절 등 수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 수행 방식은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출취급기관인 농협경제지주에 용자금을 대여하면, ② 대출취급기관인 농협경제지주가 대출사업자인 농협경제지주에 5년 만기로 대출하고, ③ 대출사업자인 농협경제지주가 품목별 사업기간에 맞추어

19)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고

20) 농업발전기금(舊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33-304의 내역사업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거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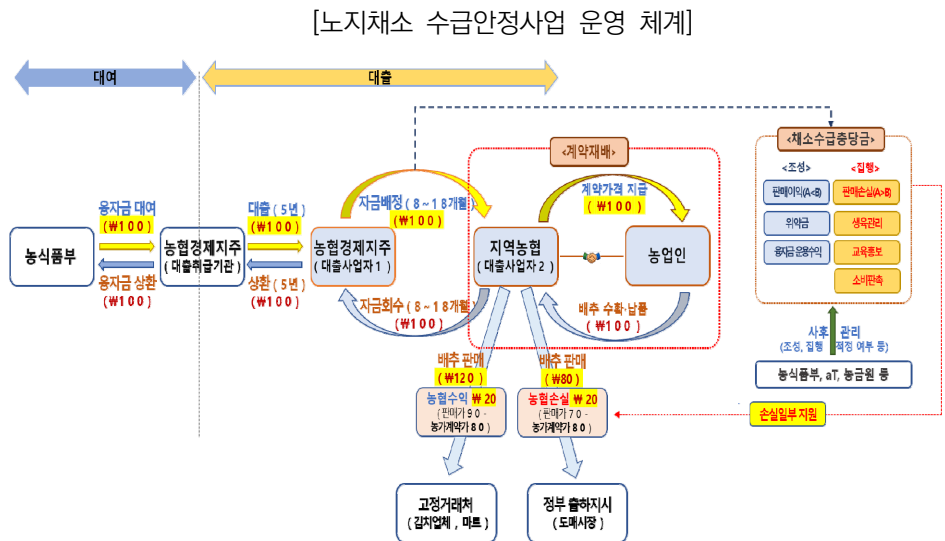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26.>

8~18개월 동안 지역농협에 자금을 배정한 후 회수하고, ④ 지역농협은 배정받은 자금으로 계약농가에 계약가격을 지급하고 수확물을 납품받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때,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관리하는 지역·품목농협으로 하여금 융자금(정부 80%, 농협 자부담 20%)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농가로부터 징수한 위약금, 계약재배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의 20%를 채소수급조정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립된 충당금은 계약재배 물량의 판매손실 보전, 면적조절·생산안정·출하조절 등 수급안정, 판매촉진, 교육·홍보 등에 사용된다.

[채소수급조정총당금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노지채소 수급안정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사업손실, 수급조절, 판매촉진 등) 지원
조성기간	1995년~
조성·사용 주체	농협경제지주, 사업농협
재원	정책자금(융자금) 운용 수익, 판매수익, 계약농가 위약금
용도	계약재배 농산물의 생산·출하조정 시 발생하는 손실, 생육관리, 농가교육, 소비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체계	농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경제지주가 조성 및 사용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2026년 8월까지 총당금 조성액은 1,078억원이며, 이 중 융자금의 이자가 약 780억원(72.4%)이다. 융자금은 국비 80%와 농협 자부담 20%로 구성되므로, 이자 중 국비 해당분은 약 624억원으로 산출되며, 이는 전체 총당금 조성액의 57.9%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동안 총당금을 통해 649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내역은 수급안정이 346억원(53.3%)으로 가장 많다. 2026년 8월 말 기준 총당금 잔액은 751억원이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채소수급조정총당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합 계
조성	합 계(A)	110	199	245	246	191	87	1,078
	운용수익(예치이자)	54	132	206	197	134	57	780
	국비(80%)	43	106	165	158	107	46	624
	농협자부담(20%)	11	26	41	39	27	11	156
	판매수익(판매이익금, 유통금 등)	56	67	39	49	57	30	298
집행	합 계(B)	74	98	132	129	127	89	649
	손실보전	18	48	43	31	10	39	189
	수급안정	48	38	69	72	98	21	346
	판매촉진	3	6	10	16	11	17	63
	교육홍보	3	3	4	4	4	4	22
	기타	2	3	6	6	4	9	30
전년도 잔액(C)		326	362	462	572	689	753	-
당해연도 말 잔액(D=C+A-B)		362	462	572	689	753	751	-

주: 1) 국비분·자부담분은 운용수익에 용자금 재원 비율(국비 80%, 자부담 20%)을 적용하여 산출

2) 2026년은 8월 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채소수급조정총당금 적립·운영은 정부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주체(지역농협)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조성액의 57.9%(약 624억원)가 국비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자수익이 농업발전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용자금 이자를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수급조절에 필요한 사업은 재정 내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채소수급조정총당금 중 용자금 이자는 780억원이며, 이 중 국비(80%) 해당분은 약 624억원이다. 이는 총당금 조성액 1,078억원의 57.9%를 차지하며, 총당금 조성액 대비 용자금(국비분)의 비중은 2021년 39.3%, 2022년 53.1%, 2023년 67.3%, 2024년 64.1%, 2025년 56.1%, 2026년

(8월) 52.4%로, 2022년 이후 매년 조성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채소수급조정총당금 재원별 조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합 계
운용수익(예치이자)	54	132	206	197	134	57	780
국비분(A)	43	106	165	158	107	46	624
농협 자부담분(B)	11	26	41	39	27	11	156
판매수익(판매이익금, 위약금 등)	56	67	39	49	57	30	298
합 계(B)	110	199	245	246	191	87	1,078
국비 비중(A/B)	39.3	53.1	67.3	64.1	56.1	52.4	57.9

주: 국비분은 운용수익(예치이자)에 용자금 국비 비율(80%)을 곱하여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계약재배 사업대상자는 계약물량의 30~50%를 정부가 지정하는 출하처에 출하해야 하므로 사전에 고정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 지역농협에 판매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채소수급조정총당금은 이러한 수급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손실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수급정책의 기반인 계약재배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수급안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정부 정책자금(용자금)의 운용수익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채소수급조정총당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용자금 이자를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수급조절에 필요한 사업은 재정 내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8.4.)됨에 따라 생산자의 재배면적 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수급조절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수급조절지원’ 사업이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²²⁾의 내역사업으로 2026년부터 수행 중이며, ‘수급조절지원’ 사업의 2027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4억 6,400만원 증액된 420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2) 농업발전기금 3033-369

채소수급조정총당금에서 수급안정 용도(면적조절·생산안정·출하조절)로 수행되는 사업도 재배면적 조절, 출하조절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필요 시 기금 사업인 수급조절지원 사업 내에 계약주체 손실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급조절지원 사업과 채소수급조정총당금 비교]

구 분	수급조절지원 사업	채소수급조정총당금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법률상 적립 근거 없음
도입 시기	2026년	1995년
구성·사용 주체	농식품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수급관리센터	농협경제지주, 사업농협(230개 지역농협)
재원	기금(지자체 경상보조) 과수·채소가격안정: 국비 40% 유통협약·명령: 국비 50%	정책자금(사업대기자금 등) 이자, 계약농가 위약금, 사업정산 이익금의 20%
대상 품목	과수·채소	노지채소 9개(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양배추, 감자)
지원 대상	주산지협의회체가 구성된 지역의 생산자(농협, 농업법인 등)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등(주산지협의회 미구성 지역 포함)
지원 내용	재배면적 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수급조절의무 이행 소요비용 일부, 유통협약·명령 이행 지원	손실보전(판매손실·가격차보전), 수급안정(면적조절·생산안정·출하조절), 판매촉진, 교육·홍보, 기타(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등)
국회 통제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결산 심사 대상	예·결산 심의 및 정기 보고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안정지원 사업’의 용자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수급조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전·수급안정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이 재정 외로 채소수급조정총당금을 적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기보다는 수급조절지원 사업 등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3.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자원 조성 방식의 재정지출 전환 검토 필요²³⁾

가. 현 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²⁴⁾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면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납부세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법인)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자산 규모는 155억 200만원이며, 2025년 수입은 92억 5,400만원이다. 복지기금의 수입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납부세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기·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구성된다.

[연도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자산 및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산		9,636	10,189	12,419	14,486	15,502
수입	합 계	7,416	7,287	7,993	8,780	9,25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7,341	7,146	7,635	8,684	8,882
	이자수익(정기·보통예금)	75	141	358	96	372
지출		6,344	6,994	6,097	6,665	7,162

자료: 국토교통부

23)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참고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③ (생략)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분석의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을 조세지출에서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²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밀건강검진 및 중증질환 치료비 등 건강관리 지원, 운수종사자 자녀 학자금 지원, 운전자 단체보장보험 및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정밀건강검진사업	정밀건강검진을 통해 택시근로자 건강 유지 및 관리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 완화 및 학업 독려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중증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근로자의 고액 치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
생계지원 사업	운행 중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사망한 택시운전자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가족 공동체 유지를 도모
운전자 단체보장보험 사업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장애 등에 대한 보상
저축성 금융상품 지원 사업	운전자의 열악한 저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

자료: 국토교통부

2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출연금(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⑤ 기금의 관리·운용·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2년에는 수입 대비 지출 비중이 96.0%에 달하였으나, 최근 3년간은 75%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 재원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전체 지출액 중 주요 복지사업 집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5.4% 수준이다.

[연도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주요 사업 집행실적 :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A)	7,416	7,287	7,993	8,780	9,254
지출(B)	6,344	6,994	6,097	6,665	7,162
수입 대비 지출(B/A)	85.5	96.0	76.3	75.9	77.4
주요 사업 집행실적(C)	5,517	5,708	5,404	5,682	6,084
주요 사업 집행액 비중(C/B)	87.0	81.6	88.6	85.3	84.9
정밀건강검진	1,141	1,352	1,574	1,311	1,520
학자금지원	4,002	4,000	3,558	3,388	3,530
중증질환치료비지원	374	356	272	260	260
단체보장보험지원	-	-	-	543	460
저축성금융상품지원	-	-	-	180	314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복지재단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복지기금은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도 정기적으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조세지출의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3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출을 통해 대체할 수 있어 조세지출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²⁶⁾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하며,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조성 방식을 조세지출에서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²⁷⁾

26)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5)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023. 9. p. 117~120 및 p. 191.

27)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복지재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택시업계 및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1)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 제도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¹⁾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 등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여부와 적정 사업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이 중 특정 분야의 사업(기타 재정사업)을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해당 분야에 속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²⁾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된 국방 관련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10개 유형의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하고 재정투자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역시 기획예산처장관이 수행한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23)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삭제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구분	면제 대상
제1호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제2호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제3호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제4호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5호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제6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제7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제9호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제10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자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을 바탕으로 재작성

면제사유 중 제10호는 다른 사유와 달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면제 시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제10호에 따라 면제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다.³⁾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법률보다 요건을 구체화하여 제10호 가목의 사업계획을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자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한 긴급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⁴⁾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5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받는다. 2026년 2월 같은 호가 개정되어 첨부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이 포함되도록 제출 내용이 구체화 되었고, 2027년도 예산안은 동 규정이 처음 적용된 예산안이다.⁵⁾

2026년에는 제도를 둘러싼 여건에도 변화가 있었다. 「국가재정법」 개정(2026. 2. 10.)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별도의 사전점검 대상이 되었다.⁶⁾ 또한 정부는 2026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같은 개편 방안에서 노후 시스템·장비의 단순 교체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2026년 10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면제사유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면제사업) 10. 가.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자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22조(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②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26. 2. 10. 개정, 2027년도 예산안 제출 시부터 적용

6)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또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3)·계획변경심사(제12조의4) 대상이 된다.

(2)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이

최근 10년(2016~2025년)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연평균 29.9건, 총사업비 합계 175조 8,639억원이며, 이 중 제10호에 따른 면제사업은 96건, 119조 2,905억원으로 총사업비 기준 67.8%를 차지한다. 제10호 면제사업의 비중은 연도별로 편차가 크나, 2022년 79.8%, 2025년 71.0% 등 2017~2025년 9개 연도 중 7개 연도에서 50%를 상회한다.⁷⁾

[2016~2025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이]

(단위: 건, 억원, %)

연도	전체 면제(A)	제10호(B)	비중(B/A)	전체 총사업비(C)	제10호 총사업비(D)	비중(D/C)
2016	17	-	-	28,060	-	-
2017	12	2	16.7	176,421	163,318	92.6
2018	30	16	53.3	128,798	109,638	85.1
2019	47	25	53.2	359,750	250,089	69.5
2020	31	17	54.8	300,215	249,151	83.0
2021	31	4	12.9	105,020	8,603	8.2
2022	26	1	3.8	172,438	137,584	79.8
2023	28	6	21.4	119,999	68,021	56.7
2024	39	8	20.5	173,700	68,673	39.5
2025	38	17	44.7	194,238	137,828	71.0
합 계	299	96	32.1	1,758,639	1,192,905	67.8

주: 면제 요구시점·요구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2021~2025년)간 면제를 요구한 269건 중 162건(60.2%)이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면제사업의 총사업비는 76조 5,395억원 규모이다. 면제사유별 선정률을 보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선정률은 56.3%인 반면, 제10호는 45건 중 36건(80.0%)이 선정되어 다른 사유보다 선정률이 높았다.⁸⁾

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 (2026. 7.)참조

8)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가 2025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21~2025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사업 목록(269건)을 재분석한 것이다.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절차로 진행되어 일부 사업은 일자·검토 결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2021~2025년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단위: 건, %, 조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신청건수	58	51	49	51	60	269
면제건수	31	26	28	39	38	162
(비율)	(53.4)	(51.0)	(57.1)	(76.5)	(63.3)	(60.2)
총사업비(면제사업)	10.5	17.2	12.0	17.4	19.4	76.5

주: 연도는 면제 요구시점 기준, 총사업비는 요구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25. 9.)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을 보면, 199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1,056건, 총사업비 544조 3,000억원이고, 최근 4년(2021~2024년)간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연평균 21조 2,500억원 수준이다.

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수록된 면제사업은 직전 연도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면제가 결정된 사업으로 구성된다. 72건 중 9건은 2026년 국회확정 예산이 표기되어 있어 2025년 9~12월에 면제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63건은 2026년에 면제된 사업으로 판단된다. 제1·4·8·9호 면제사업 18건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면제 결정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과 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대조하여 2026년 1~8월 중 면제된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서류에 수록된 63건(135조 7,934억원) 중 제10호 면제사업 34건(49조 202억원)은 2026년 3월 3일(1건)과 8월 25일(33건) 국무회의에서 면제가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나, 전력망 지원사업 6건 등 제10호 면제사업 11건(79조 8,107억원)은 2026년 10월 현재 공개된 회의록에서 의결 시점이 확인되지 않고, 제1·4·8·9호 면제사업 18건(6조 9,625억원)은 결정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9)

9)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코드: 일반회계 1034-325) 사업은 2026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면제되어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되었다.

[2026년 1~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확인 현황]

(단위: 건, 억원)

면제사유	면제 결정 확인 경로	건수	총사업비	사업
제10호	국무회의 의결(2026. 3. 3.)	1	2,007	안전한 일터 지킴이
제10호	국무회의 의결(2026. 8. 25., 의안 제1388~1419호)	33	488,195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산 지원금, 5급3특 특별보조금,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등
제10호	첨부서류로만 확인(의결 시점 미확인)	11	798,107	전력망 지원 6건, 전기요금 복지·특례, 호남권 공공폐수처리, 노후청사 복합개발 2건, 수원우 편집중국 이전
제1·4·8·9호	첨부서류로만 확인(결정 시점 확인 불가)	18	69,625	국가채용센터 건립,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농업발전자금(융자) 등
소계	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수록	63	1,357,934	
제10호	국무회의 의결(2026. 3. 30.), 첨부서류 미수록	1	-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2026년 추경 반영)
합 계		64	-	

주: 1. 2025년 9~12월에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 9건(2조 4,630억원)은 제외. 총사업비는 첨부서류상 주무부처 요구액 기준
 2. 8. 25. 의결 32건 중 제1409호(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는 첨부서류의 용수공급 2건에 대응하여 33건으로 계산
 3. 2026. 9. 1. 이후 국무회의 회의록은 2026년 10월 현재 공개되지 않음
 자료: 2026년 국무회의 회의록 및 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27년도 예산안 첨부 면제사업 현황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에 따르면, 면제사업은 예산안 25건, 기금운용계획안 47건 등 총 72건이며 총사업비는 138조 2,564억원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 면제사업 37건, 16조 9,843억원과 비교하여 건수로는 1.9배, 총사업비로는 8.1배에 해당한다. 한편, 2027년 정부안 금액이 표기된 63건의 2027년 편성액은 10조 4,220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 면제사업의 면제사유별 현황]

(단위: 건, 억원, %)

면제사유	예산안 건수	예산안 총사업비	기금 건수	기금 총사업비	합계 건수	합계 총사업비	비중	2027 편성액
제1호 공공청사	2	2,351	7	7,126	9	9,477	0.7	801
제4호 국제협약	1	583	-	-	1	583	0.0	8
제8호 법령상 의무	10	37,129	1	4,090	11	41,219	3.0	337
제9호 실익 없음	1	9,000	4	27,941	5	36,941	2.7	8,857
제10호 국가정책	11	144,895	35	1,149,449	46	1,294,344	93.6	94,218
합 계	25	193,958	47	1,188,606	72	1,382,564	100.0	104,220

주: 총사업비는 주무부처 요구액 기준, 2027 편성액은 2027년 정부안 표기 사업 기준

자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건, 86조 6,432억원으로 건수와 총사업비 모두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3건, 16조 8,220억원), 산업통상부(7건, 14조 3,934억원), 교육부(6건, 7조 2,260억원), 농림축산식품부(7건, 3조 9,662억원), 중소벤처기업부(6건, 2조 4,4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회계·기금별로는 25건(총사업비 109조 6,995억원, 84.8%)이 2027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었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 제10호 면제사업은 46건, 총사업비 129조 4,344억원으로, 특히 총사업비는 최근 10년간 제10호 면제사업 총사업비가 가장 컸던 2019년(25조 89억원)의 5.2배에 해당한다. 첨부서류 수록 기준과 연도별 면제 통계의 작성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26년도 예산안 첨부 면제사업(16조 9,843억원)과 비교하여 7.6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제10호 면제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10호 면제사업 46건을 사업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전력망·에너지 인프라 지원사업 6건이 76조 7,707억원으로 제10호 면제사업 총사업비의 59.3%를 차지하고, 출산지원금·전기요금 지원 등 현금성 이전지출 사업 8건이 22조 3,507억원, 반도체 클러스터·용수공급 등 산업·지역거점 지원사업 6건이 15조 3,581억원 규모이다. AI·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은 11건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27년도 첨부 제10호 면제사업의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억원)

유형	건수	총사업비	2027 편성액	주요 사업(총사업비)
전력망·에너지 인프라	6	767,707	6,989	재생e 지중화 지원(30.9조), 수요유치형 변전 소(20.6조), 송전단ESS(19.1조)
현금성 이전지출	8	223,507	32,689	출산지원금(14.7조),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2.1조), 전기요금 복지·특례(1.75조), 석유가 격 안정화(1.45조)
산업·지역거점 지원	6	153,581	23,732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6.0조), 호남권 반도 체산단 용수공급(3.7조), 5극3특 특별보조금 (2.8조), 다변화원유 정제시설(2.1조)
대학·인재양성	5	64,390	17,900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2.8조), 연구중 심대학 기반구축(1.5조), 대학생 첫경력(1.4조)
AI·디지털 전환	11	59,013	9,381	M.AX 자율제조(1.1조), 국가 제조데이터 라 이브러리(8,514억), AI 재도약 대학(7,870억)
청사·부지 복합개발	3	9,499	2	수원우편집중국 이전(6,268억), 국토지리정보 원·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복합개발
기타	7	16,647	3,525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7,000억), 재 도전성공학교(3,118억) 등
합 계	46	1,294,344	94,218	

주: 유형 구분은 국회예산정책처 분류

자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이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과정을 면제 결정 단계, 면제·조사 이후 예산 편성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판단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1) 면제 결정 단계 관련 검토

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의 제10호 면제 부적절

첫째, 기획예산처는 사업의 핵심내용 또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을 면제하는 등 「국가재정법」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을 면제하였으므로, 면제 결정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 가목은 면제 요건으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일 것을 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이를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자원조달·운영 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은 면제 요구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르도록 하면서,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부처 간·지역 간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사업의 입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¹⁰⁾ 이처럼 운용지침은 법률보다 면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 중에서는 사업계획 구체성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¹¹⁾ 사업은 2026년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면제되었는데, 출연 대상인 통합

10)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예타면제 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3조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2.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 3.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4. 사업의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11) 코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3171-301

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¹²⁾은 그 이후인 8월 28일에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26년 10월 현재 사업에 대한 기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¹³⁾이다.¹⁴⁾

이 밖에도 면제 당시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다.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¹⁵⁾은 2026년 9월 현재 개괄적인 사업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사업**¹⁶⁾은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계획 수립이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⁷⁾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제10호 면제 요구 사업에 대해 운용지침상 사업계획의 구체성 요건과 요구 제한 사유를 면제 결정 전에 확인하여, 입지·수행주체·근거 법률 등 사업의 핵심 요소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요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면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제10호 면제 심의 이력 관리 필요

둘째, 요건이 가장 엄격한 제10호 면제사업이 다른 사유보다 짧은 심의기간을 거쳐 높은 비율로 면제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면제 요건이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기획예산처는 최소 심의기간을 확보하고 면제 심의 이력과 구체적인 면제 사유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2021~2025년 면제사업의 심의기간을 사유별로 비교하면, 제10호 면제사업은 평균 10.8일(중위값 6일)로 제1호(59.3일), 제8호(61.8일), 제3호(82.6일)에 비해 현저히 짧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요건으로 하고 면제 규모도 가장 큰 제10

12) 의안번호 제2220888호(양부남의원 대표발의)

13) 산업통상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업 투자계획과 기반시설 구축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동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4)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10.)

15) 코드: 자원안보기금 5432-306

16)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3-300

1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10.)

호가 가장 짧은 기간에 심의되고 있어, 위원회가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1~2025년 면제사유별 면제 심의기간]

(단위: 건, 일)

면제사유	대상 사업	평 균	중위값	최소~최대
제1호 공공청사 등	34	59.3	66	1~96
제3호 국방	9	82.6	90	60~90
제5호 단순개량	2	61.5	61.5	41~82
제6호 시급한 안전 확보	4	52.3	62.5	0~84
제7호 재난예방	7	58.9	52	6~188
제8호 법령상 의무	53	61.8	63	1~112
제9호 실익 없음	15	37.5	6	0~189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18	10.8	6	0~69

주: 면제 선정 사업 중 신청일과 위원회 의결일이 모두 확인되는 사업 기준(연구개발사업 등 일부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25. 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분석

중위값이 6일이라는 것은 제10호 면제사업의 절반 이상이 요구 후 7일이 되기 전에 의결되었다는 의미이다.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운용지침 본문을 적용할 경우 신청공문의 접수 당일 자료를 배포하더라도 7일 이내 의결은 불가능하므로, 이들 사업은 긴급한 경우 자료를 미리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에 따라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⁸⁾ 감사원은 심의기간 부족으로 재정투자평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지적하였고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는 2025년 4월 동 조항을 신설하였으나,¹⁹⁾ 2025년 9월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도 제10호 면제사업 다수가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일괄 심의되었다.²⁰⁾ 다만,

1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회의) ③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안전을 서면(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는 미리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9) 감사원,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2024. 5.) 참조.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제5항을 신설(2025. 4. 16.)하였다.

20)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제10호 면제사업은 소관 부처가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므로, 재정투자평가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법령상 면제요건의 제시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심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요건(나목)을 확정하는 절차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가목)는 이와 별도의 요건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가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026년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자료 제출 미협조로 인하여 면제 결정 소요일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6년 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도 첨부서류 기재사항을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으로 정하고 있어 면제 요구일과 위원회·국무회의 의결일은 기재 대상이 아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는 면제사유를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제1호 공공청사” 등 해당 호의 명칭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제10호 면제사업 46건의 면제사유가 모두 같은 문구로 기재되어 있다. 기획예산처는 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이는 면제 결정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제사업 전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그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별 면제사업이 해당 면제사유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국회가 면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결과, 회의록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²¹⁾ 이를 국회 제출 서류에 반영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대규모 재정지출의 사전 검증을 생략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의 이력을 국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해 재정투자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최소 심의기간을 확보하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면제 요구일,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의결일, 국무회의 의결일, 해당 면제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근거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내역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등 면제 심의 이력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3조제3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 심의결과 및 회의록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 면제·조사 이후 예산 편성 단계 관련 검토

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전 예산 편성 지양 필요

첫째,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제10호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추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편성된 사업이 있으므로 국회는 해당 예산안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예산이 확정 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전 검증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운용지침도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²²⁾

그런데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제10호 면제를 제안이유로 한 안건 32건이 한꺼번에 의결되었고, 7일 뒤인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이 중 26건은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으로 확인된다. 최근 5년간 제10호 면제사업의 적정성 검토에는 평균 8개월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들 사업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면제 의결 7일 만에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이는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 편성 직전에 면제 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10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안을 분석한다.

[2021~2025년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소요기간]

(단위: 건, 개월)

면제사업	검토완료	평균소요기간
제1호 공공청사 등	24	11.4
제5호 단순개량	2	9.9
제6호 시급한 안전 확보	3	16.6
제7호 재난예방	3	9.8
제8호 법령상 의무	22	12.2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18	8.0

주: 과기부 수행 연구개발사업 적정성 검토는 미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25. 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6. 8. 25. 국무회의 제10호 면제 의결 사업 중 2027년도 예산안 반영 사업]

(단위: 억원)

연번	사 업	부 처	회계·기금	2027안
1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산업부	반도체특별회계	15,000
2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산업부	일반회계	14,497
3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산업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00
4	출산지원금 지원	복지부	미래대응기금	6,981
5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교육부	미래대응기금	6,910
6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인프라	교육부	미래대응기금	6,000
7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교육부	미래대응기금	4,650
8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복지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3,605
9	AI 재도약 대학	교육부	미래대응기금	2,070
10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출연	농식품부	농업발전기금	2,000
11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중기부	미래대응기금	1,728
12	혼인지원금	성평등부	미래대응기금	1,663
13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호남·충청 용수)	기후부	미래대응기금	1,277
14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산업부	미래대응기금	1,193
15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산업부	미래대응기금	1,158
16	K-AI반도체 풀스택 레퍼런스 확보	과기부	반도체특별회계	900
17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과기부	미래대응기금	878
18	피지컬 AI 활용 건설산업 대전환(CO.AX)	국토부	미래대응기금	585
19	다변화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산업부	자원안보기금	425
20	피지컬AI 돌봄로봇 현장확산	복지부	미래대응기금	377
21	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	교육부	미래대응기금	300

(단위: 억원)

연번	사 업	부 처	회계·기금	2027안
22	제조AI Fellow 양성	중기부	미래대응기금	284
23	농업 피지컬 AX 실증	농식품부	미래대응기금	208
24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농식품부	미래대응기금	55
25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해수부	미래대응기금	55
26	지역의대 신설(조건부 수정 의결)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0
합계				79,839

주: 1. 아동기본수당 지급(2027년안 2조 9,272억원)은 첨부서류 면제사업 목록(72건)에 없는 계속사업(2026년 아동수당 2조 4,822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확대)이므로 제외
 2. 혼인지원금,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출연은 8. 25. 의결 33건에 해당하고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으로 확인되어 추가
 3.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는 호남권(1,196억원)·충청권(81억원) 용수공급 합계(예산안 기준, 첨부서류상 충청권 편성액은 26억원)

자료: 제37회 국무회의 회의록(2026. 8. 25.) 및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결과에서도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된 제10호 면제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는 면제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산업통상부의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²³⁾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3,295억원과 민자 1조 8,190억원 등 총 2조 1,485억원 규모로 기획되었으며, 정부는 2026년 8월 25일 동 사업을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²⁴⁾에 따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23) 코드: 자원안보기금 5432-306

2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9월 현재 개괄적인 사업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히 향후 상세기획 및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상세기획 이후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2027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DC 클러스터 조성**²⁵⁾ 사업은 총사업비 3,740억원 규모로,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되었다. 예타 면제 조치에 따라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²⁶⁾에 의해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2027년도 예산안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 이전에 편성되었다. 또한 동 사업은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계획 수립이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어, 면제 요건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특히 동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2027년 6월 종료될 예정임에도 클러스터 공고·토지 확보·핵심장비 발주를 검토 이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²⁷⁾

산업통상부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2027년도 예산안에 1조 5,000억원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제10호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²⁸⁾사업 역시 2027~2030년 총사업비가 2조 588억원(국비 1조 4,420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나, 2026년 8월 25일 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2026년 9월 말 현재 기획예산처는 동 사업의 사업

25)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3-300

2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10.)

28) 코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4333-326

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2027년도 예산안 3,604억 5,500만원은 적정성 검토 결과의 반영 없이 편성되었다.²⁹⁾ 국토교통부의 **CO.AX 프로젝트**³⁰⁾ 사업도 총사업비 6,509억원 중 585억원이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산 확정 이후인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기간이 1년인 단년도 사업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할 다음 연도 예산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사업**³¹⁾(1조 4,497억원)과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 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³²⁾(6,000억원)은 사업기간이 2027년 1년으로 총사업비 전액이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되었다. 이들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2027년 중 완료되더라도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여지가 없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38조제5항³³⁾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적정성 검토 이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서 집행 부진과 불용이 발생한 사례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I」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실행행률이 30.1%에 그쳤고,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5년 예산의 84%가 불용되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은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39.6% 감액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다.³⁴⁾

더욱이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

29)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2026. 10.)

30)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2-300

31) 코드: 일반회계 5432-303

32) 코드: 미래대응기금 4535-380

3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I」(2026. 7.) 참조.

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만 하고 국회 제출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역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만을 기재하고 있어, 국회는 면제사업이 적정성 검토를 거쳤는지, 그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를 첨부서류로는 확인할 수 없다. 특히 2026년에는 기획예산처가 적정성 검토 진행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면제사업에 대한 국회의 검증 수단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비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은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해서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그 범위를 넓혀 제1호³⁵⁾ 및 제8호³⁶⁾ 면제사업도 원칙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운용지침이 법률보다 실시 범위를 넓게 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법률상 검토 의무가 있는 제10호 면제사업조차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제10호 면제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진행 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해당 예산안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기획예산처는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회는 이를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

둘째,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이후 결과가 나오기 전 2027년도 예산안에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사례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취지에 맞게 예산안 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³⁷⁾ 사업은 충청남도 아

35)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36)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산시에 8인치급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신소재·소자·장비·공정·시스템에 대한 패키지형 R&D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6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9월 말 현재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10월 중 “사업 시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여 2027년 예산안에 93억원을 편성하였다.³⁷⁾

우주항공청의 **나로우주센터 고도화(3단계)**³⁹⁾ 사업(총사업비 3,121억 8,200만원)도, 예비타당성조사가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결과 도출이 12월로 연장되었음에도 2027년 예산안에 25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⁴⁰⁾⁴¹⁾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⁴²⁾ 해당 지침은 부처 요구안 작성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근시일 내 마무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예산 “요구”를 가능케 하여 사업 추진의 적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후 기획예산처가 이를 그대로 정부안에 반영하면서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한 요구가 조사 결과 없는 편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와 총사업비, 사업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기본계획의 사업규모와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초과할 수 없다.⁴³⁾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예비타당성

37) 코드: 일반회계 3231-304

3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10.)

39) 코드: 일반회계 1433-309

4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10.)

41) 참고로 두 사업은 2026년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에도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42)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관련 각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43)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관서의 장(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조사 등 법령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은 수시배정 대상이 되므로, 결과 확정과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 착수가 사실상 어렵다. 나로우주센터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설계 단계와 같은 해에 레인지시스템 장비발주 비용 60억 2,100만원까지 편성되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회는 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 확정 전 마쳐질 경우 이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세부지침상 조사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 요구 허용 규정을 정비하고, 다음 연도 편성이 필요한 사업은 편성 일정에 맞추어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시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의 경우)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물가상승 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략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시행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도 같다.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판단 관련 검토

① 「국가재정법」상 대상 분야 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각지대 보완 필요

첫째, 「국가재정법」은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보건 등 8개 분야의 사업만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통신, 교통 및 물류, 과학기술 등 열거되지 않은 분야의 대규모 비건설 신규사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에 편성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 분야를 재정지출의 규모와 성격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과 지능정보화 사업은 분야와 관계없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하는 반면, 그 밖의 사업은 제4호에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으로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하던 분야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2014년 법률로 상향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대상 분야가 조정된 적이 없다.⁴⁴⁾ 그런데 법률이 열거한 분야는 예산안의 프로그램 분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예산안의 프로그램 분류에서 “노동”은 분야가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의 하위 부문이고, 법률의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은 각각 “환경”,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와 명칭과 범위가 다르다. 운용지침은 이러한 열거 분야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16개 분야 중 일반·지방행정, 통일·외교, 공공질서및안전, 국방, 교통및물류, 통신,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분야의 비건설·비정보화 신규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4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2025. 10.) 참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분야에서 제외되어 사전 검증 없이 편성된 2027년도 주요 신규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부처)	분 야	2027안	규모 및 판단 경위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국토부) (미래대응기금 4334-300)	교통및물류	8,415	2026년 636억원에서 13배 증액, 실증차량 200대→3,000대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과기정통부) (미래대응기금 4331-320)	통신	2,500	2026~2027년 3,000억원, 통신 분야 예타·적정성 검토 비대상으로 해석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우주청) (일반회계 1433-311)	과학기술	750	총사업비 2,280억원, R&D 면제 미선정 후 비R&D로 재설계, 기획 예산처가 예타대상 아님으로 판단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시범 사업(국토부) (미래대응기금 4334-300)	교통및물류	350	3년간 최소 1,500억원,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예타 대상 아님 확인
교통취약지역·시간대 무인 수요응 답형 교통 지원(국토부) (일반회계 4633-324)	교통및물류	322	3년간 967억원,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적격(2026. 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및 202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법률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분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용지침이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를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 내용보다 예산 분류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되어, 위 표와 같이 재정 규모가 큰 신규사업이라도 열거되지 않은 분야로 분류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물론 그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편성될 수 있다.

예컨대,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 사업**⁴⁵⁾⁴⁶⁾은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획되어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신규 기술개발 요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았고, 이후 발사서비스 구매 성격의 비R&D 사업으로 재설계되자,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면제가 거부된 사업이 사업유형을 바꾸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45) 코드: 일반회계 1433-311

4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10.)

R&D 사전점검 어느 쪽도 거치지 않게 되었다. 이는 2026년 2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과학기술 분야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면 R&D 사전점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제4호의 열거 분야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사전 검증도 거치지 않게 되는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교통취약지역·시간대 무인 수요응답형 교통 지원 사업⁴⁷⁾도 교통및물류 분야로 분류되며, 향후 3년간 최소 9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증기재정지출 규모가 5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임에도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었다.⁴⁸⁾

분야 및 분류에 따른 대상 여부 결정 과정에서 판단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의 분야 분류상 국토교통부의 CO.AX 프로젝트(585억원)⁴⁹⁾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⁵⁰⁾,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⁵¹⁾과 같은 교통및물류 분야에 속한다. 그런데 CO.AX 프로젝트는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⁵²⁾를 거쳐 제10호로 면제되었고, 같은 분야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은 2027년 한 해에만 그 14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다. 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면 CO.AX 프로젝트는 면제 절차가 필요 없었고,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과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 역시 신산업 육성 성격이 뚜렷한 산업 분야 사업으로 볼 여지가 크다.

47) 코드: 일반회계 4633-324

48)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6. 10.)

49)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2-300

50)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4-300

51)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4-300(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

52) 제37회 국무회의 회의록(2026. 8. 25.)

교통및물류, 통신 등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상 제외에 따른 새로운 사각지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대상 분야를 재정지출 규모가 큰 분야까지 포괄하도록 정비하거나,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는 방식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기획예산처는 열거 분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프로그램 분류뿐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사각지대와 사업 간 비일관성을 최소화하고, 특히 면제가 거부된 사업이 사업유형을 바꾸어 재추진되는 경우에는 대상 여부를 보다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임의적 사업 분할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등 부적절

둘째, 사업을 임의로 분리하여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실상 신규사업의 실질을 가짐에도 계속사업으로 보아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결정을 한 사례 등이 존재하므로 기획예산처는 사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대상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청의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기반 조성 사업**⁵³⁾은 기존 우주항공청의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⁵⁴⁾과 동일한 사업수행 기관이 동일한 실증센터의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임에도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재정소요 관리, 사업내용(시설·장비 보강 및 도입계획) 관리, 성과관리 등의 측면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체 사업기간과 총재정소요,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관리 및 관련 사전 타당성 검증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⁵⁵⁾

국토교통부의 **거점특화 원도심 복합재생 시범사업**⁵⁶⁾은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53) 코드: 일반회계 1339-305

54) 코드: 일반회계 1339-304

5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10.)

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 20개 지역에서 지역별로 3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도심 정비·활성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29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⁵⁷⁾ 지역별 사업을 모두 합한 총사업비는 국비 기준 4,200억원에 달하나, 기획예산처는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지역별 사업 단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고, 각 지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개소당 국비 210억원)한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운용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를 원칙적으로 예산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집단사업의 경우 개별 세부사업별로 조사하도록 한 규정⁵⁸⁾이 하나의 세부사업 안에서 공모 등을 통해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실시되는 측면이 있으나, 동일한 목적 하에서 동일한 형태의 사업절차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측면만으로 대상여부를 지역별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⁵⁹⁾ 이러한 문제는 SOC 사업의 대상 기준 상향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업 분할의 유인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비대상 처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에 근거한 면제(제10호)를 전제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 적절한 중간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석유 비축시설 확충 사업**⁶⁰⁾(총사업비 약 1조 6,000억원)은 2026년 추경으로 사전용역만 수행 중인 신규 투자임에도 산업통상부는 1980년대

56)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641-301

57)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6. 10.)

5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59) 특히 시범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을 늘리거나 공모를 반복하면 사업 전체 규모가 커지더라도 어느 단계에서도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으며,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으로 확대할 때의 검증 장치도 명확하지 않다.

60) 코드: 자원안보기금 5432-301의 내역사업

부터 지속되어 온 기존 비축시설 확충 사업의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비축시설 확충은 2,000만 배럴 규모의 저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 현재 사전용역을 통해 검토 중인 내용에는 기존 비축기지의 증설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비축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운용지침은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⁶¹⁾ 신규사업임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⁶²⁾

6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신규 사업의 정의) ③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

6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10.)

다. 참고자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 면제사업 목록]

(단위: 억원)

사 유	구분	부 처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 비	편성액
제1호	예산	행복청	국가채용센터 건립	27~29	1,387	15
제1호	예산	우주청	우주항공청 청사건립사업(BTL)	27~29	964	0
제1호	기금	경찰청	서울 성동경찰서 재건축	27~33	657	4
제1호	기금	재경부	런던 공공청사 복합개발	27~29	2,243	776
제1호	기금	재경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복합 개발 신축	27~32	781	6
제1호	기금	경찰청	전북 군산경찰서 이전 신축	27~33	582	0
제1호	기금	법무부	의정부지검 이전 신축사업	26~30	1,156	(26) 0
제1호	기금	경찰청	서울 노원경찰서 재건축	26~32	765	(26) 0.1
제1호	기금	경찰청	경기남부 성남중원경찰서 신축	26~32	942	(26) 40
제4호	예산	산업부	세계엑스포 참가지원 (2030 리야 드엑스포)	27~31	583	8
제8호	예산	기후부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	27~30	4,422	148
제8호	예산	기후부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사업	23~30	3,259	55
제8호	예산	기후부	수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처리 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28~30	5,323	0
제8호	예산	기후부	성서 자원회수 시설 2,3호기	25~29	1,406	0
제8호	예산	기후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23~30	6,987	43
제8호	예산	기후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구축사업	26~32	6,475	(26) 161
제8호	예산	기후부	포천시 에코 콤플렉스 조성사업	28~34	2,600	(26) 0
제8호	예산	기후부	공주시 환경시설 통합 현대화 민간 투자사업	28~31	1,614	(26) 0
제8호	예산	기후부	경주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26~30	1,615	(26) 3
제8호	예산	기후부	여주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22~31	3,428	(26) 0
제8호	기금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제	27~	4,090	91
제9호	예산	산림청	산림사업종합자금(용자)	27~	9,000	1,800
제9호	기금	해수부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27~	4,000	1,000
제9호	기금	해수부	근해어선 현대화지원	27~	2,661	452

(단위: 억원)

사 유	구분	부 처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 비	편성액
제9호	기금	농식품부	농업발전자금(용자)	27~	16,944	2,164
제9호	기금	농식품부	축산발전자금(용자)	27~	4,336	3,441
제10호	예산	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27~	910	93
제10호	예산	과기부	시장 수요 연계 K-AI 반도체 플스 택 레퍼런스 확보	27~28	2,666	900
제10호	예산	농식품부	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27~30	730	20
제10호	예산	복지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27~	20,588	3,605
제10호	예산	교육부	지역 의대 신설 사업	27~32	1,800	40
제10호	예산	기후부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공공폐수처 리 시설 설치사업	27~29	3,401	85
제10호	예산	산업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 재정지원	27~30	60,000	15,000
제10호	예산	산업부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27	14,497	14,497
제10호	예산	산업부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27~30	28,000	7,000
제10호	예산	과기부	수원우편집중국 이전	27~32	6,268	0
제10호	예산	해수부, 산업부	AI 완전자율 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26~32	6,035	(26) 63
제10호	기금	해수부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27~30	812	55
제10호	기금	국토부	CO.AX 프로젝트	27~30	6,509	585
제10호	기금	성평등부	혼인지원금	27~	10,270	1,663
제10호	기금	과기부	AIDC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	27~30	3,740	878
제10호	기금	농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27~30	7,000	2,000
제10호	기금	농식품부	농업 퍼지컬 AX 실증 프로젝트	27~30	5,562	208
제10호	기금	농식품부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27~30	1,000	55
제10호	기금	복지부	출산지원금 지원	27~	146,829	6,981
제10호	기금	복지부	퍼지컬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	27~28	803	377
제10호	기금	교육부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사업	27~29	13,950	4,650
제10호	기금	교육부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 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27	6,000	6,000
제10호	기금	교육부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	27~34	15,000	300
제10호	기금	교육부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27~30	27,640	6,910
제10호	기금	교육부	AI 재도약 대학	27~29	7,870	2,070
제10호	기금	중기부	중소제조기업 퍼지컬 AI 실증사업	27~29	5,097	1,728
제10호	기금	중기부	제조AI Fellow 양성사업	27~31	1,362	284
제10호	기금	중기부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27~30	8,200	2,050

(단위: 억원)

사 유	구분	부 처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편성액
제10호	기금	중기부	청년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27~30	4,713	300
제10호	기금	중기부	채도전응원프로젝트	27~30	1,980	334
제10호	기금	중기부	채도전성공학교	27~30	3,118	595
제10호	기금	기후부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27~	17,500	3,500
제10호	기금	기후부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사업	27~32	4,133	26
제10호	기금	기후부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사업	27~32	36,562	1,196
제10호	기금	기후부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ESS 설치 보급사업	27~30	39,520	24
제10호	기금	기후부	송전단ESS 구축지원 사업	27~30	190,803	5,724
제10호	기금	기후부	국내 계통 전기품질 강화를 위한 안정화 설비 구축 사업	27	720	360
제10호	기금	기후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사업	26~31	21,690	196
제10호	기금	기후부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사업	27~35	205,746	658
제10호	기금	기후부	재생e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	27~36	309,228	27
제10호	기금	산업부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	27~30	10,855	1,193
제10호	기금	산업부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27~31	21,485	425
제10호	기금	산업부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운영 사업	27~31	8,514	1,158
제10호	기금	재경부	국토지리정보원 노후청사 복합개발	27~32	1,693	1
제10호	기금	재경부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노후청사 복합개발	27~32	1,538	0.5
제10호	기금	노동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27~30	2,007	466

주: 편성액은 2027년 정부안 기준, (26)은 2026년 국회확정 예산. 총사업비는 주무부처 요구액 기준
 자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1)

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총량 비교

정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지출과 일정 집단·활동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세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은 세출(총지출)·세입 측면의 정부지출로, 이들을 합한 총 재정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한 전반적인 재원의 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 재정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78.1조원에서 2027년 925.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434.1조원에서 820.9조원으로, 조세지출은 44.0조원에서 104.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7년 총 재정지출]

(단위: 조원, %)

구분	조세지출(A)	재정지출(B)	총 재정지출 (C=A+B)	조세지출 비중 (A/C)
2018	44.0	434.1	478.1	9.2
2019	49.6	485.1	534.7	9.3
2020	52.9	549.9	602.8	8.8
2021	57.0	601.0	658.0	8.7
2022	63.5	682.4	745.9	8.5
2023	69.8	610.7	680.2	10.2
2024	70.5	638.0	708.5	10.0
2025	76.1	684.1	760.2	10.0
2026 ^a	87.0	753.0	840.0	10.4
2027 ^a	104.9	820.9	925.8	11.3
2018~2027 ^a 연평균 증감률	10.1	7.3	7.6	-

주: 2025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세지출 잠정치 기준, 2027년은 예산안 및 조세지출 전망치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및 재정경제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총 재정지출의 추이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8~2019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으로 조세지출이 증가하면서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조세지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조세지출 비중은 2020년 8.8%에서 2022년 8.5%로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재정사업이 축소·종료되면서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71.7조원(10.5%) 감소한 반면, 조세지출은 6.3조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 비중은 2022년 8.5%에서 2023년 10.2%로 1.7%p 상승하였다.

이후 조세지출 비중은 1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공제여력 확대와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조세지출 증가율이 2026년 14.3%에서 2027년 20.6%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조세지출 증가율이 재정지출 증가율(9.0%)을 크게 상회하면서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1.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16대 분야별 비교

다음으로 16대 분야별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증가 추이를 비교하였다. 조세지출이 없는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예비비를 제외한 13개 분야를 기준으로 보면, 2024~2027년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3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토 및 지역개발(14.4%), 환경(11.1%), 문화 및 관광(10.2%), 보건(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문화 및 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에서는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과학기술이 19.6%로 가장 높았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11.3%), 일반·지방행정(11.2%), 문화 및 관광(10.9%), 환경(9.4%)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조세지출과 비교하면 과학기술, 일반·지방행정, 문화 및 관광, 교육, 국방 등의 분야에서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조세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4~2027년 16대 분야별 총 재정지출]

(단위: 조원)

구 분	2024(A)			2025			2026 ^o		
	조세 지출	재정 지출	총 재정 지출	조세 지출	재정 지출	총 재정 지출	조세 지출	재정 지출	총 재정 지출
일반·지방행정	9.4	108.3	117.7	9.7	127.2	136.9	10.4	131.3	141.6
통일·외교	0.0	6.4	6.4	0.0	7.3	7.3	0.0	7.0	7.0
국방	0.0	56.5	56.5	0.0	59.0	59.0	0.0	63.0	63.0
교육	1.0	85.3	86.3	1.0	96.2	97.2	1.1	104.7	105.8
문화 및 관광	0.3	8.5	8.8	0.7	8.9	9.6	0.4	10.1	10.5
환경	2.1	11.2	13.3	2.5	12.9	15.4	3.2	14.1	17.3
사회복지	25.0	220.4	245.4	26.9	232.1	259.0	28.4	249.5	277.9
보건	11.4	19.5	31.0	12.3	19.6	31.9	13.2	20.4	33.6
농림수산	6.0	24.5	30.5	5.7	27.0	32.7	5.6	28.5	34.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1	27.9	42.0	16.8	35.3	52.1	23.6	35.0	58.6
교통 및 물류	0.8	21.0	21.8	0.8	21.3	22.1	0.7	23.1	23.8
국토 및 지역 개발	0.3	4.3	4.6	0.3	4.7	5.0	0.5	4.9	5.4
과학기술	0.0	9.3	9.3	0.0	10.9	10.9	0.0	13.1	13.1
구 분	2027 ^o (B)			증감(B-A)			연평균 증감률(%)		
	조세 지출	재정 지출	총 재정 지출	조세 지출	재정 지출	총 재정 지출	조세 지출	재정 지출	총 재정 지출
일반·지방행정	11.3	149.0	160.3	1.9	40.7	42.6	6.3	11.2	10.8
통일·외교	0.0	7.1	7.1	0.0	0.7	0.7	0.0	3.7	3.7
국방	0.0	73.3	73.3	0.0	16.8	16.8	0.4	9.1	9.1
교육	1.2	110.7	112.0	0.2	25.4	25.7	5.9	9.1	9.0
문화 및 관광	0.3	11.6	11.9	0.0	3.1	3.1	10.2	10.9	10.9
환경	2.9	14.6	17.6	0.7	3.4	4.2	11.1	9.4	9.7
사회복지	29.9	267.1	297.0	4.6	46.7	51.3	6.1	6.6	6.6
보건	14.3	22.0	36.3	2.4	2.5	4.9	7.7	4.0	5.4
농림수산	5.7	30.7	36.4	-0.4	6.2	5.8	-1.6	7.8	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8.3	41.2	79.5	24.1	13.3	37.4	39.4	13.9	23.7
교통 및 물류	0.4	23.0	23.4	-0.4	2.0	1.6	-16.8	3.1	2.5
국토 및 지역 개발	0.5	5.9	6.4	0.2	1.6	1.8	14.4	11.3	11.5
과학기술	0.0	15.9	15.9	0.0	6.6	6.6	7.8	19.6	19.6

주: 1. 조세지출은 2025년까지 실적 기준, 2026년은 잠정치 기준, 2027년은 전망치 기준

2. 재정지출은 2025년까지 결산 기준, 2026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7년은 예산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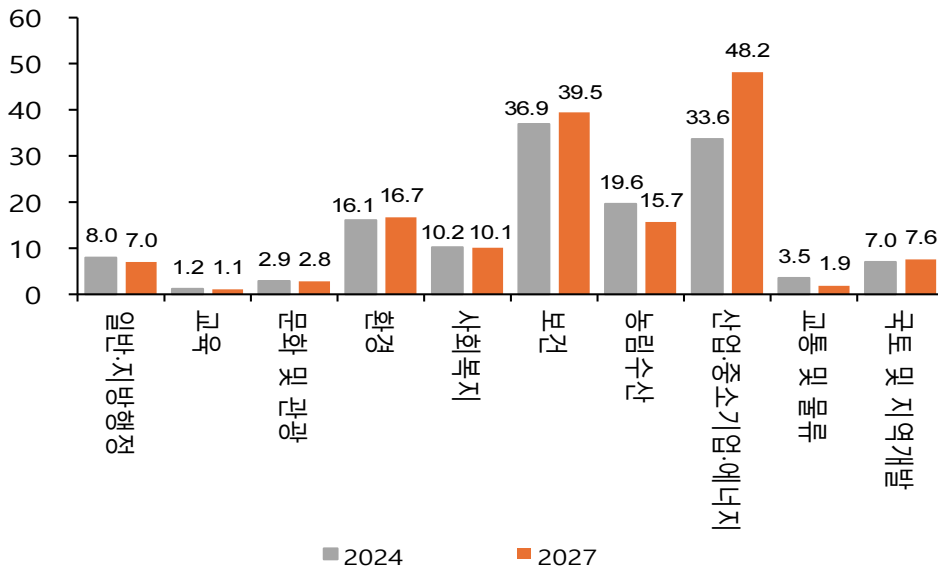
3. 16대 분야 중 조세지출이 없는 공공질서 및 안전, 통신, 예비비는 제외하고 작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및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는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중 정책목적과 지원대상 등에 보다 부합하는 지원수단을 활용하고 있어, 동일한 분야에서도 두 정책수단의 증가 추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합산한 총 재정지출에서 각 정책수단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6대 분야 중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나타났다. 이 분야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 확대와 공제여력 증가, 반도체 분야 공제율 상향 등의 영향으로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조세지출이 2024년 14.1조원에서 2027년 38.3조원으로 연평균 3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1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세지출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3.6%에서 2027년 48.2%로 14.6%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 변화(2024년 대비 2027년)]

(단위: %)



주: 2024년은 조세지출 실적 및 결산 기준, 2027년은 조세지출 전망치 및 2027년 예산안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각 연도, 및 「국가결산보고서」 각 연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분석의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통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부문별 비교·분석 및 개별 제도 수준의 검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별 조세지출의 분야·부문별 분류 및 귀속정보를 구체화하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확대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비교·분석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야 및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공개된 분야별 조세지출 재원배분 현황과 재정지출의 현황을 비교하면, 조세지출이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부 분야에 집중된 재원배분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7년도 조세지출은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등 주요 4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분야의 조세지출 전망액은 단순 합산 기준 98.7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94.1%에 해당한다.²⁾ 반면 같은 4대 분야의 재정지출 규모는 400.4조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의 48.8%를 차지한다.

2) R&D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의 조세특례 1건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R&D 관련 조세특례 4건을 합산한 것으로, 일부 조세지출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중복계상된다. 따라서 분야별 비중 해석 시 이러한 중복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현황: 2027년 예산안 기준]

(단위: 조원, %)

12대 분야 분류기준		조세지출 (A)		재정지출 (B)		총 재정지출 (C=A+B)		조세지출 비중 (A/C)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일반 · 지방행정	11.3	10.8	149.0	18.2	160.3	17.3	7.0
2	공공질서 및 안전 ¹⁾	0.0	0.0	28.8	3.5	28.8	3.1	0.0
3	외교 · 통일	0.0	0.001	7.1	0.9	7.1	0.8	0.0
4	국방	0.0	0.02	73.3	8.9	73.3	7.9	0.0
5	교육	1.2	1.2	110.7	13.5	112.0	12.1	1.1
6	문화 · 체육 · 관광	0.3	0.3	11.6	1.4	11.9	1.3	2.8
7	환경	2.9	2.8	14.6	1.8	17.6	1.9	16.7
8	보건 · 복지 · 고용	44.2	42.1	289.0	35.2	333.2	36.0	13.3
9	농림 · 수산 · 식품	5.7	5.4	30.7	3.7	36.4	3.9	15.7
10	SOC	0.9	0.9	28.9	3.5	29.8	3.2	3.1
11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38.3	36.5	41.2	5.0	79.5	8.6	48.2
12	R&D ²⁾	10.5	10.0	39.5	4.8	50.0	5.4	21.0
4대분야 합계(8+9+11+12)		98.7	94.1	400.4	48.8	499.1	53.9	19.8
총계(12대 분야)		104.9	100.0	820.9	100.0	925.8	100.0	11.3

주: 1) 12대 분야별 분류 중 2. 공공질서 및 안전은 해당 국제감면 항목이 없음

2) R&D 분야 등의 중복계상으로 분야별 지출액의 합계가 정부가 발표한 전체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규모와 일치하지 않아, 분야별 비중은 정부 발표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3) 조세지출 비중은 억원 단위로 계산하여 반올림한 것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9.,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이러한 분야별 자원배분 분석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구성 현황을 총량 수준에서 비교한 것으로, 개별 분야 내 세부 부문별 자원배분 현황이나 개별 제도 간 실질적인 대응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³⁾ 즉,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비교를 부문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나아가 개별 제도의 정책목적·수혜대상·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분야·부문 분류가 해

3) 참고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의 'Ⅲ-5. 조세지출-재정지출 부문별 연계분석'에서는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에 대해 분야별 연계 분석 뿐만 아니라 부문별 연계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부문별로 연계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현재 공개된 수준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정책목적·수혜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 비교 및 정책수단 간 역할분담이나 유사·중복 여부를 살펴보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당 제도의 실질적인 정책목적과 지원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정지출의 분야·부문 분류와 비교할 때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문별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조세지출의 부문별 귀속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예산서는 개별 조세지출의 분야·부문 분류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문별 조세지출 규모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복수의 분야·부문에 해당하는 일부 조세지출은 정책영역별 귀속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별 조세지출의 분야·부문별 분류 및 귀속 규모에 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항목별 실적·전망치와 분류정보 등을 분석 가능한 전산 자료 형태로 제공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부문별 비교·분석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분야별 총량 비교에서 나아가 세부 부문별 자원배분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문별 비교·분석 결과를 개별 제도 수준의 검토로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분석을 통해 조세지출 비중이 높거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구성비 변화가 큰 영역을 우선적으로 식별하고, 해당 영역을 중심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정책목적·수혜대상·지원요건·지원내용을 비교함으로써 개별 제도 간 연계 가능성과 유사·중복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분야별 자원배분 비교를 부문별 분석과 개별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계 검토로 발전시키고, 예산편성·세제개편·성과평가 및 결산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1. 조세지출의 재정전환 개요

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특징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및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다.¹⁾ 정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특정 집단이나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은 재정지출과 같다.

그러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법적 근거, 대상 선정, 지원 시점, 국회 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조세지출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매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액을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반면, 재정지출은 매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와 총액이 확정된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일반적인 특징 비교]

구 분	조세지출	재정지출
근거·통제	세법에 요건 규정, 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개방형), 매년 국회 심의 없음	매년 예산 편성·국회 심의, 총액 통제
수혜 대상	결정세액이 있는 납세자, 과세정보로 자격 확인	소득·자산·가구요건 등으로 선별, 과세미달자 포함 가능
지원 시점	연말정산·신고 시 사후 환급	지원 필요 시점에 즉시 지급
행정비용	세무행정 인프라 활용으로 낮음	신청·심사·전달체계 비용 발생
예측가능성	법정 요건에 따라 높음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
사후관리	조세지출 심층평가 및 예·결산서	성과계획서·보고서, 재정사업 성과평가
적합 영역	외부성·내부성 교정(R&D, 연금저축 등), 규칙 기반 지원	소득재분배, 정밀 선별, 신속·한시 지원, 총량 통제
존속기한·재검토	법률상 적용기한(일몰), 일몰 도래 시 연장 여부 결정, 적용기한 종료 연도에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이면 심층평가 후 국회 제출(일부 제외)	법정 존속기한 없음(보조사업은 존속기간·연장평가), 법률상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은 사실상 상시 지출

자료: 오종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상호 보완을 위한 제도 설계 및 정책 효과 제고 방안」, 국회 토론회 발제자료(2026.9.14.)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유민호 예산분석관(romer87@assembly.go.kr, 6788-4625)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

조세지출은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행태를 유도하고 행정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세의 경우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의 경우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적(역진적) 한계가 있다. 반면 재정지출은 과세미달자를 포섭하고 대상을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으나, 신청주의에 따른 사각지대와 전달체계 비용이 발생하고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두 수단은 존속과 재검토의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조세특례는 대부분 법률에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도래하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는 일몰이 도래하는 연도에 전문기관의 평가(심층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원 대상 소멸로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은 제외).²⁾³⁾

반면 재정사업은 매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치므로 형식적으로는 통제가 더 강하지만, 사업 자체에 법정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국고보조사업은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으나, 의무지출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등은 존속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⁴⁾ 아울러 재정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감액·폐지 등 예산조치와 연계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지급 요건과 금액이 규정된 현금급여는 의무지출이 되어 매년 예산 심의만으로는 규모를 조정하기 어렵고, 수혜자 집단이 형성된 복지성 현금지원은 축소·폐지보다는 지원 대상과 단가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때에는 지원수단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전환 이후 재정사업의 사후 성과관리 및 재검토 체계를 충실히 갖추는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7항·제8항

3) 다만, 실제로는 일몰기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조세지출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지원수단 조정 사례

그간 정부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병행하거나 상호 간에 지원수단을 전환해 왔다. 재정지출이 신설·확충되면서 중복되는 조세지출을 축소해 대표적 사례는 아동수당이다. 정부는 아동수당의 도입과 지급연령 상향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세 차례 조정하였다. 특히 2026년에는 「아동수당법」 개정(2026.3.)으로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확대됨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2026.4.)을 통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도 같은 일정(2026년 9세 이상 → 2030년 13세 이상)으로 상향하였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지원수단 조정 사례]

시 기	내 용	조정 방향
2014~2015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률 90→95% 확대, 확대분을 감차보상 재원으로 사용(2017년 복지기금 재원 4% 추가로 99%)	재정사업 재원을 조세지출로 조달
2018~2019	아동수당 도입(2018.9.)에 따라 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축소(2019년 귀속분부터 7세 이상)	조세지출 → 재정지출
2019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폐지, 개별소비세 감면은 유지	재정지출 종료, 조세지출 존치
2022~202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확대에 따라 자녀세액 공제 대상을 8세 이상으로 조정	조세지출 → 재정지출
2026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상향하되 2026~2029년은 매년 1세씩 적용(2026.4. 「소득세법」 개정)	조세지출 → 재정지출
2026~2027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7개 조세지출을 재정 전환 대상으로 정비	조세지출 → 재정지출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2026.8.5.), 정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택시 감차보상 재원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에서 조달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조정은 개별 재정사업의 신설·확대에 맞추어 중복되는 조세지출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었던 데 비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제시한 분류에 따라 다수의 조세지출을 한꺼번에 재정지출로 전환한 종합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재정전환 대상 조세지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조세지출 정비는 국세감면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 5,171억원에서 2027년 104조 9,307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7년 국세감면율은 14.5%로 전년보다 1.8%p 낮아지나, 이는 국세수입총액(지방소비세 포함)이 615조 3,0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국세감면액 자체는 전년 대비 17조 9,175억원(20.6%) 증가한다. 이러한 감면 규모 증가는 이번 전환 대상 항목의 적정성을 직접 뒷받침하는 근거라기보다는, 조세지출의 총량 관리 필요성을 보여주는 재정 여건으로 볼 수 있다. 재정전환이 국세감면율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검토한다.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4 실적	2025 실적	2026 전망	2027 전망
국세감면액(A)	705,171	761,084	870,132	1,049,307
국세수입총액(B)	3,656,829	4,021,024	4,447,507	6,153,088
국세감면율[A/(A+B)]	16.1	15.9	16.3	14.5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6	15.5	16.4	16.6

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41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수 검토하여 116개를 정비(종료 20개, 재정전환 17개, 재설계 65개, 상시화 14개)하기로 하였다. 재정전환 대상 17개는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3개),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6개), ‘유사 재정사업 통합’(8개)으로 분류하였으며,⁵⁾ 재정전환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27~2031년 약 1조 1,000억원(순액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⁶⁾

정부는 재정전환이 지원의 폐지가 아니라 지원목적은 유지하면서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재정지출로 전환하면 납부세액이 없어 세제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과세미달자 등 사각지대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5)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026.8.3.

6) 「2026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재정포럼』 2026년 9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가 분류한 재정전환 대상 항목의 개정방식과 조세지출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26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재정전환 대상을 선정하였고, 소득세 등 직접세는 다음 해 연말정산·신고 시, 소비세는 일부가 다음 해에 반영되므로 단계적 종료·부분 전환 항목은 2027년에도 조세지출이 잔존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재정전환 대상 조세지출]

(단위: 억원)

정부 분류	조세지출(근거)	개정방식	2026 전망	2027 전망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출산·입양 세액공제(소득법 §59의2③)	적용 종료	(13,436)	(11,965)
	혼인세액공제(조특법 §92)	적용기한('26.12.31.) 종료	1,416	1,546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106①4의5)	적용기한 종료	추정곤란	추정곤란
선별·효율 적 지원 추진	기업 운동경기부 과세특례(§104의22)	종료('26년 이전 설치분은 종전 규정)	10	11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111의5)	적용기한 종료	40	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06의2①2)	적용기한 종료	453	38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109④)	한도 축소('27 200만원→'28 100만원) 후 '28년 말 종료	5,820	4,768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109⑦)	한도 축소('27 300만원→'28 150만원) 후 '28년 말 종료	203	204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세 면제(§106①9의2)	적용기한 '28.12.31.→'26.12.31. 단축	2,817	729
유사 재정사업 통합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126의2)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	(41,360)	(48,29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87③)	가입기한 '28.12.31.→'26.12.31. 단축	10	1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87의2)	'26년 가입분까지 적용	37	31

(단위: 억원)

정부 분류	조세지출(근거)	개정방식	2026 전망	2027 전망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106①1·§111①2)	적용기한 종료	19	2
	목재펠릿 부가세 면제(§106①12)	적용기한 종료	4	1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105①3)	적용기한 종료(기존 사업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2,610	추정곤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104의35)	적용기한 종료	0.1	0.1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 중 감차보상분(§106의7)	경감률 99→94%(감차재원 5% 삭제), 적용기한 '29년까지 연장	(2,449)	(2,472)
합 계(별도 파악 13개)			13,439	7,345

주: 1. ()는 전환 대상이 항목의 일부(출산·입양분, 대중교통분, 감차보상분)이나 조세지출예산서가 해당 부분을 구분하지 않아 항목 전체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합계에서 제외

2. 합계의 2027년 전망은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추정곤란) 제외

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항목별로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기존 최대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혜택까지 재정으로 지원하고, 혼인세액공제는 지원대상을 넓히며,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중교통 추가공제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확대에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금액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13개 항목의 2026년 조세지출은 1조 3,439억원이다. 소득세 등 직접세는 귀속연도의 다음 해에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혼인세액공제 등의 2027년 전망치는 2026년 귀속분이며, 이에 따라 재정 전환에 따른 실제 조세지출 감소 효과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라. 2027년도 예산안의 대응 재정사업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원을 재정지출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으로,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로, 전기차 세제혜택을 구매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에 대응하는 재정사업은 총 14개 세부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총 6조 9,5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83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재정전환 대응 재정사업의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억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대응 조세지출)	2026 본예산 (A)	2027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전환분 명시액	정부 제출 전환 규모
일반회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농어가목돈마련저축)	232	209	△23	△9.9	-	-
	게임산업 육성(이스포츠대회)	750	803	53	7.1	-	6
교통시설 특별회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대중교통 추가공제)	5,580	8,652	3,072	55.1	-	3,062
	택시산업지원(일반택시감차보상분)	38	122	84	224.7	90	9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목재산업육성(목재펠릿)	160	34	△126	△78.6	4	4
미래대응기금	출산지원금 지원(출산·입양 세액공제)	4,111	6,981	2,870	69.8	4,296	4,102
	혼인지원금(혼인세액공제)	-	1,663	1,663	순증	1,663	1,654
기후대응기금	에너지바우처(영구임대 난방용역)	4,940	4,951	11	0.2	11	11
	무공해차 보급사업(전기·수소차, 전기버스)	22,845	30,090	7,245	31.7	2,998	6,093
자원안보기금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연안화물선 경유)	187	271	85	45.4	62	62

(단위: 억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대응 조세지출)	2026 본예산 (A)	2027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전환분 명시액	정부 제출 전환 규모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연안여객선 석유류)	-	493	493	순증	493	493
국민체육 진흥기금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 (기업 운동경기부)	423	416	△7	△1.7	9	9
주택도시기금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청년우대형청약저축)	7,276	13,589	6,313	86.8	-	3,534
전력산업기반 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도서지방 석유류)	1,150	1,248	98	8.5	-	31
합 계		47,691	69,522	21,830	45.8	9,626	19,151

- 주: 1. 출산지원금 지원의 2026년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사업이 통합하는 부모급여는 제외),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2026년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편성액(에너지바우처·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도 2026년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목재산업육성은 농어촌구조개선평의회계 편성)
2. 전환분 명시액은 사업설명자료의 산출근거에 조세지출 대체분으로 명시된 금액(출산지원금은 '27.7월 이후 출생아분). 출산지원금 4,296억원은 정부가 대체분으로 명시한 금액이나 7월 이후 출생아분으로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통합분을 포함한다.
3. 정부 제출 전환 규모는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17개 조세지출 항목별 전환 규모를 세부사업별로 합산한 것으로,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3,245억원, 수소전기자동차 △150억원, 전기 시내버스 등 2,998억원의 합계임. 출산지원금 지원(4,102억원)과 혼인지원금(1,654억원)은 전환분 명시액(4,296억원, 1,663억원)과 차이가 있으며, 혼인지원금의 정부 제출 규모는 세부사업 총액(1,663억원) 중 지원금 보조분에 해당함
4.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의 2026년은 「주최단체지원」 세부사업 중 해당 내역 금액(2027년 세부사업으로 분리)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대응 재정사업의 산출근거에 조세지출 대체분이 명시된 것은 9개 사업 9,626억원이며, 나머지 5개 사업은 조세지출 대체분이 산출근거에 나타나지 않는다.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17개 항목별 전환 규모는 1조 9,151억원으로 산출근거 명시액보다 9,525억원 많은데, 이는 산출근거에 대체분이 나타나지 않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3,534억원), 대중교통 추가공제(3,062억원), 전기·수소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3,095억원) 등이 포함된 반면, 출산지원금과 혼인지원금은 산출근거 명시액보다 203억원 적게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사업은 전년 대비 23억원 감액되었다. 한편 '목재산업육성'(△78.6%)과 '비발행 대상 종

목 지원'(△1.7%) 사업은 세부사업 전체로는 감액되었으나 조세지출 전환분이 각각 4억원, 9억원씩 명시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증액되었다. 아울러 출산지원금과 혼인지원 사업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새로 설치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청년계정에 편성되었다.

마. 주요 전환 항목별 지원 내용

재정전환 대상 조세지출과 대응 재정사업의 지원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혼인처럼 같은 대상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항목이 있는 반면, 기존 재정사업의 일부로 흡수되거나 별도 대응사업이 없는 항목도 있다.

[재정전환 대상 조세지출과 대응 재정사업의 지원 내용]

조세지출	현행 조세지원 내용	대응 재정사업의 지원 내용('27 예산안)
출산·입양 세액공제	출생·입양 자녀 1명당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소득세 공제	아이맞이지원금: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하여 1명당 1,000만~1,500만원(우대지역 500만원 추가)을 1년간 4회 분할 지급, ('27.7.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7 상반기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 단가가 종전 출산입양세액공제 공제액만큼 인상됨)
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 연도에 1인당 50만원(부부 최대 100만원) 공제, 생애 1회('24~'26년 혼인신고분 한시 적용)	혼인지원금: '27.1.1. 이후 혼인신고 부부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100만원 지급 (국고보조율 68.84%)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세 면제	에너지바우처 내 영구임대주택 열요금 부가세 지원: 4.7만 가구 × 2.34만원 = 11억원
기업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10%(장애인팀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국민체육진흥기금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 중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지원: 355개팀 × 5,700만원(전년 5,400만원)
연안화물선 경유 유류세 감면	경유 리터당 56원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연동되는 교육세·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분 포함 시 78.96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감면분 추가: 78,547kl × 78.96원 = 62억원
연안여객선 석유류 간접세 면제	부가세·개소세·교통세·교육세·자동차세 면제(면세유 공급)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신설: 경유 575.62원/ℓ, 중유 98.1원/ℓ 보조 + 해운조합 수수료 13억원 = 493억원

조세지출	현행 조세지원 내용	대응 재정사업의 지원 내용('27 예산안)
전기·수소차 개소세 감면, 전기 시내버스 부가세 면제	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 한도 개소세 감면, 전기·수소 버스 공급 부가세 면제	무공해차 보급사업 내 '조세지출 재정전환' 내역 신설: 전기버스 2,116억원, 수소버스 882억원 (산출근거상 승용차 감면 축소분 보전 내역은 없으나, 정부는 전기자동차 3,245억원, 수소전기자동차 △150억원을 전환 규모로 제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40% 공제율 및 추가공제 한도 적용(근로소득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정률·정액 환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무주택 청년의 청약저축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주택도시시기금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청약저축 해지 시 지급하는 이자 전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어민 저축의 이자소득·저축장려금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출연: 가입자에게 만기 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 재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면제	도서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세·교통세 등 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면세유 공급 중단에 따라 지자체 도서 연료비 단가 상향 (1,415원 → 1,940.1원/ℓ)
목재펠릿 부가세 면제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 부가세 면제	목재산업육성 중 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이스포츠대회 과세특례	수도권 외 지역 대회 운영비의 10% 법인세 공제	계업산업 육성 중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아마추어·지역 대회 개최 등)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 중 감차보상분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분 중 5%를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사용	택시산업지원 내 택시감차촉진지원 신설: 촉진지원금 784대분 84억원 + 감차재단 운영비 6억원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도시철도공사·민자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건설용역 영세율	대응 재정사업 없음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사업별 설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986년부터
운영되어 온 저축상품으로, 가입자는 만기 시 약정이자 외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

러기금에서 저축장려금을 받고, 이자와 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장려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정부는 매년 필요한 저축장려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고 기금 운용 결손금을 다음 해에 전액 보전하여야 하며,⁷⁾ 나머지는 한국은행이 출연한다. 이번 재정전환은 소득세 비과세를 종료하는 대신 그만큼을 장려금으로 직접 보전하여 가입자의 실질 수익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청년 대상 상품이다. 청약저축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재원으로 유입되고 해지 시 이자는 주택도시기금의 ‘기타민간예수금이 자상환’ 사업을 통해 지급되므로, 정부는 해당 사업을 대응하는 재정사업으로 설명하였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여 90%는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4%는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사용해 온 제도⁸⁾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감차보상 재원(5%)만 예산으로 이관하여 ‘택시감차축진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

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기금 운용은 한국은행이 수행하며, 정부 출연금은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7135-881)으로 편성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제4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납부세액의 90%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제2항), 5%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감차재단)에, 4%는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복지재단)에 지급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제4항).

13-2. 분석의견

조세지출 중 과세미달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동일 목적의 재정사업과 중복되는 제도를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타당하나, 이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① 전환 규모와 항목별 전환의 적정성, ② 전환에 따른 재정 영향, ③ 전환 이후의 관리체계와 추가 정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 전환 규모와 항목별 전환의 적정성

첫째, 정부가 제출한 전환 규모(1조 9,151억원) 중 조세지출예산서로 감면액을 대응시킬 수 있는 항목은 일부에 그치고 정부가 제시한 세수 증가(약 1조 1,000억원)와는 기준 연도도 달라, 정부는 항목별로 조세지출 대체분과 지원 확대분을 구분하고 연도별 세수효과와 재정소요를 동일한 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원을 재정지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항목별 전환 규모는 총 1조 9,151억원이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금액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13개 항목의 2026년 조세지출은 1조 3,439억원이나,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중교통 추가공제,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감차보상분)은 전환 대상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추정이 곤란하다. 이 4개 항목은 정부 제출 규모가 7,265억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여,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전환 규모의 5분의 2가량을 조세지출 감소분과 대응시켜 심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항목별 정부 제출 전환 규모와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정부 분류	조세지출	정부 제출 전환 규모	조세지출 규모 (2026 전망)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출산·입양 세액공제	4,102	(13,436)
	혼인세액공제	1,654	1,416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11	추정곤란

(단위: 억원)

정부 분류	조세지출	정부 제출 전환 규모	조세지출 규모 (2026 전망)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기업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9	10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	62	40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493	453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3,245	5,820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150	203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세 면제	2,998	2,817
유사 재정사업 통합	대중교통 추가공제	3,062	(41,3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3,534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3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1	19
	목재펠릿 부가세 면제	4	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	2,610
	이스포츠대회 과세특례	6	0.1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 중 감차보상분	90	(2,449)
합 계		19,151	13,439

주: 1. ()는 전환 대상이 항목의 일부이나 조세지출예산서가 해당 부분을 구분하지 않아 항목 전체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합계에서 제외

2. 합계의 조세지출 규모는 별도 파악 13개 항목(출산·입양, 대중교통, 감차보상분, 영구임대 제외)의 합계이며, 같은 13개 항목의 정부 제출 규모는 11,886억원임

3. 전기·수소자동차는 한도 축소 후 종료하는 방식이어서 조세지출 규모 전체가 전환 대상은 아님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대응시킬 수 있는 항목만 보더라도 정부 제출 규모와 조세지출 규모 간의 관계가 항목마다 상이하다. 전기 시내버스(2,998억원 대 2,817억원), 연안여객선(493억원 대 453억원)은 조세지출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혼인세액공제는 지원대상 확대 1,654억원(조세지출 1,416억원)이 편성되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조세지출 규모가 10억원임에도 3,534억원이 계상되어 격차가 가장 크다. 전기자동차는 조세지출 규모(5,820억원)보다 적은 3,245억원이 제출되었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50억원으로 제출되어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와 함께 재정지원도 줄어든다. 반면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2,610억원)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37억원)은 2027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없다. 정부의 재정전환 유형은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유사 재정사업 통합으로 구분되는데, 지원 확대는 이러한 유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나 확대본이 포함된 금액을 전환 규모로 일괄 제시할 경우 국회가 조세지출 폐지로 줄어드는 지

원과 재정지출로 신설되는 지원을 1:1로 대응시켜 심사하기 어렵다.

대응시킬 수 없는 4개 항목 중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정부 제출 전환 규모가 4,102억원인데, 정부 비용추계서는 세액공제 종료에 따른 세수효과를 연 1,312억원으로 추계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차이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6,981억원)에 기존 재정사업의 재편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세액공제 대체분과 기존 사업 재편분을 분리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은 정부가 총사업비에 통합하여 지원한다고 설명하였으나, 2027년 예산에 실제로 반영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세수 증가(약 1조 1,000억원)는 순액법(매년 전년 대비 증감분을 합산하는 방식) 기준 2027~2031년 세수효과와 합계로 제도 변경이 모두 반영된 평년 효과에 해당하나, 정부 제출 전환 규모(1조 9,151억원)는 2027년도 예산안 기준의 단년도 금액이어서 두 금액의 차이(8,151억원)를 연간 순재정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득세 공제 등 직접세 항목은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에 공제가 이루어져 세수 증가가 2028년부터 나타나는 반면 대응 재정지출은 2027년부터 편성되므로, 2027년에는 재정지출이 세수 증가보다 먼저 늘어나는 시차가 발생한다. 실제로 도시철도를 제외한 12개 항목의 조세지출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6년 1조 829억원에서 2027년 7,345억원으로 3,484억원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정부가 제출한 전환 규모는 1조 1,886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재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판단하려면 연도별로 조세지출 축소에 따른 세수 증가, 기존 조세지출의 대체 편성액, 신규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지출, 그리고 지방비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재정부담을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물론 ‘유사 재정사업 통합’ 유형은 조세지출을 기존 재정사업에 흡수하는 방식이어서 대응 재정사업의 증액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4억원)처럼 조세지출 실적이 미미한 항목은 의미 있는 예산 증액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존 재정사업이 종전 조세지출의 지원 대상과 기능을 어떻게 대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17개 조세지출 각각에 대해 연도별 조세지출 감소액, 대응 재정사업 및 전환분 금액(기존 대체분과 신규 확대분 구분), 그리고 재정전환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와 재정소요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예산 증액이 드러나지 않는 항목은 기존 사업이 대체하는 지원 대상과 구체적 방식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전환 실적은 조세지출

결산서에, 전환 대상·사유 및 재정지출 규모 등 향후 전환 계획은 조세지출예산서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¹⁾이 최근 발의되었다. 동 개정안은 전환 실적과 계획을 조세지출 예·결산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조세지출과 대응 재정지출 간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을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세제개편과 같이 전환 규모와 대응관계가 불분명해지는 한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이미 올해 조세지출을 전수 조사하여 17개 제도를 재정지출로 전환하였으므로 매년 추가적인 재정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고, 재정전환 이후의 지원 실적을 조세지출 예·결산서에 수록하는 것은 예산서·결산서와의 중복 기재 문제 및 조세지출 보고서 본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정전환 대상 항목은 전환 취지의 타당성과 대체 편성의 충분성이 항목별로 상이하므로 유형별로 나누어 전환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선택 기준에 비추어 보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를 포섭할 필요가 있거나 동일 목적의 재정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또는 과세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기준으로 선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출이 적합하고, 사업자의 장기투자결정처럼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전환 취지가 타당한지와 실제로 대체 재정사업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재정전환 사유(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유사 재정사업 통합)를 감안하되, 재정전환 대상은 전환 취지의 타당성과 대체 편성의 충분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²⁾

1) 의안번호 제2221575호(김영환의원 대표발의), 2026.9.23.

2)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환 취지는 위의 선택 기준(면세자 포섭, 유사 재정사업과의 중복 해소, 정밀 선별 필요성)에 비추어 타당한지로 보고, 대체 편성은 대응 재정사업의 산출근거에 대체분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대응사업이 감액되지 않았는지로 판단하였다. 이 중 산출근거에 대체분이 나타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분명’으로, 대응사업이 감액되어 실질적으로 부족한 경우는 ‘불충분’으로 구분하였다.

[재정전환 대상 항목의 유형별 구분]

조세지출	전환 취지	대체 편성	판단 근거
혼인세액공제	타당	충분	면세자 포섭 (지원 단가는 세액공제 최대치와 동일)
도서지방 석유류			면세유 종료에 따른 연료 단가 상승분 반영
일반택시 감차보상분	타당	적정성 확인 필요	감차재원의 예산 편입으로 투명성 제고 (단, 감차 실적 부진과 감차재단 누적 잉여금 (104억 9,800만원) 대비 신규 보조금 (89억 9,800만원)의 필요성 불분명)
대중교통 추가공제	타당	불분명	산출근거에 대체분 명시 X (정부 제출 302억원 사업 증액분 302억원과 유사) (또한, 월 15회 미만 탑승자나 모두의카드 미적용 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고려 X)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타당	확인 필요	2027년 이후 가입분 만기 도래 시점부터 보전 소요가 생기므로 중기 출연계획 필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목재펠릿, 도시철도 건설용역	타당	불분명(청약) 감액·부재 (목재도시철도)	유사 재정사업 통합 지원이라는 정부 설명에도 통합 대상 사업의 반영액이 확인되지 않거나(청약·도시철도) 지원 대상이 달라지고(목재) 대응사업이 감액·부재
이스포츠대회, 기업 운동경기부	타당	소액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증액,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감액(103억원→93억원)
전기·수소차 개소세, 전기 시내버스 부가세, 연안화물·연안여객 유류세, 영구임대 난방용역	지원방식 설계에 따라 다름	편성 (지원방식 변경)	선별기준 반영 여부, 지원 단가·세목 범위의 변경, 법적 근거,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출산·입양 세액공제	타당	기존 재정사업 재편	세액공제 대체분(2027년 상반기 첫만남 이용권 단가인상분)보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통합 재편이 사업의 실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① 전환 취지와 대체 편성이 대체로 타당한 항목

혼인지원금은 부부당 100만원으로 세액공제의 최대치(인당 50만원 × 2인)와 동일하고, 결정세액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던 부부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어서 재정전환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2024년 귀속 혼인세액공제 실적과 비교하면 국비만 1,654억원으로 1.8배이며, 지방비를 포함하면 약 2,403억원에 이른다. 이는 공제를 받지 못하던 부부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므로,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로 구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면세유 공급 중단에 따른 연료 단가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 도서 결손지원 단가에 적절히 반영하였다(정부 제출 전환 규모 31억원).

② 전환 취지는 타당하나 대체 편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항목

대중교통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지원을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한다는 점에서 전환 방향은 타당하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의 산출근거에 추가공제 대체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기획예산처는 전환 규모를 3,062억원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업 증액분(3,072억원)과 거의 같은 규모여서 모두의 카드 확대에 따른 증액 전체를 전환분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공제 대체분과 사업 자체의 확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정부는 ‘소득세 감면분 전액을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보전’한다고 밝혔으나, 예산안에는 이를 반영한 내역이 없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금은 오히려 23억원(9.9%) 감액되었다. 다만 2026년까지 가입분은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되므로 2027년의 보전 소요 자체는 크지 않으나, 2027년 이후 가입분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장려금 보전 소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한 중기 출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중 감차보상분은 부가가치세 경감분 중 감차보상 재원으로 쓰이던 5%를 예산으로 편입하여 국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전환 취지는 타당하나, 신설된 택시감차촉진지원 보조금(89억 9,8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지는 불분명하다.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2025~2029년)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의 감차 실적은 목표 1만 9,200대의 5.7%(1,095대)에 그쳤고, 감차재단은 2025년 수입 대비 지출이 67.0%에 머물러 2025년 말 누적 잉여금이 104억 9,80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최근 5년 연평균 감차보상 지출(104억 5,400만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투입에 앞서 감차재단 잉여금 활용 방안과 감차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³⁾

3)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참고

③ 기존 재정사업의 대체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는 펠릿을 사용하는 농민·임업인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나, 대응사업(목재산업육성 중 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이 연료 소비에서 설비 공급으로 바뀌어 기존 보일러 보유 농가의 연료비 부담 증가는 보전되지 않는다.

기업 운동경기부 과세특례는 조세지출 규모가 작고 대응 내역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증액되었으므로 대체 편성의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이스포츠 대회 과세특례는 정부가 6억원을 전환 규모로 제출하였으나 대응 내역인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 103억 5,000만원에서 93억 400만원으로 감액되어, 대체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가 별도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의 우대금리를 비과세 상당분만큼 상향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였다고 설명하나, 정부가 전환분으로 제출한 3,534억원은 비과세 감면액(2026년 전망 10억원)보다 훨씬 커서 우대금리 상향분과 그 밖의 증가분의 구분이 필요하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은 별도 대응사업이 없으며, 정부는 총사업비 통합 지원이라고 설명하나 실제 반영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한 항목

전기·수소차의 경우 정부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R&D 역량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구매보조금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하였으나, 2027년 예산안의 승용차 보조단가와 산출근거에는 이러한 선별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에너지바우처 내 영구임대주택 열요금 부가가치세 지원(11억원)으로 바꾸어, 정부 제출 전환 규모(11억원)만큼 편성

4) 재정경제부는 전기차 구매보조 편성단가가 감소 추세였으나 재정전환을 계기로 유지하도록 협의하였다고 설명하나, 이는 검증이 어렵고, 수소승용차 보조단가는 2,25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었다.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전환 규모도 전기자동차는 3,245억원이나 수소전기자동차는 △150억원으로, 수소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와 구매보조금 단가 인하가 함께 이루어져 재정전환보다는 지원 축소에 가깝고, 전기자동차 3,245억원도 산출근거에 별도 내역이 없어 단가 유지에 따른 금액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되었다. 다만 종전 면제의 규모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곤란이어서 대체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급자에 대한 면세에서 바우처 방식의 지원으로 바뀌므로 기존 수혜 가구가 누락 없이 지원받도록 전달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안화물선과 연안여객선은 보조 대상 세목의 범위와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의 지원단가(리터당 78.96원)는 세법상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액 56원에 연동되는 교육세(8.4원)와 주행분 자동차세(14.56원)를 더한 것으로⁵⁾ 지원 수준은 종전과 같으나, 조세지출예산서에 계상되지 않던 지방세(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분까지 국비로 보전하게 된다.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도 종전 면제 대상이던 자동차세(경유 리터당 82.94원)를 포함하여 보조한다. 또한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493억원)는 현행 「해운법」 제41조제2항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인상액 보조만 규정하고 있어 여객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므로, 「해운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년 예산 심의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⁶⁾ 안정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체 편성이 불충분한 항목에 대해서는 발표한 보전 방안을 예산에 명확히 반영하고, 대체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이 조세지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지원방식이 바뀌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와 선별기준의 설정 근거 및 법적 근거를 사전에 완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재정전환분(2027년 상반기 첫만남이용권 단가 인상)과 7월 이후 아이맞이지원금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 재편은 성격이 확연히 다르므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질적인 재정전환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액(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이상의 혜택’을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아이맞이지원금은

5)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제3항제1호는 감면 경유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분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 세목이 함께 감면됨을 전제로 함

6) 김태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국회 토론회, 2026.9.14.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우대지역 500만원 추가)을 1년간 4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첫째아 기준으로 종전 공제액의 33.3배에 달한다.

이 중 세액공제를 직접 대체하는 부분은 2027년 1~6월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단가 인상이다. 정부는 이 기간 출생아의 첫만남이용권 단가를 세액공제액만큼 올려 첫째 23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이상 370만원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의 지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결정세액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포섭한다는 점에서 재정전환의 취지에 부합한다.

반면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세액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사업이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는 출산·양육 지원 패키지를 신설하며,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대신 이를 받게 된다.

[출생아 1인당 출생 후 2년간 지원 비교(첫째, 기본지역)]

(단위: 만원)

구 분	가정 양육		만1세부터 어린이집 보육	
	현 행	개편안 ('27. 下)	현 행	개편안 ('27. 下)
출산·입양 세액공제	30	-	30	-
첫만남이용권	200	-	200	-
아이맞이지원금	-	1,000	-	1,000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1,800	-	1,200	-
보육료 바우처 (만1세 월 51.5만원 가정)	-	-	618	618
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월 10만원 → 월 20만원)	240	480	240	480
아동기본수당 가정보육 추가분 (0~1세 월 30만원)	-	720	-	360
계	2,270	2,200	2,288	2,458

주: 1.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의 최대 공제액

2. 현행 제도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차감하고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만1세는 보육료 단가(월 51만 5,000원)가 부모급여(월 50만원)보다 커서 현금 지급액이 없음

3. 개편안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기간에는 아동기본수당 가정보육 추가분이 지급되지 않음. 보육료 단가는 2026년 기준

4. 세액공제는 세액 감면이고 나머지는 현금성 급여·바우처이며, 급여별 지급 기간이 달라 합계는 대략적인 비교임

자료: 사업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첫째아를 기본지역에서 양육하는 경우 출생 후 2년간 받는 지원은 가정양육 시
현행 2,270만원에서 개편안 2,200만원으로, 만 1세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288만원에서 2,458만원으로 양육 방식에 따라 약 $\Delta 3\% \sim +7\%$ 내외의 차이를 보여
전체 지원 수준은 유사하다. 반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현행 지원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즉 개편의 실질은 세액공제의 대체가 아니라 기존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를 일시금(아이맞이지원금)과 월 수당(아동기본수당)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예산안은 아이맞이지원금을 출산·입양 세액공제
의 재정전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출산·입양 세액공
제의 전환 규모(4,102억원)는 정부 비용추계상 세액공제 종료 효과(연 1,312억원)
의 3배를 넘어, 기존 재정사업의 재편분이 전환 규모에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전환 규모가 실제 세액공제 대체분보다 크게 보일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재정전환분은 2027년 상반기 첫만남이용
권 단가 인상분으로 한정하여 산출하고, 아이맞이지원금은 기존 출산·양육 지원사
업의 구조적 재편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 전환에 따른 재정 영향

첫째, 전환 대상 조세지출이 경과조치와 단계적 축소로 상당 기간 잔존하여 재정지출과 병존하므로, 정부는 연도별 잔존 규모를 공개하고 지원 대상과 적용 시기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의 감소는 경과조치, 징수시차, 단계적 축소로 인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정지출은 2027년부터 바로 집행되므로, 전환 초기 2~3년(2027~2029년) 동안은 동일한 정책목적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경과조치를 두는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 기간의 실질적인 재정 규모와 전환 효과를 판단하려면 잔존하는 조세지출의 규모와 소멸 시점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금액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13개 항목(2027년은 도시철도 제외 12개)의 2027년 조세지출은 7,345억원 규모로 남아 있다. 다만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중교통 추가공제, 일반택시 감차보상분은 전환 대상 부분이 구분되지 않아 이 합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제 잔존분은 이보다 클 수 있다.

[재정전환 대상 조세지출의 존속 사유]

(단위: 억원)

조세지출	2027 전망	존속 사유
출산·입양 세액공제	1,312	'26년 출생·입양분을 '27년 연말정산·신고 시 공제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4,972	감면한도 단계적 축소 후 '28.12.31. 종료
기업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11	'26년 이전 설치분은 3년(장애인팀 5년)간 종전 규정 적용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42	'26년까지 가입분은 만기까지 비과세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추정곤란	실시협약 등 완료 사업은 준공 시까지, 개량·증설은 '27년 말까지 종전 규정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	2,472	감차재원(5%)만 전환하고 운수종사자 지급분(94%)은 '29년 말까지 연장
전기버스·연안선박·도시지방·목재펠릿	774	간접세 환급 시차 등

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세 등 직접세는 2026년 귀속분의 공제가 2027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므로, 2027년에는 2026년 혼인신고분에 대한 혼인세액공제(1,546억원)와 2027년 혼인신고분에 대한 혼인지원금(1,654억원)이 함께 지출된다. 이는 서로 다른 혼인 건에 대한 지원이므로 동일인에 대한 중복 수혜는 아니나, 같은 해에 두 제도의 재정부담이 중첩된다. 간접세도 환급 시차로 인해 일부가 차년도에 반영된다. 전기·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감면한도를 줄이면서 2028년 말까지 유지되어 2027년에도 4,972억원이 발생하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중 운수종사자 지급분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출산 지원은 세 구간으로 구분된다. 2026년 출생아는 2027년 연말정산·신고 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받고, 2027년 1~6월 출생아는 세액공제 대신 첫만남이용권 단가를 공제액만큼 올려(첫째 23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이상 370만원) 지원받으며, 7월 이후 출생아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받는다.

[출생·입양 시기별 출산 지원수단]

출생·입양 시기	지원수단	지원 시점
2026년	출산·입양 세액공제	2027년 연말정산·신고 시
2027년 1~6월	첫만남이용권(단가 인상: 첫째 23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이상 370만원)	2027년
2027년 7월 이후	아이맞이지원금(4회 분할 지급)	출생 후 분기별

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사업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정부는 재정전환 대상 조세지출의 연도별 잔존 규모와 소멸 시점을 조세 지출예산서 등에 전환 대상 부분을 구분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종료(2027.1.1. 이후 출산·입양분), 첫만남이용권 단가 인상(2027년 1~6월 출생아) 및 아이맞이지원금(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의 적용 기준일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지원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환 초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병존하는 기간의 재정 소요는 제도 개편에 따른 본래의 전환 효과와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전환은 재정지표, 회계·기금 및 정부 간 자원배분, 수혜계층에 각각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그 효과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한 종합적인 영향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을 동일한 규모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경우 세입 감소 방식의 지원이 세출 방식으로 바뀌므로, 지원 총량이 같더라도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은 낮아지고 총지출은 증가한다. 따라서 국세감면율만으로는 지원 수준의 변화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소득세 공제 등 직접세 항목은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에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재정전환 효과가 2028년부터 반영될 예정이어서, 2027년 국세감면율로는 재정전환에 따른 지원 수준의 변화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국세감면율과 함께 동일한 정책목적을 가진 조세지출과 대응 재정지출을 합한 총량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재정전환에는 기존 지원의 대체를 넘어서는 사업 확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려면 순수한 전환 효과와 추가 지원 확대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세수 증가 1조 1,000억원은 순액법 기준 2027~2031년 세수효과의 5년 합계이므로, 2027년 국세감면율에 미치는 효과를 산정하려면 연도별 세수효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027년 국세감면율 하락(16.3% → 14.5%)에는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분모 확대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재정전환 효과는 이와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회계·기금 간 자원배분도 달라진다. 재정전환 대상 조세지출은 대부분 일반회계 세입인 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감면이었으나, 대응 재정사업 14개(6조 9,522억원) 중 일반회계 사업은 2개 1,012억원(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8,808억원)와 기금(5조 9,702억원)에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전환 규모 1조 9,151억원도 이스포츠대회(6억원)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회계 외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 축소에 따른 세수 증가는 일반회계와 지방교부세에 귀속되는 반면, 대체 지출은 특별회계·기금의 고유재원이 부담하게 되어, 일반회계 수지는 개선되나 해당 회계·기금의 재정여력은 줄어들게 된다.

[재정전환 대응 재정사업의 회계·기금별 편성과 재원]

(단위: 억원)

회계·기금	주된 재원	대응 재정사업 (2027 예산안)	정부 제출 전환 규모	종전 조세지출의 감면 세목
일반회계	일반재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209, 게임산업 육성 803	6	소득세, 법인세
교통시설 특별회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8,652, 택시산업지원 122	3,152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역균형발 전특별회계	지정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목재산업육성 34	4	부가가치세
미래대응 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세수)	출산지원금 지원 6,981, 혼인지원금 1,663	5,756	소득세
기후대응 기금	예수금, 전입금 등	에너지바우처 4,951, 무공해차 보급사업 30,090	6,104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자원안보 기금	법정부담금 기금예수금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271,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493	555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국민체육 진흥기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등	비발행 대상 종목 지원 416	9	법인세
주택도시 기금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13,589	3,534	소득세
전력산업 기반기금	전력기금부담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248	31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합 계		69,522	19,151	

주: 1. 기금 재원의 ()는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2027년 수입합계 대비 비중

2.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68%, 환경개선특별회계 23%, 기후대응기금 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3. 정부 제출 전환 규모는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17개 조세지출 항목별 전환 규모를 회계·기금별로 합산한 것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각 사업별 설명자료,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대응 사업이 편성된 기금의 재원을 살펴보면, 연안선박 유류비 보조가 편성된 자원안보기금(2027년 신설)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수입의 70.6%(1조 7,342억원)를 법정부담금으로, 16.2%(3,984억원)를 기금예수금으로 조달하고,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이 편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수입의 75.4%(2조 7,367억원)가 전력기금부담금 등 기타정상이전수입이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편성된 기후대응기금은 2027년 수입 8조 5,105억원 중 4조 4,063억원(51.8%)을 예수금으로 조달한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재원 부족으로 2024~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하였고 주된 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효기간도 2027년 말까지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자원안보기금은 부담금·부과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종전 조세지출의 대체 지출을 이들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그 부담이 목적세 납세자나 부담금·부과금 납부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전환에 따른 세입 증가와 지출 증가를 회계·기금별로 대응시킨 자료나 대응 회계·기금의 재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 간 자원배분도 달라진다. 소득세·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감면이 줄어 증가하는 세수의 약 19%(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이전되며, 부가가치세 감면 축소분 중 일부는 지방소비세로 이전된다. 반면, 대체 재정사업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비 매칭이 추가된다. 출산지원금 지원과 혼인지원금의 2027년 지방비 부담은 약 3,869억원(출산지원금 지원 3,120억원, 혼인지원금 749억원)이다.

[혼인세액공제 재정전환에 따른 국가·지방 재정효과 추정(연간)]

(단위: 억원)

구 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
세입 증가(세액공제 폐지)	1,249	452	1,701
국세 증가분 1,546억원의 배분	1,249	297(지방교부세)	1,546
지방소득세 증가(공제액의 10%)	-	155	155
지출 증가(혼인지원금)	1,654	749	2,403
순효과(세입 - 지출)	△405	△297	△702

- 주: 1. 세액공제 규모는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2027년 전망, 지출은 2027년도 예산안 기준
 2. 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만 지방 몫으로 계산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7년부터 내국세 연동이 폐지되어 반영하지 않음
 3. 소득세 세액공제 폐지에 연동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은 소득세 공제액의 10%로 가정함
 4. 순효과 합계(△702억원)는 공제를 받지 못하던 부부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방비가 추가된 데 따른 것

자료: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혼인세액공제의 전환을 예로 들면, 연간 1,546억원의 세액공제가 폐지되어 늘어나는 국세 중 약 297억원은 지방교부세로 이전되고 연동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약 155억원 늘어난다. 이에 비해 혼인지원금의 지방비 749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국가는 약 405억원, 지방자치단체는 약 297억원의 순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는 종전 면제 대상이었던 자동차세(지방세, 경유 리터 당 82.94원)까지 국비로 보전하는데, 면제 종료로 늘어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수가 된다(연안화물선의 주행분 자동차세도 동일).

수혜계층에 대한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세부담 귀착 분석은 재정전환 항목(+1조 1,000억원)을 서민·중산층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기타’로 일괄 분류하여,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1조 2,258억원)에는 출산·혼인세액공제,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재정전환 대상 중 간접세 등 일부 항목은 성격상 소득계층별 귀착 분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재정전환의 주된 근거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과세자료로 계층별 귀착 파악이 가능한 출산·혼인세액공제와 대중교통 추가공제 등 개인 직접 귀속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지출 폐지에 따른 부담과 재정지출에 따른 수혜를 함께 고려한 소득계층별 순귀착 분석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조세지출결산서」에서 주요 소득세 조세지출에 대한 소득분위별 귀착을 분석하여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 일부 재정전환 제도의 귀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제도의 수혜 분포이므로 조세지출 폐지에 따른 부담과 재정지출에 따른 수혜를 함께 고려한 순귀착 분석은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전환의 효과를 조세와 재정을 통합하여 분석·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지표 측면에서는 국세감면율과 함께 동일한 정책목적의 조세지출과 대응 재정지출을 합한 총량, 순수한 전환분과 지원 확대분을 구분한 연도별 세수·세출 효과를 산정하고,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세입 증가와 지출 증가를 회계·기금별, 국가·지방자치단체별로 대응시킨 순재정효과와 대응 회계·기금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며, 수혜계층 측면에서는 출산·혼인세액공제, 대중교통 추가공제 등 개인 대상 현금성 항목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폐지에 따른 부담과 재정지출에 따른 수혜를 함께 고려한 소득계층별 순귀착 분석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전환 이후의 관리체계와 추가 정비

첫째, 재정전환 사업에는 사업 성격에 맞게 존속기간·성과지표·사후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사업으로서의 성과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중 적용기한이 있는 조세특례는 기한 도래 시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며,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특례는 원칙적으로 의무 심층평가를 받는다.⁷⁾ 이러한 조세지출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재정사업의 평가 체계가 적용되며, 그 내용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국고보조사업은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연장평가를 받아야 하나, 의무지출 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계속사업 등은 존속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전환된 사업이 그 성격에 맞게 재정사업으로서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였으나, 대응 재정사업인 혼인지원금은 사업기간을 '2027년~계속'으로 하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성과지표도 혼인건수 대비 지급건수 비율(2027년 목표 75%)이라는 단순 산출 지표에 그쳐, 혼인 증가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점검하기 어렵다.

한편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전환 전에도 별도의 적용기한이 없었으며, 대응 사업인 아이맞이지원금은 이번 개편에 따라 「아동수당법」상 법정 급여로 규정되어 의무지출이 되는 경우 보조사업 존속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수준을 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전환 및 의무지출화를 계기로 지원 수준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이맞이지원금의 성과지표도 단순 지급률이라는 산출 지표뿐이다.

더욱이 현금성 복지사업은 한번 도입되면 수혜계층이 형성되어 축소·폐지가 어렵고 오히려 지원 대상과 단가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된 뒤 2019년 보편 지급으로 바뀌었고, 지급연령은 2019년 7세 미만, 2022년 8세 미만, 2026년 9세 미만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늘어나도록 개정되었다.

7) 적용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 심층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급여도 2022년 영아수당(월 30만원)으로 도입된 뒤 2023년 부모급여(0세 월 70만원)로 바뀌고 2024년 0세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첫만남이용권도 2022년 200만원으로 도입된 뒤 2024년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재정 전환의 대표 사례인 출산·혼인·대중교통 지원이 모두 개인 대상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환 시점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 시점을 함께 정하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지원을 조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지출은 심층평가와 조세지출결산서로, 재정사업은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전환 전 조세지출과 전환 후 재정사업의 효과를 비교하는 체계가 부재하다.

따라서 정부는 한시적 조세특례에서 전환된 혼인지원금 등 존속기간 설정 대상 사업에는 존속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법정 의무지출로 전환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아동수당법」 개정 시 일정 기간 후 지원 수준과 효과를 재검토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단순 집행률을 넘어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재정전환 사업에 대해 현행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전환 전 조세지출과 지원대상·수혜 규모·정책효과를 비교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세지출결산서와 성과보고서에 함께 수록하고 향후 조세지출 및 재정사업 제도 개편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세제개편안은 재정전환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대규모 조세지출 일부를 일몰 연장하는 등 재정지출로 전환하지 않고 조세지출로 존속시키고 있으므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추가 정비 대상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재정전환의 기준(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유사 재정사업 통합)에 따라 향후 동일 목적의 재정사업이 있거나 정책효과가 불분명하고 상위 정책목표와 충돌하는 항목은 지속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감차재원분 제외),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및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적용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되었다. 정부는 재정전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지출을 일몰 연장 대상으로 선정한 사유와 정비 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심층평가가 수행된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와 일반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의 경우, 평가 결과에서 전면적인 재정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용과 수혜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등 현실적 제약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항목은 단기적인 제도 내 정교화나 부분적 재정전환(택시 복지기금 재원분 등)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재편을 모색해야 하는 반면, 월세 세액공제나 연료 세제지원 등 나머지 항목은 유사 재정사업과의 통합 또는 역할 분담 재설계 여부를 직접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근로소득자의 일반적인 세부담 경감 수단으로 기능하는 제도는 단순한 재정전환보다 기본공제 현실화 등과 연계한 제도 재설계가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조세지출의 성격에 따라 정비 방향을 구분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 재분배, 지역·업종 지원 등 서로 다른 정책목표 때문에 항목별 조치가 달랐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는 항목별 판단 사유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통 기준에 따른 재검토 후보 조세지출]

(단위: 억원)

조세지출	2027 전망	관련 재정사업	검토 사유	2026년 세제개편안	검토 방향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조특법 §106의2①1)	11,668	친환경 농기계· 어선 및 에너지 전환 지원 등	사용량 비례 지원으로 대농· 대형어선에 혜택 집중, 유통 단계 누수 발생, 탄소중립 목표 및 에너지 전환 정책과 상충 (2023·2026년 조세특례 심 층평가)	적용기한 '29.12.31.까지 3년 연장(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단기 공급기준량 현실화 및 중장기 단계적 재정전환 (에너지 전환 연계)
월세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6,236	청년월세지원 (2,319억원)	청년월세지원과 지원 대상은 다르나(월세 세액공제는 납부 세액이 있는 근로자 대상) 목 적이 유사하고 이번 개편에 서 청년 공제율 우대 신설	공제 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청년 17% 적용 (2027~2029년 한시)	역할 분담 재설계

(단위: 억원)

조세지출	2027 전망	관련 재정사업	검토 사유	2026년 세제개편안	검토 방향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 중 운수종사자 지급분 (§106의7)	2,472	택시산업지원	현금지급분(90%)은 사업장별 수혜 격차 및 근로장려금과 중첩 소지, 복지기금분(4%) 은 국회 예·결산 심의 밖에서 운용되며 집행률(59.4%)·수 혜율(6.5%)이 낮고 국가장학 금 등과 중복 소지(2026년 심층평가)	감차재원 5%만 삭제, 경감률 94%로 '29.12.31.까지 연장	복지기금 재원분 재정전환·통 합 및 중장기 지원방식 재검토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111의3)	392	택시 LPG 유가보조금 (지자체)	동일 연료에 대한 조세·재정 이중 지원 여부	감면액(LPG 부탄 kg당 40원) 유지, '29.12.31.까지 연장	이중 지원 여부 확인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111의2)	567	대중교통비 환급 등 교통비 지원	서민 유류비 지원 목적이나 연료 사용량 비례 지원으로 탄소중립과 상충, 교통비 지 원 재정사업과 연계 부족	차량 소유대수 요건 완화('28년 구매분부터) 후 '29.12.31.까지 연장	교통비 지원 재정사업과 의 통합 검토

주: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은 감차보상분을 포함한 항목 전체 금액

자료: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는 2026년 조세지출 규모가 1조 104억원(전망)에 이르는 대규모 조세지출로, 2023년 심층평가는 유통 단계의 혜택 누수와 부정유통 문제, 탄소중립 목표와의 상충 등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정비를 권고하였다. 반면 2026년 심층평가는 제도 폐지 시 정부의 재정부담은 감소하지만 이와 유사한 규모의 후생손실이 농어가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발생하고, 직접 보조금으로 전환할 경우 유류 사용량이 많은 시설농업·대규모 어업경영체의 실질 부담이 급증하며 신청·심사·집행에 따른 행정비용과 매년 예산 협의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조세제도 틀 안에서 제도를 정교화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조세지출 방식의 한계가 도래하고 유류에서 전기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재정지원 방식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조세지출 방식은 사용량에 비례해 대규모 경영체에 혜택이 집중되고⁸⁾ 화석연료의 실질가격을 낮춰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급기준량 현실화와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분야부터 대상 선별과 한도 설정이 가능한 재정지원 방식으로의 단계적 재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99%) 중 감차보상재원분(5%)만 제외하고 운수종사자 현금지급분(90%)과 복지기금 재원분(4%)은 94% 경감률로 2029년까지 일몰을 연장하였다. 이 중 복지기금 재원분(2024년 88억원, 2025년 88억 8,200만원)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주된 수입원이나, 세수가 일반재원화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가재정 밖에서 운용됨에 따라 예·결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용 현황도 정기적으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2025년 말 기금 자산은 155억 2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징수액 대비 복지사업 집행률은 2021~2022년 77~80% 수준에서 2023년 64.4%, 2024년 59.4%(2019~2024년 누적 67.6%)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2026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복지사업별 정원 상한(주요 사업 정원 합계가 법인택시 종사자의 8.4%)과 대학생 자녀 보유 등 선별적 자격요건으로 인해 2024년 수혜 인원이 4,674명(법인택시 종사자의 6.5%)에 그치고, 택시기사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자녀학자금지원 대상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학자금 지원은 국가장학금과 목적·기능이 유사해 중복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심층평가는 직접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의 균일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나 전달체계 전환에 따른 행정비용과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의 제약이 있으며, 지원방식 전환만으로는 업종 간 형평성과 제도 중복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복지기금 재원분은 국가재정 밖에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률도 하락하고 있으므로, 사업 구조 개편과 함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재정지출로 전환하거나, 중복 소지가 있는 자녀학자금지원 등을 기존 재정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합리적 선택 기준을 명문화하여 「조세

8) 어업은 소득 5분위 가구가 혜택의 56% 차지, 다만 소득 대비 혜택률은 저소득 농어가가 더 높다.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모든 항목을 일시에 전환하기보다 이 기준에 따라 추가 정비 대상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재정사업과의 중복이나 집행 부진, 상위 정책목표와의 상충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 조세특례가 일몰될 때에는 전면적 또는 부분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국회도 예산안과 조세지출예산서를 긴밀히 연계하여 동일한 정책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

정부출자수입¹⁾은 정부의 공공기관 등(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지분출자나 그 외 출자 형태의 투자행위를 통해 반대급부로서 정부가 수취하는 배당수입 등²⁾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유재산법」³⁾에 따라, 국가가 지분을 보유한 정부출자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환수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출자기관은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연말에 확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 등 출자주주에 대한 배당액 또한 확정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해의 다음 연도 세입예산안 또는 기금수입계획안에 해당 배당수입의 예상액을 세외수입 항목으로 편성·계상한다.⁴⁾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명시된 40개 정부출자기관(정부배당대상기업)⁵⁾⁶⁾ 중 그 해에 배당가능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 정부출자지분을 고려하여 각 회계·기금에 배당수입액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 국가가 직접 보유하지는 않으나 기금 명의로 이루어지는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대한 사업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일부 배당수입액을 편성하여 수취하고 있다.

최성찬 예산분석관(csc@assembly.go.kr, 6788-3745)

곽보영 예산분석관(bykkwak@assembly.go.kr, 6788-4681)

1) 코드: 각 회계·기금 52-521. 단, 일부 기금(증진기금)은 54-546 중 배당금에 관한 부분을 포함함

2) 배당수입 외에 경유출자한 펀드 및 특수목적법인(SPC) 등의 청산·자금회수분도 일부 포함한다.

3)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다만, 각 정부출자기관별 다음 연도의 구체적인 배당계획액은 금년도 연말에 해당 기관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므로, 예산안 제출(9월 초) 시점에서는 추정치에 근거하여 편성된다.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이사회 의결(2026.8.25.)에 따라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주식회사 에스알을 포함한다. 주식회사 에스알은 전체 정부 보유지분(지분율 100%)이 한국철도공사로 이전(현물출자)되었으며, 2026.9.1.부로 사업부문이 한국철도공사에 통합되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정부배당대상기업) 현황(영 제67조의2)]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 (35)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4개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¹⁾ , 주택도시보증공사, 88관광개발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투자공사
공공기관 외 (5)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주: 1) 주식회사 에스알은 전체 정부 보유지분(지분율 100%)이 한국철도공사로 이전(현물출자)되었으며,
법인은 2026.8.25.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음

1. 각 기관의 순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2 및 별표에 열거된 순서에 따름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전체 회계·기금의 정부출자수입 편성액은 1조 8,208
억원으로 2026년 예산(2조 2,591억원) 대비 4,382억원(19.4%) 감소하였다. 회계·
기금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026년 대비 편성액이 3,923억원(27.1%),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에서 952억원(48.8%) 감소하였으며, 반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87억
원(35.8%), 기후대응기금에서 111억원(185.4%) 증가하였다.

한편, 2026년 전체 회계·기금의 정부출자수입 실제 징수액은 예산 편성액보다
1조 6,195억원(71.7%) 많은 3조 8,786억원이었다.

[2027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현황(회계·기금별 분류)]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소관 부처명	2025		2026		2027	(B-A) /A
			예산	결산	예산(A)	징수결정액	예산안(B)	
일반회계		재경부	1,045,447	1,712,632	1,450,094	2,243,042	1,057,801	△27.1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	국토부	75,457	75,467	71,871	76,072	76,073	5.8
	항공공항		188,622	221,034	225,896	319,416	225,896	전년 동
	항만	해수부	7,320	13,491	13,490	16,092	13,490	전년 동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소관 부처명	2025		2026		2027	(B-A) /A
			예산	결산	예산(A)	징수결정액	예산안(B)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¹⁾		기후부	19	-	10,593	24,628	-	순감
기후대응기금			4,242	5,478	5,964	7,754	17,023	185.4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¹⁾		산업부	8,596	24,396	6,460	8,131	-	순감
자원안보기금(신설)			-	-	-	-	21,556	순증
소부장공급망 특별회계		산업부	4,757	12,685	12,685	14,215	10,003	△21.1
환경개선특별회계		기후부	127	-	127	1	130	2.4
과학기술진흥기금 ²⁾		과기부	-	-	-	-	-	-
기술보증기금		중기부	2,908	834	3,387	1,751	2,618	△22.7
신용보증기금		금융위	478	9,456	1,529	21,285	5,978	291.0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227,459	167,736	195,258	159,141	100,019	△48.8
외국환평형기금		재경부	80,000	113,829	80,258	83,503	109,002	35.8
주택도시 기금	주택	국토부	670,839	296,325	165,901	883,052	165,901	전년 동
	도시		4,956	9,836	3,679	7,738	3,044	△17.3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기부	9,665	13,026	11,867	12,749	12,279	3.5
계			2,330,892	2,676,225	2,259,059	3,878,570	1,820,813	△19.4

주: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 및 자원안보기금(신설)으로의 세입 이관 부분은 정부제출 예산안에 따른 것이며, 향후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임

2)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25년도 이후로는 배당수입을 편성·징수하지 않고 있음

1. 2026년 징수결정액은 2026년 8월 말 기준임

2. 각 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은 본예산(본계획)과 추경예산(수정계획)이 동일함

3. 외국환평형기금의 2026년 징수결정액은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에 따름

자료: 각 부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7년도 예산안 기준 전체 정부출자수입 편성액(1조 8,208억원)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명시된 정부출자기관(정부배당대상기업)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입액은 1조 5,608억원으로 전체 정부출자수입 편성액의 85.7%에 해당한다. 나머지 2,600억원은 정부출자기관이 아닌 리츠(REITs), 모태펀드, 사모펀드 등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의 배당이나 기금이 출자하는 기관 또는 보증연계투자, 유동화회사보증 등으로부터의 배당이 차지하고 있다.

[2027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현황(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정부출자기관 여부)]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계(A)	정부배당대상기업 출자에 대한 배당		그 외의 출자에 대한 배당	
		편성액(B)	비중 (B/A)	편성액	세부 출자내용
일반회계	1,057,801	1,057,801	100.0	-	-
교통시설특별회계	315,459	315,459	100.0	-	-
소부장공급망특별회계	10,003	10,003	100.0	-	-
환경개선특별회계	130	130	100.0	-	-
과학기술진흥기금	-	-	-	-	사모펀드(SPC) 투자
기술보증기금	2,618	-	-	2,618	보증연계투자, 유동화회사보증 등
기후대응기금	17,023	17,023	100.0	-	-
신용보증기금	5,978	-	-	5,978	보증연계투자, 유동화회사보증 등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100,019	-	-	100,019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
외국환평형기금	109,002	109,002	100.0	-	-
자원안보기금(신설)	21,556	21,556	100.0	-	-
주택도시 기금	주택계정	165,901	29,790	18.0	리츠(임대·신도시) 사업출자
	도시계정	3,044	-	3,044	도시재생리츠 사업출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2,279	-	-	12,279	한국벤처투자, 한국거래소 등
계	1,820,813	1,560,764	85.7	260,049	-

자료: 각 부처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4-1.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편성액의 산출 근거 공개를 통한 국회의 예산 심사권 실질화 필요

가. 현 황

재정경제부는 2027년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에 대하여, 전년(1조 4,501억원) 대비 3,923억원(27.1%) 감액된 총 1조 578억원의 배당예상액을 산출·편성하였으나, 그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 배당여력 등 정부배당수입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총액 근거(전체 기관의 추정 당기순이익 합계 총 11조 7,559억원, 평균 배당성향 34.00%)만을 국회에 제공하고 있다.⁷⁾

그 결과, 기관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 수치가 어떠한지는 물론, 정부출자기관(40개) 중 실제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조차 국회에서는 알 수가 없어,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연도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예산 ¹⁾	1,450,094	○(정부출자) 정부배당수입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 배당여력 등)에 근거한 산출배당액
2027 예산안	1,057,801	○(정부출자) 정부배당수입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 배당여력 등) 및 국부펀드 출범을 감안한 산출배당액

주: 1) 이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액 변경사항 없음

자료: 재정경제부 각 연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27년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의 편성근거]

(단위: 억원, %)

구분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A)	정부지분율(일반회계)(B)	평균 배당성향(C)	예상 배당액(D=A×B×C)
일반회계	117,559	기관별로 상이	34.00	10,578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7) 한편, 재정경제부는 전년 대비 정부출자수입 편성액 감액 사유에 대해, 2027년부터 신설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의 출자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국부펀드 출자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에 현물출자로 이전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일반회계의 정부출자수입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일반회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30개 기관을 실질적인 배당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다. 다음연도 배당수입액의 편성은 이들 기관 중에서 당해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일반회계의 정부출자기관별 출자지분율 현황]

(단위: %)

기관명 ¹⁾	일반회계 출자지분율 ²⁾	비고
88관광개발주식회사	100.00	
중소기업은행	59.50	
한국산업은행	91.99	정부 지분율 100.00%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5.05%, (항만계정) 0.46%, 소부장공급망특별회계 1.62%, 기후대응기금 0.88% 제외
한국주택금융공사	59.76	정부 지분율 63.65% 중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3.89% 제외
한국자산관리공사	82.65	정부 지분율 92.61%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9.96% 제외
한국수출입은행	76.06	정부 지분율 76.79% 중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0.73% 제외
한국조폐공사	100.00	
한국투자공사	-	외국환평형기금 100.00%
한국교육방송공사	44.18	정부 지분율 100.00%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55.82% 제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00	
한국방송공사	100.00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22.43	
한국관광공사	55.2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0.00	
한국농어촌공사	100.00	
부산항만공사	87.31	
여수광양항만공사	38.56	정부 지분율 71.20% 중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32.64% 제외
울산항만공사	87.25	정부 지분율 87.31% 중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0.06% 제외
인천항만공사	59.51	정부 지분율 80.67% 중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21.16% 제외
한국해양진흥공사	39.77	정부 지분율 50.81% 중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11.04% 제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0.00	
대한석탄공사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0.00%
대한송유관공사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76%
한국가스공사	22.48	정부 지분율 26.15%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7% 제외

(단위: %)

기관명 ¹⁾	일반회계 출자지분율 ²⁾	비고
한국광해광업공단	5.14	정부 지분율 99.90%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4.76% 제외
한국석유공사	0.20	정부 지분율 100.00%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9.80% 제외
한국전력공사	18.20	
한국지역난방공사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4.55%
한국수자원공사	94.22	정부 지분율 94.71%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0.32%, 기후대응기금 0.1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04% 제외
새만금개발공사	26.72	정부 지분율 100.00% 중 농지관리기금 73.28% 제외
인천국제공항공사	-	교통시설특별회계(항공공항계정) 100.00%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90.6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49.16%
한국공항공사	-	교통시설특별회계(항공공항계정) 95.60%
한국도로공사	-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78.65%
한국부동산원	49.40	
한국철도공사	82.40	정부 지분율 100.00% 중 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17.60%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	19.48	정부 지분율 85.20% 중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65.72% 제외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52.67	정부 지분율 67.96% 중 기후대응기금 15.29% 제외

주: 1)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주식회사 에스알은 전체 정부 보유지분(지분율 100%)이 한국철도공사로 이전(현물출자)되었으며, 현재 해산 및 청산 절차 중인바 제외함

2) ① (정부출자금) ÷ (납입자본금)으로 산출된 지분율로서 발행주식수 기준 지분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 주택도시보증공사

② 이익잉여금을 통한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이 있는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입자본금에는 포함되에도, 출자지분율 계산 시에는 이를 분모에서 제외함 : 예) 중소기업은행

③ 주식발행초과금(발행가액 중 액면가 초과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출자지분율 계산시 반영함 : 예) 주택도시보증공사

1. 2025년 말 기준

2. 타 회계 및 기금에서 출자된 지분은 제외하였음. 따라서 일반회계 지분이 없는 기관의 경우,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서만 출자와 배당이 이루어지는 기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2025회계연도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 재무제표(II)(기후대응기금·농지관리기금), 각 기관 감사보고서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재정경제부는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 시 배당이 예상되는 정부출자기관이 어떤 곳인지 여부 및 산출근거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적기에 국회에 제공·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은 정부배당수입액의 편성 시 그 근거로 ①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②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 및 재정여건, ③ 기업별 배당률 및 배당성향, ④ 동종 민간기업의 배당수준, ⑤ 기업의 자본금, 내부유보금, 부채비율, 과거 배당실적 등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⁸⁾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도 배당수입 예상액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고려요소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민간부문의 배당성향 및 해당 기업체의 경영여건 등⁹⁾을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수입 등 세외수입의 합리적 편성과 수입 증대방안 마련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2027년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편성액 산출 시, ① 2026년도 당기순이익 추정액과 ② 정부(일반회계)의 지분율, ③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어느 정도 비율만큼을 배당으로 지급할 것인지의 결정비율)¹⁰⁾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기관별 배당수입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8)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9) 예시: 최근 3~5년간의 동일업종 배당성향(실적)과 향후 기업체의 수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10) 배당성향이 100%에 가까울수록 당기순이익은 주주인 재정경제부 등에 배당으로 더 많이 지급되며, 반면 해당 정부출자기관 내부에 투자되는 유보 이익의 크기는 줄어든다. 기관별 배당성향은 연말에 있는 기관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의 기관별 배당예상액 산출기준]

$$\begin{aligned} & \text{① 당해연도 기관별 당기순이익 추정액} \times \text{② 정부의 기관별 지분율} \\ & \times \text{③ 기관별 배당성향} \\ & = \text{다음연도 기관별 배당예상액(정부배당수입 예상액)} \end{aligned}$$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로 전년도인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의결·확정 이후¹¹⁾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상세 산출근거에 따르면, 정부는 편성 당시의 2025년도 추정 당기순이익과 정책적으로 적용된 기관별 배당성향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32개 일반회계 지분보유 기관 중 17개 기관에 대하여 배당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이들 17개 기관의 2025년도 당기순이익 추정액(총 8조 4,593억원)에 기관별 정부(일반회계)의 지분율과 기관별 배당성향(평균 33.52%)을 각각 적용하여 편성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였다.¹²⁾

[2026년도(전년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정부제출안)의 상세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A)	정부지분율 (일반회계)(B)	기관별 배당성향 (C)	예상 배당금 (D=A×B×C)
한국토지주택공사	880,736	18.40	19.97	32,361
중소기업은행	2,070,000	59.50	32.90	405,203
한국산업은행	1,520,000	91.99	36.08	504,434
한국주택금융공사	87,188	59.76	37.50	19,538
한국수출입은행	695,302	76.06	35.93	190,044
한국가스공사	403,035	23.78	8.00	7,671
부산항만공사	26,808	87.31	49.93	11,687
한국자산관리공사	51,300	77.79	38.24	15,258
울산항만공사	22,000	87.25	54.00	10,365

11) 2026년 9월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제공한 자료이다.

12) 해당 편성액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별도의 증감 없이 최종 예산으로 확정되었다.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A)	정부지분율 (일반회계)(B)	기관별 배당성향 (C)	예상 배당금 (D=A×B×C)
인천항만공사	60,565	59.51	34.90	12,57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721	100.00	25.04	1,683
한국조폐공사	2,919	100.00	49.13	1,4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19	100.00	42.11	176
한국부동산원	9,980	49.40	43.91	2,165
한국농어촌공사	13,551	100.00	29.85	4,045
한국전력공사	2,508,051	18.20	16.49	75,263
한국수자원공사	100,723	94.17	15.84	15,024
소계	8,459,298	-	33.52	1,308,930
한국산업은행 (재정모펀드 경유출자 ¹⁾ 중 조기 자금회수분)	-	-	-	141,164
계	-	-	-	1,450,094

주: 1)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자본금 중 한국산업은행의 이름으로 재정모펀드(과거 성장지원펀드, 혁신성장뉴펀드 등)에 대해 정부가 경유출자하려는 목적의 증자분을 의미함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2026년 9월 제공)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예산안 심사 시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안 의결·확정 후 비로소 제공된 정보로서, 전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는 국회가 참고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예컨대 산출근거 중에는 기관의 재무여건 외에도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포함된 배당성향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관¹³⁾은 당기순이익 흑자가 예상되더라도 배당수입액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부배당 수입예산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¹⁴⁾

13)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14) 추정 당기순이익은 예산안 제출 시에는 아직 사업연도가 마감되지 않아 내부 추정액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별도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근거를 추정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한편, 기관별 배당성향은 해당 업종 및 기관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로서 최대 15~51%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7년도 예산안은 예년과 달리, 2027년부터 신설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의 출자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의 일부가 한국투자공사로 이전(현물출자)될 예정인바, 이를 감안하여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 편성액의 상당 부분이 감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종목별 지분이전 예상규모 등 감액근거 역시도 재정경제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과거(2025년) 국회예산정책처 등¹⁵⁾에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구체적인 배당수취 예상액 산출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금년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경제부는 기관별 금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은 상장법인의 공시되지 않은 당기순이익 전망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 등에 공개가 곤란하다는 예년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전체 40개 정부배당대상기업 중 상장기업은 총 4개¹⁷⁾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상장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¹⁸⁾만 일부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세부 산출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전체 산출근거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정부출자기관별 배당액 편성 근거를 보면 기관의 그 해 경영환경 등에 따라 배당액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지 않거나 편성된 배당액의 크기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사례가 많은바, 해당 기관의 배당여력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연례적 자료가 아닌 기관의 최근의 경영 및 재무현황을 반영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1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2025.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부처별 II)」, 2025.11.

16) 한편, 기관별 배당성향에 관하여도 재정경제부는, 최근 예산안 편성 시 주로 최근 3개년간의 기관별 평균 배당성향을 적용해왔으나 반드시 3년 평균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예년과 같은 3년 평균치 배당성향을 사용하였는지는 공개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개별 기관별 배당성향 역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7) 정부가 대주주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대주주인 상장 공공기관으로는 (주)강원랜드 등이 있다. (주)강원랜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5년 말 기준 36.27%의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주주이다.

18) 상장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보호하고 있는 법령 및 규정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15조제1항(공정공시대상정보 등)이 있다.

[정부배당대상기업 중 상장기업 현황]

(단위: 원, 억원)

기관명	주무부처	공공기관 유형	한국거래소 상장일자	주당 거래가격	시가총액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부	공기업	1999.12.15.	36,400	33,602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 환경부		1989. 8.10.	30,050	192,910
한국지역난방공사			2010. 1.29.	79,000	9,147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2003.12.24.	20,100	160,283

주: 주당 거래가격과 시가총액은 2026.10.7. 종가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재정경제부 및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종합하면,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편성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재정경제부는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기에 국회에 제공·공개하여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4-2. 과소 편성된 일반회계 등 정부출자수입 세입예산액의 증액 조정 필요

가. 현 황

일반회계를 비롯한 일부 회계·기금은 2026년도의 경우, 정부출자수입 실제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계획) 대비 많아 예산이 과소 편성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 편성액 역시 금년도 징수실적에 비해 낮거나, 2026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는바, 이들 회계·기금에 대해서는 정부출자수입 예산액의 과소 편성 여부를 회계·기금별로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주요 회계·기금의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소관 부처명	2025		2026		2027	(B-A) /A
			예산	결산	예산(A)	징수결정액	예산안(B)	
일반회계		재경부	1,045,447	1,712,632	1,450,094	2,243,042	1,057,801	△27.1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공공항 계정	국토부	188,622	221,034	225,896	319,416	225,896	전년 동

주: 1. 2026년 징수결정액은 2026년 8월 말 기준임

2. 각 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은 본예산(본계획)과 추경예산(수정계획)이 동일함

자료: 각 부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이들 각 회계·기금의 출자기관(정부배당대상기업)별 배당액 세부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3~2027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기관별 현황(정부제출안 기준)]

(단위: 억원)

회계· 기금	기관명	2023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7년도 예산안
일반 회계	한국토지주택공사	1,092	708	377	324	비공개
	중소기업은행	3,297	3,990	4,309	4,052	

(단위: 억원)

회계· 기금	기관명	2023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7년도 예산안
	한국산업은행	2,473	2,871	2,876	6,456 ¹⁾	비공개
	한국주택금융공사	203	138	293	195	
	한국수출입은행	1,392	1,407	1,648	1,900	
	한국가스공사	530	-	164	77	
	부산항만공사	226	128	94	117	
	한국자산관리공사	99	147	172	153	
	울산항만공사	131	148	147	104	
	인천항만공사	-	-	172	1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14	23	17	
	한국조폐공사	2	6	2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	9	2	
	한국부동산원	12	15	14	22	
	한국방송공사	0.2	-	-	-	
	한국농어촌공사	59	59	76	40	
	한국전력공사	-	-	-	753	
	한국수자원공사	1,263	191	80	150	
	일반회계 계	10,787	9,823	10,454	14,501	10,578
교특 회계 (항공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	-	1,886	2,259	2,259
	한국공항공사	-	-	-	-	-
	교특회계(항공공항) 계	미편성	미편성	1,886	2,259	2,259

주: 1) 한국산업은행의 2026년도 일반회계 편성액은 재정모펀드 경유출자에 대한 회수금 1,412억원을 포함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일반회계 및 교통시설특별회계(항공공항계정)는 정부출자수입 편성액이 실질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배당예상액에 비해 과소 편성 소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재원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입 편성액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1) 일반회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의 연도별 편성·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편성액이 실제 징수한 배당액 대비 과소하여 초과 징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의 예산안 편성 및 실제 배당 수취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를 제외¹⁹⁾하고는 매년 실제 수취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하는 과소 편성이 발생하였다.

2026년도의 경우에도 실제 정부가 수취한 배당수입액은 2조 2,430억원이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 편성액(1조 4,501억원)을 54.7%(7,929억원) 초과한 것이었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이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예산(본예산 기준) 편성 및 배당수취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¹⁾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예산 (본예산 편성)(A)	858,200	1,078,749	982,344	1,045,447	1,450,094	1,057,801
결산 (실제 배당수취)(B)	1,682,597	941,196	1,603,347	1,712,632	2,243,042	
차이(B-A)	824,397	△137,553	621,003	667,185	792,948	
수취율(B/A)	196.1	87.2	163.2	163.8	154.7	

주: 1) 2022년도는 연초에 각 기관의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5.13. 제출, 5.29.의결)을 통해 실제 배당확정액(총 1조 6,826억원)에 맞게 정부출자수입 예산액이 경정되었음

자료: 재정경제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9) 2023년도는 한국산업은행(△971억원 과소), 한국수자원공사(△647억원 과소), 한국가스공사(△530억원 과소), 한국수출입은행(△474억원 과소) 등을 중심으로 당초 편성된 배당 예상액 대비 실제 정부가 수취한 배당금이 과소한 경우가 발생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액 대비 실제 수취·징수한 금액이 낮았다(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및 「2023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추정액 중 정부의 배당수취 비율이 예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앞서 살펴 보았듯, 재정경제부는 별도의 기관별 배당수취 예상 근거에 대한 공개 없이, 전체 기관 합계액에 대해서만 추정 당기순이익 총 11조 7,559억원, 평균 배당성향을 34.00%로 밝히고 있다. 이는 예년 대비 추정 당기순이익은 대폭 증가한 것이며, 평균 배당성향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 당기순이익 총액 대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편성액의 비중은 전년(17.1%) 대비 절반 수준인 9.0%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2027년부터 신설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의 출자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의 일부가 한국투자공사로 이전(현물출자)되어 정부지분율이 각각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보유한 정부출자기관²⁰⁾ 보유 지분이 절반 가깝게 한국투자공사에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 일반회계의 추정 당기순이익 대비 정부배당수입 편성액 비율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전년도 추정 당기순이익 계 (A)	정부지분율 (일반회계) (B)	평균 배당성향 (C)	예상 배당액 계 (정부출자수입 편성액) (D=A×B×C)	당기순이익 대비 정부출자수입 편성액 (D/A)
2024	53,502	기관별로 상이	35.97	9,823	18.4
2025	56,165		35.13	10,454	18.6
2026	84,593		33.52	14,501	17.1
2027(안)	117,559		34.00	10,578	9.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단, 2024~2026년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부처별 II)」, 2025.11.에서 재인용

그런데 실제 정부 보유지분의 대규모 이전(현물출자)이 배당기준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배당이 실제 발생하는 정부출자기관(정부배당대상기업)에 한한다.

공공기관의 차년도 배당지급액이 정부 외에 이전되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또는 주주의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에 현물출자 및 주주 변경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²¹⁾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배당기준일이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인 점²²⁾을 고려하면, 이는 금년 말까지 일반회계에서 한국투자공사로의 주식 현물출자 이전이 상당 부분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부출자기관 등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²³⁾ 외에도 「국유재산법」상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²⁴⁾ 재정경제부장관의 재산가격 결정²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기준으로 정부배당액이 편성된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누적 출자액은 111조원 이상²⁶⁾이며, 정부 보도자료²⁷⁾에 따르면이라도 국부펀드에

21) 「상법」 제464조 본문에 따라 주주의 이익배당은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기준시점의 보유주식 수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이를 위해 「상법」 제354조제1항은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배당기준일(record date)을 규정하고 있다.

22) 다만, 중소기업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상장 공공기관의 경우, 법무부의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과 금융위원회의 「배당절차 개선방안」(2023.1.)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12월 31일(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이 아닌, 다음해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주식은 해당 배당기준일 이전까지만 현물출자(이전)되면 배당액의 이전이 가능하다. 참고로 중소기업은행의 2026년 정기 배당기준일은 3월 31일(분기배당 제외)이다(당행의 배당기준일은 정관 제7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음).

23) 정관의 변경,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정, 주주의 변경 등기 등. 단, 정부가 하는 현물출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에 따라 「상법」상 일부 절차(현물출자의 검사 및 법원에 대한 이행 보고, 현물출자의 증명 등)가 면제된다.

24) 「국유재산법」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정부출자기업체는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주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를 붙여 총괄청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국유재산법」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산가격을 결정한다.

제65조(현물출자 평가기준일) 법 제62조에 따라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전을 추진 중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주식 현물출자 예상 규모는 16조원 이상으로 대규모에 달하는바, 관련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지분 이전이 배당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부펀드의 출범은 국회의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물출자 자체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행법상 별도로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²⁸⁾²⁹⁾ 이번 국부펀드 출범은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 마련³⁰⁾ 외에도, 전략투자계정 신설을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³¹⁾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해당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 경과) 전이라도 국부펀드 재원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³²⁾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 심사·의결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후속 현물출자 실무절차 역시 상당 부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유로 만일 금년도 말까지 목표로 한 현물출자 절차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편성 근거 대비 이전되지 않은 지분에 대한 배당은 종전과 같이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징수되는바, 이는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의 초과 징수 및 예산안 과소 편성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 2025년 말 기준(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6.6.을 바탕으로 재작성)

27)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보도자료, 2026.7.31.

28) 현행법상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달리 예산안 등에 포함되지 않아(「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 국회의 심의 절차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사후적으로 결산 시에 현물출자명세서를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절차 통제 측면에서 정부의 대규모 지분 이전은 별도의 사전적 국회 관여 없이 정부의 재량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9)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과거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 심의 및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법부의 감독 및 통제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2024 및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

30)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2105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21056호)

3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1706호)

32) 안 부칙 제3조(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할 재산을 공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한편, 기관별로도 당기순이익 또는 배당성향의 과소 추정 등으로 인해 편성액이 과소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들 기관은 금년도 경영실적 역시 양호하여 배당이 예상되는 기관인바, 만일 2027년도 역시 예년과 유사하게 배당 예상액이 편성되었을 경우, 이들 기관은 예산안이 과소 편성되었을 소지가 있다. 기관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당초 편성 당시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6,953억원으로 산정하여 배당예상액을 1,9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금년도 집행 결과, 실제 2025년 당기순이익은 추정치의 2.4배에 달하는 1조 6,850억원 규모였으며, 배당성향은 예상치(35.93%) 대비 소폭(0.87%p) 높은 36.80%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2026년 실제 배당수입은 편성액 대비 2,817억원 많은 4,717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편성액의 248.3%에 달한다.

[연도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정부출자수입 세부 산출근거 및 실적 현황(일반회계)]
(단위: 억원, %)

예산안 회계연도	기관명	전년도 당기순이익	정부지분율 (일반회계)	배당성향	정부배당액	편성 대비 수취	
		(A)	(B)	(C)	(D=A×B×C)	비율	차이
2025	편성액(예산)	6,228	75.64	34.98	1,648	170.0	1,153 (초과)
	실제 수취(결산)	9,796	75.64	37.80	2,801		
2026	편성액(예산)	6,953	76.06	35.93	1,900	248.3	2,817 (초과)
	실제 수취	16,850	76.06	36.80	4,717		
2027	편성액(예산안)	비 공 개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2023년도 예산안의 편성 근거)을 제외하고는 매년 당기순이익 규모가 실제 대비 과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5년 당기순이익의 경우,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상반기 당기순이익과 동일한 6,953억원으로 추정하여 사실상 2025년

하반기에 경영실적이 수지균형 수준을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반기보다 대폭 높은 9,89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연간 당기순이익은 총 1조 6,850억원 규모).

[한국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간 추정 및 실제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당기순이익 연도 (예산안 회계연도)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2025 (2026)	2026 (2027(안))
편성 당시	당기순이익(상반기)	실제	4,857	9,491	5,073	6,953	5,317
		추정	5,553	5,330	6,228	6,953	비공개
실제	당기순이익(연간)	실제	3,869	7,228	9,796	16,85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각 기관 경영공시자료,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2025년 하반기에 예측 대비 높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은 대손충당금 환입과 같은 회계상 요인³³⁾ 외에도, 은행의 고유사업인 이자수익 부문에서 조달 비용을 뛰어넘는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자수익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는 2026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역시 예년과 비슷한 5,317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이들 이자수익 부문의 지속적 개선 효과에 대한 별도의 충분한 고려 없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배당수입액을 편성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배당수입액이 과소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33)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에 대비해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이후 차주의 경영 정상화, 담보 회수, 여신위험 재평가 등에 따라 적립된 대손충당금을 이익으로 환입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25년 하반기의 회계상 대손충당금 순환입(환입액-적립액) 규모가 +6,496억원에 달하였는데, 이는 2024년 하반기의 △710억원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서 2025년도 하반기 당기순이익 증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이러한 충당금 환입은 일단 여신이 정상화되면 이후 해당 여신에 대해서는 추가 환입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개선요인으로는 보기 어렵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분기별 이자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5				202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이자수익(A)	13,664	13,224	12,799	12,714	12,215	13,047
이자비용(B)	11,261	10,787	10,830	10,601	9,683	10,311
순이자이익(A-B)	+2,404	+2,437	+1,969	+2,114	+2,532	+2,73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중소기업은행**은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당초 편성 당시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조 700억원으로 산정하여 배당예상액을 4,05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금년도 집행 결과, 실제 2025년 당기순이익은 추정치보다 높은 2조 3,858억원이었으며, 배당성향은 예상치(32.90%)보다 2.13%p 높은 35.03%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2026년 실제 배당수입은 편성액 대비 920억원 많은 4,972억원(분기배당액 제외)³⁴⁾이 징수되었다.

[연도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정부출자수입 세부 산출근거 및 실적 현황(일반회계)]

(단위: 억원, %)

예산안 회계연도	기관명	전년도 당기순이익 (A)	정부지분율 (일반회계) (B)	배당성향 (C)	정부배당액 (D=A×B×C)	편성 대비 수취	
						비율	차이
2025	편성액(예산)	23,000	59.50	31.49	4,309	117.3	744 (초과)
	실제 수취(결산)	24,281	59.50	34.98	5,053		
2026	편성액(예산)	20,700	59.50	32.90	4,052	122.7	920 (초과)
	실제 수취	23,858	59.50	35.03	4,972 ¹⁾		
2027	편성액(예산안)	비 공 개					

주: 1) 실제 정부가 수취한 2026년 배당수입액 5,968억원에서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대한 배당분 996억원을 차감한 수치임(즉, 2025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배당분만을 기재한 것임)

참고로, 중소기업은행은 2026년부터 배당횟수를 2회로 분할하여,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대한 배당을 같은 해 하반기에 지급하는 분기배당을 실시하였음. 이에 따른 정부배당액 996억원은 종전 대로라면 2027년에 일반회계로 지급되었어야 하나, 분기배당에 따라 2026년 세입으로 징수되었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34) 종전대로라면 2027년도에 지급받았을 2026년도 실적분 배당수입액 중, 연 2회 분할배당 시행(2026년부터)에 따라 2026년 하반기에 선지급된 2026년 상반기 실적분 분기배당 수입액 99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단, 해당 수입액 996억원은 2026년도의 세입으로 처리됨).

중소기업은행의 최근 5년간 추정 배당성향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실제 배당성향에 비해 보수적으로 낮게 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시 중소기업은행에 적용된 추정 배당성향은 실제 배당성향에 비해 매년 2.06~4.53%p가량 낮았다.

특히 상장기업인 중소기업은행은 타 시중은행과 달리 자기주식의 매입·소각 없이 연례적으로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의 배당성향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6년 예산안 기준 중소기업은행의 실제 배당성향은 35.03%로 2022년 대비 4.30%p 상승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의 2022~2026년도 배당성향의 추정치와 실제치]

(단위: %, %p, 억원)

예산안 회계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배당성향	배당액	배당성향	배당액	배당성향	배당액	배당성향	배당액	배당성향	배당액
추정치 (편성시)	26.20	2,182	27.71	3,297	30.48	3,990	31.49	4,309	32.90	4,052
실제치 (수취시)	30.73	3,701	31.19	4,555	32.54	4,668	34.98	5,053	35.03	5,968
차이	4.53	1,519	3.48	1,258	2.06	678	3.49	744	2.13	1,916

주: 각 연도 예산안에 편성된 배당액은 전년도에의 기관 경영실적을 근거로 한 것임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각 기관 감사보고서,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금년부터 중소기업은행은 종전 연 1회였던 배당주기를 연 2회로 변경하여 하반기에 추가 배당(분기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행의 주주는 종전대로라면 내년이 되어서야 수취할 수 있었던 2026년 경영실적에 대한 배당금을 금년도부터는 당해 연도에 일부 수취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행은 전반적으로 주주의 배당에 대해 우호적인 경영방향과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별도의 충분한 고려 없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배당수입액을 편성할 경우,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배당수입액이 과소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당초 편성 당시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1조 5,200억원으로 산정하여 배당예상액을 6,456억원(재정모펀드 회수 금액 1,412억원 포함)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금년도 집행 결과, 실제 2025년 당기순이익은 추정치보다 높은 1조 7,152억원이었으며, 배당성향은 예상치(46.17%)보다 5.17%p 높은 51.34%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2026년 실제 배당수입은 편성액 대비 1,645억원 많은 8,101억원이 징수되었다.

[연도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정부출자수입 세부 산출근거 및 실적 현황(일반회계)]

(단위: 억원, %)

예산안 회계연도	기관명	전년도 당기순이익	정부지분율 (일반회계)	배당성향 (특별배당 포함)	정부배당액	편성 대비 수취	
		(A)	(B)	(C)	(D=A×B×C)	비율	차이
2025	편성액(예산)	9,000	91.94	34.76	2,876	242.4	4,096 (초과)
	실제 수취(결산)	20,072	91.90	37.80	6,972		
2026	편성액(예산)	15,200	91.99	46.17 ¹⁾	6,456 ¹⁾	125.5	1,645 (초과)
	실제 수취	17,152	91.99	51.34 ²⁾	8,101 ²⁾		
2027	편성액(예산안)	비 공 개					

주: 1) 한국산업은행의 2026년도 편성액은 재정모펀드 경유출자에 대한 회수금(특별배당) 1,412억원을 포함한 것이며, 배당성향 역시 해당 부분(+10.09%p)만큼 조정한 것임(제외시 36.08%)

2) 한국산업은행의 2026년도 실제 수취액은 재정모펀드 경유출자에 대한 회수금(특별배당) 2,294억원(단, 전체 경유출자 회수금은 소부장특별회계 회수분을 포함한 2,494억원임)을 포함한 것이며, 배당성향 역시 해당 부분(+14.54%p)만큼 조정한 것임(제외시 36.8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산업은행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상반기에 발생하여 상반기 당기순이익과 연간 당기순이익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총 1조 1,0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58.0% 수준으로서, 금년도 경영실적은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은행의 최근 5년간 추정 및 실제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당기순이익 연도 (예산안 회계연도)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2025 (2026)	2026 (2027(안))
편성 당시	당기순이익(상반기)	실제	4,695	28,146	16,738	19,084	11,073
	당기순이익(연간)	추정	8,000	8,400	9,000	15,200	비공개
실제		실제	4,650	30,271	20,072	17,152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각 기관 경영공시자료,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바탕으로 작성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정부로부터 경유출자 받아 운용 중인 재정모펀드의 회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 운용하고 있는 성장지원펀드, 혁신성장 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 등의 기존 정책펀드는 아직 청산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청산 전 투자목표 달성 등으로 출자금이 조기 회수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해당 회수액은 다른 신규 정책펀드 자금으로 재투자되기도 하지만, 특별배당의 형태로 정부 재정에 최종 회수되는 경우도 있다.³⁵⁾ 따라서 예산안 편성 시 이들 재정모펀드 회수액 증가 추세에 대한 별도의 충분한 고려가 없을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배당수입액의 과소 편성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은행의 재정모펀드 연도별 회수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9.
성장지원펀드	60	336	140	310	317	286	193
기업구조혁신펀드	-	-	10	23	146	57	32
소부장펀드	-	-	172	197	514	218	308
혁신성장 뉴딜펀드	-	-	2	30	190	1,279	819
혁신성장펀드	-	-	-	-	2	43	80
계	60	336	324	560	1,169	1,883	1,432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5) 재정모펀드 회수액은 2024년에는 600억원, 2025년에는 1,238억원이 혁신성장펀드 자금으로 재투자되었으며, 2026년에는 2,494억원이 특별배당 형태로 정부 재정에 회수되었다(단, 재정모펀드 회수 시점과 재투자 및 재정회수(특별배당)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음).

종합하면, 2027년도 일반회계의 정부출자수입 편성액은 ① 결산 결과 실제 징수액 대비 과소 편성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으며, ② 주요 감액근거인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의 출자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지분의 대규모 이전(현물출자) 절차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③ 일부 공공기관은 배당예상액 산출 근거인 기관별 당기순이익 또는 배당성향이 과소 추정되었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재원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입 편성액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교통시설특별회계(항공공항계정)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항공공항계정은 2024년도부터 배당수입액이 발생하였는데, 2023년(2024년 예산안의 편성 근거)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만 배당수입액이 편성되고 있다.³⁶⁾

그런데 항공공항계정은 2024년 이후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실제 징수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하는 과소 편성이 발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에도 실제 정부가 수취한 배당수입액은 3,194억원이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 편성액(2,259억원)을 41.4%(935억원) 초과한 것이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특별회계 항공공항계정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이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교통시설특별회계(항공공항계정) 정부출자수입 예산(본예산 기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예산 (본예산 편성)(A)	미편성	미편성	미편성	188,622	225,896	225,896
결산 (실제 배당수취)(B)	-	-	224,780	221,034	319,416	
차이(B-A)	-	-	224,780	32,412	93,520	
수취율(B/A)	-	-	순증	117.2	141.4	

자료: 국토교통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도 항공공항계정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2,259억원)으로 배당예상액이 편성된 상황이다. 이에 배당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추정된 당기순이익 또는 배당성향 등이 실제 기관의 경영여건에 비추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6) 반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는 배당수입액이 편성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당초 편성 당시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5,647억원으로 산정하여 배당예상액을 2,259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금년도 집행 결과, 실제 2025년 당기순이익은 추정치의 123.0%인 6,944억원 규모였으며, 배당성향은 당초 예상치(40.00%) 대비 6.00%p 높은 46.00%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2026년 실제 배당수입은 편성액 대비 935억원 많은 3,194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편성액의 141.4% 수준이다.

[연도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의 정부출자수입 세부 산출근거 및 실적 현황]

(단위: 억원, %)

예산안 회계연도	기관명	전년도 당기순이익	정부지분율 (교특회계)	배당성향	정부배당액	편성 대비 수취	
		(A)	(B)	(C)	(D=A×B×C)	비율	차이
2024	편성액(예산)	순손실 예상	100.00	-	미편성	순증	2,248 (초과)
	실제 수취(결산)	4,913	100.00	45.76	2,248		
2025	편성액(예산)	4,716	100.00	40.00	1,886	117.2	324 (초과)
	실제 수취(결산)	4,805	100.00	45.99	2,210		
2026	편성액(예산)	5,647	100.00	40.00	2,259	141.4	935 (초과)
	실제 수취	6,944	100.00	46.00	3,194		
2027	편성액(예산안)	5,647	100.00	40.00	2,259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2023년(2024년도 예산안의 편성 근거)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이 실제 규모 대비 과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5년 당기순이익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당기순이익(2,239억원)을 참고하여 하반기 당기순이익을 3,408억원(연간 기준 5,647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하반기 실적은 추정치보다 1,297억원 많은 4,705억원(연간 기준 6,9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이미 전년도 상반기의 137.2% 수준인 3,073억원을 기록하고 있는바, 이는 전년에 비해 금년도의 경영실적이 더욱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금년도 연간 당기순이익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5,647억원으로 추정하였는바, 이는 금년도 경영실적에 근거한 2027년도 배당 수입 편성액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과소 편성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근 5년간 추정 및 실제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당기순이익 연도 (예산안 회계연도)		2022 (2023)	2023 (2024)	2024 (2025)	2025 (2026)	2026 (2027(안))
편성 당시	당기순이익(상반기)	실제	△3,500	2,303	2,294	2,239	3,073
		추정	순손실 예상		4,716	5,647	5,647 ¹⁾
실제	당기순이익(연간)	실제	△5,273	4,913	4,805	6,944	

주: 1) 공사가 제출한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5,359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각 기관 경영공시자료, 「2026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내역 보고」를 바탕으로 작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실적 개선은 영업활동에 따른 경상적 요인과 자산재평가 및 손해배상금과 같은 비경상적 요인이 혼재된 데에 따른 것이다.³⁷⁾ 2025년의 경우, 법인세 차감 전 기준으로 순이익의 61.1%가 경상적 분야에서, 나머지 38.9%가 비경상적 분야³⁸⁾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2026년도 역시 비경상적 이익이 상당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에 이어서 면세점 사업권³⁹⁾ 반납에 따른 위약금 수입 잔여분이 징수될 예정이며, 골프장 운영의 경우 종전의 소송 외에 후속 사업자와도 유사한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

37)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2026.9.를 참고하였다.

38) 구체적으로는 면세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1,778억원), 골프장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금(758억원), BMW드라이빙센터의 BOT 기간 종료에 따른 자산수증이익(543억원) 등이다.

39) DF1 구역의 신라면세점, DF2 구역의 신세계면세점

다. 이들 모두 2026년도 공사의 당기순이익 및 배당여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인바, 예산안 편성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202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 발생구조]

(단위: 억원, %)

구분	내용	2024	2025	비중
경상적 손익(A)	영업이익 중 본업 기반 이익	5,910	5,215	61.1
비경상적 손익(B)	면세점 계약해지 손해배상금, 자산수증이익, 충당부채 환입, 소송관련 등 일회성 이익	117	3,320	38.9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A+B)	6,027	8,535	100.0
당기순이익	(A+B)-(법인세 비용)	4,805	6,944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2026.9.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도별 감사보고서(별도)를 바탕으로 재작성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추정 배당성향을 3년간 실제 평균 배당성향(45.92%)에 미달하는 40.00%로 가정하여 항공공항계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는 예년과 동일한 추정치로서,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배당성향을 평년과 같이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배당성향이 45.76~46.0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보수적 추정은 2027년도에도 배당수입 예상액의 과소 편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반적으로 편성 근거 대비 당기순이익 및 배당성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배당수입액을 편성한 것은 과소 편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재원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항공공항계정에 대해서도 정부출자수입 편성액을 일부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현 황

(1) 재무위험 관리를 위한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등 재무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국가재정법」 제9조의2¹⁾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²⁾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³⁾에 근거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다.

2026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개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총 37개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년도 대상 기관과 비교할 때,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회계연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여 신규로 추가되었다.

박소희 예산분석관(parksh@assembly.go.kr, 6788-4683)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한주희 예산분석관(hnjuhi@assembly.go.kr, 6788-4685)

1)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사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현황]

구분		공공기관
공기업 (20개)	손실보전규정有 (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u>한국광해광업공단</u>
	손실보전규정無 (1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주)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u>한국석유공사</u>
준정부기관 (17개)	손실보전규정有 (7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손실보전규정無 (10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 밑줄로 표시된 기관은 자본잠식 기관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재무전망

① 개요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하 “2026~2030년 계획”이라 함)에 따르면, 37개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2026년 자산 규모는 2025년(1,086.5조 원) 대비 65.6조원 증가한 1,152.1조원으로 예상되고, 2030년에는 2026년 대비 305.8조원 증가한 1,457.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공공기관의 2026년 부채 규모는 2025년(720.0조원) 대비 58.3조원 증가한 778.3조원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208.2%로 전년(196.5%) 대비 11.7%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30년에는 부채 규모가 2026년 대비 219.1조원 증가한 997.4조원으로 확대되고, 부채비율도 216.6%로 8.4%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상 공공기관(37개)의 2026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2.0조원으로 2025년 (12.8조원)보다 10.8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에너지 가격, 환율 등의 상승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2028년 11.7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30년에는 9.5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전체 재무전망]

(단위: 조원, %, %p)

구분	2025(실적) (A)	2026 (B)	증감 (B-A)	2027	2028	2029	2030 (C)	증감 (C-B)
자산	1,086.5	1,152.1	65.6	1,221.4	1,305.3	1,381.9	1,457.9	305.8
부채	720.0	778.3	58.3	828.0	892.9	949.4	997.4	219.1
부채비율	196.5	208.2	11.7	210.5	216.5	219.5	216.6	8.4
당기순이익	12.8	2.0	△10.8	10.9	11.7	10.8	9.5	7.5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분야별 자산·부채 전망

세부 분야별로 자산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37개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2026~2030년 5년간 전체 총자산 증가분 305.8조원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SOC 분야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SOC 분야(229.2조원 증가)는 택지·주택공급 확대와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예상되며, 에너지 분야(42.6조원 증가)는 송배전설비·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예상된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이 2026년 276.3조원에서 2030년 478.9조원으로 202.6조원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6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분야별 자산 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25 (실적)	2026 (A)	2027	2028	2029	2030 (B)	증감 (B-A)
◦ 전체(37개)	1,086.5	1,152.1	1,221.4	1,305.3	1,381.9	1,457.9	305.8
－ SOC(7개)	436.3	470.0	522.2	587.7	647.2	699.2	229.2
－ 에너지(11개)	341.1	357.9	368.1	379.8	387.6	400.5	42.6
－ 금융(11개)	268.0	278.9	282.5	285.7	291.1	299.6	20.7
－ 기타(8개)	41.0	45.3	48.6	52.1	56.0	58.7	13.4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한편, 세부 분야별 부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37개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2026~2030년 5년간 전체 총부채 증가분 219.1조원 중 190.6조원(87.0%)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SOC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SOC 분야의 부채 규모는 2026년(311.6조원) 대비 190.6조원 증가한 502.2조원, 부채비율은 58.1%p 증가한 254.9%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건설·매입·임대운영 물량을 늘리면서 기금과 사채 차입이 증가하고 임대보증금 수납이 누적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규모는 2026년 197.5조원에서 2030년 372.8조원으로 175.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에너지 분야의 부채 규모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전력망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2026년(299.3조원) 대비 18.0조원 증가한 317.3조원으로 추정되며, 동기간 부채비율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 개선 등으로 128.2%p 감소한 381.7%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 분야의 부채 규모는 코로나 시기 집행된 정책자금의 상환 확대 등으로 2030년 140.2조원(2026년 대비 △0.5조원), 부채비율은 88.0%(△13.8%p)로 전망된다.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분야별 부채 전망]

(단위: 조원, %, %p)

구분		2025 (실적)	2026 (A)	2027	2028	2029	2030 (B)	증감 (B-A)
전체 (37개)	부채	720.0	778.3	828.0	892.9	949.4	997.4	219.1
	부채비율	196.5	208.2	210.5	216.5	219.5	216.6	8.4
SOC (7개)	부채	282.7	311.6	356.7	414.7	464.2	502.2	190.6
	부채비율	184.0	196.8	215.5	239.8	253.6	254.9	58.1
에너지 (11개)	부채	284.4	299.3	301.8	306.8	311.6	317.3	18.0
	부채비율	501.3	509.9	454.6	419.9	409.8	381.7	△128.2
금융 (11개)	부채	129.7	140.7	140.2	139.1	138.2	140.2	△0.5
	부채비율	93.8	101.8	98.6	94.9	90.4	88.0	△13.8
기타 (8개)	부채	23.2	26.7	29.3	32.3	35.5	37.6	10.9
	부채비율	130.1	143.5	152.2	162.4	172.9	178.7	35.2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③ 금융부채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37개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2026년 금융부채는 616.9조원으로, 2025년 568.0조원 대비 48.9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이후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동기간 총 192.6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6~2030년 5년간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평균 54.6%,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평균 80.1%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도 계획(2025~2029년)의 평균(각각 50.2%, 76.2%)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금융부채는 총자산의 54.6%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고, 총부채 중 80.1%가 금융부채로 구성됨에 따라 향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기관별 현금흐름 관리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금융부채 전망]

(단위: 조원, %, %p)

구분	2025 (실적)(A)	2026 (B)	2027	2028	2029	2030 (C)	증감 (B-A)	증감 (C-B)	평균 (‘26~’30)
금융부채	568.0	616.9	659.4	712.7	767.4	809.5	48.9	192.6	713.2
총자산 대비	52.3	53.5	54.0	54.6	55.5	55.5	1.2	2.0	54.6
총부채 대비	78.9	79.3	79.6	79.8	80.8	81.2	0.4	1.9	80.1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37개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이자보상배율⁴⁾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영업이익은 2025년 23.0조원에서 2026년 9.3조원으로 13.7조원 감소한 후 2028년 21.3조원까지 회복되지만, 2030년에는 15.9조원으로 재감소가 예상된다.

2026년 영업이익 감소는 두 기관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첫째, 한국전력공사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구입전력비용이 상승하여 영업이익의 감소가 전망된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지원 사후정산 잔여금 지급,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국정과제 이행 등으로

4) 이자보상배율 분석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반으로 이자비용 지급 여력을 평가하여 현금흐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영업손실의 확대가 전망된다. 그리고 2030년 영업이익 감소는 다음 두 기관의 영업이익 감소 등이 주된 원인이다. 첫째, 한국전력공사는 수소발전 구입량 및 RPS 의무 공급비율 확대 등에 따른 구입전력비 증가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매출 둔화, 분양주택 원가 상승, 임대자산 확대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의 확대가 전망된다.

이자보상배율은 2025년 2.1배에서 2026년 0.8배로 하락하여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8년 1.6배까지 회복되지만, 영업이익 감소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2030년에는 1.2배로 하락할 것이 전망된다.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이자보상배율 전망]

(단위: 조원, 배)

구분	2025(실적)	2026	2027	2028	2029	2030
영업이익(A)	23.0	9.3	19.5	21.3	20.4	15.9
이자비용(B)	11.2	12.3	13.2	13.6	13.5	13.7
이자보상배율 (A/B)	2.1	0.8	1.5	1.6	1.5	1.2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 상승 전망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7개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6~2030년 계획에 따르면, 37개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당 기관들의 전체 부채규모는 2026년 778.3조원에서 2027년 828.0조원, 2028년 892.8조원, 2029년 949.4조원을 거쳐, 2030년 997.4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부채규모는 최근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12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에 따른 공공기관 부채관리계획 시행 이후, 2014~2018년 계획부터는 부채규모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19~2023년 계획 이후부터는 향후 부채규모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바, 금년도 2026~2030년 계획 역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추정 부채규모 추이]

(단위: 조원)

대상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제(실적치)	444.4	472.3	502.5	497.6	480.9	474.4	472.3	479.0	497.2	512.1
2012추정		485.4	532.3	561.0	575.9	588.6				
2013추정			520*	548*	556*	565*	573*			
2014추정				511.0	524.3	525.8	517.0	513.2		
2015추정					496.6	508.2	507.0	508.2	510.6	
2016추정						491.0	495.0	495.6	496.0	496.5
2017추정							481.1	488.7	493.5	501.3
2018추정								480.8	491.8	506.2
2019추정									498.9	511.5
2020추정										521.6

(단위: 조원)

대상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제(실적치)	550.6	629.0	664.1	692.9	720.0	-	-	-	-	-
2017추정	510.1									
2018추정	520.6	539.0								
2019추정	538.9	565.9	586.3							
2020추정	540.8	571.0	591.1	615.8						
2021추정	549.6	585.3	606.9	623.4	638.9					
	2022추정	632.8	664.3	677.1	692.4	704.6				
		2023추정	671.7	703.5	720.8	727.9	743.7			
			2024추정	701.9	735.8	752.4	773.2	795.1		
				2025추정	720.2	761.2	792.8	828.3	847.8	
					2026추정	778.3	828.0	892.9	949.4	997.4

- 주: 1. 밑줄은 대상연도에 대한 추정치 중 가장 높은 예측치를, **이탤릭**은 가장 낮은 예측치를 의미함
 2. 예컨대 '2012추정'이란 2012년에 발표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예측치를 의미함
 3. 별표(*)가 표시된 수치는 정부가 계획발표 당시 소수점 이하 단위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임
 4. 실제(실적치)는 해당연도의 직후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부채비율에 대해서도 살펴 보면, 37개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은 2026년 208.2%에서 2029년 219.5%까지 상승한 후, 2030년 216.6%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전년도 계획이 부채비율 하락(2025년 202.2% → 2029년 190.1%)을 전망한 것과 대비된다.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과거 부채비율 실제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의 232.4%를 정점으로 부채비율이 점차 하락하여 2015년 193.1%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인 200% 미만이 달성되었다. 이후 2016년 177.9%를 거쳐 2017~2021년 기간 중에는 160%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22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부채비율 또한 203.4%로 상승하였다. 이는 2018~2022년 계획에서 전망한 2022년 부채비율(155.7~187.6%)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후 부채비율은 2023년 209.8%,

2024년 203.5%로 20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196.5%로 다소 하락한 상황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추정 부채비율 추이]

(단위: %)

대상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제(실적치)	207.1	220.6	232.4	215.8	193.1	177.9	167.5	166.8	167.1	161.1
	2012추정	222.1	234.4	228.5	219.1	209.5				
		2013추정	244.6	248.9	235.3	223.4	210.5			
			2014추정	220.0	213.5	199.9	183.3	172.4		
				2015추정	197.1	190.7	176.9	169.7	163.3	
					2016추정	183.8	173.7	165.2	157.6	151.3
						2017추정	172.8	169.0	162.4	156.5
							2018추정	166.6	163.5	160.4
								2019추정	170.2	166.6
									2020추정	172.2
대상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제(실적치)	161.8	203.4	209.8	203.5	196.5	-	-	-	-	-
2017추정	152.5									
2018추정	157.2	155.7								
2019추정	167.5	168.5	168.1							
2020추정	169.2	173.0	172.2	171.4						
2021추정	167.5	172.5	170.6	167.7	162.6					
	2022추정	187.6	186.5	178.4	175.0	169.4				
		2023추정	214.3	210.4	203.7	193.6	188.8			
			2024추정	207.3	204.5	193.6	187.6	190.5		
				2025추정	202.2	194.1	189.5	193.1	190.1	
					2026추정	208.2	210.5	216.5	219.5	216.6

주: 1. 밑줄은 대상연도에 대한 추정치 중 가장 높은 예측치를, **이탤릭**은 가장 낮은 예측치를 의미함
 2. 예컨대 '2012추정'이란 2012년에 발표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예측치를 의미함
 3. 실제(실적치)는 해당연도의 직후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부채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일부 하락하는 데에는 기관의 자체 당기순이익 증가나 자산가치 재평가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증가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2025년 기준 정부로부터 전체 공공기관이 지원받은 전체 정부순지원수입⁵⁾은 총 140.1조원에 달하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출자금 등 다양한 지원유형을 포함하고 있는바, 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공공기관의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전체 공공기관 ¹⁾	97.9	107.0	118.0	128.1	140.1	591.1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37개) ²⁾	34.9	37.2	42.8	46.5	46.9	208.3

주: 단, 「국가재정법」상 기금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기금)은 제외함

1) 2026년 1월 지정 기준 공공기관 342개 기준

2)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37개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 및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세부 기관별로 살펴 보면, 2026~2030년 계획상 37개 전체 수립 대상기관 중 24개 기관의 부채가 2026년 대비 2030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기관의 부채 증가액은 총 249.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26년 197.5조원에서 2030년 372.8조원으로 175.3조원(88.8%) 증가하여, 24개 기관 증가액 중 70.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5) 정부순지원수입이란 국회에서 의결되는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 등을 말한다.

정부순지원수입은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공공기관의 수입이므로, 보조 또는 기금 전입 자금의 단순 전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지 않는 자금과 민간으로부터의 전입액 등 정부 외 주체로부터의 수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향후 부채증가 예상기관]

(단위: 조원, %)

구분		2026 (A)	2027	2028	2029	2030 (B)	차이	
							금액 (C=B-A)	비율 (C/A)
SOC (6개)	국가철도공단	21.8	22.8	24.2	25.1	25.1	3.3	15.1
	인천국제공항공사	7.49	7.50	7.28	7.31	7.60	0.11	1.5
	한국공항공사	2.0	2.5	2.7	3.0	3.3	1.3	65.0
	한국도로공사	47.9	50.4	52.0	54.2	56.7	8.8	18.4
	한국수자원공사	11.8	12.4	14.1	16.1	18.5	6.7	56.8
	한국토지주택공사	197.5	236.2	287.9	334.8	372.8	175.3	88.8
에너지 (7개)	한국남동발전	7.9	8.4	9.1	9.1	10.9	3.0	38.0
	한국남부발전	7.5	8.0	9.3	10.6	11.3	3.8	50.7
	한국동서발전	6.3	7.4	9.1	9.4	9.6	1.2	14.3
	한국서부발전	8.4	8.7	9.1	9.4	9.6	1.2	14.3
	한국수력원자력	54.7	56.6	59.8	63.7	66.8	12.1	22.1
	한국전력공사(별도)	122.9	124.5	124.4	126.2	132.3	9.4	7.6
	한국중부발전	9.93	9.67	10.15	10.08	10.24	0.31	3.1
금융 (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21.1	21.8	22.3	22.9	23.3	2.2	10.4
	기술보증기금	1.99	2.32	2.14	2.10	2.02	0.03	1.5
	신용보증기금	3.98	4.19	4.24	4.17	4.05	0.07	1.8
	주택도시보증공사	2.2	2.2	4.2	5.2	5.7	3.5	159.1
	한국무역보험공사	3.16	3.17	3.19	3.22	3.25	0.09	2.8
	한국장학재단	11.7	12.0	12.4	12.8	13.2	1.5	12.8
기타 (5개)	강원랜드	0.88	0.89	0.93	0.97	0.98	0.10	11.4
	근로복지공단	3.0	4.1	5.2	6.5	7.9	4.9	16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0	0.19	0.20	0.20	0.21	0.01	5.0
	한국농어촌공사	17.5	19.1	20.5	21.9	22.6	5.1	29.1
	한국산업단지공단	1.4	1.6	2.0	2.4	2.5	1.1	78.6
부채증가 예상기관(24개)		573.1	626.5	696.3	763.4	822.9	249.8	43.6
전체 대상기관(37개)		778.3	828.0	892.9	949.4	997.4	219.1	28.2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제작됨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24개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다른 기관에 비해 상승폭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6~2030년 계획에 따르면, 24개 부채증가 예상기관의 2026년 평균 부채비율은 189.3%로 예측되어 전체 수립 대상기관(208.2%)에 비해 낮지만, 2030년에는 224.8%로 상승하여 전체 수립 대상기관의 부채비율 수준(216.6%)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6~2030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연도별 부채비율 전망]

(단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전체 대상기관(37개)	208.2	210.5	216.5	219.5	216.6
부채증가 예상기관(24개)	189.3	196.5	208.3	219.9	224.8

주: 부채증가 예상기관은 기관별 재무전망 수치로 산출(한국전력공사는 별도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됨

이러한 예측 결과는 향후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별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향후 일정 수준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는 정부의 출자 등 재정지원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이번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계획대로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상당 부분 커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가 정부 재정의 추가적인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도 예산안 중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예시 : 미래대응기금의 사례]

(단위: 억원)

사업명(코드)	지원대상 공공기관	지원유형	지원금액
국민성장펀드(4335-300)	한국산업은행	출자	10,000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4331-300)	한국산업은행	출자	7,500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 (4331-310)	한국산업은행	출자	38,500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지원 사업 (4335-340)	한국투자공사	출자	5,000
한국전력공사 출자 사업 (4337-350)	한국전력공사	출자	5,000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사업 (4337-370)	한국전력공사	보조	3,50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4335-330)	한국자산관리공사 ¹⁾	출자	5,000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4335-320)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2,000

주: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외에도 일반회계 출자예산 7,000억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

1.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중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사항의 일부를 예시한 것임. 다만, 이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 대상기관이 아님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 분석

일부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재무추정의 신뢰성이 낮거나, 반복적으로 이행 시기를 이연하는 등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를 성과 목표로 설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부채 및 재무건전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한국전력공사

❶ 부채비율 개선에 상응하는 채무상환능력 및 현금흐름 관리 필요

한국전력공사는 2021~2023년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 이후 에너지가격 하락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에는 영업이익 8조 5,400억원, 당기순이익 7조 2,499억원을 기록하였다⁶⁾.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3년 644.2%에서 2025년 444.3%로 하락하였고 이자보상배율도 3.2배로 개선되었다.

[한국전력공사(별도)의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배)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월말
부채비율	145.7	493.9	644.2	619.3	444.3	415.8
영업손익	△74,256	△339,086	△65,039	31,667	85,400	21,228
당기순손익	△56,077	△252,977	△32,492	8,293	72,499	28,775
이자비용	6,790	14,208	28,269	29,461	26,286	12,004
이자보상배율	△10.9	△23.9	△2.3	1.1	3.2	1.8

주: 1. 2026년 부채비율은 6월 말 기준이며, 영업손익·당기순손익·이자비용은 2026년 상반기 누계임

2.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임

자료: 각 연도의 한국전력공사 별도감사보고서 및 2026년 반기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도 부채비율은 2026년 450.2%에서 2030년 284.9%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이익과 현금으로 이자비용·투자지출을 충당하고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25년 말 금융부채가 95조 8,688억원으로 총부채의 81.2%를 차지하고 향후에도 대규모 전력설비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부채비율과 함께 현금창출력과 채무상환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22~2025년 총 15.1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한 영향 또한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중장기 주요 재무지표 전망]

(단위: 억원, %, 배)

구분	2025(실적)	2026	2027	2028	2029	2030
부채비율	444.3	450.2	393.4	333.1	312.4	284.9
영업이익	85,400	21,892	80,923	103,601	92,479	61,934
이자비용	26,286	25,043	27,208	27,471	28,082	28,996
이자보상배율	3.2	0.87	2.97	3.77	3.29	2.14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6.9.1., p.718을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이 개선되더라도 이자상환능력은 하락할 수 있다. 2028~2030년에는 부채비율이 333.1%에서 284.9%로 48.2%p 하락하는 반면 영업이익은 10조 3,601억원에서 6조 1,934억원으로 감소하고, 이자비용은 2조 7,471억원에서 2조 8,996억원으로 증가하여 이자보상배율이 3.77배에서 2.14배로 하락할 전망이다.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계획기간 동안 잉여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양(+)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6~2030년 중 총 60조 8,679억원의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투자활동으로 총 59조 4,895억원의 현금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잉여현금흐름은 계획기간 전체로는 1조 3,784억원의 양(+)을 나타내지만, 2026년 △2조 7,462억원, 2027년 △993억원, 2030년 △6,185억원으로 5개 연도 중 3개 연도에서 음(-)의 값을 나타낼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중장기 현금흐름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영업현금흐름(A)	80,310	121,481	151,341	142,244	113,303	608,679
투자현금흐름(B)	△107,772	△122,474	△124,059	△121,102	△119,488	△594,895
설비투자(CAPEX)	103,391	120,705	127,020	117,499	116,510	585,125
잉여현금흐름(A+B)	△27,462	△993	27,282	21,142	△6,185	13,784

주: CAPEX는 건설중인자산을 포함한 전력설비 등의 취득·건설 관련 현금지출을 포함하되, 금융자산 및 관계·종속기업 지분 취득 등 투자성 금융자산 취득은 제외,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투자지출액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투자수요와 채무상환시기의 조정 및 안정적인 외부자금 조달이 요구된다. 한국전력공사는 2026~2030년 중 총 108조 6,881억원을 신규 조달하고 99조 7,644억원의 차입금 등을 상환할 계획이다.

신규차입에는 기존 채무의 차환뿐 아니라 설비투자 등 신규 자금수요를 위한 조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차입 규모 전체를 차환부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매년 상당한 규모의 채무 만기가 도래하고 신규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자금조달 여건 및 차환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상반기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사채 8조 390억원을 발행하고 9조 2,538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장기차입금 1조 4,000억원을 신규 조달하였다.

또한 계획기간 동안 이자부부채에서 공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전망]

(단위: 억원, %, 배)

구분	2025 실적	2026	2027	2028	2029	2030
이자부부채(A)	848,995	888,445	897,050	892,015	904,881	938,231
차입금	165,349	136,565	136,561	136,560	136,559	136,559
공사채(B)	683,646	751,880	760,489	755,455	768,322	801,672
공사채 비중(B/A)	80.5	84.6	84.8	84.7	84.9	85.4
이자비용	26,286	25,043	27,208	27,471	28,082	28,996
이자보상배율	3.2	0.87	2.97	3.77	3.29	2.14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전력공사의 이자비용은 2026년 2조 5,043억원에서 2030년 2조 8,99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2030년 이자비용 합계는 13조 6,8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서도 이자부부채 및 이자비용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현금창출능력을 보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EBITDA⁷⁾를 신규 재무목표(

'26~'30년 평균 EBITDA 13조원 수준)에 포함하였다. 이는 부채비율 외에 수익창출능력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EBITDA는 설비투자 지출과 운전자본 변동 등을 직접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잉여현금흐름이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EBITDA 목표의 관리와 함께 영업활동현금흐름, 잉여현금흐름 및 차입·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② 반복 이연된 자산재평가 효과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적정성 검토 필요

한국전력공사는 2026~2030년 총 14조 9,301억원의 자구노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2030년 토지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본확충액은 7조 407억원으로 전체 자구노력의 47.2%를 차지한다. 특히 2030년 자구노력 8조 3,453억원 중 자산재평가는 84.4%를 차지한다.

[한국전력공사의 2026~2030년 자구노력 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비중
우선순위조정	4,618	1,323	1,263	1,192	1,131	9,527	6.4
집행부진 정비	1,425	321	306	289	274	2,615	1.8
제도개선	12,750	9,665	8,909	7,725	7,632	46,681	31.3
경영효율화	4,007	4,012	4,019	4,024	4,009	20,071	13.4
자본확충 (자산재평가)	-	-	-	-	70,407	70,407	47.2
합계	22,800	15,321	14,497	13,230	83,453	149,301	100.0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산재평가는 토지 등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자본 등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로서, 실제 현금유입 없이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자구노력 계획에 반영된 7조 407억원은 2030년 예상 공정가치를 기초로 새롭게 산정한 금액이 아니라, 2022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당시 산정한 금액이다.

7)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

2021년 말 기준 재평가 대상 토지의 장부가액은 6조 2,175억원이었으며, 토지별 공시지가를 예상 평균 현실화율 74.7%⁸⁾로 나누어 재평가금액 13조 2,582억원을 추정⁹⁾한 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예상 재평가차액으로 산정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재평가 예정시기 변경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초 계획	이후 계획	현행 계획
재평가 예정연도	2024년	2026년	2030년
계획에 반영된 재평가차액	70,407	70,407	70,407
실제 시행 여부	미시행	미시행	예정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평가 예정시기는 2024년에서 2026년, 다시 2030년으로 이연되었지만 계획에 반영된 재평가차액은 계속 7조 407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행시기 변경 자체는 재무상태와 경영상 필요성 등을 고려한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당시 산정한 금액을 약 8년 후인 2030년 재무전망에 반영하려면 해당 금액이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30년 실제 재평가 대상 토지는 당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므로 2021년 말 보유토지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간 동안 토지의 취득·처분, 공시지가 및 시장가격 등의 변동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2022년 산정액을 2030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산정 근거가 요구된다.

또한 자산재평가는 2030년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7조 407억원의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이 중 약 1조 9,362억원은 이연법인세부채⁹⁾로 반영되고 약 5조 1,045억원은 자본 증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재평가를 제외하더라도 2030년 부채비율은 315.4%로 2025년 444.3%보다 개선될 전망이므로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이 전적으로 자산재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계획의 2030년 부채비율 284.9%에는 자산재평가 효과 약

8) 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2023년 예상 평균 현실화율

9)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기준액 간 일시적 차이로 인해 향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효과를 부채로 인식한 금액

30.5%p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하면 2030년 부채비율은 300%를 초과한다.

유형자산 재평가에 따른 평가증가액은 일반적으로 기타포괄손익¹⁰⁾으로 인식되어 자본을 증가시키므로, 부채총계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부채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상 평가증가액은 직접적인 현금유입을 수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나 이자보상배율을 직접 개선하는 효과도 없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손익 및 현금흐름 개선을 수반하는 자구노력의 효과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30년 자산재평가 반영 여부에 따른 주요 재무지표 비교]

(단위: 억원, %, %p, 배)

구분	현행 계획(A)	재평가 제외(B)	차이(A-B)
자산	1,786,834	1,716,427	70,407
부채	1,322,613	1,303,251	19,362
자본	464,222	413,177	51,045
부채비율	284.9	315.4	△30.5
당기순이익	33,729	33,729	-
이자보상배율	2.14	2.14	-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2030년 재평가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자산, 외부평가기관 선정 등 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2030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향후 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실제 재평가 대상 토지와 당시 공정가치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예상 재평가차액의 합리성을 재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전망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0)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직접 반영되는 미실현 손익

③ 비관 시나리오의 리스크 반영 수준 및 위기대응체계 보완 필요

한국전력공사는 환율 및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이 크게 영향을 받는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기준 시나리오와 함께 비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비관 시나리오는 기준 대비 환율 약 5%, 국제유가·LNG·유연탄 가격 약 10% 상승을 가정하고, 전력도매가격(SMP)은 환율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별도로 추정한다. 전력판매량·판매단가 및 전기요금 조정률은 기준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전력공사의 기준·비관 시나리오 주요 전제]

(단위: 원/\$, \$/배럴, \$/MMBtu, \$/톤, %)

구분	기준	비관	변동률	설정근거
환율	1,438	1,510	5.0	과거 실적 변동폭 고려
국제유가	71	78	10.0	
LNG	10	11	10.0	
유연탄	131	144	10.0	

주: 기준 및 비관 값은 2027~2030년 전망치의 평균이며, 일부 실적자료가 반영된 2026년은 제외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한국전력공사는 비관 시나리오의 환율 및 에너지가격 변동률을 설정한 근거로 각각 과거 실적 변동폭 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변동률 산정기간과 평균·최대 변동률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통계 방식 등이 제시되지 않아 리스크 반영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동일한 전망대상연도인 2026년의 주요 대외변수 전망치를 직전 계획과 비교하면, 일부 변수의 수정폭이 현행 비관 시나리오의 리스크 가정을 상회한다. 환율은 7.7%, 국제유가는 26.9%, LNG는 33.3% 상향 조정되어 현행 비관 시나리오에서 적용한 변동률보다 수정폭이 컸다. 계획 간 전망치 수정폭과 일반적인 비관 시나리오의 리스크 가정은 목적이 달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나¹¹⁾, 한 차례의 계획

11)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해 '26년 중동전쟁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비관 시나리오는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예측하는 것과 달리, 불리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재무상태가 얼마나 악화되는지 평가하는 기능도 있다. 한국전력공사 또한 스스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위험이 재무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재수립 과정에서도 일부 주요 변수의 전망이 현행 리스크 가정보다 크게 변경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변동률의 산정기간과 적용방식 등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주요 대외변수 전망의 직전 계획 대비 변경 현황]

(단위: 원/\$, \$/배럴, \$/MMBtu, \$/톤, 원/kWh, %)

구분	2025~2029년 계획(A)	2026~2030년 계획(B)	증감(C=B-A)	증감률(C/A)
환율	1,383	1,489	106	7.7
국제유가	67	85	18	26.9
LNG	12	16	4	33.3
유연탄	121	130	9	7.4
SMP	112	127	15	13.4

주: 환율 및 국제유가 전망은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30년을 기준으로 비관 시나리오의 영업이익은 2조 2,572억원으로 기준 시나리오보다 3조 9,362억원 감소하고,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3조 3,72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3,53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부채는 기준 시나리오의 105조 4,684억원보다 13조 1,510억원 많은 118조 6,194억원으로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84.9%에서 405.0%로 120.1%p 상승한다. 이자보상배율도 2.14배에서 0.68배로 하락하여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비관 시나리오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

(단위: 억원, %, 배)

시나리오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준	영업이익	21,892	80,923	103,601	92,479	61,934
	당기순손익	17,253	50,416	77,063	61,559	33,729
	금융부채	1,000,899	1,011,896	1,005,629	1,019,122	1,054,684
	부채비율	450.2	393.4	333.1	312.4	284.9
	이자보상배율	0.87	2.97	3.77	3.29	2.14
비관	영업이익	8,184	37,350	67,475	58,421	22,572
	당기순손익	5,869	12,795	44,954	29,500	△3,537
	금융부채	1,014,634	1,065,994	1,081,875	1,119,856	1,186,194
	부채비율	475.0	478.0	423.0	422.0	405.0
	이자보상배율	0.33	1.32	2.29	1.87	0.68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와 같이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금융부채와 이자상환능력도 기준 시나리오 대비 악화되므로, 손익·재무상태뿐 아니라 현금흐름 영향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기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및 잉여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으나, 목표·비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금흐름 전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대외여건이 기준 시나리오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의 현금흐름 및 추가 자금조달 필요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목표·비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영업·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을 산출하여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 규모와 투자지출 및 채무상환 부담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준 시나리오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의 자금 부족 규모와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비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경우 2026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영업이익 감소폭이 1조원 이상인 경우 대응조치를 실행하고, 영업이익 감소 정도에 따라 기존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6년 비관 시나리오 현실화 시 대응방안]

(단위: 억원, %)

구분	내용
기준 시나리오 영업이익	21,892
비관 시나리오 영업이익	8,184
영업이익 감소액(A)	13,708
대응조치(경영효율화) 예상효과(B)	1,838~2,640
감소액 대비 대응효과(B/A)	13.4~19.3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환율 및 에너지가격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요인이므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손익 감소분을 자체 자구노력만으로 상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력망 투자 확대 및 공공자산 매각 제한 등 정부 정책을 고려할 때 투자조정이나 자산매각을 단기적인 대응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대응계획은 경영효율화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리한 대외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족과 자금조달 부담에 대한 대응방안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활용 가능한 재무적 대응수단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 차입·사채 관리 등을 구체화하고, 각 대응수단의 실행 가능성과 재무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비관 시나리오의 환율 및 에너지가격 리스크 가정에 대해 산정기간, 과거 변동성 및 적용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큰 변동폭을 적용한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관 시나리오에서도 영업·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과 연도별 자금 부족 및 추가 차입 규모를 분석하여 부채상환능력과 유동성 위험을 점검하고, 주요 재무위험 지표에 연계한 단계별 위기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재무개선 전망의 주요 영향요인 및 근거 제시 필요

한국전력공사의 손익은 전력판매단가 및 판매량뿐만 아니라 환율, 국제 연료가격 및 전력도매가격(SMP) 등 외생변수의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중장기 재무전망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획기간 중 손익 및 재무구조의 개선효과를 외생변수 변화와 기관 자체적인 재무개선 노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2028년 동안 환율·연료가격·SMP가 하락하는 가운데 구입전력비는 2026년 81조 4,602억원에서 2028년 74조 280억원으로 7조 4,322억원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조 1,892억원에서 10조 3,601억원으로 8조 1,709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기간 초반의 영업이익 개선에는 외생변수 하락에 따른 구입전력비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입전력비 감소액을 전액 외생변수 효과로 보거나 이를 영업이익 증가액과 직접 대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력판매량, 발전원별 전력구입량, 기후환경비용, 제도개선 및 경영효율화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2029년 이후에는 주요 외생변수가 계획기간 초반에 비해 대체로 안정되는 가운데 구입전력비가 2028년 74조 280억원에서 2030년 78조 8,796억원으로 4조 8,516억원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0조 3,601억원에서 6조 1,934억원으로 4조 1,66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계획기간의 손익 변동이 외생변수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구입량 및 발전원 구성, 판매량, 기타 비용요인 등 복수의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재무 추정 전제 및 손익 전망]

(단위: 원/\$, \$/MMBtu, \$/배럴, 원/kWh, %,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환율	1,489	1,438	1,438	1,438	1,438
LNG	16	13	10	9	9
국제유가	85	73	70	70	70
SMP	127.3	112.6	106.9	108.1	110.7
평균 전력판매단가	169.9	169.1	169.1	169.1	169.1
전기요금 조정률	-	-	-	-	-
구입전력비	814,602	761,472	740,280	751,094	788,796
영업이익	21,892	80,923	103,601	92,479	61,934

자료: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중장기 재무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 및 재무구조 변동에 대한 외생변수와 자체 재무개선 노력의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환율, 국제 에너지가격, 전력구입량 및 발전원 구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변수 간 상호연관성이 높아 개별 외생변수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합적인 외생변수의 변동과 자체 재무개선 노력에 따른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3호¹²⁾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재무전망뿐만 아니라 그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환율, 국제 에너지가격 등 기관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재무개선 전망이 대외여건의 변화와 자체 재무개선 노력에 각각 어느 정도 기초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종합적인 외생변수와 자체 재무개선 노력의 영향을 구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분하여 분석하고 있음에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주요 외생변수 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외생변수의 종합적인 영향과 자체 재무개선 노력의 효과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재무개선 전망의 주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에는 주요 외생변수의 개별적인 변동이 영업이익 등 재무전망에 미치는 영향도 가능한 범위에서 분석·제시하여 재무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② 한국광해광업공단: 정부출자 중심의 자본잠식 완화 전망 및 손익 개선 전망의 적정성 분석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함)¹³⁾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본총계는 2025년 결산 기준 △3조 1,619억원이고, 2026년에는 △3조 4,484억원으로 잠식 규모가 다시 확대된 후, 2030년 △2조 8,319억원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부채는 8조 4천억원대에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손실과 연 3,000억원 내외의 이자비용은 계획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2026~2030년 중장기재무전망]

(단위: 억원, 배)

구분	2025 (실적)	2026 (A)	2027	2028	2029	2030 (B)	증감 (B-A)
자산	49,034	50,373	50,625	53,101	54,777	55,894	5,521
부채	80,653	84,857	84,674	85,710	85,436	84,213	△644
자본	△31,619	△34,484	△34,049	△32,609	△30,659	△28,319	6,165
이자비용	-	2,904	2,994	3,061	3,007	3,034	130
당기순이익	△3,444	△3,719	△414	△1,581	△142	614	4,333
이자보상배율	-	△0.40	△0.40	△0.41	△0.42	△0.42	-

주: 1. 전망 전제: 환율은 재정경제부 작성지침, 광물가격은 2026년 3분기 해외 전문기관 전망가격 평균, 금리는 3.82%(신규조달 시 최근 1년간 조달가중평균금리) 적용

2. 자본은 자산-부채로 계산한 값임

3. 2025년 이자비용은 연결 기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표기하지 않음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pp.382~391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공단의 당기순손실은 3,444억원으로 전년(1조 1,817억원)보다 8,373억원 감소하였다. 전년도에는 대규모 손상차손 등으로 지분법손익이 △6,717억원이 었지만 2025년에는 지분법손익이 583억원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볼레오 등 종속기업 처분이 완료되면서 관련 부채가 제거되어, 부채가 전년 대비 5,188억

13) 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통합 이후 광해방지·광산지역 지원 등 고유사업은 고유계정에서,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자산·부채는 해외자산계정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원 감소하였다.

그러나 계정별로 보면 손실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고유계정은 지분법평가이익 등으로 당기순이익 732억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해외자산계정은 이자비용 2,770억원과 지분법손실 641억원 등으로 당기순손실 4,176억원이 발생하였다. 해외자산계정의 2025년 말 자본은 △6조 4,733억원으로, 공단 전체 자본잠식 규모(△3조 1,619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본총계 변동 요인]

(단위: 억원)

구분	2025 고유계정	2025 해외자산계정	20205 합계
자산	33,976	15,058	49,034
부채	862	79,791	80,653
자본	33,114	△64,733	△31,619
매출액	3,501	2,718	6,219
영업이익	△794	△65	△859
당기순이익	732	△4,176	△3,444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pp.385

분석 결과, 첫째, 계획기간 중 자본잠식 완화 전망은 사업 자체의 손익 개선보다 정부출자에 의한 것이다. 공단의 자구노력은 5년간 총 1조 624억원이다. 이 중 정부출자를 통한 자본확충(재원조달다각화)이 8,517억원으로 80.2%를 차지한다. 2026~2030년 자본은 3,300억원 개선될 전망인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출자 8,517억원이 당기순손실 누계 5,242억원을 상쇄한 결과이다. 정부출자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2030년 자본잠식 규모는 △3조 6,836억원으로 2025년보다 오히려 확대된다¹⁴⁾.

14) 2025년 결산 자본(△3조 1,619억원)에 2026~2030년 당기순이익 누계(△5,242억원)와 기타 변동(25억원)만 반영한 단순 계산 값이다. 정부출자금 운용에 따른 손익 변화는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본총계 변동 요인]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자본총계(연말)	△34,484	△34,049	△32,609	△30,659	△28,319	-
자본 증감(전년 대비)	△2,865	435	1,440	1,950	2,340	3,300
정부출자(A)	829	849	3,022	2,091	1,726	8,517
당기순이익(B)	△3,719	△414	△1,581	△142	614	△5,242
기타(증감-A-B)	25	0	△1	1	0	25
자구노력 합계	2,191	1,066	3,259	2,328	1,780	10,624

주: 1. 2026년 자본 증감은 2025년 결산(△31,619억원) 대비 수치임

2. 정부출자는 2026년은 정부 예산, 2027년은 산업부 예산(안), 2028~2030년은 산업부 중기사업계획(안) 기준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pp.389~391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정부출자 8,517억원은 전액 핵심광물 비축사업(8,161억원)과 재자원화사업(356억원)에 투입되는 정책사업 재원이다. 이러한 출자금은 비축광물 구매 등 고유계정 자산으로 전환되므로, 해외자산계정의 결손 보전이나 차입금 상환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전체 자본잠식 규모가 줄더라도 해외자산계정의 재무구조는 유지된다. 또한 2027년 이후 출자액은 출자 규모가 조정되면 자본 전망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정부출자를 통한 자본잠식 완화 효과와 공단의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손익 개선 전망은 광물가격과 환율에 대한 낙관적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공단은 해외투자사업의 생산 재개와 광물가격 상승으로 지분법이익이 확대되어 투자주식이 2030년까지 8,839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이번 계획의 동 가격 전제(2026년 톤당 12,935달러)는 2025년 실제 가격(9,945달러)보다 30.1% 높으며 전년도 계획의 2026년 전제(9,971달러)와 비교해도 29.7% 상향되었다. 그리고 2027년 순손실이 크게 줄어드는 데에는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환산이익 588억원이 반영되어 있다¹⁵⁾.

15) 공단은 2026년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순손실 655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2027년에는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환산순이익 588억원과 해외투자사업 생산 재개에 따른 지분법이익 등으로 손실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광물가격 전제 비교]

(단위: 달러/톤)

구분	항목	2025 (실적)	2026	2027	2027	2029	2030
동	2025~2029년 계획	9,945	9,971	9,812	9,530	8,819	-
	2026~2030년 계획	-	12,935	12,617	12,348	13,003	13,157
니켈	2025~2029년 계획	15,160	16,853	17,666	17,554	23,149	-
	2026~2030년 계획	-	17,591	17,496	17,594	17,928	18,783

주: 2025년 실적은 공단 제시 연간 가격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pp.380, 391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광물가격 전제를 크게 올렸는데도 당기순이익 전망은 전년도 계획보다 악화되었다. 전년도 계획은 2028년 △572억원, 2029년 543억원(흑자 전환)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2028년 △1,581억원, 2029년 △142억원으로 손실이 늘었고, 흑자 전환 시점도 2030년으로 1년 늦춰졌다. 공단은 그 원인으로 주요 사업 정상화와 가형재개 지연, 이자비용 부담 증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전망 하향은 이번 계획에 국한되지 않는다. 계획별 2026년 전망치를 비교하면, 「2022~2026년 계획」은 2026년 자본을 1,257억원으로 보아 자본잠식 해소를 전망하였으나 이후 계획마다 전망이 악화되어 「2026~2030년 계획」에서는 △3조 4,484억원이 되었다. 같은 기간 2026년 부채 전망치도 5조 1,902억원에서 8조 4,857억원으로 3조 2,955억원 상향되었다. 따라서 공단은 광물가격 및 환율에 대한 낙관적 전제에도 불구하고 손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재무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2026년 전망치 변동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2~2026년 계획	2023~2027년 계획	2024~2028년 계획	2025~2029년 계획	2026~2030년 계획
자산	53,159	58,110	50,735	49,391	50,373
부채	51,902	63,783	75,113	79,641	84,857
자본	1,257	△5,673	△24,378	△30,250	△34,484
당기순이익	895	1,589	△819	△6,032	△3,719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pp.393~394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해외자산계정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손실의 주된 요인 이지만 이를 상쇄하려는 공단의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자비용은 매년 2,904억~3,061억원, 5년간 총 1조 5,000억원으로 전망되지만, 자구노력 1조 624억원 중 80.2%(8,517억원)는 비축·재자원화 사업을 위한 정부출자이며 공단 자체 노력은 2,107억원(19.8%)에 불과하다. 이 중 2026년 해외투자 축소(1,189억원)를 제외한 자산매각·수익확대·경영효율화는 5년간 918억원으로, 동 기간 이자비용의 6.1% 수준이다. 영업손실의 지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Delta 0.40 \sim \Delta 0.42$ 배이며 조달금리 전제가 3.82%로 상승(2025년, 3.20%)하였고 차입금 상당 부분이 외화부채(2025년 기준 약 2.8조원)이므로 금리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이자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효성 있는 신규 수익기반 마련 등 자구노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자금 이관 중심 자구노력 및 재무전망 전제에 대한 재무관리 계획의 적정성 분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함)¹⁶⁾은 2025년 말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서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처음으로 수립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술원의 부채비율은 2025년 1,287.7%이다. 계획상으로는 2026년 1,306.7%로 상승한 후 2030년 936.2%로 하락할 전망이다, 계획기간 내내 900% 이상의 수준이 예상된다. 이는 37개 대상 기관 가운데 2026년 기준 두 번째, 2030년 기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6) 기술원은 2008년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통합에 따라 2009년 4월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근거하여 환경 R&D 관리,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생활 촉진, 환경피해 예방·구제 사업을 수행하며, 2026년 예산은 1조 1,893억원 규모임. 매출 구조는 수탁 사업 60%, 이전사업 24%, 융자사업 10% 등으로 정부 의존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6~2030년 중장기재무전망]

(단위: 억원, %, %p)

구분	2025 (실적)	2026 (A)	2027	2028	2029	2030 (B)	증감 (B-A)
자산	20,386	22,985	21,107	21,703	21,945	21,440	△1,545
부채	18,917	21,351	19,330	19,807	19,953	19,371	△1,980
금융부채	18,679	21,141	19,122	19,601	19,748	19,167	△1,974
비금융부채	238	210	208	206	205	204	△6
자본	1,469	1,634	1,777	1,896	1,992	2,069	435
부채비율	1,287.7	1,306.7	1,087.8	1,044.7	1,001.7	936.2	△370.5
매출액	7,127	7,782	7,963	8,157	8,401	8,623	841
영업이익	269	159	135	110	88	68	△91
당기순이익	256	167	143	118	96	77	△90

주: 전망 전제: 운영비용에는 재정경제부 기준 물가상승률(2.0~2.6%)을, 차입이자율에는 재원별 이자율(정부 고시·산업은행 조달금리)과 EIU 전망치를 바탕으로 3.89~4.61%를 적용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pp.850~855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술원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정책용자 사업구조 때문이다. 기술원은 정부 기금 등에서 장기 용자차입금을 빌려 중소환경기업 등에 다시 대여하는 환경정책용자사업을 수행하므로 부채의 대부분이 용자차입금으로 구성된다. 2025년 말 장기성 용자차입금은 1조 7,503억원으로 금융부채의 93.7%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에 대응하는 장기성 용자대여금은 1조 6,323억원이다. 그러나 자본은 1,469억원으로 부채에 비하여 매우 소규모이다. 그 결과 부채가 조금만 변동해도 부채비율이 크게 변동하는 구조이다.

분석 결과, 첫째, 기술원의 자구노력은 5년간 총 1조 5,52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재무전망상 부채 감소폭과 큰 차이가 있어 산정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구노력은 전액 '유사중복정비'로 분류된다. 이 중 1조 5,272억원(98.4%)은 '온실가스 배출저감 설비지원 용자사업' 자금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여 부채를 줄이려는 계획에 해당한다. 이관 대상은 2024~2026년 조성 자금 3,018억원과 2027~2030년 매년 신규 800억원이며, 기술원은 2027~2030년 중 매년 3,818억원의 부채가 감소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미 조

성된 자금 3,018억원은 한 차례 이관되면 이후 연도에 다시 부채를 줄일 수 없다. 그런데도 매년 같은 규모(3,818억원)로 반복 표기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구노력 계획과 재무전망상 부채 증감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비중
온실가스 배출저감 설비지원 융자자금 이관	-	3,818	3,818	3,818	3,818	15,272	98.4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통합	-	58	58	58	58	252	1.5
탄소중립 전환지원 유사사업 폐지	-	4	4	4	4	16	0.1
자구노력 합계	-	3,880	3,880	3,880	3,880	15,520	100.0
재무전망상 부채 증감	2,434	△2,021	477	146	△582	△1,980	-

주: 1. 세부 사업별 금액은 원문의 연간 금액(3,818억원·58억원·4억원)에 4년을 곱한 값임
2. 재무전망상 부채 증감은 전년 대비 수치이며, 합계는 2027~2030년 기준임(2026년은 2025년 결산 대비)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pp.854~855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이러한 자구노력은 융자사업과 그 재원인 차입금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원의 부채 비율은 낮아지지만, 같은 규모의 정책융자 부채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계속 관리된다. 따라서 이를 자구노력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감축 효과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매출은 증가하지만 이익은 계속 감소하는 구조이므로 수익성 악화 원인을 반영한 재무리스크 요인분석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은 수탁사업 확대에 의하여 2026년 7,782억원에서 2030년 8,623억원으로 841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영업이익은 159억원에서 6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6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각각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2025년 3.8%에서 2030년 0.8%로 하락하며, 기술원이 스스로 설정한 순이익률 목표도 2.2%에서 0.9%로 매년 하향되어 있다.

기술원은 이익 감소 원인으로 보험사업 수익 하락¹⁷⁾과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

17) 기술원은 이에 대하여 “손익전망에서 이익 감소의 주원인으로 든 보험사업 수익 하락은 사고발생 빈

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재무리스크 요인분석에서 인증제도 개편과 민간 인증기관과의 경쟁에 따른 용역사업 수익 기반 약화를 논의하고, 대응방안도 인증·용역사업의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에 집중되었다. 손익 전망에서 이익 감소의 주원인으로 든 보험 사업 수익 하락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이나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익성 지표 추이 및 목표]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매출액	6,992	6,481	7,127	7,782	7,963	8,157	8,401	8,623
영업이익	374	281	269	159	135	110	88	68
당기순이익	382	276	256	167	143	118	96	77
영업이익률	5.3	4.3	3.8	2.0	1.7	1.3	1.0	0.8
순이익률	5.5	4.3	3.6	2.2	1.8	1.4	1.1	0.9
자본이익률	40.5	22.8	17.4	10.2	8.1	6.2	4.8	3.7

주: 1. 2023~2025년은 실적, 2026~2030년은 전망 및 기관 재무목표임

2.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원문 수치로 계산한 값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pp.851~855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기술원은 부채의 약 99%가 용자대여금과 연계되어 있어 자산·부채 매칭 관점에서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¹⁸⁾ 기술원은 2026~2030년 재무전망에서 용자사업 대여금리에 사채금리 전망치를 적용하였으며, 동 금리는 2026년 3.89%에서 2030년 4.22%로 0.33%p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자금 용자의 대여금리는 정부가 고시하는 정책금리로 결정되어 시장 금리인 사채금리와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사채금리 상승 전제를 대여금리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용자사업 이자수익과 매출액이 과대 전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본이 1,500억~2,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구조에서는 금리 차이가 조금만 발생해도 자본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자산·부채의 연계성만으로는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도 등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기관이 원인 분석이나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8) 기술원은 용자사업 축소에 따른 부채 감소와 5년간 누적 당기순이익 601억원에 따른 자본 확충(1,634억원 → 2,06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026년 1,306.7%에서 2030년 936.2%로 370.5%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④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 회수 계획의 적정성 분석

한국가스공사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료비 미수금 전액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규모는 2026년 56조 4,694억원에서 2030년 40조 7,188억원으로 약 15.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수금 회수액을 활용한 부채상환 등으로 부채규모는 2026년 44조 6,566억원에서 2030년 26조 8,290원으로 약 17.8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은 2026년 378%에서 2030년 193%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은 2026년 2조 6,797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당기순이익은 2026년 1조 782억원을 달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8,351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가스공사 2026~2030년 중장기 재무전망]

(단위: 억원, %, %p)

구분	2025 (실적)	2026	2027	2028	2029	2030	증감 (‘30-’26)
자산	536,278	564,694	539,864	503,216	466,013	407,188	△157,506
부채	428,289	446,566	415,219	374,563	332,509	268,290	△178,276
자본	107,989	118,128	124,645	128,653	133,504	138,898	20,770
부채비율	397	378	333	291	249	193	△185
영업이익	21,012	26,797	23,815	22,109	21,114	19,160	△7,637
당기순손익	1,323	10,782	9,077	8,116	7,922	8,351	△2,431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가스공사는 1998년 8월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유가와 환율에 따른 LNG 도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민수용 요금은 2개월마다 홀수월에 조정되고, 상업용·발전용 요금은 매월 조정된다. 다만, LNG 가격이 급등할 경우 연동제가 일시 유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원료비 손실은 추후 가스요금 조정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구분	민수용 ¹⁾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용도구분	주택용,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냉난방공조용, 수송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산정주기	2개월(홀수월) 산정	매월 조정	매월 조정
산정조건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하여 변동될 경우 요금 조정 ²⁾	변동 폭 무관 자동조정	변동 폭 무관 자동조정
유보조건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또는 요금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주: 1) 민수용(民需用)이란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상업시설 등 비산업용 소비자인 민간 수요자에게 공급 되는 용도를 의미함

2) 산정원료비는 요금적용월의 전월에 예상치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원료비를 의미하며, 기준원료비는 원료비 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치로서 요금상 원료비에서 미수금(미지급금) 정산단가를 제외한 단가를 의미함

자료: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2025.5.1.)」 및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가스공사는 민수용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발생하는, 천연가스 원료비와 요금에 포함된 원료비 간의 차이(손실)를 재무제표상 미수금(기타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LNG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었고,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2012년까지 5조 5,356억원이 누적되었다. 2013년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LNG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면서 그간 누적된 미수금은 2017년 전액 회수된 바 있다.

그러나 미수금 회수가 완료된 이후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2018년부터 미수금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이후 LNG 가격 급등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미수금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은 2026년 2분기 말 기준 13조 5,390 억원으로, 2025년 말 대비 3,259억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3조원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연도별 원료비 미수금 현황(민수용)]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도별 증감액	11,230	△3,712	△8,895	△16,024	△17,108	△11,129	7,712	
기말잔액	55,356	51,644	42,749	26,725	9,617	△1,512	6,200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2Q
연도별 증감액	6,617	△5,906	10,745	68,200	44,254	10,366	△1,827	△3,259
기말잔액	12,817	6,911	17,656	85,856	130,110	140,476	138,649	135,390

주: 2012~2020년은 도시가스용 전체이며, 2020년 8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민수용·상업용·도시가스 발전용)로 구분됨

자료: 한국가스공사

2012년 말까지 누적된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5조 5,356억원은 2013~2017년 동안 매년 0.3~1.7조원씩 회수되어 2017년 전액 회수되었다. 이후 원료비 미수금은 201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향후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까지 전액 회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구체적인 회수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원료비 미수금의 발생 및 회수 구조를 고려할 때,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향후 가스요금 조정과 원료비 연동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스요금 조정은 물가 및 국민 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원료비 미수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원료비 미수금 회수계획(민수용)]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원료비 미수금 기말잔액	145,824	129,848	94,488	41,526	0

자료: 한국가스공사

한편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미수금이 2026년 2분기 13조 5,390억원에 달하는 등 향후 회수 시기와 규모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국내사업 3조 9,922억원, 해외사업 4조 7,644억원, 친환경·신사업 1조 487억원 등 9조 8,053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¹⁹⁾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한국가스공사 투자계획]

(단위: 억원)

사업명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국내사업	11,701	7,362	7,478	7,191	6,190	39,922
해외사업	12,171	7,694	7,775	7,621	12,383	47,644
친환경·신사업	911	1,368	2,199	2,836	3,173	10,487
합계	24,783	16,424	17,452	17,648	21,746	98,053

주: FID 미확정 사업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음

자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미수금의 전액 회수를 전제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원료비 미수금 회수는 향후 가스요금 조정 여건 및 국제 LNG 가격 변동 등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전액 회수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는 향후 가스요금 조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료비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미수금 회수 지연에 따른 추가 차입 및 금융비용 증가 가능성 등을 중장기 재무전망과 투자·자금조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19) 국회예산정책처,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Ⅱ」 pp.9~12

한국가스공사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중 해외사업 투자계획에는 모잠비크 사업(KG Mozambique Ltd.)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손상차손이 발생하여 2025년 말 기준 투자주식의 누적 손상액이 7,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는 2025년 Coral North 사업 추진을 위해 5.6억 달러의 출자·대여를 결정하였으며, 향후 총 사업비 약 340억 달러 규모의 Rovuma LNG 사업에도 10% 지분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3)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위험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 선정체계 마련 필요

현행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선정기준은 재무위험을 자산규모, 정부의 손실보전 가능성 및 자본잠식 여부 등 제한된 지표를 중심으로 하므로, 금융부채의 급격한 증가, 지속적 손실, 자본 감소, 부채비율·현금흐름 악화 등 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의 자산·부채 성격과 국가재정에 대한 위험노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관 선정 기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의 목적은 국가재정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자산규모, 정부 손실보전 조항 존재 여부, 부채 상황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사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위 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①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 ② 의무적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③ 재량적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④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정리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공통요건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별 요건	①자산규모	자산 2조원 이상
	②정부 손실보전	설립근거법에 정부의 의무적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
	③정부 손실보전	설립근거법에 정부의 재량적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
	④완전자본잠식	부채가 자산보다 큰 기관 중 자본잠식 규모·사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주: 공통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 개별요건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은 총 37개 기관이며, 전년도에 비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개 기관이 추가되었다. 두 기관은 모두 2025회계연도 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 되면서 신규로 수립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발간된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보고서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여부를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재무규모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기타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유형 변경 등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관의 사업특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재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기관 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현행 선정기준은 이러한 대상 기관의 범위뿐 아니라 재무위험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현행 선정기준의 재무위험 반영 한계

① 자산 2조원 기준의 한계

자산 2조원이라는 외형적 규모가 반드시 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근로복지공단의 2025년 말 자산은 2조 4,169억원으로 현행 수립기관 선정기준인 2조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총자산 중 1조 4,907억원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부담금 등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며, 이에 대응하여 동일한 규모의 퇴직연금 적립부채가 계상되어 있다. 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확대에 따라 운용자산과 적립부채가 함께 증가하면서 총자산 규모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2025년 전체 부채비율은 1,027.8%이나 퇴직연금 적립부채를 제외한 부채비율은 332.3%이며, 기관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부채를 제외한 부채비율을 별도로 산출하여 재무관리 목표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례는 총자산 규모의 증가가 곧 기관 고유사업의 재무위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과 부채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한 2025년 말 자산이 2조 386억원으로 2조원을 상회하면서 처음 수립대상에 포함되었다. 동 기관은 환경정책 용자사업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산업은행에서 차입하여 발생하는 용자차입금과 이를 환경 개선 관련 기관 등에 대여하는 장기성 용자대여금이 함께 증가하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관은 부채 대부분이 용자사업 자산과 연계되어 있어 자산·부채의 대응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신규 수립기관의 주요 재무구조(2025년 말)]

(단위: 억원, %)

구분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산	24,169	20,386
부채	22,026	18,917
부채비율	1,027.8	1,287.7
주요 정책성 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14,907	장기성 용자대여금 16,323
관련 부채	퇴직연금 적립부채 14,907	장기성 용자차입금 17,503
주요 특징	운용자산과 적립부채 동반 증가	용자자산과 용자재원 차입 동반 증가

자료: 각 기관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위 사례는 두 기관의 재무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동일하게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관별 자산·부채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성격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자체 사업 확대를 위한 차입에 따른 것인지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련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한 것인지에 따라 재무위험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산규모만으로는 기관별 부채의 성격과 재무위험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라는 법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보완적인 수립대상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회계연도 말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수립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자산규모가 2조원 내외인 기관의 경우 연도별 자산 변동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편입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¹⁾의 경우 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2023년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자산규모가 다시 2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2025년 수립대상에 재포함되었다.

이처럼 자산규모가 선정기준인 2조원 전후에서 변동하는 기관은 단일 회계연도 말 자산규모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재무전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립대상 선정 시 단일연도의 자산규모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자산규모 추이 및 자산 변동의 원인 등이 보완적으로 반영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2021~2025년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산	21,148	19,571	19,662	22,280	24,622
부채	7,978	5,398	5,901	8,576	11,146
영업손익	113	575	△193	△365	△264
당기순손익	686	875	41	△18	△214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완전자본잠식 기준의 한계

현행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 선정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본잠식의 규모·사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완전자본잠식은 누적손실 등으로 자본총계가 음(-)이 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완전자본잠식 여부만으로는 자본이 음(-)으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재무건전성 악화를 선정기준에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²⁰⁾는 2021~2025년 5년 연속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부채는 18조 1,453억원에서 22조 30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자본은 2022년 8조 8,743억원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7조 6,795억원으로 축소되었다.

[한국철도공사 2021~2025년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자산	245,938	284,526	287,524	289,987	297,101	-
부채	181,453	195,782	203,585	210,632	220,307	-
자본	64,485	88,743	83,938	79,355	76,795	-
부채비율	281.4	220.6	242.5	265.4	286.9	-
영업손익	△8,661	△4,364	△4,743	△1,114	△3,782	△22,664
당기순손익	△11,081	△3,104	△5,425	△5,167	△3,772	△28,549

주: 1.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2. 2022년 자산재평가가 시행됨

자료: 한국철도공사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말에도 자산 29조 7,101억원이 부채 22조 307억원을 상회하여 자본총계가 7조 6,795억원의 양(+)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완전자본잠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20) 한국철도공사는 자산 2조원 기준으로 이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이므로, 이하 사례는 완전자본잠식 기준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2년 자산재평가 등에 따라 자본이 전년 6조 4,485억 원에서 8조 8,74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로 자본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 변동의 구성내역을 보면, 2025년 말 결손금은 12조 9,033억 원에 달하는 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²¹⁾은 약 9조 4,981억 원이며, 이 중 대부분은 과거 자산재평가에 따라 형성된 금액이다. 즉, 누적손실로 결손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자산재평가에 따른 회계상 자본 증가분이 자본총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완전자본잠식 여부가 누적손실뿐 아니라 자산재평가 등 회계상 자본 구성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철도공사가 회계상 자본 구성요인이 완전자본잠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완전 자본잠식 이전에도 재무건전성 악화가 상당 기간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1~2025년 5년 연속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은 2021년 2,708억 원에서 2025년 899억 원으로 약 66.8%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부채는 890억 원에서 3,51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부채비율은 2021년 32.9%에서 2024년 183.1%, 2025년 390.7%까지 상승하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1~2025년 재무 및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자산	3,598	3,633	3,234	3,211	4,409	-
부채	890	884	1,294	2,077	3,511	-
자본	2,708	2,749	1,940	1,134	899	-
부채비율	32.9	32.2	66.7	183.1	390.7	-
영업손익	△863	△1,177	△764	△859	△460	△4,123
당기순손익	△110	△420	△509	△472	△226	△1,737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별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1) 당기손익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자본에 누적해 둔 자산평가손익 등

또한 2025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337억원으로 순유출을 기록하였다. 이는 손익 악화와 자본 감소뿐 아니라 영업활동에서의 현금창출 측면에서도 재무적 부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5년 말 자산규모가 4,409억원으로 2조원에 미달하고, 자본총계가 899억원으로 양(+)이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는 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별도의 손실보전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현행 선정요건 및 주요 재무지표]

구분	현황
공기업·준정부기관	해당
자산 2조원 이상	해당하지 않음(2025년 4,409억원)
설립근거법상 손실보전	명시적인 손실보전 규정 없음
완전자본잠식	해당하지 않음(2025년 자본 899억원)
손익	2021~2025년 5년 연속 영업손실·당기순손실(영업손실 합계 △4,123억원)
부채비율	2021년 32.9% → 2025년 390.7%
영업활동현금흐름	2025년 △337억원

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 사례는 완전자본잠식에 이르기 전에도 지속적인 손실 누적과 자본 감소 등 재무위험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상기관 선정 시 완전자본잠식 여부뿐 아니라 손익 추이와 재무구조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자산재평가 등 회계상 자본 변동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위험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완전자본잠식에 이르기 이전에도 지속적인 손실 발생, 자본 감소, 부채비율 상승 및 영업활동현금흐름 악화 등 재무건전성 악화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기준에서도 완전자본잠식 기관에 대하여 자본잠식의 규모·사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기관을 대상으로 하

는 판단기준이라는 점에서, 완전자본잠식 이전 단계의 재무상태 악화를 반영하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완전자본잠식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 선정기준의 하나로 유지 하되, 완전자본잠식에 이르기 이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영업손실·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자본 감소, 부채비율 상승, 영업활동현금흐름 악화 등이 나타나는 기관 을 대상으로 재무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보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는 공공기관이 영리적 판단만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우나 국민생활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철도운임 할인 및 적자노선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관별 공익서비스 제공 및 비용부담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 법령 및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공익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상받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 부담 근거가 있음에도 통행료 감면에 대한 정부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할인 비용을 2026년까지 자체 부담하여 왔으나,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할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함에 따라 일반가스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은 제공 서비스별로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발생한 비용의 보전 여부 및 미보전비용의 처리 방식에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현황]

(단위: 억원)

기관	주요 공익서비스	정부 보전 현황	2025년 비용
한국 철도공사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수목적사업	일부 보전	5,388
한국 도로공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미보전	4,649
한국 전력공사	취약계층·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2026년 미보전, 2027년 예산안 일부 보전 예정	7,141
한국 가스공사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경감	미보전	5,565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오지은 예산분석관(jieun.oh@assembly.go.kr, 6788-4684)

나. 분석의견

(1) 철도요금 관련 공익서비스 보상액 산정기준 명확화 및 보상 수준 검토 필요

한국철도공사의 공익서비스(이하, “PSO”)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 및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에 따른 열차운행으로 구분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¹⁾는 이러한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의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에 따라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PSO 비용은 2021년 4,754억원에서 2025년 5,38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보상액은 같은 기간 3,796억원에서 3,623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미보상비용은 2021년 958억원에서 2025년 1,76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발생비용 대비 정부보상 비율은 79.8%에서 67.2%로 12.6%p 하락하였다.

[한국철도공사 PSO 비용 및 정부보상액]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발생 비용	공공운임감면	1,995	2,347	2,872	3,281	3,533
	벽지노선 경영손실	1,877	1,586	1,609	1,599	1,781
	특수목적사업	882	519	786	81	74
	합계(A)	4,754	4,452	5,267	4,961	5,388
정부보상액(B)		3,796	3,845	3,979	3,612	3,623
미보상비용(A-B)		958	607	1,288	1,349	1,765
정부보상 비율(B/A)		79.8	86.4	75.5	72.8	67.2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익 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한편, 2027년도 국토교통부 PSO 보상 예산안은 4,193억원²⁾으로, 벽지노선 경영손실 보상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7억원 증가하였다.

세부 사업별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공공운임 감면액에 적용하는 공익분담률과 벽지노선 경영손실에 적용하는 경영효율화율이 각각 2026년 30%에서 2027년 35%로 5%p 상향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요금 PSO 보상액 산정 시 공공운임 감면액 및 벽지노선 경영손실 산정액에 적용하는 정부보상비율은 70%에서 65%로 낮아졌다.

공익분담률과 경영효율화율은 공익서비스 발생비용 중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의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근거 지침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특히 2027년 예산안에서는 두 비율을 전년 대비 각각 5%p 상향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사회적 책임과 벽지노선 운영에 대한 경영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율에 반영하였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비율 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해당 비율의 산정기준 및 지침 등을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7년도 PSO 보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증감	2027년 예산안 산출근거
(1) 공공운임 감면	2,662	2,522	△140	추정감면액 ^{주1)} × (1-공익분담률) * 공익분담률: 2026년 30% → 2027년 35% 변경
(2) 벽지노선 경영손실	1,147	1,498	352	산정대상 경영손실 ^{주1)} × (1-경영효율화율) +연구용역비(1억원) * 경영효율화율: 2026년 30% → 2027년 35% 변경
(3) 특수목적	187	173	△15	특수목적사업 운영비용(66.7억원) + 특별동차 원복비용(105.9억원)
합계	3,996	4,193	197	

주: 1) '27년 추정발생비용은 '26년 실제 발생비용에 '27년 수익증감을 및 열차종·대상별 수요증감을 (벽지노선 경영손실은 벽지비율 반영)을 반영해서 산출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코드: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2736-301

한국철도공사의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2026~2028년에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부채비율도 2025년 280.2%(실적)에서 2028년 39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³⁾

이러한 재무여건을 고려할 때, 공익서비스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한국철도공사가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우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한국철도공사 중장기 재무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25(실적)	2026	2027	2028	2029	2030
영업손익	△3,524	△3,836	△4,578	△3,739	418	3,640
당기순손익	△3,578	△11,242	△5,915	△9,222	6,884	17,418
부채	221,533	231,807	250,249	265,460	236,969	182,275
부채비율	280.2	323.4	353.8	395.8	307	184.8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철도공사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부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PSO 보상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분담률과 경영효율화율의 개념 및 적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예산안 편성 시 공익서비스 제공 특성과 실제 경영개선 실적 등을 반영한 객관적·일관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송-평택 2복선화, 추가 차량도입 등을 통해 열차 공급이 본격 확대되는 2029년부터는 재무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흑자 전환 이후에도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PSO 비용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6년 3월, '감사원 SOC사업 감사백서'의 지적사항에 따르면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선로용량 부족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향후 사업 지연의 가능성이 있어 열차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영업손익 개선 효과가 당초 전망보다 늦게 나타날 우려도 보인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2029~2030년 당기순손익 개선전망은 대부분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토지매각이익(2029년 1.1조원, 2030년 1.8조원 전망)에 기인한다. 그러나 해당 토지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중장기 재무전망에서 제시된 재무개선의 실현가능성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 통행료 감면비용의 부담 주체 및 정부지원 수준 검토 필요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군경작전차량, 구급·구호·소방차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경차·장애인·출퇴근·심야(화물차)·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 관련 공익서비스 비용은 2021년 3,387억원에서 2025년 4,64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이후 매년 4,000억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통행료수입 대비 PSO 비용의 비율도 같은 기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 현황]

(단위: 만대, 억원)

구분	통행건수					통행료				
	2021	2022	2023	2024	2025	2021	2022	2023	2024	2025
면제										
군경작전차량	73	122	188	198	200	23	45	64	61	64
교통단속차량	81	80	107	116	115	17	18	29	32	33
유지보수차량	346	284	286	278	281	74	63	64	63	62
구급,구호,소방	89	83	78	74	78	21	21	21	19	21
국가유공자	59	57	55	52	51	13	12	13	12	12
긴급통행제한	0.6	27	16	0.1	0.5	0.3	13	8	0.06	0.2
명절 면제	-	2,196	4,367	4,407	4,244	-	646	1,280	1,263	1,192
국무회의 지정기간	987	1,053	495	-	-	386	403	201	-	-
소계(A)	1,636	3,901	5,592	5,125	4,969	534	1,219	1,679	1,451	1,385
할인										
경차	7,389	7,558	7,669	7,763	7,624	782	782	788	784	760
장애인등	2,501	2,457	2,390	2,370	2,349	332	331	328	320	309
출퇴근	19,171	19,291	20,056	20,233	20,562	696	701	737	748	762
심야할인	3,047	2,874	3,760	3,915	4,068	959	928	928	933	916
전기수소차	1,312	2,546	3,883	5,081	5,964	156	293	434	582	580
AEBS장착차	29	40	49	57	-	3	4	6	8	-
소계(B)	33,448	34,766	37,807	39,418	40,567	2,928	3,039	3,221	3,374	3,327
총감면(A+B)	35,084	38,667	43,399	44,543	45,536	3,462	4,258	4,900	4,825	4,712
PSO 대상(C)	34,738	38,383	43,113	44,265	45,256	3,387	4,196	4,836	4,762	4,649
고속도로 통행실적(D)	169,810	177,038	181,980	187,407	191,937	41,741	42,027	42,926	43,681	44,024
감면비율(C/D)	20.5	21.7	23.7	23.6	23.6	8.1	10.0	11.3	10.9	10.6

주: PSO 대상(C)은 총 통행료 감면액(A+B)에서 '유지보수차량'을 제외하여 산출함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⁴⁾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료도로법」 제15조제4항⁵⁾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비용에 대한 정부 보전 실적은 현재까지 없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PSO 비용은 국가가 일부 보전하고 있으며, 민자도로사업자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도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7년도 민자고속도로운영지원 사업⁶⁾ 예산안에는 명절 통행료 면제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 237.9억원 편성되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는 2025년 44.5조원(실적)에서 2026년 47.8조원, 2030년 56.7조원으로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2025년(실적) 95.6%에서 2030년 108.8%로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25년 750억원(실적)에서 2030년 39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5)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②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조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6)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1831-301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25(실적)	2026	2027	2028	2029	2030
당기순이익	750	668	731	516	473	397
부채	445,369	478,540	503,523	520,419	541,598	566,804
부채비율	95.6	100.4	103.6	104.5	106.5	108.8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도로건설 등 투자 확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가정책 등에 따른 통행료 감면비용을 한국도로공사가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우 기관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통행료 감면제도의 목적과 비용 발생 규모, 정부지원 관련 법적 근거 및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용의 부담 주체와 정부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보완 필요

한국전력공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발생비용은 2021년 5,831억원에서 2025년 7,14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까지 별도의 정부 보전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전기요금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안 1,970억원⁷⁾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할인규모 증가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복지할인 전망치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7)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7-370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발생비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장애인	1,223	1,434	1,256	1,218	1,216
유공자	14	16	13	12	12
독립유공	12	15	13	13	14
기초생활수급	1,602	2,067	2,115	2,224	2,489
차상위	201	239	200	184	176
3자녀	849	915	847	810	800
대가족	321	328	297	276	266
출산가구	741	804	794	784	834
사회복지시설	841	944	1,188	1,241	1,276
생명유지	27	33	47	53	58
합계	5,831	6,795	6,770	6,815	7,141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액을 전력판매수익에서 차감(매출의 감소)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복지할인액은 주택용 전력판매수익의 약 5% 수준이다. 전기요금 조정 시 총괄원가와 전력판매수익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복지할인에 따른 수익 감소는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대한 정부지원은 한국전력공사 수익 감소를 보전하고, 일반 전기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도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에너지법」 제16조의2는 정부가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근거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따른 정부의 비용 부담범위와 지원기준, 지원금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유료도로법」 제15조제4항도 일정한 통행료 감면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지원 관련 법]

구분	법령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제32조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한국도로 공사법」 제16조의2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유료도로법」 제15조제4항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법」 제16조의2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따른 한국전력 공사의 수익 감소와 일반 전기이용자의 요금부담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공공기관의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대상과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도시가스요금 경감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에 근거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⁸⁾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과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 경감비용은 별도의 정부지원으로 보전되지 않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된다. 또한 「도시가

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9의2]에 따라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공급비용 산정 시 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의 예상액을 반영하고, 예상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를 차년도에 정산하여 차차기년도 공급비용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및 경감비용의 공급비용 반영 근거]

구분	조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 (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경감지원 금액)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도매요금 경감금액 및 경감 신청대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급 규정에서 정하는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경감금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① 경감지원금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는 규칙 제34조의2에 따르고, 이 경우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경감지원금액은 총괄원가와 별도로 가산한 금액으로, 도매요금 공급비용 산정 시에는 예상액을 반영하고 예상과 실적의 차이를 차년도에 정산하여 차차년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가감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액은 2021년 1,552억원에서 2025년 5,56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액은 같은 기간 1,514억원에서 5,466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3년 동절기 요금 지원 확대 등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경감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 경감액]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월
사회적배려대상자	1,514	1,632	5,129	5,014	5,466	4,434
사회복지시설	38	36	222	105	99	78
합계	1,552	1,668	5,351	5,118	5,565	4,512

주: 2023년 사회적배려대상자 PSO 금액 증가는 2022년 LNG 국제가격 인상을 계기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금액을 6배 이상 대폭 상향(동절기 최대 2.4→14.8만원/월)함에 따름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액은 별도의 정부지원 없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스요금 산정 시 도매공급비용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매공급비용에 반영한 요금 경감액은 2021년 1,103억원에서 2025년 6,74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4,575억원이 반영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경감비용은 도매요금 공급비용 및 가스요금에 반영되어 일반 가스이용자의 요금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비용의 도매공급비용 반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반영금액	1,103	1,211	2,678	5,041	6,740	4,575

주: 가스요금 공급비용 반영액은 예상 경감액과 과거 발생액에 대한 정산분을 합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경감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5년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연동제 유보 등으로 발생한 원료비 미수금(민수용)은 13조 8,649억원이며, 2026년 말 14조 5,824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30년 전액 회수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부채는 2025년 말 42조 8,289억원에서 2026년 44조 6,566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가스요금 정상화로 인한 원료비 미수금 회수 등을 통해 2030년 26조 8,29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국가스공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료비 미수금과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도시가스요금 경감비용을 별도의 정부지원 없이 도매공급비용에 반영하여 회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PSO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비용에 대한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방식과 기관 간 형평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 및 부채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025(실적)	2026	2027	2028	2029	2030
원료비 미수금(민수용)	138,649	145,824	129,848	94,488	41,526	-
부채 총계	428,289	446,566	415,219	374,563	332,509	268,290

자료: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비용이 일반 가스이용자의 요금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 다른 공공기관의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9) 참고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부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28호 및 제2209423호)이 계류 중이다.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안(제2207028호)은 도시가스의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안(제2209423호)은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의 부담, 도시가스사업자의 보상청구권 및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일정 요건하의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058-619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